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소 영

국문초록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소 영

본 연구는 청년노숙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노숙 진입의 하위 경로와 노숙 이후 생활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불안정과 고립의 극단에 놓여 있는 청년들, 그 중에서도 남자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실업과 청년빈곤, 불안정한 일자리 등 거시적 상황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도 고조되는 경쟁 속에서 청년들의 독립의 여정은 더 길어지고 또한 혹독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안정감 있는 독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에 더하여 자신의 배경이 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속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원에 기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헐기와 패기가 충만한 청년이라면 스스로 젊은 시절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년 개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사회적 의무 혹은 기대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19-39세의 남자 청년노숙인들은 이러한 청년에 대한 일반의 기대감을 깨뜨리고 사회적 의무를 회색시키기에 충분하다. 노숙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의 남성들이 노숙을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당에, 젊은 남자 청년들이 노숙인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노숙 문제가 시작된 90년대 후반 이후 줄곧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불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청년기가 생애과정에서 가지는 시기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왜 청년들마저도 노숙과 같은 혹독하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청년의 노숙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9-11년과 2016년에 수집된 청년노숙인 34명과의 심층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회고한 유년시절부터 현재 노숙까지의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노숙 이전 시점의 노숙 원인과 관련하여 노숙 위험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노숙 진입 경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의 독립 이행 과정을 추

적하였다. 노숙 이후는 이들의 주거, 일,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과 청년기 이전인 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두 그룹이 각각 다른 진입 경로를 가지며 노숙 이후의 삶 역시 다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노숙인을 하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청년노숙의 전반적 특성과 아울러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노숙인들은 노숙인을 대표하던 중장년노숙인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적인 그룹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년노숙인 24명의 자료 역시 동일한 항목을 분석하였고 이들과 청년노숙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자료를 사용한 질적 연구이지만 귀납적 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모델의 설계와 내용을 구조화하였기 때문에 연역적이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청년노숙인에 대해 왜 혹은 어떻게 노숙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 질문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Robert Yin의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전략 역시 연대기적 분석과 패턴매칭 등 Yin의 연구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선 청년노숙인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30대 초반으로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학력의 수준이 낮고 자퇴 등의 학력 단절의 경험이 많으며, 군복무 경험도 많지 않았다. 결혼 경험 역시 거의 없었다. 특히 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하위그룹에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 노숙 기간은 대략 4-5년 정도였다.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위험요인의 추출과 분석은 이들의 노숙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위험요인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피해 요인이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의 그룹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선 두 하위그룹의 약 30% 정도가 원가정의 극심한 빈곤과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였고 34명 중 15명은 보육원, 교도소, 소년원 등의 시설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 노숙경험 그룹에서 시설 경험은 더욱 많았다. 특히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가진 가족 요인은 두 하위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었고 그 강도 역시 심각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이것은 청년노숙인들의 개인적 문제와 독립이행의 문제 등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두 하위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 요인과 사회적 피해 요인이었는데,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반면 청소년기 노숙진입 경험이 있는 그룹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비행 요인이 더 두드러졌다. 사회적 피해 요인 역시 전자의 그룹에서는 노숙 이전 독립 시도의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의 경험이 많았던 반면, 후자의 그룹에서는 노숙 이전에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고 노숙 이후는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대

여, 명의도용 등의 경제적 사기 피해를 많이 당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노숙 위험요인 중 노숙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요인들에 시간성의 변수를 추가하여 이 요인들의 인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청년노숙 하위그룹간의 일정한 노숙 진입의 경로 패턴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은 개인요인을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진입 경로의 패턴을 보였고, 청소년기 노숙을 경험한 그룹은 구조·사회요인 경험 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진입 경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각 그룹이 가지는 진입 경로의 차이, 그룹 내에서의 경험요인의 차이에 따른 경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험요인들의 노숙 발생 기전은 인과적 연결고리의 물리적인 결합이라기보다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성을 가진 노숙 위험요인들은 선형적 인과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통합되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단일 차원이 아닌 복합적 환류 고리 체계이며 그것들의 결합은 새로운 요소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의 주거독립, 경제적 독립 이행의 시기와 계기, 독립 이행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의 독립 과정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경제적 독립이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주거독립 역시 원가정에서의 도피, 쫓겨나는 방식의 이탈이 많았다. 특히 학력이나 군복무 등을 포함한 독립 준비기간이 두 그룹에서 차이가 났었지만 사실상 독립 과정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근로경험의 내용을 보았을 때, 낮은 질의 단발적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집중할 수 없었으며 매우 이른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부터 이미 개인 생활에 대한 경제적 궁핍과 부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청년의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 혹은 ‘청년들이 부모에게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일반적 논의와 차이가 있었다. 위기의 청년들은 더 일찍 불가피한 독립을 선택하거나 내몰렸고, 가족에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이탈하거나 가족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이후 상황은 주거, 일,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청년노숙인들은 거리, 노숙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인 쉼터, 고시원, 찜질방,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매우 빈번하게 이동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교도소나 병원 입원 등의 시설 입소, 친척집이나 친구집, 원가족 집으로의 귀가, 일터에 딸린 숙소 등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 불편을 감내해야 하면서도 자활 등의 일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생활비용 부담이 최소화되고, 고립감이 덜 느껴지고 생활환경이 더 나은 쉼터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탈노숙을 위한 선제조건인 일의 경우, 두 청년노숙 하위그룹을 불문하고 일용직, 단순 아르바

이트, 특별자활로 불리는 노숙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참여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좀 더 안정적인 월급제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와 신용불량 등의 채무 문제, 낮은 인적자본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의 부재 등의 사유가 작동하고 있었다. 반복적으로 일용직 일을 구해야 하고, 일당을 받아 하루를 사는 데 익숙해지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한동안 돈을 모으다가도 독립의 명목으로 방을 구해 살면서 몇 달 만에 모은 돈을 다 써버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자주 포착되었다. 끈질긴 심리 정서적 지지와 지도, 그 밖의 사회 경제적 지원이 없이 이들의 탈노숙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청년노숙인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숙인 시설들이야말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더욱 쉼터 등의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잔류하도록 하는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노숙인과의 비교를 위해 중장년노숙인의 특성과 위험요인, 노숙 진입 경로, 노숙 이후의 생활을 분석하였다. 중장년노숙인 역시 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 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의 노숙기간이 가장 짧고 청소년기 노숙 경험 그룹의 노숙 기간이 가장 길었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었지만 중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혼 등의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청년기와 청소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중장년 그룹은 미혼의 경우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다소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 오다가 결국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들거나 개인의 비행을 저지르는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한 두 차례의 사회적 피해를 경험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되었다. 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노숙 이후 생활에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와 일의 패턴을 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노숙 이후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거나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두 그룹은 좀 더 쉼터의 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건강상의 문제와 알코올 문제, 성인기 이후의 비행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나머지 두 그룹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노숙 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숙 이전의 관계를 의식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중장년노숙인과의 비교를 통해 청년노숙인이 가지는 특이성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노숙인은 중장년노숙인에 비해 더 많은 위험요인을 경험하고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노숙인들은

개인의 생애과정상 유사한 시기에 노숙에 진입했던 중장년노숙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활동의 질과 경험이 현저히 낮았고 결혼의 경험 역시 매우 적었다. 특히 가족 요인은 중장년노숙과 청년노숙에게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내용은 다소 달랐다. 중장년노숙인들의 가족요인은 많은 부분이 새로 꾸린 가정의 문제였다. 원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례는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노숙인들의 가족 요인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쌓여 온 원가정의 문제였는데 이것들은 청년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미치고 있는 것들이었다. 한편 개인요인의 경우 청년노숙인들은 중장년노숙인들보다 성인기 비행이 적었다. 그러나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명하게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중장년노숙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의 차이였다. 청년노숙인들이 경험한 사회적 위험은 노숙 전후를 막론하고 중장년노숙인들의 경험에 비해 훨씬 심각했다. 중장년노숙인들이 사기, 보증 피해 등을 입었던데 반해, 청년노숙인들이 경험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법적 피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노숙인이 중장년노숙인에 비해 독립이행의 어려움을 훨씬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원가족의 문제들로 인해 집에서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숙 이후의 삶 역시 청년노숙인의 경우 중장년노숙인에 비해 더 이른 노숙 진입과 더 불안한 노숙 생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인과 중장년노숙인을 비교해 보더라도 청년들의 노숙 진입 시점이 더 빨랐고,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노숙이후의 생활도 주거의 이동이 잦고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력을 갖고 있었지만 일 경험이 일천하기는 비슷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보아도 청년노숙인들은 중장년노숙인에 비해 더 고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사람들이 노숙 생활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독립적인 공간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은 여전히 사회로 복귀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일시보호시설 등에서의 불안정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노숙을 현재의 노숙 상황과 노숙력만으로 파악하거나 하나의 사건으로 노숙의 원인을 규정짓는 것을 탈피하여 노숙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숙인의 노숙 사건의 시점을 확장하고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노숙에 미치는 생애사건은 유년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위험요인들은 매우 다차원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숙을 이해하는데 있어 노숙 경험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는 청년노숙인 뿐만 아니라 중장년노숙인 그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숙 원인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분절적 원인 요소들의 시간적 인과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경로로 연결되는 상황을 분석하였고 여러 사례를 통해 공통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 연구의 관행으로 분절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청소년노숙 상황과 성인기노숙 상황을 청년기의 노숙 경험을 통해 연결하였다. 또한 한국적 맥락에서 노숙 위험요인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에 더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음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적 피해의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노숙인들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노숙인의 독립 이행의 좌절 과정의 끝에 위치한 노숙 상황을 통해 우리사회의 하위 청년계층의 독립 과정의 굴절을 재확인하였다. 현대의 청년들의 독립 이행은 계층적 성격이 약화되고 다양화, 개인화 되었다는 주장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청년들의 독립은 더욱 계층화되어 가고 빈곤과 불안정에 시달리는 배제와 부정적 획일화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극도로 제한된 자원 속에서 독립 과정의 개인적 차이나 다양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론적 함의에 더하여 정책과 실천적 측면에서도 본 논문의 결과에 근거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학력과 실업, 주거빈곤 등의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위기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숙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 관련 정책에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노숙 정책에서는 청년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하위 그룹별 노숙 경로가 상이했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노숙인이 생애과정에서 중첩적으로 경험해 왔던 다양한 노숙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노숙 예방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천적으로도 단순한 숙식제공과 공공일자리의 제공만으로 이들의 사회복귀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심리치료와 상담, 진로지도와 단절된 학력의 복원, 경제적 회생 계획 마련 등 앞으로 이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장기간의 로드맵을 설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청년노숙, 사례연구, 노숙 원인, 노숙 경로, 노숙 위험요인, 독립 이행, 청소년노숙
학번: 2009-30828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문제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청년노숙의 정의와 규모	9
1. 청년에 대한 이해	9
2. 청년노숙의 정의	14
3. 청년노숙의 규모	21
제 2 절 노숙의 진입	26
1. 노숙 원인론	26
2. 노숙 위험요인	37
제 3 절 노숙 경로 연구	43
제 4 절 청년노숙 선행연구	52
제 5 절 이론적 검토의 종합	60
제 3 장 연구 방법	62
제 1 절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62
제 2 절 분석자료	67
1. 「노숙인생애사자료」	67
2. 「청년노숙인 인터뷰자료」	69
제 3 절 분석방법	72
1. Yin 의 사례연구 분석방법	72
2. 연구 엄격성	74
3. 연구윤리 준수	76
제 4 절 연구설계	77

제 4 장 청년노숙인의 주요 특성과 위험요인	79
제 1 절 청년노숙인의 주요 특성	79
제 2 절 청년노숙인의 위험요인 분석	84
1. 구조 요인	85
2. 제도 요인	88
3. 가족 요인	91
4. 개인 요인	95
5. 위험요인의 추가: 사회 요인의 발굴	96
6. 소결	102
제 5 장 청년노숙 진입 경로와 독립 이행	107
제 1 절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107
1. A1 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	108
2. A2 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	119
3. 소결	128
제 2 절 청년노숙인의 독립이행	132
1. 독립시기와 계기	132
2. 독립이행의 과정, 일과 주거	139
3. 소결: A1 그룹과 A2 그룹의 독립 이행 비교	144
제 6 장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생활	148
제 1 절 청년노숙인의 주거와 일	148
1. 청년노숙인의 주거	148
2. 청년노숙인의 일 경험	161
제 2 절 청년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170
1. 청년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170
2. 청년노숙인의 쉼터 이용 패턴	172
3. 청년노숙인의 쉼터생활	175
제 3 절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177
1. 가족관계	177
2. 노숙동료 간 관계	180
3. 그 이외의 사회적 관계: 고립과 외로움	181
제 4 절 소결	182

제 7 장 청년노숙인과 중장년노숙인의 비교	189
제 1 절 장년노숙인의 특성	189
1. 중장년노숙인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과 위험요인	189
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204
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생활	217
제 2 절 청년노숙과 장년노숙의 비교	231
1. 인구학적 특성, 독립이행, 그리고 노숙 위험요인의 비교	231
2. 노숙 진입 경로의 비교	233
3. 노숙 이후의 생활	235
제 8 장 결론	237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논의	237
1. 청년노숙의 특성과 하위 경로의 차이	237
2. 중장년노숙인과 청년노숙인의 차이	241
3. 논의	248
제 2 절 연구의 함의	250
1. 이론적 함의	250
2. 정책적 함의	251
3. 실천적 함의	253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256
참고문헌	257
부록 1. 노숙인 시설 정보	270
부록 2. 청년노숙인 거주패턴	271
부록 3. 「청년노숙인인터뷰조사」 질문지	272
Abstract	275

표 목차

〈표 2-1〉 ETHOS 노숙정의의 내용과 구체적 거주지	15
〈표 2-2〉 한국의 노숙인 규모 (전국)	18
〈표 2-3〉 법적 노숙인 정의와 정책 배제 노숙인	19
〈표 2-4〉 전국 주거취약계층 거처 유형별 연령	21
〈표 2-5〉 서울시내 쉼터·응급잠자리 이용 연령분포	22
〈표 2-6〉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인 연령분포	22
〈표 2-7〉 일본 노숙인 연령분포	24
〈표 2-8〉 유럽 국가들의 청년노숙 규모	25
〈표 2-9〉 노숙 위험요인의 4 가지 차원	38
〈표 2-10〉 노숙 촉발요인	38
〈표 2-11〉 노숙 위험요인 연구	41
〈표 2-12〉 노숙 경로 선행연구	48
〈표 2-13〉 청년노숙인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발견	56
〈표 3-1〉 청년노숙인 조사 특성	73
〈표 4-1〉 조사별 청년노숙인 사례수	79
〈표 4-2〉 청년노숙인의 주요 특성	80
〈표 4-3〉 조사대상 청년노숙인의 연령분포	81
〈표 4-4〉 청소년노숙 경험의 구체적 내용과 유형	82
〈표 4-5〉 청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A1 그룹	86
〈표 4-6〉 청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A2 그룹	87
〈표 4-7〉 청년노숙인의 가족 구조·기능 문제 세부 내용	91
〈표 4-8〉 10 대 시기의 가정 밖 양육(부모 외 양육 포함) 경험	94
〈표 4-9〉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A1 그룹	97
〈표 4-10〉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A2 그룹	98
〈표 4-11〉 청년노숙인 하위 그룹의 위험요인(종합)	105
〈표 5-1〉 청년노숙인의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A1 그룹	117
〈표 5-2〉 청년노숙인의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A2 그룹	125
〈표 5-3〉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패턴	131
〈표 5-4〉 청년노숙인의 독립 시기와 계기	136
〈표 5-5〉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일 경험	142
〈표 5-6〉 청년노숙인 두 그룹의 독립 이행 특성	145
〈표 6-1〉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후의 일 경험: A1 그룹	162

〈표 6-2〉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후 일 경험: A2 그룹	163
〈표 6-3〉 청년노숙인의 주요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71
〈표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가족관계	179
〈표 7-1〉 중장년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 B1, B2, B3 그룹	191
〈표 7-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B1 그룹	194
〈표 7-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B2 그룹, B3 그룹	195
〈표 7-4〉 중장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B1 그룹	198
〈표 7-5〉 중장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B2, B3 그룹	199
〈표 7-6〉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전의 일 경험: B1 그룹	202
〈표 7-7〉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전의 일 경험: B2, B3 그룹	203
〈표 7-8〉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패턴	206
〈표 7-9〉 중장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1 그룹	213
〈표 7-10〉 중장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2 그룹	215
〈표 7-11〉 중장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3 그룹	216
〈표 7-1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지와 일: B1 그룹	218
〈표 7-1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지와 일: B2, B3 그룹	219
〈표 7-14〉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관계: B1 그룹 ..	226
〈표 7-15〉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관계: B2, B3 그룹 ..	228

그림 목차

[그림 2-1] 이론적 배경의 의의와 한계 및 본 연구의 이론적 과제	51
[그림 3-1] 본 연구의 사례와 분석단위 설계	66
[그림 3-2] 청년노숙 경로 연구의 설계	78
[그림 6-1]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주요 거주지	150
[그림 6-2] 청년노숙인 노숙 이후 거주 패턴	153
[그림 6-3]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1 그룹	155
[그림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2 그룹	1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노숙인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다수인 중장년 노숙인에 가려져 노숙과 비노숙의 경계선상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20-30대 청년노숙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노숙 진입의 하위 경로와 노숙 이후 생활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불안정과 고립의 극단에 놓여 있는 청년들, 그 중에서도 남자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청년실업, 청년빈곤, 불안정한 일자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심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장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고(OECD, 2014a), 일을 하거나 학업상태에 있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 비율은 19.2%로, 일본의 9.9%, 영국 15.9%, 미국의 16.1%, 보다는 훨씬 높다(OECD, 2012). 게다가 고학력화, 주거문제, 과중한 결혼비용, 청년층 내부의 문화나 소비의 양극화 등 청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사회적 환경 요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회 경제적 맥락 하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더욱 혹독하고 긴 독립 이행의 여정을 겪게 되었다.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경제적 자립의 지연으로 결혼 역시 늦어져 원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의 독립도 늦어지고 있다. 이른바 NEET의 증가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금재호 외, 2007; 권혁진·유호선, 2011). 주거 독립 역시 쉽지 않아 부모에게 의존하며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의 청년세대들보다 더 벽찬 경쟁을 뚫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만 비로소 성인으로서의 홀로서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립 지연은 청년의 정서적 독립 지체도 불러오게 된다. 성인임에도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채 미완의 시기를 길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Arnett(2004)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독특성에 주목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인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집단을 성인 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며 별도의 발달 시기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들이 처한 고된 사회 경제적 맥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젊은 20-30대 청년, 그것도 남자 청년들이 극단적 빈곤과 위기 상황인 노숙(homelessness)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젊은 시기의 궁핍은 의례적인 것이기 마련이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보편적 믿음을

깨트리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2015)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의 14.4%, 노숙인 시설 거주 혹은 이용자의 18.2%가 20-30대의 청년들이고 노숙지역 인근의 PC방, 사우나, 만화방 기거 등으로 경계를 넓히면 30%,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고시원에는 무려 49%에 이르는 수를 청년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은 대부분 중고령의 남성들이라는 일반적 인식 속에서 간과되어 온 충격적 현실이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극단적인 빈곤의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것인가. 청년의 시기 자체가 생애 과정상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독립이행의 지체에 실업과 빈곤도 가중되면서 이들이 경제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 된 것이 사실이다(Bell et al., 2006; Kangas and Palme, 2000; OECD, 2014b).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귀속되는 경향이 큰 탓도 있다(Iacovou and Richard, 2001).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사회적 안전망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개인과 가족이 경제적 무능력을 경험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영향이 확인된 바 있다(노혜진, 2012; 변금선, 2013). 청년층 내의 격차도 더 벌어져 저학력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크다(금재호 외, 2007). 더군다나 청년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들의 특성상 위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노숙(hidden homelessness)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Garrett et al., 2008; Ryan and Thompson, 2013; Thompson et al., 2006), 설령 복지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리노숙인의 48%가 50대 이상(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3)이며 중장년이 노숙서비스기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젊은 노숙인이 이들과 경쟁하면서 생존과 노숙 탈출을 위한 서비스를 확보해 나가기란 매우 힘든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노숙인은 다방면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혹독한 사회 경제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그 밑그림 위에 청년노숙인을 올려두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할 때,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젊은 그들이 왜 노숙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매우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년노숙과 관련해서는 국내 연구의 관심과 성과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청년노숙의 모습은 몇몇 신문과 방송에서 간헐적으로 보도되었을 뿐¹⁾ 이들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진 것은 김현경·이옥자(2011)의 청년노

1) 청년실업의 문제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의 문제, 청년의 주거 문제 등의 이슈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청년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고양과 함께 신문기사나 르포형식의 방송을 통해 청년노숙 문제가 더 자주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청년노숙인은 200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영상으로 방영되면서 그 실제 모습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길 위에 버려진 젊은 희망, 청년 노숙자가 늘고 있다'(2008.7.30.) 한편 2012년부터 나온 청년노숙 관련한 신문기사들은 '불행의 늪, 청춘들까지 노숙인 전락'(동아일보, 2012.1.6.), '대학 나온 청년홈리스 수만 명, 美 밤거리 헤맨다'(조선일보, 2012.12.20.), '불행, 취업난, 희망 잃은 청년노숙인 급증'(문화일보, 2012.12.17.), '청춘카툰 리포트, 서울 절망의 섬 이야기'(중앙일보, 2014.7.2.), '청년노숙인 특목 가정 폭력, 학교 따돌림 못 견뎌 거리로'(동아일보, 2014.9.19.) 등이 있다.

숙인의 노숙 경험을 통한 성숙을 다룬 질적 연구와 일본의 청년노숙에게 있어서 관계의 빈곤을 지적한 김영(2013)의 연구가 전부이다.

한편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 청년노숙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 20-30대 젊은 노숙인 100여명의 '넷까페 난민(ネットカフェ難民)에 대한 실태조사(釜ヶ崎支援機構・大阪市立大・2008)'를 실시한 바 있고, 대표적으로 2012, 2013년에도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잡지인 「빅이슈 제팬(Big Issue Japan)」에서 청년노숙에 관한 기획조사 보고서(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0, 2012)를 내면서 청년노숙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시도했다. 이 보고서들은 청년노숙인에 대해 '다수는 취약한 성장배경을 갖고 있으나 대체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적인 젊은이들과 유사하게 독립이행을 시작하였던 사람들이지만 독립 과정에 문제가 생겨 실직과 구직의 반복으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주거상태를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노숙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비정규, 파견, 일용노동의 불안정성, 그리고 낮은 임금, 그로 인한 주거비 부담 능력 약화가 청년노숙을 발생시키는 핵심적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독립이행의 실패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때 필요한 가족과 그 외의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가 결국 이들이 노숙이라는 극단적 상황마저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서구의 경우, 청년노숙 연구는 대체로 25세 이하까지의 연령으로 대상을 한정지으면서 청년노숙인을 성인의 하위 그룹이라기보다는 성인기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후기 청소년기의 노숙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노숙의 진입과정과 양상에 대한 설명 역시 청소년노숙의 그것과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가족 문제로 인해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거나, 가정 밖 양육을 경험하면서 불안정하게 자라던 사람들, 약물문제나 정신질환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이미 10대 때 가출, 즉 노숙을 경험한 젊은이들로 설명된다(Barker, 2012; Koegel, 1995; Martijin and sharpe, 2006; Tyler, 2006; Tyler and Schmitz, 2013; Tyler et al., 2006). 연구 역시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Gomez et al., 2010; Thompson et al., 2012; Tyler and Johnson, 2006) 혹은 위험한 성과 관련된 활동(sexual activities), 불법적 소득활동, 체포(Ferguson et al., 2011a, 2011b, 2012; Tyler, 2008; 2009) 등에 주목하며 대체적으로 젊은 노숙인들의 위험하고도 문제가 많은 노숙 생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희생과 트라우마에 더해진 개인의 비행과 일탈, 집 밖에서의 생활이 노숙의 위험을 증폭시켰다는 청소년의 노숙증폭 모델(risk amplification model) 설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Whitbeck et al., 1999).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청년노숙 문제를 들여다보는 틀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우선 서구 청년노숙 연구로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20-30대 청년노숙인 전체를 포괄하는 설명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8-25세

는 후기 청소년기로, 25-39세는 중고령자들을 포함한 성인노숙인 전체에 묶여 한꺼번에 다루어진다. 그러나 대략 고교 졸업시기를 분기점으로 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엄연히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이 상이하고 수행해야 하는 과업도 다르다. 청소년기는 보호자의 돌봄 체계 내에 있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라면 청년기는 독립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 두 시기에 벌어지는 노숙의 상황 역시 상당히 다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노숙 역시 독립의 과업을 이루어가는 시점의 독특성에 맞추어 분리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²⁾ 또한 서구의 청년노숙 연구들은 노숙 이전의 개인의 문제적 경험과 증상, 노숙 이후의 역기능적 생활이나 독특한 문화에 집중되어 있어 거시적 환경이라는 맥락이 결여되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게다가 서구의 노숙 지원체계는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배제가 중첩된 우리의 상황과는 맥락적으로 상이하다. 한편 일본의 연구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비교적 넓은 청년노숙의 연령범위를 택하면서 이들을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같은 노동의 문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어 우리의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서구와는 반대로 청년노숙인이 가진 개별적 특성과 생활은 매우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고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노숙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기대되는 인적자본, 교육시스템, 결혼 시기와 방법, 노동시장 환경, 문화, 독립의 시기, 학업기간 등 사회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과 청년노숙의 상황에 근거한 청년노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서구의 경우는 희생과 트라우마, 이탈과 가출 등에서 기인된 청년노숙의 개인적 원인론에 근거한 접근만을, 일본의 경우는 실업과 빈곤 등의 구조적 원인을 강조한 접근만을 다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지의 영역에 놓여 있는 국내 청년노숙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가지의 설명을 모두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 중에는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독립 이행 실패의 경로도 있고, 서구 청년노숙에 대한 설명에서처럼 유년시절의 희생과 트라우마적 경험이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을 거쳐 청년노숙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와 일본의 청년노숙 연구의 양 극단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며 한국적 상황에서의 청년노숙 문제의 규명이 요청된다.

특히 본 연구는 20-30대 연령 중 남성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들과는 구분되는 경로, 즉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혹은 정신질환의 경우가 다수이고 노숙 생활에 있어서도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서정화, 2005). 그러나

2) 물론 서구의 경우, 젊은 노숙인들이 성인노숙인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구인회 외, 2012) 성인노숙 연구에서 굳이 젊은 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외국의 경우는 다수의 젊은 노숙인들 사이에 있는 소수의 중고령 노숙인에 대한 연구(Crane, 1999; Crane et al., 2005)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노숙 상황의 거시적 배경이 되는 고용이나 독립의 문제에 있어 남성 노숙인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더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관계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여성보다 더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무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에 고립감과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역시 더욱 크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압박감은 적잖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어 불안정한 시기의 주거나 일의 문제에 있어 더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특성은 노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남성들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여성들에 비해 이들이 경험하는 노숙의 역동은 더욱 특징적이고 극대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들의 노숙 원인을 규명할 것인가, 즉 노숙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청년노숙 연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노숙 진입 혹은 노숙 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노숙의 구조적(structural), 개인적(individual) 원인 요인을 분절적으로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원인 요인들의 범주를 제도, 가족의 원인으로까지 확장해 왔다(Fitzpatrick et al., 2000; Anderson, 2001). 이후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발굴된 원인적 요소들은 개인 생애 과정 전체에서 경험한 복합적인 위험 요인으로서 동시적으로 다루어져 노숙 위험요인(homeless risk factor) 중 노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들로 진행되었다(Koegel et al., 1995; Herman et al., 1994, 1997; Heffron et al., 1997; Shelton et al., 2009). 이 연구들이 발견한 노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노숙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분절적인 개별 요인들의 영향만을 다루거나, 다수의 원인적 요인들 간의 인과성과 맥락의 고려 없이 각각의 요인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다루어 노숙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재의 노숙 상태, 그 현상만을 고려하지 않고 노숙 이전, 노숙 과정, 탈노숙 등 노숙의 맥락과 시간적 개념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숙의 역동(dynamics)과 과정(process)을 고려한 노숙 경로(homeless pathway) 연구가 수행되었다(Bulter and Weatherly, 1995; Clapham, 2003; Fitzpatrick, 1999; Hyde, 2005; Mackenzie and Chamberlain, 2003; Mallet et al., 2005; Tyler, 2006). 노숙 경로 연구는 노숙의 여러 진입 경로를 밝혀 노숙 경로의 다양성을 제시해 주고 진입 경로에 따른 노숙 양상, 즉 노숙 이후의 주거, 일, 서비스 이용의 정도, 사회적 관계 등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이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노숙을 설명하

는 데 부합한다.

특히 청년노숙과 관련하여 노숙 경로연구는 노숙 경로의 전형적 유형에 관해 분석하면서 생애 과정 상 노숙 경험의 시기, 다시 말해 노숙에 진입한 시점이나 연령에 따라 노숙 경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Mackenzie and Chamberlain, 2003; Johnson, 2006; Chamberlain and Johnson, 2011). 호주를 배경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경로를 제시하면서 특히 청소년노숙에서 성인노숙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성인노숙을 성인기 자체만 보지 않고 청소년기의 노숙과 연결 짓도록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젊은 시기에 노숙인이 되면 거리노숙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노숙기간이 길어지고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탈노숙 역시 더 어렵게 됨을 지적하면서 노숙의 진입 시기에 따른 노숙 이후 생활의 차이가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Chamberlain and Johnson, 2011; Johnson, 2006). 이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청년노숙의 경로를 분석한 연구들도 청년기가 아닌 그 이전 시기의 노숙 진입의 경험을 청년노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오랜 시점의 여러 생애 사건들을 다루지만 결국 지나치게 전형적 패턴의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노숙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원인을 보여주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노숙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연구들도 과거 노숙의 이분법적 원인론에 입각한 노숙원인의 규명을 시작으로 노숙인의 생애 과정에서의 실적과 빈곤에 따른 노숙진입을 설명하여 왔다(정원오·김수현, 1999; 한국도시연구소, 1998). 최근의 몇몇의 연구(구인화·김소영, 2012; 신명호, 2011)가 개인의 노숙 경험에 입각한 노숙 진입의 과정적 설명을 수행한 바 있으나 노숙인의 구체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나 경험된 위험요인의 차이, 혹은 노숙진입의 시기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노숙의 경로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청년노숙인의 노숙 경로를 어떤 방법으로 규명할지를 결정하면서 그들의 노숙 진입에 대한 하위 경로를 가정해 보는 작업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청년노숙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이들이 기존의 노숙인들, 즉 노숙인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장년노숙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노숙인들의 생애 과정상에서의 노숙 특성이나 노숙 진입 시기 차이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청년과 중장년 모두를 다루면서 노숙인들의 욕구나 근로여부, 노숙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들을 구분해 와 노숙인 그룹을 연령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하지는 않았었다. 또한 이들 그룹 안에서도 노숙 진입 시점에 따른 차이를 본

연구는 없었다. 때문에 청년노숙 문제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령 구분을 통한 중장년노숙인의 특성과 노숙 진입 경로, 그리고 노숙 이후의 생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년노숙인 역시 노숙 진입의 시점에 따른 하위 그룹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생애 과정 상 어느 시점에서 노숙에 진입했는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노숙인의 원인과 경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노숙 문제가 20여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중장년노숙인들의 노숙 진입 과정이 과거 노숙이 갑자기 등장했던 IMF 경제위기 직후의 시점과 어떤 면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국내외적으로 노숙 연구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를 하나의 노숙 생애과정으로 두고 이러한 생애과정 간 노숙의 경험과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복지행정 체계와도 연관된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노숙을 대표하는 가출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며, 노숙인 복지와 관련된 지원은 18세 이상인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 명의 생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숙의 과정을 연결 짓지 못하고 분절된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가출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체계의 보호 하에 있던 청소년노숙인이 20-30대 청년기를 거치면서 경험하는 노숙, 혹은 주거불안정에 대한 논의나 성인노숙인의 청소년기부터 경험한 노숙의 영향, 청년에서 중장년기로 이어지는 노숙경험 등 생애시기를 넘나드는 노숙의 영향은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년노숙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에 시동을 걸고, 아울러 청년들이 유년시절부터 경험한 노숙 위험요인을 통해 노숙의 진입 과정을 도출하고 노숙 이후의 생활 양상까지를 검토함으로써 청년노숙의 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청년노숙의 노숙진입 과정으로 설명되던 두 가지의 모델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이 두 모델의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과정과 노숙의 양상을 비교하여 청년노숙의 하위 경로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청년노숙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으로 장년노숙인의 특성, 노숙 위험요인과 이것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노숙 진입 경로를 확인하여 이를 청년노숙인과 비교하여 보겠다. 장년노숙의 경우에도 노숙 진입 시점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노숙 경험이 있는 장년노숙인과 그렇지 않은 장년노숙인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숨겨져 있던 그룹인 청년노숙에 대한 이해에 더 접근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청년노숙인의 노숙 탈출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필요성과 선행연구의 발견과 한계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노숙의 이론적 두 경로에 대해 진입 과정과 노숙 이후 생활의 비교를 시도하고 청년노숙인이 일반적인 노숙인을 대표하는 중장년노숙인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 연구문제 1. 청소년노숙을 경험한 청년노숙과 20-30대에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은 어떠한 노숙 진입과정과 노숙 이후 생활에서의 차이를 보이는가?

- ▶ 연구문제 2. 청년노숙과 장년노숙의 노숙 위험요인, 노숙 진입 과정과 노숙 이후 생활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세부적으로 청년노숙의 두 하위그룹, 그리고 장년노숙그룹은 노숙의 진입 시점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의 노숙 위험요인의 구성, 노숙진입 경로, 독립 이행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노숙 진입 이후 노숙 생활, 특히 노숙 이후의 거주형태, 일, 복지 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년노숙의 정의와 규모

청년노숙(homeless young adults)의 진입 경로와 노숙생활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인 청년노숙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청년노숙은 생애과정 중 하나의 단계인 '청년'과 문제의 상태인 '노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각각의 정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청년에 대한 이해

1) 청년의 정의

청년을 생애발달 과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청년은 사춘기를 시작하는 12~13세부터 24~25세까지이며, 일반적으로 영어의 'adolescent'를 우리말의 '청년'으로 해석한다(정옥분, 2000, 2004). 'adolescent'는 생물학적 관점의 발달 단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상에서의 호르몬과 성장 변화 등이 일어나는 시기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 경우 청년기가 약 10여년 정도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기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매우 크므로 이 시기를 세 단계로 세분화하여 12-14세의 중학생 시기를 청년 초기, 15-18세의 고교 시기를 청년 중기, 18세에서 20대 초반을 청년 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통 청년 초기와 중기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청년 후기를 청년이라고 부른다(정옥분, 2004:22). 한편 'youth'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삶의 국면으로서 청년 혹은 청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상에서의 구별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집단을 말할 때 사용한다. 즉,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를 구별된 생애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자율성과 책임성, 사회적 권리와 참여 등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김선애, 2014:12).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인 청년을 구분하는 연령은 사회적 맥락마다 상이할 수 있다.³⁾

3) 한편 법이나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연령대의 젊은이들을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혼란스럽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상에서 말하는 아동과 관련한 자립지원시설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시설 퇴소 아동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5세 미만인 자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연령대가 아동으로 포함된다. 이는 아동보호시설 퇴소가 청년노숙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학계에서는 영어의 adolescent, youth 모두를 청년이 아닌 청소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김

유럽의 경우 공식적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즉, youth)은 15-24세를 말하며(European Commission, 2001), 미국 등의 비유럽권의 경우도 유사한 연령구분을 따른다. 한국의 경우도 청년실업이나 빈곤과 관련하여 고용, 노동의 측면에서는 청년을 15-24세 혹은 15-29세로 나눈다.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관련 분야에서는 ‘청년’으로 15-29세의 연령대를 지정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최영섭, 2003; 이의규 외, 2008).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고용과 관련한 청년층의 연령 상한은 좀 더 높아 30대를 포함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청년을 15-34세(만 나이)로 정해 30대 초반까지를 포함하고 니트(NEET) 추계도 15-34세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다(이의규 외, 2008:12). 한국에서도 청년 니트(NEET) 연구를 수행하면서 15-34세를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남재량, 2011). 우리의 경우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채용과 관련하여 그 연령을 현재의 만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20-30대를 전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이종식, 2013:198, 김선애, 2014:13).

이러한 다양한 연령 구분을 고려할 때 청년은 대개 30대 중반까지로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청년들은 모두 일반적인 청년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청년노숙의 연령은 이보다 높게 잡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는 청년노숙인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결혼, 취직 등의 완성시기가 더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청년노숙인 연구에서도 청년노숙인의 연령을 39세까지로 보고 있고(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0; 2012), 일본의 청년노숙 지원 현장에서는 청년노숙을 30대 후반까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김영,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을 주로 20-30대의 젊은 성인(young adult)로 인식하고, 19세부터 39세까지 다소 넓은 연령 범위를 채택하여 청년으로 규정하겠다. 연령 하한선이 19세인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을 중고교 청소년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통제를 받는 10대가 아닌 규범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연령대의 젊은 성인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청년노숙이나 젊은 노숙인에 관한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14세부터 18세까지의 10대 노숙인들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국에서 고교졸업은 사회적으로 성인기로의 진입의 시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19세를 하한선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규범적으로 원가족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시기이고, 스스로의 노동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10대 청소년과는 구분된다. 한편 연령 상한선으로 설정한 39세는 고용이나 결

성이 외, 2004),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24세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선을 더 낮추어 규정하고 있고, 가출청소년과 관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역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구분을 따르고 있다.

혼을 통한 독립의 일반적 기준인 34세 보다 높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30대 초반과 후반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성격의 이질적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노숙인 통계에서 청년을 34세로 끊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실제로 일반인보다 독립의 이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노숙인을 감안할 때, 상한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2)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transition) 지체

그렇다면 청년기가 다른 생애주기, 즉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청년기 이후의 성인기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연령으로 보면 청년은 성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대 청년들은 독립에 있어서는 ‘연장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되기 이전, 즉 대학진학률이 33.2%에 불과했던 1990년대 이전의 20대는 다수가 노동을 통해 사회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거나 대학에 다닌다 하더라도 엘리트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송호근 외, 2010:8).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잡한 사회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왔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교육연수도 증가하면서 공부에서 일로의 전환도 점차 늦어졌다. 대부분의 청년 관련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21세기의 청년의 이행이 이전 세대보다도 더 연장(protracted)되었고, 더 복잡(complex)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hazardous)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Fahmy, 2006:5).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주거비용이 높은 경우, 경제적, 주거적 독립을 의미하는 성년기로의 이행 문제가 가중된다(Ermisch, 1999; Fahmy, 2006). Coles(2005)는 청년의 이행이 길어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 청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더 오랜 기간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이행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 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대는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과 자아정체성 및 역할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고 고민의 시기가 길어지는데 후기 산업사회의 청년은 이런 면에서 자아정체성의 혼란이나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재구성되어 이들은 기존의 청소년의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은정, 2014). 성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기와 다르지 않게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Arnett(2004)는 이러한 20대 청년의 시기를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인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구분하여 명명하고 있다.⁴⁾ 성인모색기는 성인으로의 이행의

4) 정수남 외(2012:37-38)는 Arnett의 성인모색기를 발현 성인기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이 시기가 대개 18-25세의 청년

완성을 유예하고, 말 그대로 성인기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20대에게 부여되었던 기존의 성인에 대한 역할과 기대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 성인기 이행의 지체 현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발달 단계를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성인모색기는 세부적으로 다섯 단계, 즉 자아정체성 탐색의 시기, 불안정한 시기, 자기중심성의 시기, 중간에 낀 느낌이 드는 시기, 가능성의 시기로 규정된다(Arnett, 2014).

아무리 이 시기가 성인을 ‘모색’하는 시기로 구별된 단계의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들이 성인의 범주에 속하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핵심 과업이 독립(independence)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청년기는 부모나 보호자의 통제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이행(transition)해야 한다. 이 시기는 생애의 전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이면서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을 실현해가는 관문인 것이다. 청년기의 독립을 Coles(2005:8)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이행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일제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즉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둘째, 원가족으로부터 새로운 파트너 혹은 새로운 가족으로의 이행, 즉 가정의 이행(the domestic transition), 셋째, 부모와 함께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주거로의 이행, 즉 주거 이행(the housing transi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해 보았을 때 현 시대의 청년에게 있어서 독립 이행의 지체와 과업 달성의 균열 현상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김은정(2014)은 앞서 설명한 Arnett의 ‘성인모색기’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20대 20명의 청년 인터뷰를 통해 이행 과정(원 가족과의 경제적, 정서적, 주거적 분리과 의존, 결혼과 출산의 지연, 일과 진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상당수의 청년들이 정서적, 경제적, 주거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장된 학업 수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없는 형편에 기인하며 부모 역시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는 20대에 결혼으로 독립한 사례가 없었고, 여전히 부모의 통제를 인식하며 진로 면에서도 부모로부터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이나 권유를 받고, 그에 대한 준비 역시 부모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독립 지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의 이행 지연은 모든 청년에게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부모에 의존할 수 있다면 이들은 더 많은 준비를 이룰 때까지 독립을 미룰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는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김영·황정미(2013)는 2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독립 이행 경험을 노동을 통해 어떻게 인식하여 가는가를 고찰한 연구에서 청년들의 경험을 취업과 교육/훈련의 사이를 오가는

기를 고려하여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데, Arnett의 논의가 청년기가 가지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성인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이 논의는 18세 이후 독립을 지향하는 미국의 맥락에 근거하고 있어 한국의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요요(yo-yo) 이행(Biggart and Walther, 2006; Bois-Reymond and Blasco, 2003; 김영·황정미, 2013 재인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청년들의 이행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조한 것은 가족 자원과 젠더, 거주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이러한 독립의 이행이 파편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뚜렷한 장기 계획이나 진로의 계획 없이 단선적이고 반복적인 생계형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배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 정신건강의 위기 등 중첩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처한 상황 하에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부족한 자원이나 사회적 제도 간의 모순에 직면하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DIY 일대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민우·이나영(2011)의 연구 역시 주거의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신는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의 ‘하위 주거트랙’에서 살아본, 혹은 살고 있는, 미혼 20-30대의 심층면접을 통해 ‘경제적 조건과 주거 상태, 가족의 의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경합적으로 구축되는 독립의 의미(2011:109)’를 밝히고 청년들이 가족 제도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과 충돌 혹은 협상하면서 어떻게 독립의 의미를 재구성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시기를 교육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 진입, 결혼 적령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가족적 관리와 기획이 오히려 강화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가정의 계급에 따른 계급화 된 가족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은 이들을 가족 안으로 포섭하고 부분적 독립을 보장하지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해 줄 수 없는 빈곤층의 가족은 청년 세대를 가족 제도로부터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주거트랙’으로 진입한 청년들은 원가정에서 벗어나 부모의 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탈출로 상징되는 공간적 독립을 시행하는데, 이들은 더부살이나 고시원 등의 열악한 공간을 전전하며 힘겹게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이러한 일반적인 청년의 독립 이행의 지연 현상 속에서 하위 계층 청년들, 특히 노숙 청년들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Avramov(1998)는 유럽 각국에서의 젊은 노숙인의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젊은 청년들 중 취약한 상태의 젊은 이들이 일찍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할 때, 혹은 양육 시설에서 나오게 될 때 독립적인 장소(accommodation)를 유지하거나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의 이행(transition)이 흔들리거나 방해받게 되어 청년 노숙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이 적절한 주거의 이행을 이루지 못하면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일을 찾는 것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이 결국 노숙으로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년노숙인들이 빈곤한 청년들일 경우를 감안한다면 빈곤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수남 외(2012)는 20대 25명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빈곤

청년들의 자아정체성을 연구하였다. 이들 빈곤 청년들은 다수가 원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부모와 거리두기 혹은 무관심으로 대응해 왔다. 독립 역시 독립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도피 혹은 방황, 가출 등이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 배경의 빈곤청년들은 비교적 이른 성인기를 맞고 일탈 등으로 인해 ‘부정적 성인화’ 혹은 이른 시기에 성인의 역할을 강요받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도 학생이었으나 방치된 비(非) 학생이었거나 반(半) 학생이었는데, 부모의 교육적 관여도 역시나 부족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시기에 이르기까지 생계형 노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고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대학에 진학하였어도 보통의 친구들처럼 ‘스펙 쌓기’ 등은 요원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빈곤 청년의 생애 경험이 ‘성인기 이행의 압축적 궤적’ 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청년노숙의 정의

1) 외국의 노숙 정의와 숨어있는 노숙(hidden homelessness)

청년에 대한 연령 정의의 복잡함에 못지않게 노숙에 대한 정의 역시 매우 다양하다. 어떠한 노숙의 상태에 있는 청년을 청년노숙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FEANTSA⁵⁾에서 개발한 유럽의 노숙과 주거배제 유형화(European Typology of Homelessness and Housing Exclusion, ETHOS)의 네 단계로 노숙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을 넘어서서 노숙 연구에 있어서 강건한 기준이 되고 있다(Busch-Geertsema, 2010:22). 첫 번째 단계인 거리노숙(roofless)은 ‘문자 그대로의 노숙’으로 밖에서 혹은 노상에서 자는 사람들, 그리고 야간 응급 쉼터 등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말한다. 두 번째는 하우스리스(houseless)로 불리는 쉼터를 포함하는 시설 생활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숙인 시설, 여성쉼터, 이민자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감옥이나 병원 등의 시설에서 나왔으나 적절한 주거를 갖지 못해 노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불안정(insecure) 주거에 사는 사람들로 친구나 친척집에 얹혀살거나, 차, 버려진 건물 등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곳에 사는 사람, 퇴거의 위험에 처한 사람, 가정폭력 등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마지

5) FEANTSA는 EU(European Union)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 노숙 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유럽에는 공식적으로 노숙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2010년 EU Council of the Regions는 최근 유럽 각국에 ETHOS의 노숙 유형화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Johes and Pleace, 2010:11).

막 네 번째 유형은 부적절한(inadequate) 주거에 사는 사람들이다. 임시로 혹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건축물에서 사는 경우, 극도로 과밀한 주거지에 사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Jones and Pleace, 2010; 11-12). ETHOS의 노숙 정의를 우리나라의 청년노숙 범위를 규정하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표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청년, 응급숙터를 이용하는 청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숙과 관련된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세 번째에는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 얹혀사는 청년, 넷째는 PC방, 사우나, 패스트푸드점, 일본의 넷카페 등 주거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밤을 보내는 청년, 과밀하거나 열악한 주거지인 고시원 등에서 사는 청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

<표 2-1> ETHOS 노숙정의의 내용과 구체적 거주지

단계	명칭	내용	구체적 거주지
1단계	거리노숙(roofless)	노상생활자, 야간응급숙터이용자	공원, 역사, 거리, 야간응급숙터
2단계	비주거노숙(houseless)	노숙인시설, 병원 등 거주자로 자신만의 거처가 없는 사람	노숙인 시설, 병원, 교도소
3단계	불안전주거(insecure)	친구나 친척집에 얹혀살거나, 차, 버려진 건물 등에 사는 사람, 퇴거의 위협에 처한 사람, 가정폭력 등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친구나 친척집 얹혀살기, 버려진 건물, 퇴거 위기자
4단계	부적절주거(inadequate)	임시구조물 혹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건축물에서 사는 경우, 극도로 과밀한 주거지에 사는 경우, 부적합한(unfit) 거주지 생활 등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생활자, PC방, 사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다중이용시설 생활자

자료: Johns and Pleace(2010:11)에 국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 거주지를 추가.

문제는 이 네 단계의 노숙 중 어느 지점까지를 청년노숙의 노숙 범위로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다소 협소한 개념을 받아들여 거리에서 보이는 노숙인들만을 노숙으로 할 것인지, 혹은 노숙인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1, 2단계)까지를 청년노숙인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가 아닌 곳에서 살거나, 집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시설이 열악하거나 임시로 얹혀사는 경우까지(3, 4단계)로 청년 노숙을 포함할 것인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거리노숙과 시설과 서비스 이용 노숙인만으로 청년노숙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 이를 회피하는 상당수의 청년 노숙인들의 존재를 누락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Meinema, 2010).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숨어있는 노숙(hidden homelessness)’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그간 주된 정책 대상이었던 법적 노숙인 이외에, 지난 몇 년간 새

로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거리노숙인과 단신노숙인(single homeless)과 더불어 소위 ‘숨어있는 노숙(hidden homelessness)’을 새로이 주목해야 할 노숙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지방 이양(devolution) 이후, 노숙인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2012 노숙 모니터(The homelessness monitor: Scotland 2012)」⁶⁾에서는 숨어있는 노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숨어있는 노숙’은 노숙인으로 여겨지지만 거리에서 혹은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노숙인이다. 전통적인 예로, 건물의 무단점유자, 심하게 과밀한 거주상황, 친구나 친척집을 오가면서 얹혀사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쓴다든지 숨겨진 장소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 등을 말하고 있다 (Fitzpatrick et al., 2012:9).

‘숨어있는 노숙’을 좀 더 명확히 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첫째, 협의의 노숙인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포착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거리노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는 곳이 아닌 곳에서 거리노숙을 하고, 노숙인 지원 기관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지 않다면 이는 곧 숨어있는 노숙에 해당된다(Webb, 1994). 둘째로 협의의 노숙을 벗어나는 경우, 즉 광의의 노숙인이면서 포착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친구나 친척이 그들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 집에 얹혀살며 소파 등에서 불편한 쪽잠을 자는 ‘소파 서핑(sofa surfing)’을 하는 경우(Quilgars et al., 2008), 지인에게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이들은 그 때부터 곧장 노숙 쉼터나 드림인 센터, 노숙 서비스로 유입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전혀 노숙인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숨어있는 노숙인이다. 이들의 경우, 노숙과 비노숙의 간격은 생각보다 매우 가깝다.

청년들의 경우, 자신의 어려운 노숙 생활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고, 외관상 노숙인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노숙인 지원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리노숙을 하기보다 젊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주거를 감내하며 옮겨 다니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飯島裕子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1). 우리의 청년노숙의 경우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노숙의 특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노숙의 경우는 감추어진 노숙 그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거 위기에 있는 청년들은 PC방, 만화방, 사우나, 넷카페, 패스트푸드점 등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숙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ETHOS의 네 단계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노숙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의 한계 때문에

6) 물론 영국에서의 숨어있는 노숙 개념은 실제로 찾아 낼 수 없는 장소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숫자를 추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 외에 얹혀사는 가구나 개인의 수는 실제로는 여러 가구 혹은 개인이지만 하나의 가구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다수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조사 시점 당시에 불안전 주거나 부적절 주거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된 청년노숙인들은 실질적으로는 거리나 노숙인 시설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광의의 노숙 개념 채택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현재 협의의 노숙 개념 상의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그간의 노숙 형태를 확인하여 보았을 때, 광의의 노숙 개념에 준하는 노숙 상황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법적 노숙 정의와 청년노숙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법」)제 2조에서는 노숙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법조문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법적 노숙인의 범주는 상당히 넓은 것처럼 보인다. 법상으로는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협의의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광의의 노숙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등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구체적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의 공식 노숙인 수 집계 항목 구성을 통해 광의의 법적 노숙인 정의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정짓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2-2〉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약 12,500여 명의 공식노숙인은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그리고 쪽방 주민으로 구분된다. 이는 「노숙인 법」 제2조 1항의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을 거리노숙인으로, 2항의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 등 노숙인 생활시설로, 3항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은 쪽방으로 정책적 정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표 2-2> 한국의 노숙인 규모 (전국)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거리노숙인	1,077	1,121	1,081	1,197	1,138
시설노숙인	12,075	12,024	11,310	10,615	10,310
일시보호시설	-	-	-	884	899
자활시설	3,117	3,282	2,741	2,095	1,949
재활·요양시설	8,958	8,742	8,569	8,520	8,361
쪽방 주민	6,232	5,991	5,891	5,992	6,147

자료 : 보건복지부(2015)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나 정책적 범위에서 배제되는 많은 노숙인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 2-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제2조 1항의 (가)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중에는 거리에서 사는 거리노숙인 외에도 친구집이나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사우나, PC 방, 만화방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의 경우 역시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자활, 재활, 요양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일시보호시설(응급쉼터)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노숙인 법」 제4장 제16조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이러한 시설 이외에도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노숙인들이 급식시설이나 진료시설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이 숨어있는 노숙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쪽방 거주자만을 노숙인으로 포함하였으나 쪽방에 준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은 노숙인의 임시거처로 사실상 그 기능이 쪽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쪽방 보다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이 주거로서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은 더욱 낮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이 더부살이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급식이나 의료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노숙인, 특히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과 같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숙인들 중 다수가 20-30대의 젊은 노숙인이라는 점이다. 이후에 제시될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중 다수가 청년들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30대의 청년노숙인들은 공식적인 통계의 노숙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일부만을 포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숨겨진 청년노숙까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 노숙의 정의를 넓게 잡고자 한다. 즉, 거리노숙, 쉼터나 일시보호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더부살이 중이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한 경험을 모두 노숙으로 규정한다. 또한 고

시원인 여인숙 등에서 생활 하면서 동시에 노숙관련 서비스(가령, 무료급식, 세탁, 이미 용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이용경험이 있다면 노숙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2-3〉 법적 노숙인 정의와 정책 배제 노숙인

	법적 노숙인 정의	정책 포섭 노숙인	정책 배제 노숙인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거리 노숙인	더부살이 노숙인 다중이용시설노숙인 ⁷⁾ (PC방, 만화방, 다방 등)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 노숙인(숙박시설)	급식, 의료서비스 이용 노숙인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 노숙인	고시원, 여인숙 생활 노숙인

또 한 가지 법적 노숙인 정의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은 노숙인 정의에 있어서의 연령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법」의 노숙인 정의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노숙인을 거주 장소를 통해 정의함과 동시에 연령을 통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노숙인법」 제2조 노숙인 정의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18세 이상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의 경우, 사실상 노숙 상태이지만 이들은 노숙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 대상에 대한 연령 구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9-18세의 청소년과 시설보호 이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24세까지의 젊은 성인들은 모두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정책의 분야로 분류되어 ‘가출청소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⁸⁾. 따라서 정책대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숙인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 노숙인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하에 두고 있다. 즉, 집이 없는 상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은 가출청소년으로, 18세 이상은 노숙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전달체계 속에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리가 가출청소년과 성인노숙인,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노숙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호체계의 분리 사이에서 완전한 청소년도, 완전한 성인도 아닌 성인으로서의 이행기에 있는 20-30대 젊은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7) 남기철(2014)은 다중이용시설숙박자가 절반이 거리노숙 경험을 갖고 있고 거리노숙인과 중첩되는 주거이력을 갖고 있는 반면, 심리사회적 기능수행과 인적자본, 근로시간 소득 등이 양호하지만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으로 설명하며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가)의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8) 김지연·정소연(2014:17)은 이들을 ‘가출청소년’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노숙과 관련한 연령 구분에서 20-30대의 청년노숙을 별도로 구분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한 노숙 하위그룹은 크게 아동 노숙(homeless children), 청소년 노숙(homeless youth, young homeless), 성인 노숙(homeless adults)으로 나누져 왔다. 선진국의 경우, 아동 노숙은 보통 가족노숙의 구성원인 아동의 노숙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연령 특성으로서 아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족 노숙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아동노숙을 제외 하면 청소년 노숙과 성인노숙이 관심을 받는 주요 하위그룹이었다. 청소년 노숙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연령 구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년노숙을 15~24, 25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인노숙(homeless adults)의 경우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20-30대의 청년노숙인만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노숙의 범주는 포괄하는 연령대가 매우 넓고, 매우 이질적인 특성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세분화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의 노숙인의 고령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노숙 중 50대 이상을 노령 노숙(later life homelessness)으로 구분하고, 노년의 시기에 노숙에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노숙원인과 노숙 경로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Crane and Warnes, 2001; Crane et al, 2005; Rota-Bartelink and Lipmann, 2007).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젊은 성인(homeless young adults)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18-25세 가량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30대 전체 청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서구에서는 상당수의 청년노숙인 그룹, 즉 20대 초반까지는 청소년노숙에서 다루고 있고, 성인노숙의 그룹에 해당되는 노숙인들의 다수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성인노숙인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청년노숙의 규모

청년노숙의 규모 혹은 노숙인 중 청년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표 2-4>의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협의의 청년노숙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 중 20대가 3.7%, 30대가 10.7%로 약 14.4% 정도가 청년노숙인임을 알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약 18.2%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노숙인의 대다수는 50대의 중고령자라는 통념에 의미 있는 환기를 가져다준다.

노숙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여 주로 청년 노숙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시원,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는 20-30대의 청년들은 더 많이 포착된다.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청년은 30%에 이르고, 노숙인 밀집 지역의 고시원에 기거하는 사람들 중의 거의 절반은 20-30대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노숙’의 형태를 띤 청년노숙인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청년노숙의 규모는 노숙 범주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거리와 노숙인 시설에서 포착되는 청년 노숙인의 규모는 작지만 광의의 노숙 범주에 상당히 많은 청년 노숙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와 비교해서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또한 <표 2-5>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서울시내의 응급잠자리와 노숙인 쉼터에서도 청년노숙인은 약 13-14%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전국 주거취약계층 거처 유형별 연령

(단위: %)

	청년노숙인비율 (20-30대)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거리	14.4	-	3.7	10.7	39.0	31.7	11.7	3.3
노숙인 시설	18.2	0.1	2.4	15.8	28.0	34.1	16.1	3.4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30.0	-	5.0	25.0	42.0	22.5	4.5	1.0
고시원	49.0	-	29.5	19.5	18.8	21.8	6.3	4.3
시설퇴소예정자	36.5	25.2	17.7	18.8	21.0	13.3	3.3	0.7
쪽방	4.7	-	0.2	4.5	18.2	36.3	22.7	18.2
여관·여인숙	10.1	-	1.3	8.5	28.8	29.3	23.1	9.0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2012:12)를 수정

한편 청년노숙인 추이에 관해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으나 제한적으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노숙인의 증감을 추적해 볼 수 있다. <표 2-6>에 따르면 2009, 2010, 2013년의 경우 거리노숙인 중 약 11-13%가 청

년노숙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국조사의 거리에 있는 청년노숙인의 비중이 조금 못 미치지만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노숙인은 50대 전후의 중고령 실업자로 여겨지던 노숙인의 전형적 모습만 강조되어 온 나머지 젊은 노숙인의 존재가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서울시내 쉼터·응급잠자리 이용 연령분포

		계	20-3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14	빈도	3828		103	99	425	1098	1296	623	184
	비율(%)	100	13.7	2.7	2.6	11.1	28.7	33.9	16.3	4.8
2013	빈도	3898		109	111	414	1088	1360	607	206
	비율(%)	100	13.4	2.8	2.8	10.6	27.9	34.9	15.6	5.3
2012	빈도	4097		128	126	485	1165	1418	575	200
	비율(%)	100	13.9	3.1	3.1	11.8	28.4	34.6	14.0	4.9

자료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2014)

참고 :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시내 26개 노숙인쉼터와 5개 응급잠자리시설(drop-in center)의 인트라넷에서 추출한 이용자 데이터임. 매년 서울시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사업보고서에서 인트라넷 통계를 발표함.

<표 2-6>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인 연령분포

(단위:%)

	청년노숙인 비율 (20-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13	11.3	2.8	8.5	29.7	37.1	9.5	2.3
2012	21.9	4.8	17.1	23.8	43.8	8.6	1.9
2010	11.3	1.4	9.9	34.7	34.7	11.7	3.8
2009	13.1	2.4	10.7	29.3	40.0	14.1	3.4
2008	17.4	4.5	12.9	35.1	31.2	11.4	5.0
2006	14.0	1.0	13.0	39.4	31.6	12.4	2.6

자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2012, 2013)

주: 동절기 조사이며 사례수는 150-200명이다. 거리노숙인 설문조사는 매년 동절기 서울역주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임.

한편 일본의 경우 역시 청년노숙인의 존재는 노숙의 장소 혹은 상태에 따라 매우 극명하게 달라진다. 일본은 「홈리스의 자립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노숙인은 거리노숙인만을 지칭하여 매우 좁은 의미의 노숙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리노숙인에 관한 전수조사인 2007, 2012년도 「홈리스 전국조사」에 따르면, 34세 이하의 청년 노숙인은 1.5% 정도로 거리에서 청년노숙인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협소한 노숙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다수의 노숙인들에 대한 고려로 실시한 2010년 「광의의 홈리스 가시화와 지원에 관한 조사(広義ホームレスの可視化と支援策に関する調査)」(ホームレス支援全国ネットワーク, 2011)⁹⁾는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노숙 상태, 혹은 노숙의 위기 상태에서 NPO의 지원을 받아 이들이 운영하는 민간 노숙인 시설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조사」에서 청년노숙인의 비율은 4.7%로 거리노숙인 비율보다 높다. 또한 민간 NPO의 지원을 통해 노숙상태에 있다가 일반 주거로 이행한 경우를 말하는 「이행자 조사」에서는 8.6%,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생활보호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은 청년노숙인은 1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인의 범주를 넓힐수록 청년노숙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청년노숙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맥락은 노숙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라는 노숙의 정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003년 홈리스 자립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법에 명시된 대로 홈리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법 시행 이후 5년의 성과를 타진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 거리노숙인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성과를 확인한 반면, 거리노숙이 아니기 때문에 노숙인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리, 노숙인 시설, 주거시설도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장소는 넷카페(net cafe)로,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개념의 영업장소에서 기거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리노숙 직전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07년 이른바 ‘넷카페 난민’에 대해 「주거상실 불안정취로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住居喪失不安定就労者等の実態に関する調査)」가 수행되었다. 이 조사 결과 도쿄와 오사카의 넷카페에서 기거하는 사람 1,177명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6.4%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 사회의 청년노숙의 심각성에 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노숙인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숙 상태에 있는 다수, 특히 청년들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숙인 특성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ホームレス支援全国ネットワーク(2011)는 노숙인의 저연령화, 저학력화, 장애인 노숙인의 증가, 노동의 불안정성 증가를 특징으로

9)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홈리스자립지원법의 기간만료 시점인 2012년을 앞두고, 훨씬 다양해진 노숙의 다양한 국면과 노숙에 근접한 극빈층, 즉 넓은 의미의 주거불안정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0년 「광의의 홈리스 가시화와 지원에 관한 조사(広義ホームレスの可視化と支援策に関する調査)」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사는 독특하게 세 개의 하위조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전국 100여개의 다양한 민간(혹은 NPO) 홈리스지원기관을 통해 어떤 형태이든 주거를 얻어 탈노숙하여 주거이행(transition)을 한 사람 3,858명에 대한 조사(입주자조사)다. 두 번째 조사는 2010년 10월 현재, 홈리스 지원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거장소, 혹은 중간시설에 입주에 있는 사람들의 조사(이행자조사)다. 세 번째 조사는 전국의 복지사무소를 조사한 것으로 2011년 2월, 1개월 간 전국 복지사무소에서 노숙인이었던 사람에게 생활보호개시 결정을 내린 1,889명에 대한 전수조사(사회복지사무소조사)였다. 이 세 가지 조사를 통해 노숙인의 주거 이행과 지원, 그리고 매우 다양해진 노숙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의 연령 특성의 변화를 볼 때, 세 개의 하위 조사의 평균연령은 각각 55.4세, 58.6세, 53.3세로 2007년경의 조사¹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4세 정도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연령대의 변화를 보면 55~65세의 연령대가 약 33%, 38.8%,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전 조사에 비해 이 연령대의 비중은 10% 이상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는 65~75세(20%)였다. 한편 45세 미만의 연령을 보면 세 개의 조사에서 21.7%, 13.9%, 28.1%로 과거 조사(11~1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노숙인의 노령화와 더불어 젊은 노숙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일본 노숙인 연령분포

(단위:%)

	34세이하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2007 홈리스 전국조사(거리노숙)	1.5	7.0	22.4	47.8	20.8
2012 홈리스 전국조사(거리노숙)	1.2	7.6	17.4	43.5	28.9
2010 입주자 조사*(탈노숙)	4.7	9.2	15.9	38.8	31.6
2008-2010 이행자 조사*(노숙인시설)	8.6	13.1	19.2	33.0	26.1
2011 사회복지사사무소조사*(탈노숙)	10.1	18.0	20.3	31.6	20.0
2007 넷카페 난민조사** ¹¹⁾	46.4	9.0	12.8	23.1	8.7

자료 : 厚生労働省 (2007, 2012), *는 ホームレス支援全国ネットワーク(2011), **는 厚生労働省 (2008)

최근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 노숙인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Fitzpatrick and Stephanie, 2014). 유럽의 경우, 개별국가에서 청년노숙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으나, 유럽 전체에서의 청년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청년노숙의 규모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청년에 대한 연령규정과 노숙의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각 국가마다 청년에 대한 규정, 노숙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년노숙에 대한 규모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개별국가에서도 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Avramov, 1998). 이 말은 곧 그만큼 이들의 존재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로 해

10) 보고서에서 비교하고 있는 2007년의 조사는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한 「홈리스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ホームレスの実態に関する全国調査)」와 같은 해 홈리스지원 민간기관에서 연합으로 실시한 「또 하나의 전국 홈리스조사(もう一つの全国ホームレス調査)」이다.
 11) 厚生労働省 (2008:14)의 넷카페 이용자 조사 중 상시적으로 넷카페에 거주하여 주거상실자로 판단된 사람 1,177명의 연령구성임. 34세 이하의 연령 세부 구성은 19세 이하 9.8%, 20~24세 13.2%, 25~29세 13.3%, 30~34세 15.6%로 조사됨.

석된다. 따라서 청년 노숙인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과소 측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EU국가의 노숙 문제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인 FEANTSA에서는 Avramov(1998)의 연구 이후 이렇다 할 연구가 없었으나 2010년 Quilgars(2010)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서 고조되고 있고 청년노숙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FEANTSA에서도 청년 노숙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청년노숙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역시 청년노숙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규모 역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Quilgars(2010)가 최근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의 확산과 관련하여 유럽의 청년의 노숙 문제를 환기시키며 그 상황을 정리한 <표 2-8>를 통해 어렵פות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대체로 거리노숙인과 쉼터 이용자들 중 18-24세 가량의 경우는 약 15% 내외, 18세에서 29세 까지를 고려하면 대략 약 25~30% 가까운 비중이 청년노숙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유럽 국가들의 청년노숙 규모

	자 료	노숙 정의	규 모
체코	Census of homeless people, 2004	거리 노숙 쉼터 노숙인	14%가 25세 이하 (3096명 중 439명)
덴마크	National count of homeless persons, 2009	거주지나 방이 없는 사람 일시 시설에 사는 사람 거리 노숙인	13%가 18-24세 23%가 18-29세
프랑스	INSEE Survey of users of accommodation and hot meal distribution service, 2001	거리노숙인 지난 밤을 쉼터에서 보낸 사람	1/3 이상이 18-29세
네덜란드	Information from municipalities to Dutch Audit Court	노숙인 서비스기관에서 알고 있는 젊은 노숙인 파악 거리노숙인 숨겨진 노숙인 추정	6,090명이 16-25세
폴란드	Census of homeless persons, Pomeranian Province, 2009	거리노숙인	2838명 중 220명이 18세 미만의 아동, 8%가 30세 이하의 성인 노숙인
스페인	Survey of Homeless Persons, 2005	거리노숙인 쉼터노숙인	21,900명 중 30%가 18-29세
영국	Independent study, analysis of available national statistics on youth homelessness	노숙법 상의 노숙인 거리노숙인 노숙인 서비스이용자	2006/7년 12개월 사이에 16-24세 75,000명이 노숙 경험함.
벨기에	Brugere af botilbond efter siervicelovens §94. Arsstatistik 2002	거리노숙인 쉼터노숙인	2002년/20대 이하 10%, 20-29세 30%, 30-39세 18%.

자료 : Quilgars(2010:194)

제 2절 노숙의 진입

1. 노숙 원인론

왜 젊은 청년들은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청년노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서구에서 연구되어 왔던 노숙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연령대의 노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헌은 많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인노숙인의 노숙 원인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청소년 노숙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서 성인 중에서도 청년(young adults)에게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숙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서구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그간의 노숙 원인에 대한 검토와 비교하여 보고 그 한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노숙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쟁은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Neale, 1997; Nicholls, 2009)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의 넓은 범주, 즉 구조적(structural), 그리고 개인적(individual) 차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전통적이다(Neale, 1997). 개인적 설명은 노숙인의 개인적 특성, 특히 노숙인의 행동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구조적 설명은 노숙의 원인을 좀 더 넓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이러한 양 극단의 이분법적 노숙 원인은 거칠고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최근에는 양 극단을 잇는 중시적 접근의 제도와 가족과 관련한 원인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 전통적 원인론

① 거시적 구조 요인 : 경제적 구조

전통적으로 노숙의 구조적 원인은 앞서 청년노숙의 거시적 배경에서 논하였던 산업의 재구조화, 실업, 빈곤 등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 그리고 저렴 주거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주거 관련 문제로 설명된다.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Shinn, 1992; O'Flaherty, 1996; Park, 2000, Toro, 2007)와 실증분석(Elliott and Krivo, 1991; Kemp et al., 2001; Ji, 2006)들은 증가하는 빈곤집단의 열악해져가는 경제적 상황과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택시장 상황을 통해 증가하는 노숙 출현율을 설명한다.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연구들은 특히 아동, 한부모 가족, 흑인, 히스패닉계의 빈곤 증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저렴 주거, 도시 재개발과 고급 주택화 등의 주택시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도시 지역의 저렴 주거 부족, 빈곤율, 실업율이 노숙의 출

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주장한다. 특히 노숙의 핵심 위험요인은 실업과 빈곤으로 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노숙인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큰 이견이 없다(Anderson and Christian, 2003, Fitzpatrick et al., 2000). 특히 청년노숙과 관련하여 청년실업과 빈곤의 증가, 청년이 지불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주거 시장 요인 등의 구조적 조건과 맥락은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경험(experience)과 결정(decision)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의 관계 등을 악화시키고 청년의 삶을 위해하는 다양한 문제적 요인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Gaetz, 2014). 빈곤은 노숙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인으로 청년들은 실업과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때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는 노숙의 진입뿐만 아니라 노숙의 지속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Morrell-Bellai et al., 2000).

노숙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국가 단위 혹은 대도시 등 지역단위의 노숙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지역 간 노숙 발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즉, 지역, 혹은 국가 간 노숙 출현율이 어떻게 다른가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거나 어떤 특정 시기에 갑자기 노숙인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Shinn, 2007). 예를 들어 국가 간 노숙의 출현율을 비교 연구를 통해 빈곤율이 높고, 소득불평등이 높은 영미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노숙의 수준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Toro, 2007).

그러나 거시적 요인에 의한 노숙의 설명은 몇 가지 점에서 노숙 원인에 대한 접근으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제시된 구조적 요인들은 노숙의 원인이라기보다 노숙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혹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빈곤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거시적 접근의 연구들은 횡단 연구(cross-sectional design)로서 노숙, 혹은 노숙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들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어떤 지역의 노숙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노숙 발생보다 앞서서 원인으로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인이 많이 발생한 당시의 다른 빈곤 취약성의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실업율이 높고, 빈곤층이 많고, 저렴한 주거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에 노숙인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노숙의 구조적 원인 설명에서는 행위자(agency), 개인의 행위나 역할의 개입과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Nicholls, 2009).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 요인들(factors)에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이 모두 노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한 개인적 문제나 환경을 가진 개인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다. 노숙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하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구조적 원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고

려를 동시에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시적 요인들에 개인이 어떤 행위로 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거나, 혹은 덜 받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은 노숙인에게 왜 노숙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다수가 일이 없어서, 혹은 오르는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라는 구조적 요인의 답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개인의 노숙의 발생은 그들의 대답과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며,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취약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된다(Lee et al., 2010). 따라서 구조적 요인은 집합적으로 볼 때 ‘어떠한 (구조적)환경이 노숙을 증가하도록 하는가’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환경에 노출될 때 ‘누가(who) 노숙인이 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노숙의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Fitzpatrick et al., 2000). 또한 노숙의 구조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빈곤, 실업, 그리고 주택시장의 문제는 사실 노숙으로 가는 거의 모든 사례에 작동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원인으로 한 개인의 노숙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Anderson, 2001).

② 미시적 요인 : 개인의 병리적 문제

가.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유사하게 주어지는 거시적 조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경험이나 선택으로 구성되는 개인적 조건의 조합에 따라 그 사람은 노숙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노숙의 개인적 원인에 대한 관심은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 현재 드러난 병리적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노숙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우울, 정신분열, 자살충동 등의 정신건강 문제,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노숙의 개인적 요인이다. 노숙은 이러한 병리적 문제점을 지닌 개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결과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건강의 문제는 일반인과의 비교를 통해 노숙인이 가진 개인적 취약성으로 설명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인들에 비해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현재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McCaskill et al., 1998; Teesson et al., 2000).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그룹 중에서도 노숙그룹은 비노숙 그룹에 비해 외향적 정신질환 증상(positive symptoms), 현재 약물사용 정도,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의 정도가 높았다(Caton et al., 1994). 이는 노숙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McCaskill 등(1998)은 미국 디트로이트 7개 카운티의 12-18세의 일반 청소년과 연령, 인종, 성별, 주거지 특성을 일치시킨(matching) 노숙청

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았는데, 청소년 노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0가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제한 후 양 그룹을 비교해 본 결과, 노숙 청소년이 파괴적 행동장애(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약물의존도(dependence on the DISC) 등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거, 직업, 새로운 파트너의 만남 등으로 생애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성인모색기(18-25세, emerging adults)에 약물사용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Aldworth, 2009:17), 젊은 성인들은 과거 가족의 방임과 현재 생활의 스트레스, 불안 등을 다스리고자 하는 동기로 친구나 동료들 통해 약물을 받아들이고 사용한다(Tyler and Johnson, 2006).

그러나 모든 노숙인들이 약물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대략 16%, 많으면 1/3 가량의 노숙인들이 심각한 혹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Nooe and Patterson, 2010:117). 호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남성 노숙인의 절반, 여성 노숙인의 15% 정도만이 알코올 중독을, 20%가 최면마취제(opiate), 혹은 대마초(cannabis) 중독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Teesson, et al., 2000).

그런데 이렇게 노숙인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노숙인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노숙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알코올, 약물남용, 정신질환의 결과 노숙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노숙의 결과로 그러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숙의 원인으로서는 개인의 병리적 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어도 노숙의 선행 사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숙인의 현재상태의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의 정도와 수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노숙의 개인적 원인으로서는 다루어지는 노숙에 선행하는 사건들과 노숙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노숙 사건에 선행하는 정신질환, 알콜, 약물문제와 노숙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것의 인과성을 밝혀낸 바 있다(Herman et al., 1997; Johnson et al., 1997). 그러나 Nooe and Patterson(2010)은 이런 연구의 결과들은 알코올 문제나 정신질환, 약물 문제 등이 심각한 사람들을 과대 표집한 결과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05), 이것은 주거, 고용, 치료의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Oakley and Dennis, 1996)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정신질환 중 약물 남용이나 공격성 장애 등 일부 증상에서는 노숙과 비노숙 그룹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경우, 노숙인 그룹이 모든 영역의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알콜 문제에 있어서 노숙인 그룹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McCaskill et al., 1998).

또한 노숙과 약물중독의 관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에 방법론적 문제점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Shinn(1992:3)은 그의 연구에서 노숙인의 개인적 병리와 노숙의 인과성 논의에서 많은 경우에 첫째, 원인과 결과의 선후 관계를 혼동하고, 둘째, 역동적 과정을 다루지 못하고, 정지된 하나의 상태(static pictures)에 집중, 셋째, 비교 그룹의 부재, 넷째, 가족보다 단신(single)에 집중, 다섯째, 노숙 원인으로서 개인적 결합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Johnson 등(1997)도 약물중독이 노숙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사실상 양자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사회선택과 사회인과론(social selection and social adaptation)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물 중독은 첫 번째 노숙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prior)의 노숙 경험이 첫 번째 알콜과 약물 남용의 증상의 예측요인도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사회선택과 사회인과론 모두가 노숙과 약물중독 간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사용가능 정도는 이 양자의 영향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자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나.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 : 희생과 트라우마

한편 노숙인의 생애에 대한 검토와 노숙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상당수의 노숙인들이 노숙 이전, 특히 어린 시절에 성적(sexual) 혹은 신체적 학대, 폭력, 물리적 혹은 정서적 방임 등을 경험하였다는 보고들이 등장하였다(Susser et al. 1987, 1991; Koegel et al., 1995; Herman et al. 1997). 특히 청소년 노숙인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부모님의 집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 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빠져나온 경험이 많았다(Ayerst, 1999; Simons and Whitbeck, 1991). 미국의 경우,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의 약 52%가 어린 시절의 신체적 폭력, 12%가 성적 학대, 26%가 방임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노숙 경험이 없는 그룹의 2배 이상의 결과이다(Shelton et al., 2009). 이러한 경험은 노숙 상태 이전인 어린 시절,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겪은 불행한 사건들로, 노숙은 불행한 경험의 피해(victimization)의 산물이라는 것이다(Fischer, 1992).

노숙인이 어린 시절 경험한 불행한 경험을 노숙의 개인적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노숙인 개인의 의도나 행동 외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Fitzpatrick(2000)은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을 개인적 요인이 아닌 가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내재된 어떠한 특성을 발현시키는 원인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예로 폭력과 학대, 방임으로 인한 피해는 노숙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Fischer, 1992; Kim et al., 2010; Rattelade et al., 2013).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은 좋지 못한 정신건

강의 원인으로 작용하며(Rattelade et al., 2013), 이들이 경험한 불행한 사건들은 곧 트라우마(trauma)로 남고 이것이 알콜이나 약물 중독,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Coates and McKenzie-Mohr, 2010; Goodman et al., 1991; Kim and Ford, 2006). 최근의 연구는 노숙인들의 어린 시절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 다시 피해자가 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Edalati et al., 2015). 노숙인의 과거사건, 특히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을 통해 노숙인이 희생자이며, 그러한 희생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병리적 문제들의 끝에 노숙이라는 결과물이 있다는 결론은 노숙의 개인적 원인론이 개인적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노숙이 개인의 비행을 초래한 불가항력적인 불행한 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고, 노숙의 원인은 복잡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현재를 거슬러서 노숙 이전의 과거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노숙의 본질적인 원인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해 준다.

한편 이러한 노숙의 개인적 원인들은 노숙을 언제 시작했는가 그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낳는다. 청소년기에서부터 노숙을 했던 노숙인들은 더 많은 개인적 문제, 약물,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 오래 노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mberlain and Johnson, 2011; Collins, 2013). 또한 노숙 이전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더 많이 경험한 경우 더 빨리 노숙을 하고(Koegel et al., 1995), 더 이른 시기에 노숙을 시작할수록 노숙의 기간도 길어진다(Yoder et al., 2001). 미국에서 1563명의 성인노숙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Koegel 외(1995)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노숙 위험요인 경험횟수가 없었던 사람의 최초 노숙진입 나이는 평균 33.6세였던 반면, 위험요인이 5개 이상이었던 사람들의 최초 노숙진입 시기는 평균 22.6세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 노숙 진입시기가 이들이 경험한 노숙 위험요인의 누적과도 연결이 있으며, 노숙의 경로 역시 달라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분법적 노숙 원인론의 확장 : 중시적 구조 요인

앞서 살펴본 두 갈래의 노숙 원인의 논의는 지나치게 거칠고, 제한적이며 이분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Neale, 1997; Pleace, 2000). 기존의 논의들은 노숙의 구조적 요인에 거시적 수준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만을 포함시키고, 개인적 요인을 노숙인의 행위로 국한시켜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실제 노숙인의 노숙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이러한 두 가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들도 존재했다. 가령 주택수당의 삭감이나 보호시설 퇴소가 초래하는 노숙은 어느 곳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문제였다. 따라서 노숙의 원인 요인은 구조와 개인이라는 거시와 미시의 사이에 제도와 가족관계라는 중시적 요인을 추가하여 2개의 부류가 아닌 4개의 부류로 확장될 수 있다(Fitzpatrick et al., 2000).

① 제도적 요인

빈곤, 실업, 주거 상황으로 대표되는 노숙의 경제적 구조 요인을 좀 더 확장한다면 이른바 제도적(institutions) 구조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지급여의 삭감과 실업 관련 제도의 긴축, 주거급여와 사회주택의 감소, 주택수당 자격 제한, 주거비 용도로 빌려 쓸 수 있는 사회자금(social funding)의 이용 제한 등 복지 제도와 정책의 문제가 노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tzpatrick et al., 2000, Anderson and Christian, 2003). 특히 서구의 경우, 주택수당 등과 관련하여 복지제도의 축소나 폐지 등이 젊은 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며, 이것이 청년노숙을 악화시키는데 작용하였다(Kemp and Rugg, 2001; Fitzpatrick and Stephens, 2014). 자립이나 가족의 도움이 부재한 경우, 취약한 청년들은 복지제도가 시설, 서비스에 의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저렴하고 부담가능한 주거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등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청년노숙을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80-90년대 청소년(16-18세)과 청년(18-25세)들에게 제공되던 소득 지원과 주택수당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복지 수급 정책의 변화는 취약한 젊은 층이 노숙으로 떨어지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Oldman, 1997; Benjaminsen and Busch-Geertsema, 2009). 특히 1996년의 경우, 민간임대 시장에서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싱글룸을 임대할 때, 주택급여(housing benefit)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조치로 상당수의 취약한 청년들이 퇴거당하고 주거 상실에 동반하여 실업을 경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emp and Rugg, 2001). 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급여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적 변화가 특히 소득이 낮은 젊은이들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상실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유사한 시기에 영국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독일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복지제도의 제한과 노동자립 강조를 추구하는 복지 삭감 정책이 실시된 바 있다. Benjaminsen and Busch-Geertsema(2009)에 따르면, 두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따른 사회수당 시스템과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변화는 청년들로 하여금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당을 삭감하고 일을 더 하도록 하는 목적 하에 진행된 정책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의도치 않게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청년들, 그 중에서도 취약성이 강한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즉 수당 삭감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

고 강하게 받은 집단은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수당으로 충당하던 주거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되면서 노숙의 위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제도적 요인에서 노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청소년·아동보호시설 퇴소 후의 노숙화에 관한 것이다(Milburn et al., 2006; Okamoto, 2007; Toro et al., 2007). 서구의 경우 청년 노숙인들의 상당수는 위탁보호나 시설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가정 밖에서의 양육을 경험을 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약 21-53% 정도가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auce et al., 1998; Robertson, 1991; Toro and Goldstein, 2000; Toro et al., 2007 재인용). 문제는 집 밖에서 양육되고 보호받던 아동 청소년들이 대체로 18세가 되면서 그 시설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나타난다. 연령으로 인한 퇴소(age out) 이후 노숙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Dworsky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의 3개 주에서 실시된 조사를 근거로 위탁양육(foster care)의 연령 종료로 인한 퇴소 이후 성인 이행기 과정에서 노숙인이 되는 위험은 매우 높았는데, 분석결과 약 31%에서 46%가 26세가 되기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했던 아동의 19%가 복지시설 퇴소 이후 약 10년 안에 공공주택을 이용하였고, 시설을 포함하여 집이 아닌 곳에서 양육된 청년들이 공공주택을 이용한 비율은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의 2배에 달했다(Park et al., 2004). 뿐만 아니라 시설 퇴소 이후에 노숙을 경험하는 청년의 경우, 노숙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비행이나 정신적 문제, 폭력피해 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반면 받아야 하는 복지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Toro et al., 2007). 한편 Courtney 등(2005)은 시설 퇴소한 청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 노숙을 하게 되는 결정 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시설 거주 시 가출 감행여부와 횟수로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정신병원이나 감옥 등의 시설 보호 이후의 주거 상황의 열악함이 노숙과 직결되는 경우도 다수 언급된다. Dyb(2009)는 노르웨이의 수감자들 중 1/3은 수감되기 이전 노숙 상태였거나 매우 불안정한 주거 상태를 가졌었고, 2/3는 출소 후 노숙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수감과 노숙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감자들은 수감, 재수감 등을 반복하면서 점차 고용기회를 잃고,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Gowan, 2002). 결국 수감과 노숙은 양자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악순환 되고 배제와 고립, 하층계급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회전문(revolving door)’으로 표현하기도 한다(Kushel et al., 2005).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신병원에서 퇴소한 환자들을 3개월 이후 추적 조사한 결과 퇴소자중 약 35%가 노숙 상태였고, 약 절반 수준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목적 없는 방황자(aimless wanderer)”였다고 보고하고 있다(Belcher, 1988).

② 가족 요인

앞서 살펴본 청년노숙의 원인으로서는 개인의 비행과 희생자 논의의 기저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적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노숙인의 원가족의 문제이다(Hyde, 2005; Tyler, et al., 2006; Smith, et al., 1998). 특히 젊은 노숙인들의 경우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는 청소년 노숙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de Decker, 2000; Vazquez, et al., 1999; Philippot, et al. 2007 재인용). Snow and Anderson(1993)도 거리 생활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바로 가족관계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우선 원가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적 요소들이 노숙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노숙인의 부모가 알콜이나 약물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성장기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던 경우,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가정폭력,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McCarthy and Hagan, 1992; Yoder and Whitbeck, 2001; Smith, 2008), 이러한 원가정의 문제들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이것이 노숙인의 불안정성을 가중 시켜 이탈과 희생을 양산해 내게 된다(Tyler, 2006). Hyde(2005:172)는 특히 젊은 노숙인들이 빠른 대책도 없이 집에서 나와 거리로 가게 되는 경험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집을 나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 안에서의 불화나 가족의 해체, 가족구성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고 집 밖에서 양육이 이루어진 경우 노숙의 원인이 된다. 노숙인들은 생애에 걸쳐 많은 관계의 단절과 해체(breakdowns)를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부모의 상실, 잦은 이사, 위탁양육 등으로 구체화된다(Philippot, et al. 2007). 청소년노숙인의 가족사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들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이후에는 수차례 자신의 거처를 이동(transition)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가족 안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이전에 그룹홈, 위탁양육, 시설 보호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노숙에 진입하게 된다(Tyler, et al., 2013). 부모의 부재나 불화로 인해 친척집을 옮겨 다니면서 자랐거나,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 위탁 양육을 받은 경험 등은 관계적 측면에서 가정(home)의 해체와 더불어 물리적 집(house)의 불안정성을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이러한 경험은 가정이라는 소속감과 안정감의 부재로 이어지고, 결국 있던 장소를 떠나거나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숙으로 이어진다. Tyler(2006)는 19-21세의 40명의 청년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년노숙인들의 원가정에는 부모의 약물사용, 범죄행동, 아동학대 등의 가족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결국 집을 나오게 만드는 이유였다고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그들이 집을 나오기로 결정한 혹

은 결정된 이후에는 위탁양육, 그룹홈, 원가정 복귀, 소년원, 거리 등을 반복적으로 이동(transition)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경우 10회 이상까지 옮겨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곧 안정적인 가정(home)을 상실한 채 부유(floating)하는 청년노숙인의 불안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노숙의 개인적 위험요인들은 ‘개인’의 병리적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의 병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시점의 노숙인의 문제적 경험이나 행동이 생애 과정상의 ‘과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볼 때에도 집(house)이 없는 노숙인의 현재는 과거의 공간적 불안정에서 기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공식적인 정부의 양육(state care)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친척이나 조부모에 의해 양육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가정 밖 양육(out of home care)이 위탁양육 등의 공식적 양육체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양육 받은 경험도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 가족이라는 존재는 청년에게 사회적 자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청년노숙인에게 이러한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Barker(2012:740)는 청년노숙인에게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과의 접촉의 정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전달과 같은 물질적 수준을 넘어서 상호 호혜와 신뢰의 규범 등 ‘관계의 질’의 문제도 청년의 노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즉 청년노숙인들의 상당수는 노숙 중에도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일정 정도의 자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경험하고 형성해 왔던 기대나 규범을 포함한 사회화와 관련된 관계의 양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재 자체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가족 밖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과 접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청년 노숙인들의 특성 중 하나인 공적 자원과의 거리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청년 노숙의 가족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의미의 가족 해체(breakdown)를 넘어선 질적 가족해체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관계맺음의 부정적 효과가 노숙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약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노숙의 원인으로서는 거론되는 요인들은 거시적 관점에 입각한 구조적 요인과 반대편 극단에 위치한 미시적 관점의 개인적 요인의 논의에 더하여 중시적으로 제도와 가족관계 요인의 탐구로 확장되어 왔다. 이처럼 노숙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차원의 원인적 현상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노숙은 어떤 한 쪽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있다(Busch-Geertsema, et al., 2010; Pleace et al., 2011). 영

국의 Pleace(2000)는 이를 “새로운 정설(new orthodoxy)”라고 명명하여 그간에 있었던 구조적 원인이나, 개인적 원인이라는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구조적 원인은 노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둘째, 개인적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동향에 더 취약하다. 셋째, 따라서 노숙인들 중 개인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노숙의 개인적 설명을 통해서 보다는 거시적이고 구조적 압력에 대한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인가 개인, 즉 행위자인가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무엇을 구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개인의 결정이나 행위를 벗어난 외부적 요인을 구조로 본다면 거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제도나 가족관계 등의 중시적 범위의 요인들도 구조로 볼 수 있다(Fitzpatrick, 2005). 뿐만 아니라 Johnson(2006)은 이러한 물질적 구조에 더하여 비물질적 구조들, 예를 들어 낙인(stigma)이나 노숙문화(homeless culture)까지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들을 구분하거나 관점의 크기를 준거로 노숙의 원인을 나열하고, 각각이 노숙에 미치는 원인으로서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왜 어떤 한 사람이 노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체적(holistic)인 설명을 도출해 주지 못한다. 물론 각각의 영향요인들 중 어떤 것이 노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혹은 핵심적인 인자들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노숙인이 왜 노숙을 했는지를 추적하다보면, 이 영향요인들이 분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숙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숙의 원인은 어느 한 시점에서 경험한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 규정지어지지 않는다. 노숙 이전의 생애 과정에 걸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명백히 설명될 수 있다. 요컨대 노숙의 원인은 분절적이거나 단편적으로 한 시점의 어떤 한 사건으로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잡성(complexity)을 가진 사건들이 노숙인의 생애 과정(process)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노숙을 초래하였는가를 볼 때 노숙의 발생 원인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복잡성의 속성을 가진 노숙의 원인요소들은 선형적 인과관계(linear causation)로 나타나기 보다는 통합(integrated)되고, 상호작용(interaction)하고 있다(Nooe and Patterson, 2010).

2. 노숙 위험요인

노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이미 앞서 노숙의 4가지 요인들로 설명한 바 있다. 각각의 요인들은 노숙을 발생시키는 개별적 원인들로서 노숙인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비노숙인 그룹과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별 요인들은 2000년대 초반 영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Fitzpatrick 등(2000)은 영국의 단신노숙인 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며 노숙의 원인을 세 가지 하위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가구유형, 연령, 성, 인종, 주거장소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characteristics), 둘째, 사람들을 특히 노숙에 취약하게 몰아가는 개인적 경험과 환경적 위험요인(risk factors), 셋째, 직접적인 노숙을 초래하는 특별한 촉발요인(triggers)으로 설명한다. Fitzpatrick과 동료들(2000:26)은 노숙의 위험요인을 “사람들이 노숙에 특히 취약하도록 만드는 경험과 환경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노숙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특히 노숙에 더욱 취약하도록 하고, 이런 경험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는 더욱 노숙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촉발요인은 노숙(특히 거리노숙)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사건 혹은 위기 지점으로 정의된다. Anderson(2001)은 이들의 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표 2-9>, <표 2-1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노숙 원인론의 구분과 흡사하다. 즉, 노숙의 위험요인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하위 위험요인들을 재구성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이 어떻게 노숙으로 연결되는지, 노숙의 촉발요인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노숙 촉발은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면서 주거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되면서 동시에 주거를 상실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소 후 주거가 없는 경우, 병리적 요인으로 주거를 벗어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은 노숙의 원인과 진입의 과정을 좀 더 세분화 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내용과 분류는 영국의 성인 단신 노숙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맥락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노숙인들이 실제로 어떠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중복적으로 경험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다만 구인화·김소영(2012)은 한국의 노숙발생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각 노숙 사례가 가지는 노숙의 발생 원인을 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 위치시켜 봄으로써 노숙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고 노숙의 촉발요인을 주거의 상실, 주거이탈, 주거확보실패로 표현하여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해 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경우, 주거확보의 실패 혹은 주거의 이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청년노숙의 경우 장년노숙과 노숙 촉발요인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 혹은

장년 노숙인들이 어떠한 위험요인을 얼마나 누적적으로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각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또한 노숙의 촉발요인들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2-9> 노숙 위험요인의 4가지 차원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s)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
·저렴 주거의 부족 ·낮은 소득과 빈곤	·지방정부에 의한 보호경험(local authority care) ·군대생활 경험
가족배경요인(family background factors)	개인적 요인(individual factors)
·어린 시절 가족 노숙의 경험 ·가정해체와 가족갈등 ·양부모와의 가족 재구성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성적, 신체적 학대 경험 ·알콜이나 약물중독 부모 ·25세 이하에 첫 자녀를 낳은 어머니를 둔 경우	·이른 나이에 알콜, 약물 복용 ·이른 나이에 범죄에 관련됨 ·공격적 행동 혹은 수감 경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력 단절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부족 ·빚, 특히 주택담보대출금 혹은 임대료 연체 ·이웃과의 갈등 ·약물, 알콜의 오남용 ·신체적 정신적 불건강

자료: Anderson (2001)

<표 2-10> 노숙 촉발요인

경제적 요인/가구구성 변화	시설에서의 퇴소/거부
·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위기 ·임대하던 주택이나 자가에서 퇴거당함 ·학대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살던 집에서 나오는 경우 ·새로운 가구 형성(ex, 새로운 이성친구와 살기 위해 기존에 살던 친척 혹은 친구집에서 나오게 된 경우) ·아이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 수 증가	·군대제대 ·감옥 출소 ·노숙인 시설 접근의 차단
관계 단절	병리적 요인
·같이 살던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떨어져 나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결혼 등의 관계 깨짐 ·가정폭력으로 인한 도피 ·다툼/갈등 이후에 부모의 집에서 나옴	·알콜, 약물남용, 정신병적 증상의 급성 출현으로 인한 주거 이탈

자료: Anderson (2001)

이러한 초기의 노숙 위험요인의 분류 제시는 노숙을 일으키는 요인들의 다양성을 정리해 주었는데, 이후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노숙의 위험요인들이 어떻게 중복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숙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논의들로 발전되어 왔다. 노숙 위험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들은 <표 2-11>에 제시되어 있다. Koegel 등(1995)은 이제까지 알려져 왔던 개인적 정신질환이나 약물 문제를 넘어서서 노숙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그리고 전기적(biographical) 위험요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어린시절

의 배경과 가족 안에서의 경험이 노숙의 위험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 시절의 가정 밖 양육(out of home care), 즉 부모가 양육하지 않거나, 시설보호의 경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여부, 어린 시절의 주거 경험, 학대경험이나 부모의 비행 등을 포함한 가족문제 등 노숙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부정적 위험요인 경험이 성별, 연령코호트별, 인종별로 그 위험도(Odds Ratio)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¹²⁾ 연구결과 10명 중 9명은 앞서 제시한 어린 시절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불행한 경험을 하였고, 전체의 64%는 2가지 이상의 불행한 경험을 했으며, 2/5가 3개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요인의 중첩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연령코호트에 따라 각 항목의 경험여부와 중복 경험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20대 이하) 모든 분류의 위험요인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중복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인의 중복의 정도는 노숙을 시작한 시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평균 노숙 시작나이가 33.6세였던 반면, 5개 이상인 사람은 평균 22.6세였다. 연령과 노숙의 어린 시절의 위험요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노숙의 위험요인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Shelton 등(2009)에 의해 노숙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¹³⁾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밝힌 노숙인의 어린 시절의 위험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성인기의 위험요인들도 상당수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장 광범위한 위험요인을 다루고 있다. 주요 노숙위험 항목은 총 5개로 구성하였는데, 어린 시절의 불행, 사회경제적 상황, 정신건강문제, 중독 문제, 범죄행동, 그리고 폭력이었다.¹⁴⁾ 분석결과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의 40% 이상이 어린 시절 가출경험과 가정 밖 양육 경험, 부모의 신체적 폭력 경험을 갖고 있었다. 갱단 합류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노숙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경험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분석의 결과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 중 가출(OR=4.03), 가정 밖 양육(OR=3.16), 위탁양육(OR=2.15), 친아버지의 수감경험(OR=1.45), 부모의 방임(OR=1.47), 18세 이전 복지수급 기간(OR=1.14)이 노숙 경험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12) 이 연구는 1990-1991년 사이에 LA의 1563명의 성인노숙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The Course of Homeless study(COH)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13) 본 연구는 미국의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조사의 표본을 6년 이후 온라인을 통해 추적하여 청년기(young adults)에 있는 14,888명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인터뷰한 연구로, 노숙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682명(4.6%)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4) 첫째 어린 시절의 불행은 가출, 가정밖 양육, 부모의 방임,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의 경험, 양육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 입양, 위탁양육, 친아버지의 감옥 수감 경험, 18세 이전 복지수급 경험 등 총 10문항을 물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상황은 학교를 떠난 학년,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 여부, 지난 12개월간의 경제적 어려움, 현재 복지수급여부, 현재 고용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답을 수집하였다. 셋째, 정신건강문제의 경우는 우울진단 받은 경험, 지난 12개월간 항우울제 처방 받은 경험, 지난 5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 자살시도경험을 물었다. 넷째, 중독에 대해서는 도박, 지난 12개월간의 알콜, 마약 경험여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범죄행위와 폭력에 관련해서는 범법행위(절도 등), 폭력, 폭력피해경험, 갱단에서의 활동 경험, 경찰에 체포된 경험, 청소년 법정에서 유죄판정 받은 경험, 성인법정에서 유죄판정 받은 경험 여부를 물었다.

학교를 떠난 학년(OR=.88),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OR=1.23), 현재 고용상태(OR=.76)가, 정신건강은 우울진단 경험(OR=1.61), 정신병원 입원 경험(OR=1.82), 약물 문제(OR=1.16)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 정부의 가족조사를 받은 경험, 학교 퇴학, 현재의 복지수급, 항우울 처방, 자살 충동, 도박과 알콜문제는 노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관련된 요인들은 노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¹⁵⁾.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성인기 이후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함시켰음에도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이 노숙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 혹은 부모와의 분리나 부모로부터의 탈출(exit)과 관련된 사건은 노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의미하고도 독립적으로 노숙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의 맥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과 노숙과의 연관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숙 위험요인의 연구는 노숙인의 생애과정 중에서 어린 시절에 주목함으로써 노숙 발생요인에 대한 검토 시점 기준을 노숙 발생 훨씬 이전으로 앞당겨 넓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숙의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통합적으로 다루어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노숙인이 가지는 노숙의 개별적 위험요인의 누적의 정도가 노숙의 발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Shelton 등(2009)의 연구에서 연구의 한계로 밝히고 있듯이, 이 연구는 횡단데이터(cross-sectional data) 연구이므로 몇몇의 변수들은 청소년기 즉 성인기 이전의 경험들이 아니며 또한 자료에 처음 노숙을 경험한 시기 역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되었던 각 변수들 간의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가 다소 혼란스럽고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각 영향요인간의 관계, 그 위험요인들이 노숙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노숙 위험요인 연구는 설명을 제공해줄 수 없다. 또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이러한 실증 연구들의 공통적 문제로, 노숙의 위험요인들로 거론되는 요소들은 동시에 노숙에 의해 악화되는 노숙의 결과적 요인들이기도 하다는 문제점도 있다(Fitzpatrick et al., 2000).

이상에서 검토한 노숙의 네 가지 차원의 노숙 위험요인 각각의 연구들과 이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들은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노숙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제시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적 맥락과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청년노숙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실제 노숙인들이 경험한 위

15)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같은 분석을 했을 때, 유의미한 변수들은 가출경험, 가족 밖 양육 경험, 부모의 방임, 아버지의 수감, 학교를 떠난 시기,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정신병원 입원경험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험요인의 내용과 중복의 정도, 그 요인들 간의 인과성 등을 밝히는 것이 선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표 2-11〉 노숙 위험요인 연구

연구자 (연도)	제목	핵심 내용
Herman 외(1994)	Childhood out-of home care and current depressive symptoms among homeless adults	어린 시절의 집 밖에서의 양육은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인기의 우울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1849명의 성인 노숙인 샘플을 통해 증명함.
Caton 외 (1994)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Schizophrenic Men: A Case-Control Study	노숙인은 노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족배경(18세 이전 원가족의 disorganization)이 더 나쁘고, 정신과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단기간 이용함. 열악한 가족지원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보다도 노숙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Koegel 외(1995)	Childhood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homeless adults	-어린 시절 생활: 부모와 떨어져 시설 등에서 보낸 사람이 50%, 그 중 절반이 고아원, 위탁양육 등으로 생활. -10명중 9명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을 하였음. 64%가 2개 이상을 경험함. 2/5가 3개 이상. -불행한 경험의 숫자는 그 사람이 노숙을 처음 시작했던 타이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즉 어린 시절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평균 노숙 시작나이가 33.6세였으나, 5개 이상인 사람은 평균 22.6세였음.
Herman 외(199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re they risk factors for adult homelessness?	위험요인은 중첩되는 경향이 있음 ¹⁶⁾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과 성인노숙의 인과적 경로를 매개하는 요인은 성인기에 습득할 수 있었던 사회적 자원의 훼손과 사회적 고립의 확대임.
Heffron 외(1997)	Health and lifestyle issues as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노숙인 그룹에서 정신질환, 약물과 알콜남용, 흡연 문제가 유의하게 높음. 노숙인 그룹은 어린 시절 그룹홈이나 비가족의 상황에서 생활경험 높음. 비행, 가출, 학교에서 쫓겨남, 낮은학력, 도박문제 더 많음. 노숙인 그룹에서 유의하게 가출이 많이 나타났음. 결론적으로 노숙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임.
Shelton 외(2009)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14,888명의 young adult(평균나이 22세) 1차 조사 이후 6년 지난 후, 생애 경험 중 노숙 경험이 있는 68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숙 위험을 분석.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양육의 부재가 젊은 성인의 노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음.

16) 부모돌봄의 부족을 경험한 사람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odds가 보호부족이 없는 사람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odds 보다 16배 높음. 성적학대의 경우는 3배 높음. 신체적 학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성적 학대 역시 odds가 3배 높음. 부모돌봄의 부족과 어떤 한 종류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런 어린 시절의 불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odds가 26배임.

노숙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노숙 원인의 복잡성과 개별 요인들의 영향을 검토하는 중에 각각의 원인은 사건 발생의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노숙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숙의 원인적 요소들의 시간적 누적, 그리고 복잡성에 대해 Williams(2001)는 노숙의 원인의 복잡성(complexity)을 이해하는 것이 노숙을 예견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노숙에 대한 올바른 접근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노숙의 출현이라는 것은 복잡한 노숙의 원인적 요인들의 결합이 결국 노숙으로 이르게 한다는 확률적 설명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례(the single case)’수준에서의 확률임을 강조한다. 즉, 집합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많을 경우, 노숙에 이르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노숙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Williams는 노숙인의 몇 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노숙의 개인 사례 속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없고, 노숙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를 찾아 그 결과를 그룹화 하고자 한들, 관측치의 이질성을 설명해내는 설명 변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노숙의 위험요인들이 많이 누적되었다고 해서 노숙에 이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할 수 없고, 노숙의 위험요인을 한두 가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노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Williams는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복잡한 시스템으로부터 발현된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발현 이후의 각각의 논리적 관계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노숙에 선행하는 조건들의 일련의 세트(set)에 의해 설명되는 실재(reality)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요인을 많이 갖는다고, 혹은 적게 갖는다고 그들이 반드시 노숙을 경험한다, 혹은 노숙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일련의 관련을 맺은 위험요인들의 세트가 가지는 경향(tendency)이 노숙을 경험할 확률을 더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Williams는 노숙의 경우에 우리가 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복잡한 결과를 일으키게 된 선행하는 조건들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러한 조건은 선행한(antecedent) 시스템, 혹은 구조의 유산들을 포함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Fitzpatrick(2005)는 노숙을 설명하면서 노숙의 원인은 단일 차원이 아닌 복잡한 인과기제들로 연결된 복합적 환류적 고리(feedback loops)이며, 그것은 각각의 개별적 구성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복합성의 요소로 발현(emerging)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 과정도 단선적이지 않고(non-linear),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작은 변화가 갑작스럽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노숙에는 한 가지의 촉발요인 혹은 유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인과적 요인들의 배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노숙에 선행하는 이러한 배열들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Fitzpatrick, 2014).

제 3절 노숙 경로 연구

노숙을 하나의 정지된 시점으로 포착하지 않고 이행의 단계(transitional stage)이자 과정으로서 이해하려는 관점에 근거함과 동시에, 복잡한 노숙 원인의 역동과 그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숙 경로(homeless pathway)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Anderson and Christian, 2003). Anderson(2001:11)은 노숙 경로(homeless pathway)를 “개인이나 가구가 노숙으로 진입하게 되는 루트(route), 노숙의 경험, 그리고 노숙에서 안정적인 주거로 나가는 루트”로 정의하였다. 즉 노숙 경로 연구는 노숙을 과정으로서 인지하여 노숙의 진입과정, 노숙생활의 과정, 그리고 이에 더하여 탈노숙의 과정까지를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숙의 진입 경로’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숙에 이르는 과정을 압축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의 노숙의 전형적 경로를 제시하는 연구, 둘째, 노숙인의 주거 이동 경로와 원인, 패턴 등의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셋째, 노숙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 예를 들어 원가족의 문제, 혹은 약물,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노숙의 진입 혹은 이후의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밝히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노숙 경로의 대표적 연구들은 노숙상태의 특성에 따른 노숙 경로를 서술하거나 전형적(ideal typical type) 경로를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Chamberlain and Johnson, 2011; Fitzpatrick, 1999; Johnson, 2006; Mackenzie and Chamberlain, 2003). Fitzpatrick(1999)은 그간의 노숙 원인을 구조적 관점으로 조망하는 연구들이 노숙인의 의사와 경험을 간과하였고, 노숙을 만성화 과정으로 단선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국 글라스고우(Glasgow)의 16-19세의 청소년 25명의 종단적 생애 인터뷰(biographical interview)를 통해 청소년들의 경험(experience)과 인식(perception), 그리고 동기(motivation)를 중심으로 노숙 경로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구분된 노숙 경로는 노숙청소년이 첫째, 공식 노숙인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의 상태(공식 혹은 비공식 노숙), 둘째, 거주 지역이 도시 혹은 지방인가, 셋째, 주거상황의 안정성 등 ‘노숙생활’의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경로에 해당하는 청소년 노숙인들의 공통적 속성, 노숙 진입, 탈출, 노숙 동기, 노숙 이후의 양상을 각각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고 있다. 여섯 가지의 구분은 첫째, 지방의 비공식 노숙. 둘째, 지방의 공식과 비공식 노숙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노숙. 셋째, 지방의 공식 네트워크 상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노숙. 넷째, 지방의 비공식 노숙과 도심의 공식적 네트워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노숙. 다섯째, 도시의 공식 네트워크에 머무르는 노숙. 여섯 째, 도심(city center) 노숙이었다.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노숙 경로를 구분한 앞의 연구와는 달리 호주를 중심으로 한 노숙의 경로 연구들(Chamberlain and Johnson, 2011; MacKenzie and Chamberlain, 2003;2006)은 노숙인 지원기관을 통해 수집된 행정데이터 상의 노숙인 사례를 중심으로 ‘노숙 진입 이전의 노숙 원인’에 따른 노숙 경로를 도출하였다. 특히 이들 노숙 경로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노숙의 위험요인들이 노숙을 어떻게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함축하는 노숙 진입의 전형적 유형(ideal typical type)을 도출해 내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노숙의 경로를 밝히는 것은 Marx Weber가 말한 ‘전형적 유형(ideal type)’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들은 Weber(1949:96)의 말을 인용하여 ‘전형적 유형(ideal type)은 한없이 분화되고 매우 모순된 현상을 바라볼 때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자들에게는 특징적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Chamberlain and MacKenzie, 2006:199, Chamberlain and Johnson, 2011:61). Weber가 말하는 전형적 유형이라는 것은 ‘개인의 환경과 우연 등으로부터 오는 현상의 핵심적인 모습을 추출해 만든 분석의 구조(analytical construct)’로서 사례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비교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노숙 경로 연구는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노숙의 경로의 핵심적 모습을 통해 전형적 유형을 추출해 분류하는 작업으로 각 사례들을 검토한 후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constructed)’ 분석 모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Johnson(2006)의 연구는 종단적 인터뷰(1차 인터뷰 103명, 약 1년 후 2차 인터뷰 79명)를 통해 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전형적 유형을 도출하는 방식의 호주의 노숙 경로연구를 노숙진입과 노숙 과정, 그리고 노숙탈출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우선 노숙 원인에 근거한 진입 경로의 전형적 유형을 구성하여 노숙 진입의 5가지 주요 경로를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 노숙생활과 탈노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경로는 각각 정신질환 경로, 가정폭력 경로, 주거위기 경로, 약물남용 경로, 그리고 청소년노숙 경로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노숙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로 주택시장 조건, 노동시장 조건, 빈곤, 탈시설화, 노숙서비스 시스템, 가족해체 등의 물질적 구조(material structures)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비물질적 구조(non-material structures)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비물질적 구조는 노숙 하위문화(homeless subculture), 노숙 · 정신질환 · 불법 마약사용에 대한 낙인(stigma), 불행한 어린 시절의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가족지원(family support) 등이 있는데, 특히 낙인과 노숙 하위문화라는 비물질적 구조가 전형적 노숙 경로에 해당하는 행위자의 노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있다.¹⁷⁾

앞서 살펴본 Fitzpatrick(1999)과 Johnson(2006)의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인터뷰

17) 이 연구의 전반적인 결론은 Chamberlain and Johnson(2011)의 연구에 거의 동일하게 녹아 있다.

대상자를 일정시점 이후 추적을 하여 종단적(longitudinal) 방법으로 노숙의 진입과 탈출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종단인터뷰는 아니지만 단일 시점의 자료를 통해 노숙의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Chamberlain과 Johnson(2011)은 3,941사례의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인 노숙으로 진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이러한 경로의 차이가 노숙 이후의 생활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5개의 경로는 주거 위기, 가족해체, 약물중독, 정신건강 경로, 그리고 청소년노숙에서 성인기 노숙으로의 이행 경로이다¹⁸⁾.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노숙 경로에 속한 노숙인들의 특징을 설명함과 동시에 왜 어떤 경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노숙에 머무르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노숙의 만성화는 노숙인들이 노숙을 일종의 삶의 방식(a way of life)로 받아들이고 노숙에 적응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응이론(social adaptation thesis)을 근거로 설명된다. 이는 노숙 문화를 설명하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각 경로마다 이러한 사회적응이론이 달리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주거위기나 가족해체 경로의 경우, 노숙에 대한 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고 이들은 노숙 하위문화 혹은 삶의 방식으로서 노숙을 갖지 않는다. 이들의 노숙 기간은 다른 경로에 비해 비교적 짧았다. 반면 약물 중독이나 청소년에서 성인노숙으로의 이동 경로는 종종 노숙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탈노숙을 어렵게 만드는 노숙의 사회적 학습과 적응 단계를 보인다. 그들의 노숙은 더 길었다. 이들은 노숙을 일종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정신질환 경로의 경우 역시 장기간의 노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노숙을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노숙을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숙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설정된 노숙 진입의 경로에 따른 노숙 생활에서의 차이, 즉 노숙의 기간과 노숙 이후 약물중독과의 관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호주에서 수행되었던 주요 노숙 경로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성인노숙의 경로를 제시하면서 청소년노숙에서 성인노숙으로 이동 경로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Mackenzie and Chamberlain, 2003; Johnson, 2006; Chamberlain and Johnson, 2011). 실제로 청소년노숙에서 성인노숙으로의 경로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다른 경로들보다도 더 많았다. Chamberlain and Johnson(2011)

18) 주거위기 경로는 실직, 사업의 부도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에 쓸 돈이 없어진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가족해체 경로는 가정폭력의 경우와 가정폭력과는 무관하지만 관계가 깨지거나 파트너가 집을 떠나버린 경우 등이 해당되고 경제적 어려움의 압박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았다. 약물중독의 경로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시작된 약물사용이 습관화 된 경우로 직업을 갖기 힘들거나 갖고 있던 직업도 잃게 된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의 경로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24세 이하의 경우는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버려진 경우, 25세 이상의 경우, 돌보던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별이나 고령의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노숙의 연장의 경로는 이미 10대 때부터 노숙을 했던 경험이 많은 경우로 이들 중 42%는 시설보호의 경험이 있고, 부모의 약물사용, 가정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 연구의 경우, 전체 사례에서 각각의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소년노숙에서의 이행 경로가 35%로 가장 많았다. 주거위기, 약물중독, 정신질환이 각각 19%, 17%, 16%를 차지하고, 가족해체가 11%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노숙에서 성인노숙으로 진행된 경로의 경우, 이후 노숙 생활 역시 더 좋지 않았는데 약물중독의 경로와 더불어 장기간 노숙을 한 비중이 매우 높고, 노숙 이후의 약물중독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63%로 매우 높아 만성노숙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인노숙과 청소년노숙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숙 경로의 전형적 유형을 결정하는 연구는 노숙의 진입 경로를 제시하여 주고 있으나, 노숙진입의 과정에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노숙인의 생애 경험을 통해 노숙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을 질적 분석을 통해 이끌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노숙에 진입하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들(Bulter and Weatherly, 1995; Mallet, et al., 2005; Hyde, 2005; Tyler, 2006; Tyler and Schmitz, 2013)은 노숙화의 과정에 좀 더 주목한다. Bulter and Weatherly(1995)는 11명의 45-65세 중년 여성의 노숙 과정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경험을 생애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근거이론의 분석방법 중 하나인 지속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¹⁹⁾ 방법을 통해 질적 자료의 주제(themes)와 패턴(pattern)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이들의 삶은 자신의 수입의 거의 전부를 임대료로 지불했음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인 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한 집을 잃어 노숙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교차되고 있었다. 또한 노숙 기간 사이에 저렴주거나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순환적 패턴이 계속되었다. 이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단 하나의 단순한 사건만으로도 한계 주거를 쉽사리 잃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중년 여성 노숙의 패턴화된 경로 설정을 배제한 채, 여성노숙인의 노숙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주제, 즉 관계(relationship), 회복(resiliency), 일상복귀(normalcy)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성 노숙인의 생애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Mallet 등(2005)은 12-20세의 청소년 노숙인 302명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를 밝히기 위해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핵심적인 노숙 원인으로 거론되는 약물사용과 가족갈등이 노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 세 가지의 주요 사건들의 선후관계와 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노숙의 4개의 경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청소년의 약물/알

19) 지속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은 근거이론 접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귀납적 이론 수립에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료의 구획(sections)들을 다른 구획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떠오르는 카테고리를 허용하고, 동시에 이러한 카테고리들 간을 비교하면서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이다(Flick, 2013:96). Glaser(1965:444)는 이것을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데이터에 가깝게 접근하는 복잡한 이론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Flick, 2014:96 재인용). 또한 지속비교방법은 유형(typologies)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좋은 방법이고, 개인 사례를 축약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다(Flick, 2006)

콜 사용이 가족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집을 나와 노숙을 하게 되는 경로(약물/알콜→가족갈등→노숙), 두 번째는 가족갈등이 심하던 상황에 대한 도피나 탈출구로서 약물이나 알콜과 관련된 친구나 또래와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이것이 이어져 노숙으로 이행된 경우(가족갈등→약물/알콜→노숙)이다. 세 번째는 여자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로로, 사소해 보이지만 고질적이고 오래된 가족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노숙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약물이나 알콜을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가족갈등→노숙→약물/알콜).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경우에 청소년노숙인 본인이 아닌 가족의 약물이나 알콜 문제가 노숙으로 이어진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고 했다. 가족의 약물 문제가 가족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노숙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가족의 약물/알콜→가족갈등→노숙)이다. 이 연구는 각 경로별로 약물/알콜 문제의 시작이나 심화에 대한 청소년노숙인의 의도나 동기들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고, 이것과 노숙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경로마다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50명의 젊은 청년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를 밝히는 Hyde(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왜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서 노숙인이 되는가, 그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방임이나 학대 등의 희생자로서 청년노숙인이 노숙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아닌 이들이 하나의 행위자(agency)로서 어떻게 노숙의 위험으로 존재하는 주요 생애 사건에 대응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귀납적 접근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주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집을 떠난 이유, 가족관계, 그리고 부적절한 돌봄(maltreatment)의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하위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가족관계의 결함이나 가족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건을 통해 집을 떠나는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이 집을 떠나는 것은 일정 부분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2-12〉 노숙 경로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국가	대상	연구방법
Fitzpatrick (2000)	Young homeless people	UK	연령 (청소년)	종단 인터뷰
Mallet 등 (2005)	Young people, drug use and family conflict: Pathways into homelessness	AUS/US	연령 (청소년) 12-20세	심층 인터뷰 (302명)
Hyde (2005)	From home to street: Understanding young people's transitions into homelessness	US	연령 (청소년)	심층 인터뷰 (50명)
Mallett (2010)	Moving out, moving on: young people's pathways in and through homelessness	AUS	연령 (청소년)	종단 인터뷰
Martijn and Sharpe(2006)	Pathways to youth homelessness	AUS	연령 (청소년)	심층 인터뷰 (35명)
Tyler(2006)	A qualitative study of early family histories and transitions of homeless youth	AUS	연령 (청년) 19-23세	심층 인터뷰 (40명)
Tyler and schmitz (2013)	Family histories and multiple transitions among homeless young adults: pathways to homelessness	AUS	연령 (청년) 19-23세	심층 인터뷰 (40명)
Crane(1999)	Understanding Older Homeless People: Their Circumstances, problems and needs	UK	연령 (노인)	심층 인터뷰
Morris and Kavanagh (2005)	Marginality amidst plenty: Pathways into homelessness for older Australians	AUS	연령 (노인) 65세이상	심층 인터뷰 (74명)
Bulter and Weatherly (1995)	Pathways to homelessness among middle age women	US	성별 (여성)	심층 인터뷰 (11명)
Tomas and ditmar (1995)	The Experience of homeless woman: An Exploraton of Housing Histories and the Meaning of Home	UK	성별 (여성)	심층 인터뷰 (12명)
O'Dwyer (1997)	Pathways to Homelessness: A comparision of Gender and Schizophrenia in Inner Sydney,	AUS	혼합	심층 인터뷰 (50명)
Johnson (2006)	On the move: A longitudinal study of pathways in and out of homelessness	AUS	혼합	종단 인터뷰
Mackenzie and Chamberlain(2003)	Homeless Careers: Pathways in and out of homelessness	AUS	혼합	행정자료
Chamberlain and Johnson (2011)	Pathways into adult homelessness	AUS	혼합	행정자료
Anderson (2001)	Pathways through homelessness: A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UK	연령 (청소년, 성인, 노인)	문헌검토
Mulroy and Lane(1992)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and single mothers: Pathway to homelessness	US	가구유형	문헌검토

Tyler(2006)의 연구는 40명의 청년(19-21세)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가족의 문제들과 이들이 경험한 주거지 이행의 유형과 횟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청년들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집을 떠나거나 다른 곳에 맡겨지고, 위탁양육이나 아동보호기관, 그룹홈 등 여러 곳을 이동한다. 거리에 이르기 이전 이미 독특한 거주 불안정성과 관련된 경로를 경험한다. 후속 연구인 Tyler and Schmitz(2013)에서는 어린 시절의 가족력, 집에서 나오기, 주로 시설을 경유하는 노숙으로의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족이라는 구조와 시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인 청년들의 노숙화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시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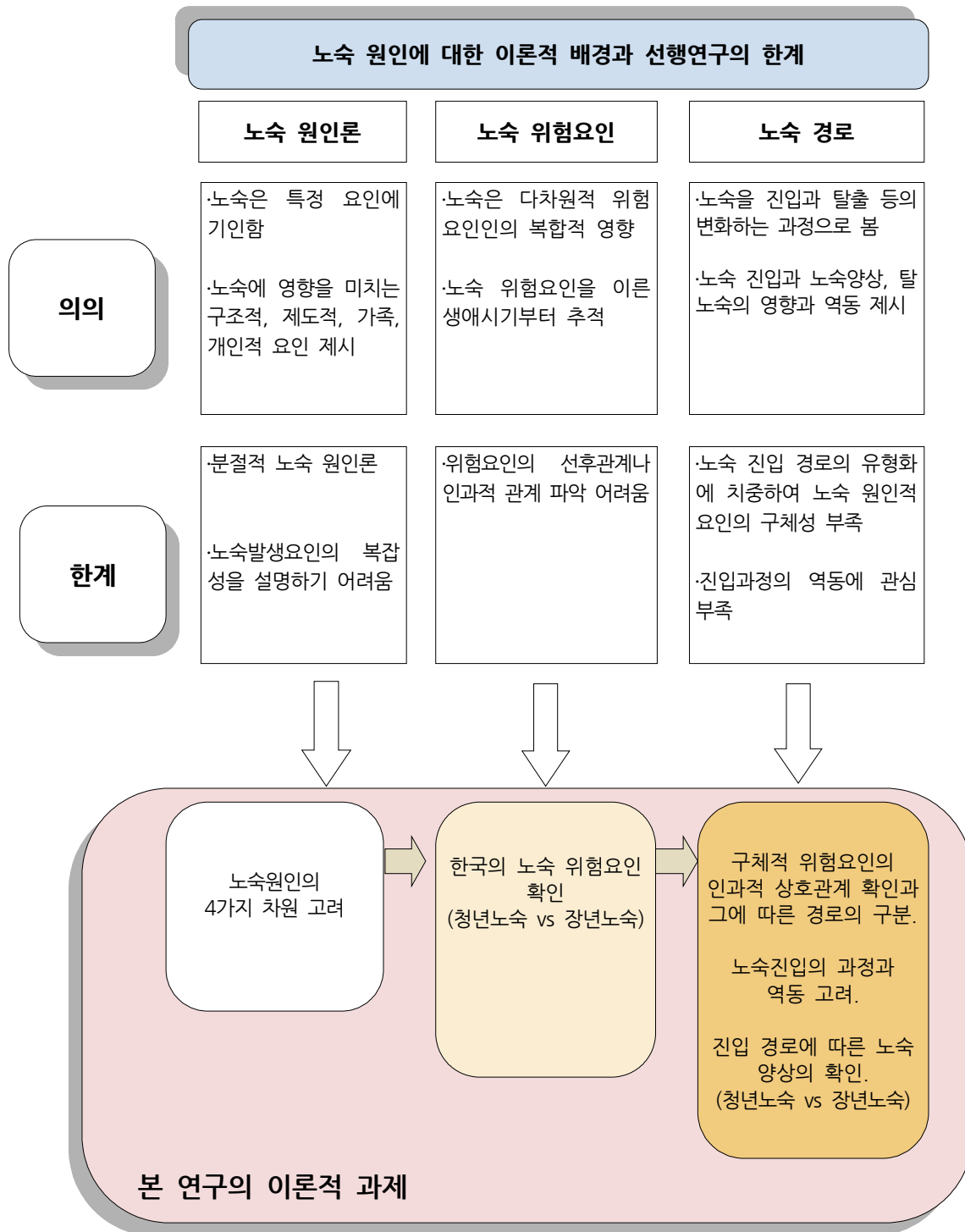
이상에서 검토한 바 지금까지의 노숙 경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노숙 경로 연구는 노숙 상태의 한 시점이 아닌 노숙진입, 노숙생활, 탈노숙의 과정으로 제시하여 총체적인 노숙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노숙 경로 연구는 여러 노숙 경로를 제시해 줌으로써 노숙의 다양성과 역동적 과정을 보여준다. 셋째, 주요 위험요인에 따른 노숙 진입 경로의 차이와 이후 노숙 과정이나 탈노숙의 결과를 연결 지어 상호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숙 경로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노숙의 복잡한 발생요인을 지나치게 축약하여 제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앞서 예에서 설명한 호주의 노숙 경로 연구들(Chamberlain and MacKenzie, 2005; Johnson, 2006; Chamberlain and Johnson, 2011)의 경우, 노숙인의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노숙을 만들어낸 원인을 연구자들의 해석에 근거한 구성(constructed)을 통해 설정하고 노숙의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숙인의 생애는 사실상 매우 여러 가지 원인적 요소들이 복잡성을 띠고 경험되며, 그러한 요인들의 중복으로 인해 노숙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구성한 노숙의 경로는 함축성과 명료성을 제공하지만 노숙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노숙의 발생 경로를 단순화시켜 구성하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실제로 구성된 각 경로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거나 모호하게 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가령, 약물 문제가 있던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빈곤 가정의 청소년이 부모의 영향으로 약물을 쉽게 접하는 삶을 살다가 부모가 경제적으로 주거를 부담하지 못함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면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는 어떤 경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례는 노숙인이 가지는 원인적 위험요인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구자가 어떠한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이 사례는 주거위기 경로, 혹은 약물중독의 경로, 혹은 가족해체의 경로에도 배치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숙 경로의 구분이 매우 복잡한 노숙의 원인을 명료하고 의미 있게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숙 경로 연구는 지나치게 연구자의 판단과 구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연구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노숙의 발생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

고 있다. 노숙의 각기 다른 유형을 제시하여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여 노숙 과정의 역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둘째, 더 나아가 노숙 발생의 인과관계에까지 접근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초기의 노숙 경로 분석 연구인 Fitzpatrick(1999)의 연구에 대해 Clapham(2003)은 노숙의 경로연구는 노숙의 역동적 속성을 강조하였고, 노숙인들이 노숙 상태를 들고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노숙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각각의 사례에서 모인 많은 정보는 분석 되었다기 보다는 묘사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노숙인 개인의 생애적 요소들을 다루면서 제약 조건으로서 구조적 요인들을 묘사하였으나 개인과 구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애 내용에 따라 규명된 경로를 보면 초점이 개인의 행위에 있었지, 그들이 영향을 받은 구조에 있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숙의 진입에 따라 사실상 경로의 유형을 결정하는 노숙 경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의 진입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어떻게 노숙으로 이어지는지 그 인과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청년 노숙인에 초점을 맞춘 경로 연구들은 특히 약물중독, 가족갈등, 방임과 학대, 가족갈등 등 대표적 주제에 입각한 노숙 진입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청년 노숙인들의 약물문제나 아동보호기관의 이용 등은 사회문화적으로 서구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이 노숙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엄연히 차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출 등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이용의 정도, 쉼터 등의 접근성 등 역시 서구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가질 것이다. 가령 영국의 경우, 단신 노숙인의 경우, 청년들보다도 오히려 노인층이 더 노숙에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영국의 경우 노숙인 서비스가 다수인 젊은 노숙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Fitzpatrick, et al., 2000:26).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의 가출 등의 노숙경험이 청년기에 연결되는 양상이나 과정이 서구와는 다를 것이며, 오히려 더 열악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방식의 성인노숙화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음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핵심 요인들을 추가로 도출하고, 이들의 새로운 조합의 패턴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그림 2-1〉 이론적 배경의 의의와 한계 및 본 연구의 이론적 과제

제 4절 청년노숙 선행연구

청년노숙인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 2-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노숙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고, 서구의 연구들은 주 대상을 19-25세 가량의 초기 청년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청소년기의 연장선상에서 10대와 더불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20-30대의 청년노숙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연구 2편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청년노숙의 원인 및 진입과정, 청년노숙의 생활과 탈노숙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서구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청년노숙인의 노숙 발생은 청소년이나 성인노숙의 위험요인의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원인적 요인군으로 요약된다. 첫째, 어린 시절 가족 안이 아닌 시설이나 위탁양육, 친척의 집에서의 양육과 가족구성원의 알콜이나 폭력 등을 포함하는 가족문제, 둘째, 유년시절의 신체적 성적 학대나 방임, 충격적 불행한 사건 등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셋째,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개인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Barker, 2012; Koegel, 1995; Martijin and Sharpe, 2006; Mayock et al., 2011b; Tyler, 2006; Tyler et al., 2006; Tyler and Schmitz, 2013).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노숙에 영향을 미친 위험요인의 뿌리는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되며, 이로부터 학대나 방임에 따른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여기에 비행이나 약물중독과 알콜 문제가 더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위험한 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victimization)를 입게 되어 우울 등의 2차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출이나 불안정한 주거생활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 청년들은 성인기 이전에 이미 그룹홈이나 위탁양육, 시설보호 등의 주거의 불안정한 이동을 경험하였고, 이것은 원가족의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10대 때부터 원가족에서 이탈하거나 시설보호에서의 이탈을 통해 노숙을 경험한 바 있고, 많은 경우 이러한 청소년 노숙은 초기 청년의 노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문제적 관계로부터 알콜이나 약물문제가 발현하거나 노숙 과정에서 이는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여러 연구의 청년노숙에 대한 설명은 Whitbeck 등(1999)이 현재 노숙상태인 13-20세 청소년 255명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미국 청소년의 가출과 노숙의 경로를 설명한 '위험증폭모델(risk amplification model)'로 집약적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위험증폭모델은 과거에 경험한 가족 내에서의 방임과 학대의 피해가 젊은 노숙인의 우울 등의 정신건강을 더 증폭시켜 악화시키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거리생활과 가출생활에서의 비행 또래와의 교제, 약물사용, 일탈적 성적(sexual) 행동은 노숙의 위험을 증폭

시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다. 거리생활의 적응은 초기 가족 내에서의 피해에 더하여 추가로 더욱 거리에서 피해(victimization)를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인 우울(depressive symptom)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Paradise 등(2001)은 이렇듯 여러 문제들의 조각을 맞춘 Whitbeck 등의 위험증폭모델의 출발은 역시 가족관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젊은이들의 노숙을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튀어나와 불로 튀어든 것’으로 묘사한다. 이들이 튀쳐나온 가정 역시 안락한 곳이 아닌 도피 대상이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노숙인들의 노숙 원인에 대한 서구 논의의 중심적 흐름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를 포괄하는 연령의 젊은 노숙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구에서는 20대 중반까지의 노숙인을 청소년노숙의 연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와 일본의 청년노숙의 연구는 서구의 청년노숙 연구와는 매우 다른 내용을 제시해 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넷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생활하는 40대 미만의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보고서(釜ヶ崎支援機構・大阪市立大學校, 2008)는 청년노숙인을 규정하면서 노숙인을 3개의 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층은 요세바 노동자(건설일용 노동자층에 기거하던 노동자), 즉 건설일용 노동자가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일자리를 잃으며 노숙인이 된 경우, 2층은 종신고용 형태였던 사람들이 해고되는 등의 이유로 노숙인이 된 경우, 3층이 불안정 취로와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자주 반복적으로 드나들다가 주거를 상실하면서 노숙인이 된 경우이다. 1층과 2층은 중장년 노숙인의 큰 두 가지 부류라면 3층은 청년노숙인을 지칭한다. 즉, 청년노숙인은 전국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건설일용 등 육체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중장년노숙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으며 한 가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몰두해 보지 못했고,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정한 삶을 개척해 나가거나 바꿀 의지나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젊은이들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체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의 돌봄과 양육의 부족, 편모가정에서의 성장, 따돌림 등의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첫 직장 구직이나 독립의 출발은 어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주 이직을 하면서 주거지가 불안정해 지거나 사기, 경제적 실패,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하면서 반복되는 좌절과 우울상태로 인해 무기력해져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세세한 현실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역부족인 모습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실패의 반복에 점진적으로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원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결국 사회적 관계의 미약이 노숙으로의 진입을 막는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일본의 청년노숙인들의 모습은 이후 빅이슈재팬 기금의 두 차례 기획조사 보고서(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0; 2012)와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한 르포 보고서(飯島 裕子・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조사는 50명의 20-30대 청년노숙인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2.3세로 70%가 30대이며, 거리노숙을 한 경험은 약 절반 가량이 6개월 미만이었으며, 2~3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절반의 수는 빛이 있었고, 양쪽 부모가 주 양육자인 경우는 절반에 머물렀고, 5명이 부친, 11명이 모친, 6명이 양육시설에서 자랐다. 최종학력은 50명 중 30명이 고교졸업 이상이였다. 이들이 부모의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취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의 관계악화가 12명이였다. 이들 중 정사원 경험을 가진 사람은 43명이나 되었는데, 반면 파견직 경험을 한 사람도 33명이였고, 무엇보다 절반 이상(27명)이 이직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생활보호나 자립지원센터 등의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다수였고, 취직활동 역시 38명이 조사 당시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들 50명의 청년노숙인을 몇 가지 유형 혹은 경로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경로는 첫째, 프리터, 니트 상태를 거쳐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 둘째, 아동양육시설을 거쳐 거리로 나온 경로, 셋째, 가족갈등으로부터 탈출한 경로, 넷째, 제조업파견을 반복 순회하며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가 그것이다. 일본의 청년노숙인들의 문제에는 원가족에서의 갈등과 어린 시절의 가정 밖 양육 등의 경로도 나타나지만 강조점은 불안정한 노동과 그에 따른 거주지의 이동, 그러한 과정에서 일, 주거, 의지를 상실해 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홀로서기를 하지 못한 채 주변화(marginalized)된 상태를 청년노숙으로 본 것이다. 도쿄의 청년노숙인 8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청년노숙인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한 김영(2013)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청년노숙인들의 문제를 불안정한 가족관계와 가족해체, 그리고 학창시절과 친구관계의 단절, 취업경험에서의 잦은 하향 혹은 수평 이직들을 묶어 ‘관계의 빈곤’으로 보고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원가정이 빈곤하지 않았던 사례에서도 결국, 가족 간의 관계의 빈곤은 이들의 삶이 노숙으로 이르게 하는 출발점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의 연구인 김현경·이옥자(2011)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는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청년노숙인들이 거리에 이르기까지 혹은 노숙 중에도 일을 통해 자립을 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는 상황에서의 절망과 성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노숙인의 거리노숙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을 찾고, 또 열심히 노숙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 낙인과 가족과의 단절 등을 통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좌

절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숙인들의 거리노숙 체험을 ‘인간되어감’이라는 성숙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20대 초반까지는 사회생활을 통해 독립을 시도하는 비교적 초기의 시기이므로 서구의 청년노숙인의 노숙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숙 이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문제, 즉, 청년기의 일 경험(work experience), 빚, 사업실패, 사기 등을 이유로 하는 노숙의 진입에 대해 거의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청년노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숙 이전의 원가정의 빈곤이나 가족해체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불행과 좌절, 불안정한 노동과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논의가 노숙 진입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 서구의 그것과 가장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숙 이후 청년들의 생활은 어떠한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숙진입 이후의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May(2000)는 청년노숙인의 노숙 과정 중의 거주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들은 노숙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간헐적 노숙(episodical homelessness)의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노숙인들은 다른 노숙인들에 비해 만성화 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노숙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숙을 경험하는 기간이 긴 것은 실제로는 노숙과 비노숙을 계속 반복하는 간헐적 노숙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거리나 노숙쉼터로 진입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방을 임대해 거리를 탈출했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 노숙쉼터로 진입하는 등의 이동이 잦고 그 횟수 역시 10회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노숙인들이 주거서비스나 쉼터 이용 등 노숙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연구들(Garrett, et al., 2008; Ryan and Thompson, 2013; Thompson, et al., 2006)은 젊은 노숙인들이 주거서비스나 쉼터 이용에 느끼는 장벽은 제공자 불신, 엄격한 규칙과 규제, 비현실적인 기대, 등록에 있어서 과도한 요구, 안전하지 않은 생활조건 등을 꼽고 있다. Ryan and Thompson(2013)은 18-25세의 청년노숙인 29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년노숙인들은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와 포레 지원네트워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을 어린애 취급하거나 희생자로 불쌍히 보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고, 나이 많은 노숙인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엄한 규칙을 적용하고 간섭과 통제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시킴에서 오는 불신으로 인해 쉼터나 주거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또한 이들에게 포레 지원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데 포레들을 ‘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안전과 감정적 지원의 공고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영향이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13〉 청년노숙인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발견

저자(연도)	연구제목	국가/대상	주요발견
김현경·이옥자 (2011)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	한국 20대부터 노숙을 한 30대 청년노숙인 5명	[노숙과정]청년기의 노숙체험의 세 가지 핵심경험은 일을 해도 빈곤함,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노숙인이 됨, 사회적 낙인과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자활을 향해 분투 노력함.
김영(2013)	관계의 빈곤과 청년의 홈리스화	일본(도쿄) 8명 20-30대 생애사	[노숙진입/과정]노숙이전 불안정한 가족관계 경험. 좋지 못한 학창시절의 기억, 사회적자본의 부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주변화된 삶. 노동시장퇴출과 주거불안정의 연결. 탈노숙도 긍정적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
釜ヶ崎支援機構、大阪市立大(2008)	若者不安定就労 不安定住居者 聞き取り調査 報告書(청년불안정취로, 불안정주거자 인터뷰조사보고서)	일본(오사카) 넛까페,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48명 40세미만	불우한 가정배경을 갖고 있으며 인적자본이 낮은 경우가 많고 유동적인 노동형태를 경험하면서 불안정 노동과 거처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생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서 일하지만 집값을 내지 못하거나 실직과 동시에 집을 잃은 경우가 많음.
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0)	若者ホームレス白書(청년홈리스백서)	40세 미만 50명 심층인터뷰	네 가지 경로 제시 첫째, 프리터, 니트 상태를 거쳐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 둘째, 아동양육시설을 거쳐 거리로 나온 경로, 셋째, 가족갈등으로부터 탈출한 경로, 넷째, 제조업파업을 반복 순회하며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
飯島裕子・ビッグイシュー基金(2011)	若者ホームレス(청년홈리스)	40세 미만 50명 심층인터뷰	월가족에서의 갈등과 어린 시절의 가정 밖 양육 등의 유년시절, 사회적 지지망이 되지 못하는 가족. 불안정한 노동과 거주지의 이동과 그러한 과정에서 일, 주거, 의지를 상실해 가는 독립 이행의 실패의 패턴
ビッグイシュー基金(2012)	若者ホームレス白書2(청년홈리스백서2)	40세 미만 50명 심층인터뷰	생활·일·거주장소·관계를 잇는 청년노숙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논의
Barker (2012)	Social Capital, homeless young people and the family	호주 15-25세 18명 심층면접	[노숙진입/과정]사회적 자본을 통해 청소년노숙인과 가족 간의 관계 검토.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규범, 신뢰, 상호호혜 등의 양질의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지 못함. 그로 인해 그들의 노숙이 강화됨. 가족 외부의 지원과의 관계 맺음에도 영향을 미침.
Koegel (1995)	Childhood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homeless adults	미국(LA) 1563명	[노숙진입]20대의 성인 노숙인일수록 어린 시절의 노숙 위험요인 경험을 더 많이 중복적으로 경험.
Gaetz and O'Grady (2002)	Making money: exploring the economy of young homeless workers	캐나다(토론토) 25세이하 서베이 360사례 인터뷰20사례	[노숙과정]기존 연구들은 노숙청소년의 일은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이것 역시 인구학적 특성과 노숙 시 주거상태, 건강, 약물사용의 정도에 따라 계층화(stratified) 되어 있음을 제시함.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일인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함 (ex. 합법 혹은 비합법적 일).

〈표 2-13〉 청년노숙인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발견(계속)

저자(연도)	연구제목	국가/대상	주요발견
Garrett 등 (2008)	Homeless youths' perceptions of services and transitions to stable housing	27명 15-24세 심층면접	[노숙과정] 젊은 노숙인들의 서비스 선택은 자율성과 거리생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자립감, 약물, 거리 혹은 거리생활 이전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비스이용과 주거로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Guadagno 등 (2013)	The homeless use Facebook?! Similarities of social network use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homeless young adults	303명 평균연령19.2세의 대학생과 86명의 청년노숙인	[노숙과정] 동일연령대의 대학생과 청년노숙인 그룹 간의 SNS사용 패턴과 정도가 매우 유사함. 정보격차가 사회경제적 계급 사이에 존재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재고 촉구.
MacKenzie and Chamberlain(2003)	Homeless careers: Pathways in and out of homelessness	호주 812사례 중 148명의 19-24세 청년노숙인	[노숙진입/과정] 청년노숙인의 50%가 10대 때 노숙을 시작
Martijn and Sharpe (2006)	Pathways to youth homelessness	호주 14-25세 35명 심층면접	[노숙진입] 노숙의 이전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노숙인과 경로에 중요하게 작용함. 노숙을 하게 되면 알콜 약물과 같은 문제가 증가함. 범죄는 노숙에 선행하지 않았으나 노숙인에게서 흔히 발견됨.
May(2000)	Housing Histories and Homeless Careers: A Biographical Approach	영국 43명 21-49세 (5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노숙과정:주거] 청년 노숙인들은 만성노숙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도 노숙과 비노숙을 반복하는 간헐적(episodic)노숙이 대다수임.
Mayock 등 (2011a)	Homeless young people, families and change: family support as a facilitator to exiting homelessness	영국 14-22세 30명 생애사인터뷰	[노숙진입] 가족은 청소년 노숙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탈노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신뢰와 의사소통의 회복을 통해 가족의 재결합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Ryan and Thompson (2013)	Perspectives on housing among homeless emerging adults	미국 18-25세 청년노숙 29명 심층인터뷰 근거이론	[노숙과정] 주거옵션에 대한 고려와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근거이론을 통해 규명.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와 포래지워드네트워크가 주거서비스 이용과 접근에 핵심적 역할을 함.
Tyler and Schmitz(2013)	Family histories and multiple transitions among homeless young adults	호주 19-23세 40명 심층면접	[노숙진입] 원가족 안에서의 가족문제들이 집을 나오도록 한 원인. 즉, 성인기 이전 그룹홈, 위탁양육, 시설보호 등의 반복적 이동 경험. 안정적 가정 경험 상실한 채 지속된 청년노숙인의 불안정한 상황
Thompson 등 (2006)	Insights from the street: Perceptions of services and providers by homeless young adults	미국(TX) 16-23세 60명 심층면접	[노숙과정] 노숙서비스 이용: 젊은 노숙인들은 자신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용기를 주는 친절한 서비스제공자를 따르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말하는 서비스제공자와 안전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환경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함.

또한 주거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료를 배신하는 것, 혹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오히려 쉼터나 주거의 낮은 환경에서 나이 많은 노숙인들과 있는 것이 친구들과 거리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두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서비스제공 직원들의 돌봄과 지지, 자신들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유연한 정책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Garrett, et al., 2008).

청년 노숙인들의 일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들 다수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득을 얻는 일도 공식적 일자리를 갖기 보다는 비공식적 일(고물수거, 중고품 팔기, 구걸 등) 혹은 비합법적인 일(혈액 매매, 매춘, 마약거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Ferguson, et al., 2012; Gaetz and O'Grady, 2002).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도 지적한다. 즉, 거리노숙으로 삶이 구조화되지 못하고, 지역이나 주거 장소가 자주 바뀔에 따라 지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통 등의 이동에 제약이 따르며, 정신질환이나 범죄기록, 또는 신분증이 없는 것 때문에 더욱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 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Ferguson, et al., 2012).

한편, 청년노숙인의 탈노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청년노숙인의 탈노숙은 서구와 국내 혹은 일본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거나 가족과의 끊어진 관계 회복을 통해 시작된다고 본다. 서비스 제공자나 복지사, 외부의 도움의 손길이 미쳤을 때, 비로소 노숙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김영, 2013; Barker, 2012; Mayock, et al., 2011a; Thompson, et al., 2006). 특히 Mayock 등(2011a)은 일반적으로 가족은 노숙의 원인적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재결합이 청년노숙인의 탈노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다수의 젊은 노숙인들은 신뢰와 의사소통에 기반한 가족과의 재결합이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해주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나 제도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물질적 사회적 자원 확보로 연결된다. 특히 Thompson 등(2006)은 젊은 노숙인들의 노숙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자원과의 접근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현 불가능한 기대치를 요구하거나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서비스자원은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년노숙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가 다룬 청년노숙의 진입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서구 중심의 연구는 청년노숙을 주로 20대 중반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로 청년노숙을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임, 집 밖에서의 양육 등으로 인한 희생과 트라우마를 가진 그룹으로 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정신질환이나 약물, 알콜, 비행,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청소년

기에 주거의 불안정성을 경험하였고, 이것이 초기 성인기 노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노숙 이후의 생활 역시 약물이나 정신질환의 문제, 위험한 성행동이나 범죄행동 등의 비행, 비공식적 혹은 불법적 소득활동 등에 치중하여 다루고 있다.

노숙 이후의 양상 역시 또래나 유사한 처지의 친구관계가 가족이나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면 일본의 청년노숙 연구들은 청년노숙인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인적자본이나 원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사람들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 이행을 피하지만 지속적인 실패와 외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노숙으로 추락하는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 노숙 이후의 생활은 주로 넷카페 등에서 생활하면서 서구의 청년노숙인들보다 더욱 고립된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청년노숙인의 노숙 과정에 대한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해주고 있고, 노숙 이후의 청년노숙인의 노숙 양상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이들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구조적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특히 20-30대 청년노숙인들이 기존의 장년노숙인과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구별되는 집단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노숙인과의 차별성 역시 모호하다. 특히 구체적으로 청년노숙인들이 장년노숙인과 어떠한 노숙 진입과정상의 특이점이 발견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단서는 청년노숙인은 장년노숙인에 비해 학력은 높으나 근로의 불안정성을 더 많이 경험한 그룹이며 사회생활의 경험이나 숙련도 등에서 취약한 집단이라는 정도이다. 노숙 이후의 양상 역시 중고령 노숙인 중심의 복지체계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제시된 바가 없다. 청년노숙의 두 가지 경로 역시 동시에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이들 그룹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나아가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제 5절 이론적 검토의 종합

10대의 청소년기와 구분하여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의 20-30대 젊은이로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빈곤의 증가 등을 초래하는 혹독해진 사회 경제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지연된 성인기로의 이행으로 더 오랜 시간 불안정한 성인모색기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독립을 지연함으로써 청소년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성인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통적 의미의 안정적 성인기 진입의 가치에 대한 부담과 거부 혹은 저항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젊은 사회 초년병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시적 맥락 속에서 목도되는 청년 노숙인은 거리노숙과 시설노숙인 등 공식적 노숙인 체계 속에서 포착되는 경우 전체 노숙인의 약 18%에 이른다. 그러나 노숙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비중은 더욱 커진다. 여러 연구들에서 청년들은 숨겨진 노숙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청년노숙인의 실체는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우선 청년노숙인의 노숙진입의 과정과 노숙 양상은 장년노숙인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노숙을 구분하여 다루지 않고 가출청소년의 연장, 혹은 성인노숙 전체에서 중장년노숙인들과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노숙 원인론과 노숙 위험요인, 노숙 진입 경로의 연구들 역시 뚜렷이 청년노숙과 장년노숙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젊은 노숙인들이 가지는 노숙 진입의 경로나 위험요인의 특성들은 장년과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년노숙의 노숙진입 경로는 중장년노숙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숙 진입 경로의 차이는 곧 노숙 과정의 차이를 가져온다. 호주의 성인노숙의 진입 경로와 노숙생활과 탈노숙의 과정에 대한 Johnson(2006)의 연구, Chamberlain and Johnson(2008)의 연구나 영국의 청소년노숙의 경로연구인 Fitzpatrick(1999) 등은 각각의 노숙 진입 경로에 따라 노숙 과정 중의 생활 양상이나 탈노숙의 과정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숙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가족의 존재 여부, 그들과의 관계나 복지제도, 노숙인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정도, 노숙생활을 하는 지역(대도시 혹은 지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노숙 진입 경로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노숙의 원인에 따른 분류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노숙진입의 과정을 지나치게 축약하였다. 따라서 노숙 위험요인, 촉발요인 규명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노숙 진입 경로를 밝히기 위해 이들 요인들의 선후인과성을 고려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노숙 진입과정의 패턴을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노숙 이후의 양상은 젊은 시기에 노숙을 시작할수록 더욱 만성화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숙 지원체계가 다수인 중고령 노숙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젊은 노숙인들이 노숙인 지원체계의 도움을 통해 노숙생활을 유지하거나 탈노숙을 지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더한다면 이들이 중고령노숙인과 구분되는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인다.

한편 청년노숙인의 노숙진입 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두 가지의 관점을 따른다. 첫 번째는 서구의 청년노숙에 관한 연구들의 결론을 따르는 관점이다. 청년노숙인들은 청년기 이전, 유년시절부터 가족과의 분리와 해체로 인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지속해 온 그룹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들의 노숙은 이미 청년기 이전부터 주거공간의 불안정성과 가출 등으로 예표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부적절한 양육과 학대, 방임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다. 이를 간단히 ‘희생으로 인한 청년노숙’으로 부르도록 할 것이다. 이 경로의 핵심적 경험은 청소년기의 가출로 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숙 경로 연구나 가출청소년의 위험증폭모델에서 제시된 바대로 청소년노숙 혹은 청소년기의 가출이 성인노숙의 주요 경로였음을 감안한 것이다. 청소년 노숙은 보호받던 가정이나 보호시설을 이탈하여 보호자가 없는 거리, 주거지가 아닌 다중이용시설, 친구 집 등에 기거해 본 경험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는 청년노숙을 일, 주거, 새로운 가정의 완성으로 대표되는 성인기의 이행의 과업 달성 과정의 지속적인 실패와 점진적 좌절의 결과적 상태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주로 일본의 청년노숙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청년이 독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진행되지만 적절한 경제적·인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채 지속되는 독립의 과정은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행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노숙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간단히 ‘독립이행 실패의 청년노숙’으로 부른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일정 부분 오버랩 될 수 있다. 즉, 희생으로 인한 청년노숙인들은 청년기에 진입하면서 이행의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또한 이행실패의 청년노숙인들은 유년시절 희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노숙의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되는 이행의 불안정성은 청년기 이전의 심각한 희생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른 이행 불안정성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노숙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별개의 경로로 설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서구의 청년노숙의 선행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한 것이므로 별도로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청년노숙의 진입 경로에 대한 잠정적인 이론적 연구 가설로 설정하고 각 노숙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이 연구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 경로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청년노숙을 이끌거나, 혹은 두 단계의 경로를 거쳐 청년노숙으로 귀결된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경로 이외의 경로 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이론적으로 발견되지 못한 경로의 발굴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본 연구는 개별 청년노숙인의 생애과정 속에서 경험한 위험요인을 통해 이것이 어떤 선후 맥락 하에서 노숙의 진입을 이끄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경로의 패턴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는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삶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거, 일, 복지서비스, 사회적 관계 내의 중심 경험을 드러내고 이것이 노숙의 진입 경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였던 청년노숙인의 두 가지 하위 그룹에게서 이러한 노숙 경로 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노숙인의 전 생애 과정에 대한 주요 경험, 즉 노숙 전후의 살아온 과정을 폭넓게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우선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제시하였던 노숙의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청년노숙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서구의 연구들에서 지적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요인은 없는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위험요인의 요소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경험의 여부, 사실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숙인이 경험한 주요 위험요인들은 노숙의 경로를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 작용한다. 그 소재들은 사건의 맥락과 선후 시간적 인과성에 따라 재배열되고 노숙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중요도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 찾아지는 패턴이 결국 노숙의 진입 경로가 될 것이다. 이렇듯 생애 사건과 경험의 선후 맥락과 상호 인과적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그것을 총체적이면서도 사실주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과정의 이야기를 노숙인에게서 자신의 생애 과정을 직접 말로 전달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노숙의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y)보다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노숙 경로 선행연구의 대다수가 심층 인터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method)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갖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함하는 행위(혹은 사건,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로(Stake, 2000), 그 사례를 가용 가능한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탐색, 묘사, 설명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Creswell 등(2007)은 사례연구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탐색

하고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포함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대해 기술하는 것' 이라고 했다. 대체로 사례연구 주장자들은 사례연구를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 즉, 맥락과 경계(boundary)가 구분(bounded)되는 사례(case)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사례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특성상 사례연구와 잘 어울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Yin(2008)은 연구전략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연구문제의 형태, 둘째, 행동적 사건에 대한 통제 여부, 셋째, 현재 사건의 강조이다. 사례연구는 연구문제가 '어떻게', '왜'의 형태이며, 사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셋째, 현재의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어떻게, 왜 라는 문제는 설명적(explanatory)이며, 현상의 발생이나 빈도 보다는 시간에 걸친 추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청년들이 왜 혹은 어떻게 노숙에 이르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노숙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에 걸쳐 추적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청년노숙 현상, 혹은 청년노숙인의 과거 경험들은 연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의 현상이므로 이를 직접 참여관찰하거나 해당 사회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 혹은 지원조직의 담당자, 서비스 제공자 등 청년노숙인을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주요 정보제공자들과의 인터뷰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례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설계 구조상 사례연구가 적절하다.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은 귀납적 속성을 가지며, 사실적이다. 이는 질적 연구방법의 궁극적 목적이 설명적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던 현상 혹은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Padgett, 1998:24). 반면 사례연구 방법은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에 대체로 부합하지만 연역적으로 이론 검증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특정 종류의 연구 자료, 가령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자료 활용에 개방적이라는 점, 특정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 외에도 복합사례연구 설계 등을 통해 사건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른 질적 연구 방법들과 차별점을 가진다(Yin, 2008; Ruban and Babbie, 2009:511).

물론 본 연구가 주요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하는 생애사 자료와 청년노숙인 인터뷰 자료는 기본적으로 노숙인의 구술을 통해 수집된 생애사의 특성을 가진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생애사 연구는 소수의 인물의 생애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루며, 연구대상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주요한 사건과 의미를 인식, 이해, 해석 하는지에 대해 일차적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Rubin and Babbie, 2009:539). 본 연구는 노숙인의 생애 과정의 경험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생애사 자료를 활용하지만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경험의 해석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물론 청년노숙인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별적 대상을 조명하여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사실에 더 가까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노숙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년들의 실업과 빈곤, 독립이행의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작금의 한국 사회의 맥락 하에 존재하는 ‘청년노숙이라는 문제의 발생과 노숙의 상황이라는 문제적이고 특별한 현상’을 사례로 규정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사례는 각각의 청년노숙인이라는 경계를 가진 하위 사례들로 구성되는 사례이면서, 중장년노숙과도 그리고 일반 청년과도 구분되는 맥락과 경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례로서 적합하다. 이러한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은 여러 전통 중 사례연구(Case Study)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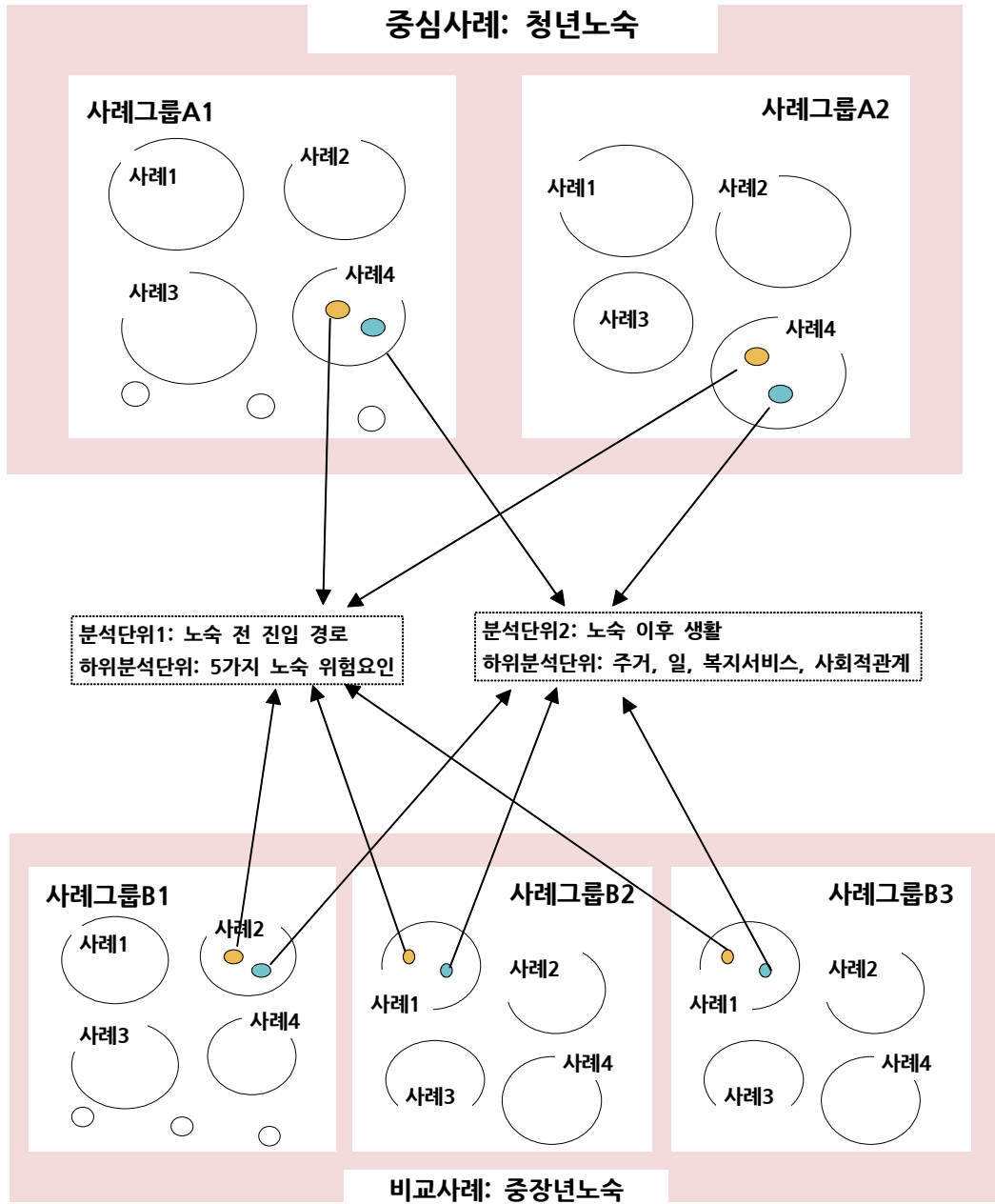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이론에 입각한 가설적 명제를 설정하고 사례가 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과 방법이 설계된 Robert Yin의 사례연구를 따르고자 한다. 물론 Stake(2000)나 Gerring(2004)과 같이 하나 혹은 소수의 ‘독특한 사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는 귀납적 방식의 사례연구를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Stake(2000)가 분류한 본질적 사례연구든, 도구적 사례연구든, 집합적 사례연구든 사례, 즉 사람, 사물, 혹은 현상이 가지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임에 틀림없다.²⁰⁾ 그러나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되어 온 청년노숙의 원인과 경로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성과들로 한국의 청년노숙 상황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지, 기존의 노숙 이론과 논의들에서 밝힌 노숙 대상들 중에서 청년노숙이라는 새로운 연구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진 독특한 집단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 자체에서 이론에 입각한 명제와 설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역적 방식의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Yin의 사례연구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사례연구는 독특한 단일사례를 충분할 만큼의 증거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밝히는 작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탐색(exploration)이나 묘사(description)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국한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Flyvbjerg, 2006). 그러나 사례연구는 연구 설계에 따라 이론적 기반으로 한 명제나 가설을 따른 설명(explanation)을 가능하게 한다. 복수의 사례를 통해 이를 반복 재현하여 보여줌으로써 이론의 명제나 가설을 검증하는 실질적 반복연구(literal replication)를 수행할 수 있고, 상충되는 경쟁명제나 가설에 대

20) 그 사례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라면 본질적(intrinsic) 사례연구,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이해하고자 했다면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 하나가 아닌 여러 사례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집합적(collective) 사례연구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해 차이점을 갖고 있는 가설들을 통해 다수의 사례들이 특정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이론적 반복연구(theoretical replic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Yin, 2008:93). 특히 이러한 경우, 사건이나 행위,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론에 근거한 설명(explanation)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청년노숙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탐색(explore)을 요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기술(illustrate)해야 할 필요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청년노숙의 진입 과정을 통해 노숙에 이르게 된 인과성을 설명(explanatory)해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연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사례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Yin의 사례연구는 단수의 사례보다는 복수의 사례를 가진 다중 사례연구를, 단일 분석단위보다는 복합 분석단위를 가진 연구를 지향한다. 앞서 설명한 하나 이상의 사례를 이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일반화(analytic generalization)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Yin, 2008:76-89). 분석적 일반화는 사례연구는 두 개 이상의 사례들이 같은 이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여 미리 알려져 있는 이론과 사례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다(Yin, 2008:66). 본 연구는 이러한 Yin의 사례연구 틀을 따를 때 가장 최적의 연구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년노숙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이론적 논의를 큰 축으로 한다. 따라서 그에 입각한 청년노숙 그룹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각각을 사례그룹 A1, 사례그룹 A2로 두었다. 각 사례 집단 속에는 실제 청년노숙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두 사례집단 내에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례들 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단위는 크게는 두 개로 나뉜다. 노숙 이전의 노숙 진입 경로, 그리고 노숙 이후의 생활이다. 다시 이 두 개의 분석단위는 하위 분석단위로 쪼개진다. 노숙 이전의 노숙 진입 경로에서는 노숙 위험요인들이 분석단위가 되고, 노숙 이후의 생활에서는 주거, 일, 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경험들이 하위 분석단위가 된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중심 사례인 청년노숙 사례 집단과는 별도로 다른 맥락에 존재하는 노숙 그룹인 중장년노숙 그룹을 별도의 사례로 두어 이론적 반복연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청년노숙과는 그 맥락적 조건이 상이한 중장년노숙인 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 청년노숙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와 청년노숙 사례집단의 특성이 중장년노숙 그룹과는 차이를 보여주어 이론적 반복연구를 수행하겠다. 이러한 사례와 분석단위의 설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본 연구의 사례와 분석단위 설계

주: 그룹A1-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사례. 그룹A2-청소년기 노숙 경험이 있는 청년노숙사례. 그룹B1-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중장년노숙사례. 그룹B2-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중장년노숙사례. 그룹B3-청소년기 노숙 경험이 있는 중장년노숙사례.

제2절 분석자료

Rosenthal(2004:49)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생애사 전체를 자료로 삼는 것은 근본적인 이론적 가정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다. 즉, 사회현상과 관련된 역사나 사회과학의 연구문제들은 사람들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은 이러한 사회현상의 의미를 생애의 전체적 맥락 하에서 해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며 청년노숙인들의 생애사 속에 나타난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청년노숙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숙 연구에 있어서 자전적 접근(biographical approach)은 한 사람이 노숙인이 되고, 노숙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지, 노숙에 남거나 혹은 노숙을 탈출하도록 하는 지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May, 2000).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진입과정과 노숙 이후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자료는 두 가지의 인터뷰 자료이다. 첫째는 2009-2011년도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노숙인 연구그룹이 수집한 60명의 「노숙인생애사자료」이고, 둘째는 연구자가 2016년 1, 2월간 수집한 「청년노숙인 인터뷰자료」이다.

1. 「노숙인생애사자료」

이 자료는 도시빈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기록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구인회 외, 2013).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13명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조사원과 8명의 대학원생 연구원, 7명의 교수급 연구진들이 서울에서 사는 다양한 연령의 남녀 노숙인들을 직접 만나 성장기의 경험, 원가정에 대한 배경, 청소년기, 사회생활, 노숙으로 이르게 된 과정, 노숙 이후의 삶 등 노숙인의 노숙 이전 그리고 노숙 이후 생애 전반에 관한 총체적 내용을 반구조화된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 중 이 노숙인 생애사 조사의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구의 실제 행정관리, 조사원 교육과 훈련, 조사 진행, 조사 결과물 정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등 연구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였고 직접 참여하였다.

조사원들은 노숙인 생애사 자료의 수집을 위해 모집되었고 약 1개월 간의 강의, 독서, 토론, 이후 1개월간 노숙인 기관에서 현장실습과 야간 거리노숙 현장 참여관찰 등을 수행하면서 인터뷰 대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준비 작업을 가졌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 기법, 생애사 연구에 대한 이해, 자료

정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인터뷰 자료에 대한 연구원의 사례회의와 피드백, 연구진과의 정기적인 사례회의가 수행되었다. 조사원들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본 프로젝트를 위한 풀타임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갔다.

인터뷰 대상자는 조사원들이 노숙인 기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노숙인들을 직접 섭외하는 방법, 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담보호센터에 인터뷰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면접에 참여한 노숙인이 동료 노숙인을 소개해 주어 참여하게 된 스노우볼링 방법, 노숙인지원 기관의 실무자들의 소개로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참가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외했다. 섭외된 노숙인에게는 사전 인터뷰에서 인터뷰의 내용과 과정, 내용 비밀보장, 내용의 활용 등 인터뷰 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인터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품을 전달하였다.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서울대학교 IRB의 심의(IRB No.0911/001-001, IRB No.1101/001-002)를 얻었다.

인터뷰는 1명의 사례당 3회를 기준으로 진행하였고 2명의 면접자가 인터뷰 회당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녹취되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면접 대상자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의 소지품, 방 전경, 그들의 자필 메모나 일기 등 수집 가능한 자료들에 접근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에 남김으로써 인터뷰 대상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원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회차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 인터뷰를 수행한 조사원과 슈퍼바이저(대학원생 연구원)가 함께 인터뷰의 내용을 점검하고, 불분명하거나 추가로 물어보아야 할 것에 대한 인터뷰 계획을 수립하고 각 인터뷰 회차마다 인터뷰 상황과 분위기, 피면접자의 비언어적인 태도, 면접자의 인터뷰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덧붙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동안 전체 연구진들과 함께 사례발표 세미나를 통해 사례의 특성과 인터뷰 당시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이는 피면접자의 인상카드와 면담카드 등으로 별도로 정리하였다. 녹취록 역시 녹취 흐름에 따라 핵심 내용을 녹취록 중간에 별도로 기입하여 핵심적인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더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4, 5차 등의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 프로젝트의 초기 준비단계에서 종결단계에까지 참여하였고 조사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선임연구원의 역할을 맡았다. 본 자료는 연구 프로젝트의 종결 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산하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기탁된 자료를 사용 신청을 통해 확보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숙인 생애사 자료 중 청년노숙인의 자료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주목하였던 노숙의 현재 상태가 아닌 노숙인의 어린 시절과 노숙 이전의 다양한 노

숙 위험요인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어 기존 노숙의 위험요인 연구들이 양적 자료로 위험요인을 파악한 것에 준하는 위험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의 구술을 통해 이들이 노숙에 이르게 된 과정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노숙의 촉발 요인 역시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생애과정에서 일련의 시간의 선후관계를 가지므로 사건의 인과성을 파악하는데도 유리하다.

또한 노숙인 생애사 자료는 현재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터뷰 이므로 노숙 이후의 양상에 대한 내용을 얻는 것도 용이하다. 이들의 주거, 서비스 이용, 일, 사회적 관계는 노숙인 생애사 자료수집 당시에도 이들의 노숙생활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알고자 하는 노숙 이후의 양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청년노숙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부는 종단적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이 경과한 이후 노숙의 양상을 추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노숙인 생애사 자료는 일정 시점 이후 이들을 추적하여 인터뷰하는 종단적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거나 탈노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는 노숙인의 생애를 회고적(retrospective)으로 질문함으로써 노숙 이전의 유년시절부터 추적하여 위험요인연구가 중요하게 다루는 어린 시절의 노숙 위험요인들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청년노숙을 경험한 중장년노숙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20-30대 청년노숙인 자료에서 단절되어 나타나지 않는 청년노숙인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대리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청년 노숙인의 유년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까지의 노숙 경험을 연결 짓도록 함으로써 청년노숙을 중심으로 노숙인의 생애시기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노숙인생애사자료는 모두 60명의 노숙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중 활용한 자료는 이 중 청년노숙인 13명, 중장년노숙인 38명의 자료이다. 여성노숙인 4사례, 79세 고령의 노숙인 1사례, 인터뷰의 성실성이 낮은 2사례 등을 제외한 51사례를 분석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

2. 「청년노숙인 인터뷰자료」

노숙인생애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노숙인 13명의 사례가 이론적으로 검토했던 청년노숙인의 하위 두 그룹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청년노숙인 사례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기존의 생애사 자료의 인터뷰 내용 중 본 연구의 내용에 부합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20-30대 청년노숙인이라는 잘 보이지 않는 연구대상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노숙인들이 가장 많은 서울역 인근의 대표적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한 곳과 정신질환과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 한 곳을 접촉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 이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대상자 발굴에 협조를 부탁하였고 동시에 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숙인 기관 여러 장소에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²¹⁾ 접촉한 노숙인지원 기관은 지원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영등포 지역 2개소, 서울역 인근 추가 1개소로 확대되었고 총 5군데의 시설을 기점으로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다. 본 연구의 청년노숙인의 조작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성.

둘째, 청년기에 안정적인 거처가 없이 거리에서 하루 이상을 보내거나, 노숙인 숙박 시설(응급시설, 일시보호시설, 생활시설 등),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에서 자거나, 친구나 친척집에 얹혀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 무료급식소, 무료진료 등 노숙인 서비스를 경험해 본 사람.

셋째, 고시원, 여관, 쪽방 등 기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불안정한 상태의 거주형태를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한 자.

연구대상자들은 기관 실무자를 통해 권유받아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공고를 보고 직접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연구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연결된 인터뷰 지원자는 연구자가 사전에 만나 연구와 조사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 함께 읽으며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에 대한 구두동의를 표하는 지원자에게 별도의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쳐 연구 참여를 약속하였다. 인터뷰는 총 2회기였고 한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개별면담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뷰는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후 전사(傳寫)작업을 거쳤다. 본 조사 역시 서울대학교 IRB의 심의(IRB No. 1512/002-008)를 얻었다.

〈표 3-1〉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조사의 조사 특성을 정리하였다. 두 조사의 인터뷰 참여 경로는 대체로 유사하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기관의 소개, 참여자 소개, 조사원의 직접 섭외로 구분될 수 있다. 인터뷰 당시의 거주지는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21) 조사 초반의 계획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연구대상자들을 확보하고자 노숙인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년노숙인들이 자주 가는 PC방, 만화방, 고시원 등에도 모집공고를 게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청년대상자만 인터뷰를 진행해도 당초 계획했던 10명을 훨씬 초과하였고, 추가로 11명을 더 인터뷰 하게 되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 대상자 섭외 방식의 다원화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섭외된 청년노숙인들의 현 주거형태가 시설 거주자에 국한되지 않았고 PC방 거주자, 거리노숙 중인 자, 고시원 생활자, 쪽방 생활자, 월세집에 기거하는 자 등 다양한 상황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을 기점으로 한 연구대상자 모집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다.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노숙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이용하는 일시보호시설과 생활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지 경험을 통해 이들이 비단 생활시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 쉼터,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쪽방 등 매우 다양한 거처 사이를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당시 거주지 중 노숙인 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던 사람들의 거주지는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을 칭할 때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쉼터’로 통일하였다. 쉼터에는 이용시설인 일시보호시설과 생활시설인 요양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 청년노숙인 조사 특성

노숙인생애사조사				청년노숙인 인터뷰조사			
사례 번호	인터뷰 참여경로	인터뷰 당시 거주지 ²²⁾	인터뷰 시점	사례 번호	인터뷰 참여경로	인터뷰 당시 거주지	인터뷰 시점
4	조사원 직접섭외	쉼터A	2009.10	n1	기관소개	쉼터J	2016.1
7	기관소개	쉼터E	2009.10	n2	기관소개	쉼터J	2016.1
12	자발적참여	A역	2009.11	n3	기관소개	쉼터J	2016.1
15	참여자소개	쉼터A	2009.11	n4	기관소개	고시원	2016.1
16	참여자소개	쉼터A	2009.11	n5	자발적참여	쉼터A	2016.1
19	자발적참여	쉼터A	2009.10	n6	자발적 참여	PC방	2016.1
20	참여자소개	쉼터A	2009.11	n7	기관소개	쪽방	2016.1
22	기관소개	쉼터I	2009.12	n8	자발적참여	쉼터D	2016.1
29	참여자소개	쉼터A	2009.12	n9	자발적참여	쉼터A	2016.1
38	참여자소개	쉼터A	2010.2	n10	자발적참여	쉼터A	2016.1
40	업주소개	PC방	2010.1	n11	기관소개	쉼터A	2016.1
42	업주소개	PC방	2010.2	n12	참여자소개	쉼터A	2016.1
62	기관소개	매입입대주택	2011.3	n13	자발적참여	쉼터A	2016.1
				n14	자발적참여	쉼터C	2016.1
				n15	기관소개	동료 월세방	2016.1
				n16	기관소개	쉼터G	2016.1
				n17	자발적참여	쉼터D	2016.1
				n18	참여자소개	쉼터D	2016.1
				n19	자발적참여	고시원	2016.2
				n20	기관소개	쉼터D	2016.2
				n21	자발적참여	쉼터D	2016.2

주1: 인터뷰참여경로의 ‘기관소개’는 인터뷰 대상자를 기관이 추천해 준 경우도 있으나 다수는 실무자가 청년노숙인에게 인터뷰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여 참여하게 된 경우였다.

22) 쉼터의 이니셜에 대한 정보와 쉼터의 유형은 〈부록1〉에 정리하였다.

제3절 분석방법

1. Yin의 사례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Yin(2008)에서 제시한 사례연구의 다섯 가지 분석기법²³⁾ 중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내의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그리고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의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사례통합(Cross-case synthesis) 분석전략을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패턴매칭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과 이론적 명제를 통해 미리 예측했던 패턴을 비교하는 것이다. 설명하기는 패턴매칭의 일종으로 특히 예측된 인과적 연결이 실제 그러한가를 밝힐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설명하기는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Yin(2008:199)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 첫째, 정책이나 사회적 행동에 대해 초기의 잠정적 가설 또는 명제 등 이론적 진술을 제시
- 둘째, 최초의 사례분석 결과를 제기한 가설이나 명제와 비교
- 셋째, 가설이나 명제를 수정
- 넷째, 사례의 다른 세부사항들을 수정한 가설이나 명제와 비교
- 다섯째, 수정한 가설이나 명제를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더 많은 사례들과 비교
- 여섯째, 이러한 과정을 필요한 만큼 반복

우선 노숙 이전의 진입과정은 패턴매칭의 설명하기 분석과정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노숙의 위험요인의 결합에 대한 이론적 예상 패턴을 설정하고 개별 분석 사례를 통해 관찰된 위험요인의 패턴이 미리 예측된 패턴과 얼마나 매치되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청년노숙이나 중장년노숙인 그룹이 가지는 위험요인과 그 패턴에 대한 잠정적 가설을 설정하거나 예측된 패턴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기 분석 방법 전에 복수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노숙의 진입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분석방법을 따라 위험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노숙인의 생애사 구술 중 생애과정에 경험한 위험요인들을 주제별로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노숙인의 경험의 맥락을 따라 위험 사건들의 인과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연대기 순서대로 배열

23) Yin(2008)이 사례연구의 분석기법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는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 논리모델(Logic model), 사례통합(Cross-case synthesis)이다.

하여 노숙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패턴화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순차적으로 다음 사례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의 패턴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사례집단에서 도출될 수 있는 노숙에 이르는 위험요인의 패턴, 즉 경로를 도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년노숙의 진입 경로나 청년노숙의 진입 경로가 단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구분지어지는 몇 가지의 패턴을 찾아내어 이러한 패턴을 각 그룹의 노숙 진입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장년노숙그룹과 청년노숙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는 사례 간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년노숙과 비교되는 청년노숙의 진입 경로의 차이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편 노숙 위험요인의 선후 관계는 연대기적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연대기적 분석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를 조사한다는 중요한 분석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분석이다. Yin(2008:206)은 인과적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한 사건이 다른 사건 보다 항상 앞서 발생하고, 둘째, 한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다른 사건에 뒤따라 발생한다. 셋째, 한 사건은 일정하게 예정된 시간의 경과 후 다른 사건을 뒤따를 수 있다. 넷째, 한 사례연구에서 일정 기간은 그 기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규정되고, 그 사건은 연구의 다른 기간에 발생한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 중 하나 이상 조건에 만족하고 다른 조건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인과적 추론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내적 타당성의 문제가 검토되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례통합(Cross-case synthesis) 분석기법은 앞서 <그림 3-1>의 연구 설계에서 살펴본 다중 사례연구에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사례를 통합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연구자가 연구한) 독립적으로 수행된 개별적 사례연구를 조합하거나 혹은 동일 연구가 여러 개의 사례로 구성된 경우 사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Yin, 2008:216-217). 이 분석 기법에서는 계량적 기법의 사용도 무방한데 계량적 분석을 할 만큼 충분히 많지 않다면 개별사례의 자료를 테이블을 사용하여 집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이런 방법은 사례별로 갖고 있는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례들이 공유하는 유사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유형’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생활 부분에서는 앞의 분석 기법들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통용되는 분석의 절차를 따랐다. 분석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노숙 이후의 생활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던 노숙 이후의 거주지, 일, 복지서비스의 이용, 사회적 관계 각각에

대해 사례별 인터뷰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는 해당 주제에 대해 모인 각 사례로부터 추출된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인 경험과 내용을 모으고 각 주제에서 중심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는 도출된 핵심적 경험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각 사례들이 가지는 공통된 혹은 구별된 패턴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연대기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엄격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Padgett(2001)이 제시한 여섯 가지 전략에 대해 심사숙고 하였고 제약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였다. Padgett는 이를 ‘연구의 엄격성’ 전략이라고 하였다. 여섯 가지 전략은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prolonged engagement), 둘째, 다원화(triangulation), 셋째,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넷째,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다섯째, 예외적 사례분석, 여섯째, 감사자료(audit trail) 남기기 등이다.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은 본 연구에서 가장 달성하기 힘든 전략이었다. 노숙인들의 특성상 연락이 끊기거나 주거지가 일정치 않는 등 불안정한 면도 있었고,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조사원이나 연구자가 노숙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들 때문에 사실상 인터뷰 상황 이외의 만남이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첫 번째 자료인 「노숙인생애사조사」 당시 조사원들은 가급적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특정 노숙 현장과 노숙 관련 기관을 정해 참여관찰을 1개월 이상 수행하였고, 그 가운데 참여자와 얼굴을 익히고 말을 걸어 노숙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인터뷰 대상자로 섭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청년노숙인 인터뷰조사」의 경우는 라포 형성에 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조사기간이 짧았고 두 차례 인터뷰 일정 역시 간격이 좁았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참여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안부를 묻거나 필요한 경우 이들과 조사 이후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통해 미흡했던 내용의 보완과 수정을 통해 청년들의 경험을 더 세밀하게 채울 수 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전략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두 번째, Padgett(2001:70)은 ‘시각 또는 관점의 수렴(convergence)’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원화 전략을 이론의 다원화, 연구방법의 다원화, 관찰자 다원화, 자료의 다원화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노숙이라는 사례를 두 방향의 이론으로 보도

록 설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년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 논의를 가져와 이것이 청년노숙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의 다원화에서는 본 연구가 주로 다루는 자료가 질적 인터뷰 자료이고 자료의 분석 역시 질적 분석의 기본적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청년노숙이라는 사례에 하위 사례로 청년노숙인 개개인의 사례가 내포(embedded)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의 특성과 패턴을 정리하는데 있어 수량적 분석의 접근을 적극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Yin의 사례연구 분석방법인 연대기적 분석, 패턴매칭과 Stake의 사례연구 분석방법인 중심주제에 대한 핵심적 의미 찾기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다원화 역시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청년노숙, 혹은 청년에 관한 기사, 청년들이 경험한 위험요인에 대한 동영상 자료, 정부보고서, TV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자가 가진 청년노숙 사례에 대한 관점에 주관적 부분 중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인터뷰 자료에서 미진한 정보가 없는지 등을 민감성을 가지고 점점 보완하였다. 관찰자의 다원화는 청년노숙인 인터뷰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노숙인 생애사조사의 경우에는 달성할 수 있었다. 조사당시 조사원은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었고 인터뷰 과정과 종료 이후에 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회의를 거치면서 인터뷰 자료에 대한 1차 요약본을 완성하였고 인터뷰 전사자료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 역시 자료 내에 수록하였다. 연구자는 전사자료와 전사자료의 중간 중간에 있는 요약자료, 3차 인터뷰 전체를 요약 정리한 요약자료, 그리고 인터뷰 이후에 조사자들이 집필한 인터뷰 후기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 과정에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예외적 사례를 연구하는 대신 청년노숙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다수인 중장년들의 노숙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장년 노숙의 사례를 비교 사례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청년노숙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청년노숙이라는 경험의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장년노숙 사례 역시 청년노숙을 경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청년노숙의 사례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재현 가능성(transfera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 녹취파일, 녹취 전사자료, 녹취 당시의 메모 자료, 전화 통화, 카카오톡 채팅 파일, 분석과정에서 생산한 분석 단계의 자료 등을 보관하였고 설명과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가급적 본문과 부록에 담고자 하였다.

3. 연구윤리 준수

본 연구의 대상자인 노숙인들은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stigma) 역시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를 조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를 이롭게 할 목적(beneficience)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respect)하며, 정의(justice)에 입각한 정신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다(National Commission, 1978). 세부적으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조사인 「노숙인생애사조사」, 「청년노숙인인터뷰조사」의 자료 수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두 조사의 연구 수행에 있어 서울대학교 IRB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한 일련의 활동을 관리하고 직접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두 조사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윤리 준수의 핵심은 이들에게 연구에 대한 고지된 동의, 혹은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과 비밀보장(confidentiality)에 관한 것이다. 우선 고지된 동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안내한 연구와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최초 구두 접촉을 통해 인터뷰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인터뷰의 내용, 참여 수락 후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된 설명서를 낭독하며 설명하였고 질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연구와 연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참여에 자발적인 동의를 하는 참여자에게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동의서와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본인의 연구 참여 혹은 불참 여부가 기존에 받고 있는 노숙인 시설 이용과는 무관하며 아무런 해가 없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참여 도중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으며, 그 경우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모두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청년노숙인 인터뷰조사」의 경우,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 전 참여자에게 사람의 실제 이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령, 주소나 전화번호, 구체적 지명) 등은 인터뷰 도중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미리 안내하였고,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를 말한 경우에도 연구자는 그러한 정보를 가명 처리 하거나 삭제한 후 저장할 것임을 밝혔다. 인터뷰 역시 외부와 차단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인터뷰는 이용 중인 노숙인 기관과 무관하며 인터뷰의 내용은 기관의 실무자 등과 공유되지 않음을 알렸다. 「노숙인생애사조사」의 경우는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공원, 기관의 상담실, 참여자

의 방, 면담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 학교 회의실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인터뷰 내용의 비밀보호를 위한 인터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조사는 연구 이후 1차적으로 연구팀에 의해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처리를 수행하였고, 2차로, 자료를 이관 받은 기관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질적 연구 데이터 관리팀이 사람이름, 기관명, 지역이름 등 고유한 정보를 모두 기호 처리하는 작업을 거쳤다.²⁴⁾ 두 조사 모두 인터뷰를 2~3회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 차수의 인터뷰 전에 지난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참여자로 하여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 인터뷰 종료 시점에 본 인터뷰에 참여한 소감 등을 청취함으로써 조사 진행에 있어 내용의 신뢰성과 참여자의 몰입, 감성, 등을 체크하여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참여자의 확인을 도모하였다.

제4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구조화하여 <그림 3-2>와 같이 연구 설계를 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그룹은 인터뷰 시점 당시 20-30대 청년노숙인 경우 그룹A, 40대 이상의 장년인 경우 그룹B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청년노숙인 중 20-30대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은 그룹A1으로 이들은 청소년노숙의 경험이 없다. 청소년기 노숙 경험이 있는 그룹은 별도로 그룹A2로 설정한다. 그룹B 역시 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은 그룹B1으로, 청년기부터 노숙에 진입하여 장년에 이른 경우는 그룹B2로 설정하였고, 청소년기 노숙 경험이 있는 장년노숙인은 그룹B3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경우 청년노숙의 진입 경로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한 검토이므로 청소년노숙의 경험이 없이 청년노숙만을 경험한 그룹A1과 청소년노숙을 경험한 그룹A2와의 비교로 각각의 노숙 진입 경로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청소년노숙 경험의 유무가 이후 청년노숙의 노숙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2의 경우 현재 청년노숙인인 그룹A1과 현재 장년노숙인인 그룹B1의 노숙 진입 경로 비교, 노숙이후의 생활 비교는 각 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를 파악하고, 청년노숙과 장년노숙 자체의 노숙 진입과정 비교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 그룹B1과 그룹B2의 비교는 장년노숙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년노숙의

24) 특히 「노숙인생애조사」 자료의 경우, 노숙인 생애사 연구가 종료된 후, 노숙인에 대한 연구 발전과 가치 있는 자료의 공유를 위해, 서울대학교 IRB의 허락을 얻은 후 절차에 따라 인터뷰 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하였다. 노숙인생애사 인터뷰의 내용은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연구책임자인 구인회 교수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험 유무가 장년노숙의 노숙 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미쳤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노숙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그룹A1과 그룹B2와 같은 경우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청년기 노숙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룹A2와 그룹B3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현재의 청년노숙인만을 다룰 경우 자료가 청년기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노숙 이후의 생활이나 탈노숙의 역동, 노숙의 장기화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수행할 경우, 생애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시점 이전의 사건과 경험에 대한 회고로 종단성을 확보하고, 장년노숙인을 분석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현재 시점 이후의 사건과 경험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연구 자료의 종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문제	청소년기 10대 이하	청년기 20-30대	중장년기 40대 이상	연구 내용
연구문제 1				1. 노숙 진입 경로 :노숙 위험요인 종류 와 선행 인과과정
연구문제 2				2. 노숙 이후 생활 :노숙이후 거주, 일, 복지서비스이용, 사회적 관계
분석대상				분석자료
A1그룹	20-30대에 노숙을 시작한 청년노숙인 그룹			노숙인생애사자료 5명 청년노숙인터뷰자료 9명
A2그룹	청소년노숙을 경험한 청년노숙인 그룹			노숙인생애사자료 8명 청년노숙인터뷰자료 12명
B1그룹	청년노숙을 경험하지 않은 장년노숙인 그룹			노숙인생애사자료 10명
B2그룹	청년노숙을 경험한 장년노숙인 그룹			노숙인생애사자료 6명
B3그룹	청소년노숙을 경험한 장년노숙인 그룹			노숙인생애사자료 8명

〈그림 3-2〉 청년노숙 경로 연구의 설계

제4장 청년노숙인의 주요 특성과 위험요인

제1절 청년노숙인의 주요 특성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대로 청년노숙인의 하위 두 그룹은 각각 독립이행 문제를 가진 청년노숙인(A1그룹)과 청소년기 노숙을 경험한 청년노숙인(A2그룹)으로 상정하였다. 즉 두 그룹의 구분은 청소년기인 10대에 노숙을 경험했는가의 여부였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노숙(youth homelessness)은 19세 이전 초·중·고교 시기에 하루 이상 보호자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가출청소년의 개념(이소희 외, 2005:404)에 앞서 살펴본 광의의 노숙 개념에서 거론되었던 노숙 장소들에서 생활한 경험을 더한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²⁵⁾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청년노숙인 분석 대상은 《노숙인생애사》 자료의 60사례 중 13사례와 《청년노숙인 인터뷰》 자료의 21사례를 합쳐 총 34사례였다. 이 34명의 인터뷰 자료에서 청소년노숙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두 하위 그룹을 구분하였는데 <표 4-1>에 제시된 바대로 34명 중 14명이 A1그룹, 20명은 A2그룹에 배치되었다. 두 조사에서 모두 A2그룹, 즉 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청년들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 조사별 청년노숙인 사례수

	총 청년노숙인 사례수	A1그룹	A2그룹
2009-2011 노숙인생애사조사	14	5	9
2016 청년노숙인 인터뷰조사	20	9	12
계	34	14	20

먼저 <표 4-2>를 통해 전체 청년노숙인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령분포는 24세가 2명, 20대 후반이 6명으로 기존 연구들이 청년노숙인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왔던 20대는 34명 중 8명에 그쳤다. 한편 30대 전반이 12명, 30대 후반이 14명으로 총 26명이 30대의 청년들이었다. 또한 <표 4-3>에서 조사 시점의 연령과는 별도로 전체 청년노숙인의 노숙진입 연령을 살펴보았다. 특히 A2그룹은 모두 10대 시기에 최초 노숙경험을 하였으나 10대 노숙이 그대로 청년기로 이어진 것은 4사례(n2, n5, n8, n9)로 확인되어 19세 미만 노숙 진입자는 4명이었다. 나머지 사례들은 비노숙 상태로 한 동안을 보내다가 청년기의 시작인 19세 이후 청년노숙 상태로 재진입하였다. 이 경우 6사례는 19세부터 24세 사이에, 13사례는 25-29세 사이에, 12사례는 30대 이후

25)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친척집을 전전하였다든지 거리에 머물렀다든지, PC방 등에서 생활하였던 경험을 청소년 노숙의 경험에 모두 포함하였다.

노숙에 진입하였다. <표 4-3>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시점의 청년노숙인들은 다수가 30대였지만 이들의 67%는 이미 30대가 되기 이전에 노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노숙진입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청년노숙인의 주요 특성

일련 번호	사례 번호	연령	학력	군복무	최초 노숙경험	청년기노숙 재진입연령(A2)	노숙기간
A1 그룹 (20-30대에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인)							
1	7	38	중 중퇴	X(면제, 학력)	28		10년
2	12	31	대 졸	O(현역)	29		2년
3	19	36	대 졸	X(면제, 결핵)	36		5개월
4	22	33	고 졸	O(공익)	30		3년
5	38	38	고 중퇴	X(면제, 5급)	28		9년
6	n1	28	고 졸	O(현역)	27		1년
7	n4	31	대 중퇴	O(현역)	25		4년
8	n6	34	전문대 졸	X(면제, 게임중독)	34		1개월
9	n7	34	대 중퇴	O(공익)	31		4년
10	n10	28	대 졸	O(전문하사)	26		2년
11	n11	35	고 졸	O(현역)	24		11년
12	n12	38	대 졸	O(현역)	37		1개월
13	n13	33	고 졸	O(공익)	32		20일
14	n18	36	초 졸	X(면제, 보육원)	27		9년
평균연령: 33.7세, 평균노숙진입연령: 29.5세, 평균노숙기간: 3.9년							
A2그룹 (10대에 청소년노숙을 경험한 청년노숙인)							
1	4	27	전문대 졸	X(면제, 질병)	14	27	7개월
2	15	37	고 졸	O(방위)	16	36	6개월
3	16	26	대 중퇴	O(현역)	15	25	8개월
4	20	37	고 졸	O(현역)	12	31	5년
5	29	34	고 중퇴	X(면제, 복역)	14	24	11년
6	40	24	고 졸	X(면제, 부모부재)	11	21	3년
7	42	34	고 중퇴	O(현역)	11	33	1년
8	62	39	중 중퇴	X(면제, 학력)	14	32	6년
9	n2	36	중 중퇴	X(면제, 학력)	10	16	10년
10	n3	28	전문대 졸	O(방위)	18	25	3년
11	n5	33	고 중퇴	X(면제, 부모부재)	18	18	5년
12	n8	37	중 졸	X(면제, 학력)	14	18	8년
13	n9	30	고 중퇴	X(면제, 장애)	16	17	12년
14	n14	26	고 졸	X(면제, 장애)	12	23	3년
15	n15	32	고 졸	O(현역)	17	27	5년
16	n16	24	고 중퇴	X(면제, 수급?)	16	23	1년
17	n17	37	고 졸	O(현역)	14	27	10년
18	n19	30	초 졸	X(면제, 학력)	10	19	11년
19	n20	39	고 중퇴	O(현역)	17	29	10년
20	n21	38	고 졸	O(공익)	15	34	4년
평균연령: 32.4세, 평균(청년기)노숙진입연령: 25.3세, 평균노숙기간: 5.5년							

주1: 사례번호 앞에 붙어 있는 'n'은 2016년 청년노숙인 인터뷰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의미함.

주2: A2그룹의 경우, 10대의 최초 노숙 경험 이후 청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노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노숙 상태로 한동안 있다가 청년기에 노숙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재진입 연령으로 별도로 표시하였고, 노숙기간 역시 청년기 재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노숙기간을 계산하였다.

<표 4-3> 조사대상 청년노숙인의 연령분포

	조사시점 연령		청년기 노숙 (재)진입연령	
	N	%	N	%
19세 미만	-	-	4	11.7
19-24세	2	5.8	6	17.6
25-29세	6	17.6	13	38.2
30-34세	12	35.2	8	23.5
35-39세	14	41.1	3	8.8
계	34	100	34	100

A1그룹과 A2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그룹의 구분 기준으로 삼은 청소년기 즉 10대 시기의 노숙 경험의 여부이므로 특히 A2그룹의 청소년기 노숙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2그룹 중 5명은 이미 초등학교 시기(12세 이하)부터 집에서 이탈하는 경험을 하였고, 7명은 중학교 시기(13-15세), 7명이 고교 시기(16-18세) 노숙 상태를 경험한 바 있었다. <표 4-4>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노숙 경험에 대한 간략한 이유와 원인을 정리하였다. 우선 청소년 노숙의 개략적인 유형을 파악해 보면 대다수가 ‘가출’의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약 3사례 정도가 가족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친척집을 떠도는 ‘엎혀살기’ 경험을 한 사례였다. 10대 ‘가출’ 이후 이들의 거처는 친구 집 뿐만 아니라 거리, 빈 집, 빈 건물,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게임방, 찜질방 등 장소적으로 일반적인 ‘노숙’ 경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10대 시기에 집을 이탈하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주로 사춘기에 접어들어 비행과 탈선의 일환으로 반복되는 가출이 많았는데 이 외에도 동네나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가출을 한 사례,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사례, 조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았지만 양질의 양육과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다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집을 나오게 된 사례 등 다양했다.

또한 <표 4-2>의 학력과 군 복무를 통해서도 청년노숙인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A1그룹과 A2그룹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수가 대학을 졸업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A1그룹 중 대학을 다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중퇴자를 포함하여 7명, 절반에 불과했고 고졸 4명, 고졸 미만이 3명으로 나타났다. n18의 경우 공식적인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그쳤는데, 고아원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술학교에 입학하여 목공기술을 배웠다. A2그룹에서 나타나는 학력 상황은 더욱 좋지 못하는데 대학 경험자는 2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고졸 7명, 나머지 절반은 고졸 미만의 학력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8명에 달했다.

〈표 4-4〉 A2그룹 청소년노숙 경험의 구체적 내용과 유형

사례 번호	최초 노숙경험(세)	경험의 내용
4	14	어려운 집안사정이 싫어 중2때부터 탈선을 해 잦은 가출을 함.
15	16	중3때부터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 술, 담배를 하고 고등학교 때 싸움을 했으며 가출을 몇 번 한 적이 있음.
16	15	중3때 마라톤 경기 입상으로 체고를 가고자 하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좌절되어 한 달 동안 가출함.
20	12	초등학교 때 장애인인 가족들에 대한 놀림과 집요한 따돌림으로 괴롭히는 동네 형들을 피해 잦은 가출을 함.
29	14	중학교 때부터 불량학생으로 생활하면서 가출을 하였고, 고교 1학년 때 급우를 때려 자퇴를 하고 집을 나와 친구와 함께 생활.
40	11	아버지의 술과 구타로 초5때 가출함. 초6때 고아원에 맡겨짐.
42	11	초5때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성격차이로 부모님이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 고2때 가출함.
62	14	아버지의 도박으로 가정이 불화. 가출과 결석 등으로 중2에 중퇴.
n2	10	초3때 소풍을 다녀오고 난 이후, 집에 있기 싫고 밖에 나가고 싶어서(마치 역마살이 낀 듯) 집을 나가기 시작함. 중1초반 다니다가 겨울방학 때부터 학교를 아예 안가기 시작함.
n3	18	처음 가출은 고3때.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가고 싶지 않아서 집 근처 빈 집 등에 혼자 있었음. 몇 차례 반복. 1년에 3-4회. 5일-1주일 정도 혼자 있다가 지치면 집에 들어옴.
n5	18	할머니와 생활함. 고3때 중학교 애들과 사고를 쳐 절도를 한 후 두려움에 서울로 도망치며 가출. 이후 2년 정도 서울에 있었음(사우나에서 생활). 그 후 잠시 할머니 장례를 치르러 돌아왔다가 직후 다시 서울로 상경.
n8	14	부모님의 사망으로 형제들이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됨.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댁에서 생활. 중학교 들어갈 때쯤 잘 나가던 삼촌의 사업이 어려워짐. 중학교 시절 3일 정도 가출.
n9	16	고1때 집을 나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집에서 살거나 게임방에서 지내거나 함.
n14	12	어릴 때 가출한 엄마를 따라나서 엄마와 친척집을 돌며 얌전히 살았음. 결국 엄마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신을 초6 무렵 아는 양로원에 맡기고 가버림.
n15	17	어린 시절 보살핌을 받지 못한 서러움으로 불량청소년이 되어 고2때 집을 나와 버림.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구집에서 살았음.
n16	16	고1때 가출하여 친구집에서 생활. 학교는 거의 안가고 사고치고 다님. 친구집에서 1개월, 나머지는 짬짬방에서 생활. 결국 고2때 자퇴. 고2때 청소년 쉼터에서 6개월 생활.
n17	14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중학교 때 집을 나와 3일 정도 밖에 있다가 들어감.
n19	10	아버지의 구타가 심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많이 했었음. 고아원에서 14살 때 탈출해서 빌딩옥상, 보일러실 같은 곳에서 잤음.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와서 노숙 생활. (거리노숙-쉼터 등)
n20	17	고2때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여자친구와 집을 나와 버림.
n21	15	집과 학교가 싫어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자주함.

한편 군복무 경험 역시 큰 특징을 보인다.²⁶⁾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군복무 경험은 보통 남성의 성인기 진입의 일반적 관문으로 인식된다. 소위 대한민국의 보통의 청년이라면 당연히 군대 정도는 다녀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청년노숙인들의 군복무 경험은 보통의 기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특히 A2그룹의 경우는 이미 20대 진입부터 일반적인 청년의 경험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1그룹은 14명 중 4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데 반해 A2그룹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2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의 이유, 중학교 중퇴의 학력, 소년원 수감, 부모의 부재 등의 이유로 면제를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다수의 경우에서 학교생활과 군복무 등 또래들이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의 노숙기간은 매우 다양했다. 노숙을 처음 경험한 이후 현재 노숙 상태까지의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례도 있었고, 불과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각 그룹의 노숙기간 평균을 확인해 보았을 때 A2그룹의 노숙기간이 약 1.6년 정도 더 길었다. A2그룹의 평균연령이 A1그룹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숙기간이 긴 것은 A1그룹보다 더 이른 시기에 노숙에 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표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결혼 경험은 34명중 단 2명(62, n20)에게서만 나타났다. 이 2명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혼과정이 아니라 노숙 과정에서 만난 커플로 아이가 하나 있었고 매입임대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사례62), 고교 때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던 사례(사례n20)였다. n20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별거 상황에서 노숙 중에 있었다.

26) 서구의 노숙 위험요인 연구에서 군복무 경험은 제대 이후 주거의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 시설 생활 경험과 아울러 노숙 위험요인으로 언급되었다(Anderson, 2001). 그러나 다수가 군복무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소 맥락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제2절 청년노숙인의 위험요인 분석

우리나라의 노숙 위험요인은 서구의 경우와 상황적인 면에서 다를 수 있으나 분석이 시도된 바 없었다.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서구의 노숙 위험요인(homeless risk factors)의 4가지 구분인 구조, 제도, 가족, 개인요인을 고려하면서 실제 인터뷰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경험들을 추출하여 4가지 요인에 맞추어 배치해 보았다. 추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숙 위험요인들을 분류하여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노숙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먼저 구조 요인(structural factor)의 경우 우선 원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진술 중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여부와 그 정도, 기초보장 수급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주거불안정이 구조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바, 주거지에서의 퇴거,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생활, 주거로 인한 곤란 경험 즉 주거가 불안정하여 다른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등의 경험에 주목하였다.²⁷⁾ 제도 요인(institutional factor)은 대표적으로 교도소,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고아원), 정신병원 수용 등 생활시설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설 퇴소 이후 기거할 주거 상황이 불안정해진다는 측면에서 노숙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요인(family factor)은 두 가지의 요소로 세분화 시켰다. 첫째, 원가족 혹은 새로 구성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문제이다. 부모의 사망 혹은 부모의 이혼 등 가족해체와 구성원 결손을 구조적 측면으로, 부모의 불화, 가정폭력, 부모의 자살시도, 부모의 음주, 정신 혹은 신체적 질병, 가출 등 노숙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를 기능적 측면의 문제로 별도로 구분하였다. 둘째, 가족 요인 중 또 한 가지의 축으로 피해경험은 가족 내에서의 폭력, 학대, 방임, 괴롭힘 등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으로 정리하였다. 개인 요인(individual factor)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가출을 포함하여 폭력, 음주, 약물, 무단결석, 절도 등의 다양한 비행의 행동들을 포함한다. 둘째는 성인기 비행으로 성인기로 접어든 이후부터 노숙 이전까지의 비행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셋째는 노숙 이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요 요인에 따라 각 사례의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위험요인들에 대해 두 그룹을 구분하여 <표 4-5>, <표 4-6>에 각각 정리하였다.

27) 다만 매우 어릴 때 가족과 헤어져 원가족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례(n18)는 구조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1. 구조 요인

먼저 구조적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예상보다 원가정의 경제적 빈곤의 비율은 높지 않았고 두 그룹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원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례는 A1그룹에서 5사례, A2그룹에서 8사례로 각 그룹에서 약 30% 정도에 해당되었다. 기초수급을 받았던 사례는 전체 중 4사례였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불안정도 6사례에서 확인되었다²⁸⁾.

상대적으로 소수의 빈곤 경험이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청년 노숙인들의 성장기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았을 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우선 원가정의 빈곤은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뺏어갔다. 채무 문제로 인해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서 주거 불안정이 가중되고 급기야 집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거나(사례n4, n11), 중고교 시기 적절한 자원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생활에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고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사례n1). 또한 빈곤은 청년들이 이른 시기에 불안정하고 좋지 못한 일자리를 전전하도록 하고, 학업의 중단을 초래하기도 했다(사례7, n11). 사례n11은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를 잘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로 인한 절망감은 이후의 사회 기능의 저하와 노숙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례n13의 경우, 집에 돈이 없어 아무것도 누리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시장에서 날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던 엄마는 언제나 바빴고 신경질적이었다. 참여자는 고립감을 느꼈다. 가난으로 위축된 삶을 산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 절망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에 많이 쌓여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집이 너무 어렵잖아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절망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절망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 아빠는 막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60만원 갖다 주고. 그러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내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돈을 벌어주면 먹고.. 자고.. 대화가 없었고. 누나가 두 명 있었는데 누나들은 여자고 그래서 둘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엄마하고도 누나하고도 아빠하고도 대화가 없었고요.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많이 맞았던 것 같고요. (n13)

28) 주거불안정을 경험한 사례들의 구체적 내용으로 조부모님과 살던 집이 경매에 붙여져 쫓겨나면서 거리노숙을 시작하게 된 사례(n11), 부모의 이혼 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례(42), 비닐하우스 집에서 살았던 사례(n2), 부모의 사망으로 집에서 형, 누나와 함께 살다가 친척집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사례(n8),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친가와 외가를 왔다 갔다하며 살았던 사례(n9), 어머니의 가솔에 동행하여 결국 친척집에 더부살이 하다가 어머니가 아는 양로원에 보내져 생활하게 된 사례(n14) 등이 포착되었다.

〈표 4-5〉 청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A1그룹

일련번호	사례번호	구조요인	제도요인	가족요인		개인요인		
		경제적 빈곤 주거불안정	시설생활 경험	구조적, 기능적 문제	피해경험	청소년기 비행	성인기 비행	건강문제
1	7	빈곤	교도소	부의 장애	-	-	음주	-
2	12	-	-	모의 간섭 모의 지나친 차별	-	-	-	-
3	19	빈곤	-	-	-	-	-	결핵(고교)
4	22	-	-	부모 이혼	-	-	-	성격장애
5	38	-	-	부의 가정폭력	부의 가정폭력	-	위장결혼, 유흥	경계성 장애 의심
6	n1	빈곤 (기초수급)	정신병원	부의 가정폭력 모 자살 시도 부모 이혼	부의 가정폭력	-	-	자해 조현병(정신분열)
7	n4	-	정신병원	부모의 투병생활 부모의 사망	-	-	-	뇌전증(간질), 자살 시도
8	n6	-	-	부 사망, 모의 암투병	-	-	게임중독	심장질환, 게임중독
9	n7	-	정신병원	모의 사망, 아버지와 의 갈등	-	-	모의주식, 스포츠투투	우울증, 자살 시도
10	n10	-	-	계속되는 해외생활, 가정폭력, 모의 사망, 부의 의식 불명, 새어머니의 거부	성적에 대한 지나친 강요, 간섭 차별	-	-	-
11	n11	빈곤 경매로 살던집에서 쫓겨남	-	부모 부재, 조부모님 양육, 조부모 사망	-	-	-	-
12	n12	-	-	-	-	-	과도한 음주	-
13	n13	빈곤	-	가정폭력 부의 가출	모의 구타	-	-	우울증, 자살충동
14	n18	모름	보육원	원가정 부재	-	-	게임중독	게임중독, 결핵

〈표 4-6〉 청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A2그룹

일련번호	사례번호	구조요인	제도요인	가족요인		개인요인		
		경제적 빈곤 주거불안정	시설생활 경험	구조적, 기능적 문제	피해경험	청소년기 비행	성인기 비행	건강문제
1	4	빈곤	-	부의 건달생활, 잦은 가정불화, 부의 자살	-	술, 담배, 약물, 가출, 비행	-	양성 뇌종양
2	15	-	-	장애를 이유로 가족에게서 소외	따돌림(언청이), 놀림	술, 담배, 싸움, 가출	군 선임과 싸움(군영창), 유흥	-
3	16	빈곤	구치소	가정불화, 모의 외도	-	가출, 무면허차 사고, 절도, 자살시도	군영창 싸움(구치소)	-
4	20	빈곤	-	가족(부, 형, 누나, 여동생) 언어장애, 부의 사망	-	가출, 싸움, 유기정학	알콜, 군기교육대, 유치장	자살시도
5	29	-	소년원 교도소	부모의 장애	-	담배, 본드, 폭력, 소매치기, 자퇴, 가출	건달생활, 패싸움	-
6	40	-	보육원	부 음주 문제, 가정폭력, 모의 가출	아버지의 폭력	가출	-	결핵
7	42	빈곤 (기초수급) 친척집 전전	소년원	부모의 이혼	-	가출, 무단결석, 절도	폭력 전과, 도박, 알콜	-
8	62	빈곤	교도소	부의 도박, 부모의 사망	-	가출, 무단결석	폭력	허리수술
9	n2	빈곤 (기초수급) 비닐하우스 집	보육원 교도소	부모의 사망	-	가출	알콜, 무주택행방해	-
10	n3	-	정신병원	부 무관심, 가정폭력, 모의 외도, 이혼, 재혼	-	가출	-	우울증
11	n5	빈곤의심	-	부의 사망, 모의 가출, 조부모 사망	-	절도, 가출	-	-
12	n8	주거 불안정	-	부모의 사망(7세)	-	가출, 패싸움	-	-

〈표 4-6〉 청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계속) (A2그룹)

일련번호	사례번호	구조요인	제도요인	가족요인		개인요인		
		경제적 빈곤 주거불안정	시설생활 경험	구조적, 기능적 문제	피해경험	청소년기 비행	성인기 비행	건강문제
13	n9	친가 외가를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	-	부의 가정폭력, 외도 부모의 이혼 모의 정신질환	아버지 폭력, 장애인이 됨, 이혼과정에서의 정서적 피해	절도, 가출, 게임	절도, 집행유예선고	뇌전증(간질)
14	n14	빈곤 주거 불안정	양로원	모의 가출	모에게서 버려짐	-	-	-
15	n15	-	-	부모의 이혼	모의 구타	무단결석, 가출 부모의 돈을 훔침	음주 운전 사고(군영창), 절도	게임중독
16	n16	빈곤 (기초수급)	보육원	부의 음주, 가정폭력, 모의 방임	부의 폭력	절도, 가출, 폭행	-	-
17	n17	-	-	성적 압박	부의 심한 체벌	가출, 패싸움, 무단결석, 성적조작	자살시도 알콜	우울증, 자살시도
18	n19	-	보육원 소년원 정신병원	부의 가정폭력, 모의 가출	부의 폭력	가출	-	조울증, 정신장애(?)
19	n20	-	구치소	-	-	가출, 임신	도박, 음주	-
20	n21	-	-	부의 가정폭력, 모의 가출	부의 폭력	가출	-	-

2. 제도 요인

제도적 요인의 경우, A1그룹의 4명, A2그룹에서는 11명이 노숙 전 시설 경험을 하여 A2그룹에서 경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선 전체에서 6명이 성장기 시절 아동양육 시설(이하 보육원)에서 보낸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숙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시설 생활은 성장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욕구의 충족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퇴소 이후 생활, 특히 소비에 대한 욕구 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사례n18의 경우, 보육원에서 배운 목공기술 덕에 도시와 떨어져 있던 가구공장에서 10여 년간 일을 했다. 일만 하는 무미건조한 삶으로 7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쌓였지만 건강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 돈을 2년 만에 다 써버리면서 노숙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기간 동

안 이제껏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한 데 대한 한풀이를 하듯 옷과 신발 등을 사서 입다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사곤 했다.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짐이나 물건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시설생활에서 비롯된 억눌렸던 욕구와 빈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보육원 퇴소 이후의 경제적 문제와 자립의 문제이다. 폐쇄적인 시설 생활로 충분한 사회 경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나오게 되면 초기에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실직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곤 했다. 사례40의 경우, 보육원 퇴소 이후 1년 정도 일을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 이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소개를 받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수원역에 갔지만 그는 없었다. 참여자는 이후 상황 판단에 미숙했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 대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 길로 수원역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셋째로 사회적 관계의 극단적인 협소함으로 인해 시설 퇴소 이후 지원 받을 가족이나 친척이 없고 심리적 고립도 크다는 점이 문제였다. 사례n2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대 중반에 서울에서 거리노숙을 하다가 아동보호소,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18세가 되어 퇴소하였다. 그는 지하철 구경을 하면서 만화방, PC방 등에서 오래 기거하였다.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몇 년간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고립감과 외로움, 자신의 고단하고 서러운 삶에 대한 분노는 술을 먹기만 하면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대화 상대도, 자신의 하소연을 받아줄 이도 부재한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을 주는 애꿎은 동네의 지구대 경찰들에게 자신이 쌓아온 분을 풀었다.

참여자: ...처음에는 멀쩡해요. 소주 2병씩.. 그런데 나중에 만취가 돼요. ... 인사불성이 되다보니 생각나는 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리왔나.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시비를 걸게 되요. 분풀이하는 식이죠. 대부분 찾아가는 데가 관공서 지구대 가서 찾아가서 경찰관 붙들고 하소연 하는 거죠. 침에 안 들어주면 욕하고. ... 법적 신분 이 그 사람들은 경찰관이고 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날 때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경찰관분이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n2)

이 사례의 경우, 반복적인 지구대 습격에 경찰들이 만류하면 차라리 자신을 교도소에 넣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기 까지 했다. 경미한 사건으로는 교도소에서 오래 생활할 수 없었지만 반복적인 공무집행 방해로 결국 형이 무거워지면서 교도소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일인 듯 설명을 했다. 같은 일로 벌써 3차례 이상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외로움에 대한 역설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 당시 음주 문제로 인해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 중이었는데 교도소가 아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생긴 것에 매우 다행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립감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다른 시설인 교도소나 소년원 수감과 정신병원 입원 경험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교정시설 입소 전부터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갈등은 증폭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퇴소 이후 이들이 마음을 붙일 곳은 별로 없었다. 특히 A2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난 교도소·소년원 수감 경험자 7명은 출소 이후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어 (혹은 가족에게 가고 싶지 않아) 주요 기차역 인근으로 갔다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정신병원 입소의 경험은 A1그룹에서 좀 더 두드러져 총 5명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우울, 자살충동, 정신분열, 간질 등으로 위급하게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원을 하면서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은 노숙인 기관으로 의뢰되었다. 노숙 이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퇴원했던 사례ⁿ³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정신병원 퇴원 시 복지지원 연계로 노숙인 시설을 안내받음과 동시에 임시주거비지원 서비스를 쉽게 받았다. 물론 이들 사례는 이미 거의 노숙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거비지원을 통해 잠시 방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다시 노숙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노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보육원, 교도소와 구치소, 정신병원 등의 시설은 각각 아동양육시설, 교정시설, 의료시설이라는 다른 기능을 가진 시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노숙인들에게 이들 시설들은 각각의 기능에 부합한 양육, 교정, 치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시설의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몇 년(혹은 얼마나)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돌봄을 받았거나 교화되었거나 치료된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들 시설에 입소 전에 이미 이들에게 있어 가정이라는 생활 장소는 훼손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생활의 근거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보육원에 맡겨지고, 가출 이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도소에 들어갔다. 노숙에 근접한 최종적인 단계 직전에 정신병원에 구조되듯 입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 살 곳이 없어 졌을 때, 임시적인 거처로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보살핌 속에서 ‘살았던’ 곳이 이 시설들이었다. 그러한 ‘보살핌’이 종료되는 시점은 노숙의 시작 시점과 맞닿아 있었다.

3. 가족 요인

가족 요인은 공통적으로 청년노숙 두 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었다. 가족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 즉 가족의 구조·기능 문제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victimization) 경험으로 구분되었다.²⁹⁾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가족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7>로 정리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문제의 세부 내용은 주로 부모의 부재, 이혼, 장애 등이었다. 우선 성장기에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 혹은 부재한 경우가 총 9사례였다. 사례n4, n2, n8은 중학교 이전에 이미 양쪽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고 n11, n18은 심지어 부모를 본 적도 없었다. 사례40, n5, n14, n19는 성장기에 한쪽이 사망하고 다른 한 쪽이 가출, 혹은 둘 다 자신을 버린 경우에 해당했다. 한 쪽 부모의 사망을 경험한 경우만 해도 5사례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모의 가출, 이혼, 장애나 투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결손이 나타났다.

<표 4-7> 청년노숙인의 가족 구조·기능 문제 세부 내용

가족 요인	A1그룹	A2그룹
구조적 문제		
양쪽 부모의 사망 혹은 부재	n4, n11, n18	40, n2, n5, n8, n14, n19
한쪽 부모의 사망	n6, n7, n10	20, n5,
부모의 가출	n13	40, n5, n14, n19, n21
부모의 이혼	22, n1,	42, n3, n9, n15
부모의 장애, 투병	7, n6, n7, n10	20, 29
기능적 문제		
가정폭력	38, n1, n10, n13	40, n3, n9, n16, n19, n21
자살(시도)	n1	4
간섭, 압박, 지나친 기대	12, n10	n17
정신질환, 음주문제	n1	40, n16
무관심(거부)	n10	n3, n16
가정불화(관계갈등)	n1, 7	4, 16, n21
부양무능		4
외도, 도박	n1	16, n19

그런데 부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비롯된 역기능적 가족 문제는 부모의 부재 상황과는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부모의 자살 혹은 자살시도, 음주 문제, 가족구성원 갈등으로 인한 관계의 불화, 부모의 부양

29) 가족으로부터의 피해는 참여자들의 구술에 근거하여 학대, 폭력 등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피해를 직접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한정하였지만, 이러한 피해 경험에 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도 추가하는 연구도 있다(Rattelade et al, 2013). 가정폭력의 목적은 간접적 피해로서 가족 요인의 가정폭력 경험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무능, 외도, 지나친 간섭과 성적 등에 대한 압력과 기대 등이 그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으로 두 그룹에서 총 10사례가 주로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에 시달렸다.

부모의 부재와 결손, 특히 양쪽 부모의 부재는 그것 자체가 집의 상실을 의미한다. 가정의 두 기둥이자 울타리인 부모가 없는 가정에 남겨진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청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 생애의 불안정성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재는 사실상 다른 친척들 혹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부재 혹은 관계 소원의 계기가 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부모의 가출, 이혼 등의 경우도 이에 못지않게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지속적 갈등의 최종적 결과물일 뿐 그러한 결과가 도래하기까지의 지난하고 지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린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반면 대표적 역기능으로 꼽을 수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피해 가족 구성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설사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스란히 참여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외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폭력은 참여자들이 가정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n1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자살 시도, 외도, 도박 등을 불러왔고 결국 부모의 이혼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새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불화, 폭력을 경험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해 버리고 집에서 은둔했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난 지금에도 가해 부모의 위협과 공포,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피해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이를 극복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다.

한편 소수이긴 하지만 이러한 폭력과 학대와는 반대로 청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게 되는 지나친 기대와 간섭, 그에 부응해야 된다는 압박과 버거움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사례들(12, n10, n17)도 있었다. 앞의 문제들이 청년들을 가정으로부터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다면, 이 문제들은 지나치게 참여자들을 가족에게로 끌어당기고 구속하는 형태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 참여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억압과 강요로 작용했다. 주로 학업과 관련된 것들로서 이런 시달림은 참여자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결국 가족 간의 관계 형성에 문제를 일으켜 청년들로 하여금 가족에게 거리를 두고, 필요한 지원들도 거부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물론 사례n17처럼 청년기 이후 반복되는 집으로의 복귀와 이탈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계속되는 갈등의 잠정적 평행선이었을 뿐 결국 3년 전 집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다.

연구자: 엄마가 막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신 거예요? 그럴 때가 가끔 있으셨어요?
 참여자: 네. 가끔 있었어요. ...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터는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주눅이 들어 있죠. 항상.
 연구자: 피하게 되고.
 참여자: 네.
 연구자: 이런 게 좀 아빠와의 관계나, 중학교 때 집을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참여자: 두렵고 그랬던 게 영향은 좀 있었죠. 맞닥뜨리기 좀 무섭고 하니까..(n17)

그런 심리적 압박감의 경험은 실제로 압박 없이 집을 나와 있는 상황에서조차 재현되고 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마치 고3인 것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긴장되고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때 너무 못 봤거든요. 아버지한테는 기말고사 때.. 어머니한테는 항상 맞았어요. 아버지한테는 방망이로 맞았고. 한 번은 성적 떨어지니까 고3 기말고사 때 떨어져서 자율학습을 안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간 건데.. 얼굴을 그냥 맞아가지고.
 참여자: ... 부부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맞는 거 그런 게 노이로제 같은 게 생겨서요.
 연구자: 폭력이 직접적으로 오가고...
 참여자: 네. 물건 다 깨지고 이혼 얘기 오가고. 어머니 아프실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독서실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뭐 공부를 회피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엄마, 아빠가 실 틀을 안 주셨네요..
 참여자: 그래서 제가 피로해 졌다고 해야 하나. 탈진 했다고 해야 하나. 정신적으로 그런 게 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고3 아닌데도 저는 좀 아직도 약간 고3에 있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일이라 공부랑 계속 그것만 한 것 같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n10)

한편 두 번째로 살펴볼 가족요인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이다. 명시적 피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정폭력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이한 사례로 사례n9의 경우는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해체에 주범이었던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자신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시켜 두었다. 이것을 군 입대를 자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았다. 더군다나 이 참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에 이르기 까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부모의 별거 중 양쪽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양쪽에 유리한 진술과 심부름을 끊임없이 강요당하면서 법원, 법무사 등등을 쫓아다니느라 학교생활도 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심신이 극도로 황폐해졌다.

한편 가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노숙 위험요인으로 가족 내에서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피해 못지않게 가정 밖에서의 양육 경험이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이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4-8>과 같다. 가정 밖 양육은 시설에서의 양육 경험뿐만 아니라 친척집에서 자라거나 조부모의 양육을 받은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혼자 생활한 경우들이 있었다. 우선 사례n4의 경우는 고등학교 시기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보호자가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생활한 사례였다. 오랜 병상 생활이었지만 곧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었던 부모님이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시기에 두 분 다 돌아가셨다. 충격으로 개학이 되어도 집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고 선생님의 방문으로 겨우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게다가 부모님이 남기신 사채에 대한 빚 독촉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이 시기에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뇌전증(간질)이 발병하게 되었고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노숙이라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표 4-8> 10대 시기의 가정 밖 양육(부모 외 양육 포함) 경험

그룹	사례 번호	내용	구분
A1 그룹	n4	중3말, 고1초에 부모님 모두 돌아가심. 이후 군 입대 전까지 혼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업과 생계유지.	단독
	n10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할아버지를 따라 외국생활.	조부모
	n11	부모님 얼굴은 모르고 조부모님 밑에서 자람.	조부모
	n18	6세 때 미아보호소에 맡겨져 이후 계속 고아원 생활.	시설
A2 그룹	40	초6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짐. 중3이후 아버지와 연락 끊김.	시설
	n2	부모님 사망 이후, 서울역에서 배회시작. 노숙을 하다가 고아원으로 인계되어 18세까지 생활.	시설
	n5	아버지 사망, 어머니 가출로 인해 할머니 밑에서 자람.	조부모
	n8	부모님이 7세에 모두 돌아가시고 초5학년 때 친척(작은아버지)에게 맡겨져 생활.	친척
	n9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친가 외가를 번갈아가며 다니면서 생활	조부모
	n14	어머니가 초4때 자신을 아는 양로원 원장에게 맡기고 감. 양로원에서 생활.	시설
	n16	친어머니가 도망가고 6-17세 고아원에서 자람. 이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	시설
n19	아버지와 초6까지 같이 살다가 고아원에 보내짐. 고아원에서도 구타가 심해 14세에 나옴. 이후 소년원에서 생활.	시설	

또한 시설에서의 생활은 시설퇴소 이후의 사회적응과 독립에 일정 부분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면에서 노숙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부모 양육의 경우 역시 노숙의 위험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었다. 즉 조부모와의 생활에서는 보호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제대로 된 훈육과 가정 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료하고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운 생활이 가출을 촉발시키곤 하였다.

4. 개인 요인

개인요인은 크게 비행과 건강문제로 나누고 비행의 경우 성인기 비행을 청소년기의 비행과 별도로 구분하였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10대의 술, 담배, 약물, 가출, 정학, 범죄 행위 등이다. 10대의 비행은 방향 혹은 반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성인기 비행은 성인으로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은 A1과 A2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내는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A1그룹의 경우, 청소년기 중요한 비행은 없었다. 성인기 비행 역시 A2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성인기 비행은 과도한 음주의 문제를 가졌던 사례7과 사례n12, 돈을 벌기보다 술 먹고 놀며 쓰기에 바빴던 사례38, 그리고 게임중독 2사례(사례n6, n18)를 제외하고는 A1그룹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비행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2그룹의 청소년기 비행은 사례n14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A2그룹에서의 청소년기의 비행은 A1과 A2그룹 구분의 주요 기준이 되었던 가출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 본드 등 약물과 관련한 비행, 패싸움, 폭행, 절도, 소매치기, 무면허 차사고 등 범죄와 관련된 비행, 그리고 자살시도 등의 자해, 학교 무단결석 등 다양한 종류의 비행 경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비행은 성인기 비행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군대에서 선임을 폭행, 지나친 유흥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거나 건달생활로 패싸움을 하거나 도박, 알콜 문제, 절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A2그룹 20명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났다. 가출 이후 뚜렷한 비행을 보이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지만 주로 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영창, 군기교육대, 교도소 등에 다녀왔거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경험을 가진 사례도 8사례에 이르고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개인요인 중 비행의 경험은 A2그룹이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했지만 신체와 정신의 건강문제는 A1그룹에게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A1그룹의 경우 14사례 중 9사례가 생활을 위협할 수준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A2그룹의 경우에도 양성뇌종양, 결핵, 허리통증, 우울증, 간질, 조울증, 자살시도, 게임중독 등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례가 20사례 중 8사례 정도로 나타났다. A1그룹의 건강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례19는 고교시절 결핵으로 인해 대학교 생활도 계속하기 힘들어 휴학 등 공백기를 가지면서 법 공부도 포기하게 되었고, 사례n6은 초등학교 시절 받았던 심장수술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등의 생활이 길었고 결국 게임중독에 빠지게 되었다. 사례n4의 경우 고교시절 부모님의 사망 이후 혼자 지내며 간질이 발병하여 군 제대 이후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발작이 심해지면서 결국 경제활동이 계속 중단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핵과 자

살시도 등으로 이어졌다. 자살시도는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례n7의 경우 고교졸업 이후 취업을 했었지만 고졸로 인한 사회생활의 장벽과 좌절감을 맛보고 다소 늦은 20대 중반에 4년제 대학을 갔다. 부모의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4년간 등록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충당해가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 천 만원의 빚만 지고 4학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을 중단해야 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살면서 계속되는 불화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 취업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었다.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 새어머니의 등장으로 집을 나왔고 학교 앞 고시원에서 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밀려나며 3-4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사례n13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고 자랐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살았다. 누나들이나 어머니와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치되다시피 외로웠던 가정생활을 했다. 그로 인해 생긴 우울감에 더하여 수능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결국 수능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제대로 수능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갈등과 돈을 벌어야 하는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다. 한편 명확히 어떠한 장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을 성격장애가 있어 이 때문에 군대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 사례22나 지적능력이 떨어져 학업이 곤란했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많아 중3때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사례38도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례n1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한 괴로움과 빈곤 등의 이유로 은둔하면서 자해를 하고 군대에서 자살한 병사의 시신이 노출된 현장을 지키게 되면서 받은 충격 등으로 인해 조현병(정신분열)이 발병하게 되었다.

5. 위험요인의 추가: 사회 요인의 발굴

청년노숙인의 경험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4가지의 노숙 위험요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빈번히 거론되면서 노숙을 촉발시키거나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노숙 이전과 이후 가정 이외의 곳, 즉 학교, 군대, 사회 등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의 경험, 그리고 채무 등으로 인한 신용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사회생활 가운데 당한 여러 피해를 말하며 이를 ‘사회적 피해 요인’ 혹은 ‘사회적 피해 경험’, 줄여서 ‘사회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청년노숙인들이 경험한 사회적 피해를 <표 4-9>, <표 4-10>에 정리하였다.

〈표 4-9〉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A1그룹

사례 번호	노숙 전			노숙 이후			신용문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7	-	-	절도 공범으로 오인 받아 교도소 복역	-	일을 해 주고 임금을 받지 못함.	-	사업할 때 진 빚으로 신용불량
12	-	사업 동업자 도주	-	-	-	-	사업자 도주로 빚을 지게 되어 신용불량
19	-	-	-	-	-	-	음식점 개업하면서 빌린 돈 3-4000만원으로 신용불량
22	-	-	-	-	-	-	-
38	학교 따돌림	-	-	인신매매 (김양식장에 팔려감)	대출 사기 대포통장 사기	공문서 위조와 특수절도 혐의 받음	사기로 1300만원 피해를 보았으나 2008년 파산신청으로 면책됨
n1	성추행 군복무 시절 총기사고현장에 장시간 노출	-	-	-	-	-	-
n4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사채로 인한 괴롭힘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사채에 대한 채무이행	-	-	-	-	-
n6	-	-	-	-	-	-	-
n7	-	-	-	동성연애자 접근	-	-	학자금대출 4000만원 사채 300만원으로 신용불량
n10	-	보이스피싱 피해	-	일 하러 간 곳에서 구타당함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	-
n11	-	핸드폰 명의 도용 피해	-	-	-	-	핸드폰 사기로 인한 800-900만원 빚으로 신용불량
n12	-	동업하기로 한 친구가 사업자금을 가지고 도주	-	-	-	-	-
n13	-	-	-	-	-	-	-
n18	-	-	-	-	-	-	-

〈표 4-10〉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A2그룹

사례 번호	노숙 전			노숙 이후			신용문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4	-	금전사기 피해	-	-	-	-	사기피해 사채 빚 3억으로 신용불량
15	-	인감도용 입금체불	-	-	-	-	핸드폰3개 기계값과 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
16	군대 내 괴롭힘	-	-	김양식 배를 타고 감금당함.	핸드폰 사기	-	핸드폰 사기(명의 빌려주고 돈을 받음) 800만원 못 갚아 신용불량
20	가족의 장애로 동네형들의 집요한 따돌림	사업하며 2차래 사기당함(1억2천)	-	-	-	-	사업하며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8천만원 빚을 못갚고 신용불량
29	-	-	-	-	-	-	-
40	-	-	-	-	-	-	-
42	-	-	-	-	-	-	-
62	-	-	-	-	핸드폰 사기	-	핸드폰 사기와 형의 카드 연체보증으로 신용불량
n2	집안형편 등으로 따돌림과 놀림	-	-	구두공장 무임금노동	카드 핸드폰 사기	-	카드, 핸드폰사기로 1000만원 피해. 신용불량
n3	학교 폭력, 왕따피해	-	-	염전노예	-	-	-
n5	-	-	-	사기희검금	사기 피해	-	-
n8	-	-	-	-	IMF부도로 회사 가차에서 쫓겨남 핸드폰 사기	-	핸드폰 사기피해(1200만원 빚) 신용불량이었으나 2015년 개인회생 마침.
n9	-	친구의 핸드폰 명의 도용	-	-	-	-	핸드폰 사기(600만원)으로 신용불량
n14	학교 왕따, 양로원에서 구타	-	지적장애인으로 등록 당함	사기 단의 감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인감도용, 대포통장	-	인감도용사기에 걸려 부가세 4억 채무로 신용불량
n15	-	-	-	-	-	-	핸드폰요금, 신용카드대출로 신용불량
n16	보육원폭력	-	-	-	핸드폰 사기	-	핸드폰 사기로 신용불량
n17	-	-	-	-	대포통장 사기	-	핸드폰 요금 600만원 미납.
n19	-	-	정신장애, 가족수급비 갈취당함	염전노예	핸드폰 사기	특수강도 징역	핸드폰 사기(400만원) 신용불량
n20	보육원폭력	-	-	-	핸드폰사기, 인감도용 사기	-	인감도용, 핸드폰 사기로 신용불량. 건강보험 300만원체납
n21	-	-	-	-	인감 도용 사기, 자동차 사기	-	인감도용 2000-3000만원, 자동차 명의사기(캐피탈) 2000만원으로 신용불량

청년노숙인들의 피해 경험은 노숙 전과 노숙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노숙 이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우선 동네나 학교에서의 따돌림, 학교 폭력과 왕따 피해, 보육원 내 폭력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사례38은 학교에서의 심한 따돌림으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사례n3의 경우는 고3때 집 까지 찾아오는 학교폭력과 왕따 가해자들을 피해 가출을 하여 빈 집 등에서 며칠씩 숨어있다 오기도 했다. 폭력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무마되어 오히려 더 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경험은 자살충동, 심각한 우울증으로 변졌다. 사례20 역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동네 아이들의 괴롭힘과 놀림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대 내에서의 문제들도 있었다. 사례16은 군대 내에서 괴롭힘이 싸움으로 번져 영창에 갔다. 사례n1은 부대 내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현장 보존을 요청하면서 사고 현장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보초를 서야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이는 결국 정신분열의 발병 계기가 되었다. 한편 부모님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된 고등학생 사례n4는 부모님이 병으로 지게 된 사채 빚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사채업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다.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사채 빚이 상속된 경우는 사실상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끈질긴 괴롭힘으로 결국 부모님이 남기셨던 집을 청산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 천 만원이 되는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았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괴롭힘에 부모의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간질이 발병하였다. 뜻하지 않은 괴롭힘과 충격적 경험이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에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것을 알 수 있다.

노숙 이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좀 더 심각했다. 가장 흔한 피해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김 양식 혹은 고기잡이 배, 염전 등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당사자는 혹독한 노동과 구타 등을 당하면서 섬 등에 고립되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러한 노동착취를 넘어서서 인신매매 수준의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5사례나 되었다. 사례38은 먹고 자고 15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따라 나섰지만 한 달이 지난 후 그만두겠다고 하자 소개비 명목의 한 달 숙식비 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협박에 결국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주고는 풀려났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일을 구하는 게 시급하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젊은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감금에 준하는 공장 노동을 시키고 그 와중에 구타가 자행되기도 했다. 노숙인 쉼터 주변을 배회하는 동성연애자를 만나 기겁을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사회경험이 없고 미숙한 청년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판단력도 흐려진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은 각종 유혹에 당하기 십상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 청년들은 더욱 위축되고 사회는 그들에게 더욱 무섭고 받을 내딛기 어려운 곳이 된다.

참여자: 영등포 대합실역에서 서 있었다고. 사람들이 꼬시는 거예요. 밥 사주고, 그 다음날 바로 (목포에) 안 내려가데, 여관에 재워주고, 방 잡아 놓고. 5만원 유혹에 빠트리려고, 5만 원 내 손에 쥐어주데, ...개네들이 돈을 먹고 자고 돈을 150씩 준다고 해서 따라갔지. ... 실제 가 보니까 돈도 주지도 않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사례38)

조사자: 그만두겠다고 하시니까, 풀어주시던가요?

참여자: 그것도, 우리 집에서 소개비 있잖아요? 50만 원 부쳐 갖고. 소개비 보내주면 (나를 밖으로) 보내 준대.

조사자: 그럼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참여자: 월급은 못 받았죠. (38)

참여자: 2014년에는 막노동 인력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따라오래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져가지고.. 때리시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분 있잖아요. 많이 맞았죠. 술병으로 맞고, 발로 맞고.. 처음이고 아저씨다 보니 때릴 수도 없고.. (n10)

참여자: 거기(쉼터)서 너무 안 좋은 기억을 당했어요. 돈이 그 때 하나도 없어서 바로 여기(쉼터) 가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서 좀 책도 보고 컴퓨터도 이용하고 하다가 주거지원 때문에 상담을 갔는데 어떤 남자가 그 문 앞에서부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담배 사주면서 뭐 먹었냐면서 뭐 사먹으라고 하면서 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호의적이냐고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의심도 없고 상황파악도 사람이 힘든 상황이니까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흐려지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아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인가 보다. ... 언제 상담 받으러 오냐고 그 때 또 보자고. 왔어요. ... 그 사람이 저한테 (성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런 센터(쉼터)를 더 불신하게 됐죠. 000(해당 쉼터)에서 해주는 건 근처도 안 가요.(n7)

청년노숙인들이 진술한 법적 피해 역시 젊은 노숙인들의 삶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었는데 공범으로 오인 받아 복역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례(7, 38), 10대 중반 거리노숙 상태에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 빈 건물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 특수강도 죄목으로 소년원에서 4년을 보내게 된 사례(n19)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던 시설에서 자신을 지적장애인으로서 등록하도록 강요하여 거짓 연기까지 종용했던 사례n14, 자신을 돌보아준다는 명목으로 종교인이 수급비를 갈취한 사례n19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한편 경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고 만연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노숙에 진입하거나 머무르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매우 흔한 경제적 피해 경험은 핸드폰 사기(대포폰 사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 인감도용 피해, 사업자금 사기사건, 임금체납 등이었다. 즉, ‘노숙인들이 금전이나 숙식,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에 유인되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신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공하여 각종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2013). 그 중에서 노숙인의 명의를 도용, 대여한 핸드폰 사기, 대포통장 사기, 인감도용의 피해 등은 특히 노숙 후의 경제적 피해 경험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었다.³⁰⁾ 이러한 피해는 중장년에 비해 사회 경험이 없

고 가족 등의 사회적 지원과 정보 등이 부족한 상태의 청년 노숙인에게 더욱 위협적이고도 치명적일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긴 청년들에게 이로 인한 후유증은 절망을 낳는다.³¹⁾

이러한 종류의 사기 피해는 노숙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채무를 지게 하여 결국 신용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믿었던 사람들, 즉 여자친구, 사업 동업자, 친구 등에게 사업자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 빚을 내서 시작했던 사업이 망하면서 생긴 채무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상황을 모두 합치면 청년노숙인들의 신용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통장 압류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방해가 발생하므로 노숙인들은 월급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임시 일용직만을 전전하고 있었다. 모두 34명의 청년노숙인들 중 무려 20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있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의 상태였다. 이 중 11명이 핸드폰 사기, 대포통장 사기, 인감증명 명의 도용 사기 등 경제적 피해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다. 액수 역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도 많았고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판단되는 사례 n14의 경우, 인감증명을 떼 주고 사업자등록을 내 준 것이 유흥업소 몇 개의 운영에 이용되면서 사기꾼들이 부가세 4억이라는 믿지 못할 금액을 28세 청년노숙인 앞으로 남기고 말았다.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과 후유증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채무 불이행의 상태가 금융거래, 구직 등에 제약을 주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심리적으로도 크게 위축된다는 점이다. 노숙인들이 알고 있는 소위 신용불량의 상태는 주요 은행의 통장개설이 쉽지 않고, 통장에 현금이 일정 금액(150만원) 이상 있을 경우 압류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청년노숙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좌절감으로 공식적인 일자리, 즉 월단위의 급여를 통장으로

30) 사기꾼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굶고 있는 지경에 처해 주요 역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나 담배, 술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핸드폰 1대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뺏가로 노숙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한다. 통장도 같은 수법이다. 노숙인들은 당장 현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한 번에 3,4개에서 10개 정도의 핸드폰 또는 통장을 열어주고 50여 만원 등을 받지만 결국 자신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대당 수백만원의 통신요금 고지서, 혹은 불법계좌로 사용된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데 대한 벌금 수백만원이었다. 인감도용 역시 매우 심각했는데 유사한 수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혹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노숙인들을 제3의 장소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수십만원에 불과한 현금과 음식, 술, 등을 제공하고 통장, 도장 등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인감을 도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한다. 결국 가져간 인감으로 사체를 빌려가거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사업장 몇 개를 운영한 한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역에 달하는 부가세를 노숙인 앞으로 떠넘겨 버리는 수법이다.

31)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홍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프로젝트가 범법법인 공감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에 의해 수행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최동익 의원과 2013홍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의 주최로 2013. 12. 19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리스 명의도용 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의 경험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제도, 단속, 수사,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받는 식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 자체를 꺼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일용직의 현금을 받는 임시적인 시간제 아르바이트, 단순 육체노동 일자리를 전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아예 빚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빚이 늘어나는 상태를 한동안 방치하거나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늦게 서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군다나 학자금 대출금, 체납형식의 빚은 일종의 세금에 대한 채무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이용할 수도 없다.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갖고 있지도 못한 젊은 청년노숙인들에게 이러한 채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일자리를 얻는 것이 급선무인지, 최소한의 돈을 모아 방을 먼저 얻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상당수였다.

사회적 피해의 경험을 청년노숙인 하위그룹별로 비교해 보면 몇 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A1 그룹의 경우, A2 그룹에 비해 노숙 전 경제적 피해 경험이 좀 더 많았다. 특히 사례7, 12, 19, n12 등 사업을 시도하다가 채무를 지거나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의 피해의 경험은 이들이 결정적으로 노숙에 진입하는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다. 노숙 이후의 피해 경험은 A2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A2그룹의 경우는 노숙 이후 경제적 피해 경험이 많았다. 주로 핸드폰과 통장 명의를 여러 개 빌려주는 대가로 소액의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핸드폰 대금과 기계값, 벌금 등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들의 이러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즉 명의대여는 사실상 일정 부분 대가를 받고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노숙인들 역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법적인 일에 편승하여 당장 급한 돈을 제공받는 데 합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이나 터미널에서 배회하는 노숙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을 유혹한 후 많은 빚을 떠안게 한다는 명백한 사기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기 피해자이자 범법 행위의 피해자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소결

청년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숙 위험요인의 분석을 통해 얻은 발견과 이론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년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으로 보았을 때,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의 94%가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이었고, 30세 이상이 80%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젊은 노숙인의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24세 이하의 청년들은 본 연구에서는 5.8%에 불과하였다. 다양한 청년의 기준 연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

년노숙인들의 상당수가 20대가 아닌 30대 청년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가져다준다. 첫째, 노숙 연구나 복지서비스의 대상 설정에 있어 청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 노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20대와 30대 전체가 포함된 ‘청년만’ 고려한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젊은 노숙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령 기준인 15-24세 구분은 청소년의 특성을 포착해낼 수는 있겠지만 청년의 특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청년노숙의 진입 연령시점을 살펴보다라도 25세 이후 노숙 진입이 70%에 이른다. 청년노숙문제는 기존 연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20대 초 사회생활 초년병의 일시적 위기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상당기간 사회생활을 경험했어야 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청년기의 후반에도 노숙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청년빈곤과 관련된 함의이다. 서구의 청년빈곤 논의와 한국의 청년빈곤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청년빈곤은 18-24세에 가장 높고 이후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진다(Aassve et al., 2002; 김수정, 2010). 그러나 청년빈곤의 가장 극단적 상황인 청년노숙의 경우는 반대로 극빈의 상황이 연령이 경과할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청년 중반기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경제활동을 통해 제대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다행히 30대 중후반이라도 경제활동이 안정화 된다면 노숙 진입은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노숙화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점점 노숙에 머무를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청년노숙의 문제는 청년빈곤의 일반적 패턴과는 구분된 별도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얻은 두 번째 발견은 두 그룹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과 군복무 여부이다. 청소년기에 가정을 이탈했었던 A2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 체계 속에 있었던 A1그룹도 이미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평균적인 인적자본 축적과 경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노숙인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경험하게 될 많은 제약조건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노숙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인이 아닌 그 이전의 경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세 번째는 청년노숙인의 위험요인과 관련한 새로운 요인 분류였다. 청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서구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노숙원인론의 구분과 위험요인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국 사회라는 맥락적 상황 내에서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노숙 위험요인의 기준과 항목들을 도출했다. Anderson(2001)이 제시했던 노숙 위험

32) 본 연구의 연령구분과 같은 기준으로 청년노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일본의 빅이슈재단의 보고서(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0; 2012)에서는 대상 청년노숙인 50명의 평균연령은 32.3세, 70%가 30대로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와 매우 흡사했다. 학력 역시 유사했다. 일본의 조사에서 최종학력은 60%가 고졸 이상이었고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34명 중 21명이 고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높은 비중으로 청년노숙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법적 피해의 경험을 사회적 피해 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새로이 구분한 사회적 피해 요인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발생한 위험요인으로 큰 틀에서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피해 요인의 발생은 비단 사회 속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지역사회, 불법적인 지하경제 등의 다양한 사회체계의 역기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의 경험을 통해 본 바로는 적어도 노숙 이전의 위험요인에서는 사회적 요인은 거시적 구조요인보다도 개인에게 물리적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중시적 구조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세부적인 위험요인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청년노숙인들의 위험요인 특성이었다. 분석의 결과, 개별 노숙 청년들이 경험한 위험요인은 매우 다차원적이며 개별 사례에서 중복 경험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세부 요인들의 화학적 작용이 청년들의 노숙을 설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11>을 통해 두 청년노숙인 하위 그룹에서 나타난 각 위험요인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많이 지적하였던 ‘노숙인들이 가난한 집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다’는 노숙인의 성장배경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적어도 청년노숙인의 경우에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논의라는 점이다. 원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의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빈곤보다도 이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위협과 심리적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노숙 직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청년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 위험요인을 통해 독립 이전까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원가정이라는 점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정민우·이나영(2011)은 현재의 시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원가정의 계급에 따른 계급화 된 가족 전략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즉 중산층은 가족의 안으로 포섭되어 가족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이용하면서 안전한 독립을 확보해 나가지만, ‘하위 주거트랙’으로 진입한 청년들의 경우 안정적인 집조차도 제공해 줄 수 없는 빈곤층의 가족은 청년세대를 가족제도로부터 밀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노숙인들은 가족으로부터의 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것은 고사하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혐오, 상처를 이겨내느라 힘겨워하고 있었다.

셋째, 청년노숙인들이 받은 피해(victimization) 경험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다행히 예상보다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11> 청년노숙인 하위 그룹의 위험요인(종합)

	주요 내용	A1그룹	A2그룹
구조 요인 (structural factor)	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기초수급경험 주거불안정	약 30% 경제적 어려움 경험, 기초수급 1사례 주거불안정 1사례	약 30% 경제적 어려움 경험, 기초수급 1사례 주거불안정 5사례
제도 요인 (institutional factor)	시설(보육원, 정신병원, 구치소, 소년원, 교도소) 경험	정신병원입소 경험이 두 드러짐. 보육원 1사례, 정신병원 3 사례, 교도소 1사례	보육원, 구치소, 소년원, 교도소 경험이 두드러짐. 보육원 4사례, 정신병원 2 사례, 구치소 3사례 소년원 3사례, 교도소 3 사례, 기타(양로원) 1사례
가족 요인 (family factor)	가족의 구조적 문제 가족의 기능적 문제 가족 내 피해경험	A1, A2그룹에서 공통적 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A1, A2그룹에서 공통적 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개인 요인 (individual factor)	청소년기 비행 성인기 비행 건강문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가 두드러짐	청소년기, 성인기 비행이 두드러짐
사회 요인 (social factor)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법적 피해 신용문제 등	노숙 전 경제적 피해경험 이 많음	노숙 전 신체적, 정신적 피해경험이 많음 노숙 이후 경제적 피해경 험이 많음

그러나 가족에 더하여 사회적 피해 경험은 매우 심각했다. 노숙인의 피해 혹은 트라우마와 관련한 문헌들은 대체로 노숙 이전 유년시절 혹은 노숙 전 성인기, 노숙 이후(혹은 최근)의 성적 피해(sexual victimization), 신체적 피해(physical victimization)학대 피해에 집중한다(Kim et al., 2010). 이에 더하여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유년시절 신체적, 성적 학대를 목격한 경우를 포함하기도 한다(Rattelade et al., 2013). 혹은 위험한 노숙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노숙 이후 물건도난 등의 범죄피해(criminal victimization)에 집중한다(Fitzpatrick et al., 1993). Whitbeck 등(1997)은 더 세부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숙 상황에서 벌어지는 피해들로 폭력, 강도피해, 강요된 성적 행위, 성적 학대나 강간, 총기 위협 혹은 상해, 범법행위 강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전의 피해 경험은 성적, 신체적 학대피해에 국한되지 않았다. 청년노숙인들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협박과 위협, 따돌림, 특히 각종 경제적 피해의 희생자였다. 특히 노숙인들은 외관상 돈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금품을 강탈하는 강도 등의 일반적 범죄의 ‘적합한 대상(suitable target)’은 아니다(Fitzpatrick et al., 1993; 354).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숙인들 사이에서 ‘금품’의 도난과 사기는

희귀한 일이 아니며, 범죄 집단의 시선에는 특히 젊은 노숙인은 ‘금품’ 아닌 ‘명의’를 도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의 주요 발견은 청년노숙 양 그룹 간 나타난 개인적 요인의 차이였다. 가장 큰 차이는 A2그룹에서 거의 모든 사례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이 A1그룹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A1그룹의 사례 중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사례들에서도 사실상 가출과 비행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의 차이는 A1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들이었다. 가출과 비행에 있어서의 양 그룹에서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듯 보인다. 두 그룹의 구분 기준이 청소년기 노숙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A2그룹의 청소년기 위험요인은 가출에 더하여 중복적인 비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Whitbeck 등(1999)의 위험증폭 모델이 설명한 것과 같다. 즉, 가출이라는 상황 자체의 노출(가출기간)과 비행 동료들의 영향으로 인해 음주, 약물의 사용, 비행적인 노숙생활에서의 생존전략, 위험한 성적 행동 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A2그룹의 사례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소년기 비행을 설명한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청소년기 비행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비행 역시 같은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A2그룹에서 A1그룹보다 노숙 이후 사회적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의 논의는 이러한 위험요인의 증폭이 결국 청소년 노숙인들의 피해(victimization) 경험을 더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노숙인의 개인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청년기 노숙진입 그룹(A1)의 경우 청소년기 성인기의 비행이 청소년기 노숙 경험 그룹(A2)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건강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구조요인이나 제도요인, 가족요인 경험의 유사성과는 대조적이다. 청년기 노숙진입 그룹은 구조요인, 제도요인, 가족요인의 경험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결합되어 노숙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기 노숙경험 그룹은 오히려 구조, 제도, 개인의 요인들이 비행으로 분출되었고 이것이 성인기 비행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쪽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청년기 노숙진입 그룹의 경우 부정적 위험요소들이 많은 원가족에서의 삶, 혹은 원가족 자체가 부재했던 삶을 살면서 그 틀을 깨트리고 이탈하는 대신 자신 내면 혹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키우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청소년기 노숙경험 그룹의 사례들은 부정적 위험요소들이 산재한 가정의 울타리를 일찍 이탈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여 왔고 그것이 여러 비행으로 옮겨가면서 노숙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 것일 수 있다.

제 5 장 청년노숙 진입 경로와 독립 이행

제1절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본 장의 분석 목적은 앞 장에서 도출된 위험요인들에 ‘시간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노숙에 영향을 미친 것들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그 연결고리들이 말해주는 노숙 진입 과정의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가 경험한 위험요인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노숙의 진입 과정이 몇 가지의 일정한 패턴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이 노숙의 진입 경로를 설명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출된 노숙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방법에서 밝혔듯이 Yin(2008)의 사례연구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각 사례의 5가지 요인별 위험요인을 Yin이 제시한 연대기적 분석과 패턴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의 패턴, 즉 경로를 찾는 과정이었다. 연대기적 분석을 위해 맨 처음 시행한 분석 절차는 첫째, 위험요인의 주제별로 추출되었던 세부 노숙 위험요인을 생애과정에 맞게 시간의 순서대로 재정리하는 것이었다. 앞 장의 위험요인 분석은 경험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이것을 청년들이 언제, 어떠한 순서로 경험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위험요인의 시간적 배열은 어떤 것이 무엇에 어떤 이유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면에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해 청년기 노숙 이전에 경험한 노숙 위험요인을 유년기, 중고등학교 시기인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로 구분하고 경험한 위험요인들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드러나도록 위험요인들을 배열하였다. 다섯 개의 위험요인들은 구조 요인은 Structure의 St, 제도 요인은 Institution의 I, 가족요인은 family의 F, 개인요인은 Individual의 Id, 사회요인은 Social의 So로 표시하였다. 두 번째 과정은 인터뷰 자료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노숙의 위험요인 사건의 전후 맥락에서 드러나는 각 위험요인 경험 간의 인과성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경험과 경험 간의 원인과 그 결과의 요인들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선의 화살표(→)로 인과적 관계를 표시하였다. 인과성이 다소 모호한 경우, 즉 인과적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되지만 선행사건이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는 경우 즉, 다른 사건들도 후행 사건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이 제기되는 경우는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 절차로 다수의 위험요인들 중 실질적으로 노숙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참여자가 진술한, 혹은 연구자가 판단한 요인들을 구분하고 이를 ‘핵심위험요인(critical

risk factor)’으로 설정하여 네모점(■)으로 표시하였다.³³⁾ 또한 언제 핵심위험요인을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 사례연구의 분석방법인 패턴매칭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하위 단계의 패턴매칭으로 청년노숙인 각 사례에서 연대기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노숙 위험요인의 핵심적인 경험들의 패턴을 찾고 이를 청년노숙 하위 그룹 내의 다른 사례들과 사례 간 비교함으로써 청년노숙 하위 두 그룹에서 노숙에 이르게 되는 주요 경로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사례에서 중요한 노숙 위험요인으로 표시된 핵심위험요인을 이용하여 각 사례의 패턴을 핵심 위험요인의 요인군(구조, 제도, 가족, 개인, 사회)의 기호로 정리했다. 패턴의 간소화를 위해 구조 요인과 사회요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S로 정리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표 5-1>(p.117), <표 5-2>(p.125)에 제시하였다. 패턴매칭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과 미리 예측했던 패턴을 비교하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며 관찰 패턴이 예측 패턴과 일치하면 사례연구의 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하였다(Trochim, 1989; Yin, 2003:191). 본 연구의 경우는 사실상 미리 예측했던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숙 진입 경로의 패턴을 도출하는 시도가 예측 패턴을 만드는 과정임을 감안한다면, 각 사례에서 관찰된 패턴을 도출하면서 그것이 몇 개의 군으로 모여지게 되는 경우 이것을 해당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내적 타당성을 갖춘 예측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노숙 그룹 단위인 상위 단계의 패턴매칭이다. 즉, 본 연구가 청년노숙 하위 두 그룹이 가질 것으로 예상한 노숙 진입 경로에 대한 예상 패턴에 대해 경험적으로 관찰된 패턴들을 비교하여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두 그룹 전체의 경로는 <표 5-3>(p.131)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다.

1. A1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

우선 A1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표 5-1>(p.117)에 제시된 바와 같

33) 가령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지속적인 문제가 많았던 한 참여자가 ‘어머니의 사망’을 계기로,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되었다면 ‘어머니의 사망’은 직접 노숙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참여자로 하여금 집을 떠나서 방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노숙과 관련한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추출된 노숙의 위험요인들은 노숙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모든 위험요인들이 노숙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교 중퇴의 경우는 사실상 노숙의 위험요인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 사례의 노숙을 가져오는 위험요인이었는지는 각 사례마다 다르다. 어떤 사례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 이른 나이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는데, 이런 경우 중학교 중퇴는 학력단절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노숙을 초래하는 데 핵심적 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 그로 인한 학교 무단결석과 자퇴의 경우는 이것이 반복되는 비행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청년기의 일, 주거, 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은 핵심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각 사례가 경험한 위험요인들을 연대기순서로 나열하고, 노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위험요인을 핵심위험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례에서 드러나는 핵심위험요인을 통해 A1그룹 14개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노숙 진입 경로의 패턴은 노숙의 핵심위험요인으로서 ‘어떤 위험요인을 경험했는가 혹은 경험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노숙 진입 경로의 패턴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대에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인 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의 중요한 구분점은 앞서 노숙 위험요인의 설명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개인위험요인(Id)을 경험 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였다. 개인위험요인의 경험 여부가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례에 대한 연대기적 분석과 하위단계의 패턴 매칭 작업을 완료한 이후 드러나는 결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각 경로와 청년들의 노숙화 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이해를 높이고자 경로별 사례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기술(illustration)하고 경우에 따라 대표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절적인 분석단위에 치중하게 될 때 전체적인 사례의 이야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 개인요인(Id)이 없는 노숙 진입 경로 패턴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핵심위험요인으로 개인요인(Id), 즉 노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개인의 비행,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노숙 진입 패턴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12(F→S), 사례n12(S), 사례n10(F→F→S), 사례n11(SF→F→S)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사례의 노숙 진입 경로는 개인요인이 없이 가족 요인, 구조적 요인, 사회적 요인들만으로 구성되었다. 사례12의 노숙 진입 경로는 F→S로 정리된다. 사례n12 역시 매우 유사한 경험을 통해 노숙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례n12의 노숙 진입 경로는 친구의 사기(So)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사례n10, 사례n11³⁴⁾은 앞의 두 사례보다는 핵심위험요인이 다소 복잡하지만 역시 노숙 이전 개인적 요인의 위험요인이 없었던 사례였다. 사례n11역시 불우한 가정사가 노숙의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례12]

사례12는 평범한 성장배경을 가진 31세의 남자 청년으로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여 컴퓨터 학원 강사로 활동하였고 이후 계약직으로 방송국 라디오 홈페이지 제작 일을 해 본 경험도 갖고 있다. 방송국 일을 하던 도중 알게 된 동료와 함께 의기투합하여 동료가

34) 이들은 가정환경은 극과 극이었지만 쉼터에서 함께 붙어 다니며 의지하는 사이였다. 아이러니 한 것은 2년여 동안 함께 쉼터에서 생활을 했고, 방을 얻어서 밖에서 같이 살아보기도 했는데 서로의 노숙 전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었다.

잘 아는 지역인 일산에 카페를 시작하였다.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있는 카페가 흔하지 않은 시절이어서 카페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명절을 맞아 지방출신인 참여자가 명절을 쇠러 고향에 다녀오는 연휴 기간에 돌연 동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도주해 잠적하는 황당한 사건이 생겼다. 결국 밀린 대금과 직원월급 등을 모두 자신이 빚을 내어 처리해야 했다. 고시원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지만 계속되는 채무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더 이상 빚 갚기를 포기하고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돈을 못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는 그 길로 걸어서 서울역까지 와 버렸다. 그 때부터 거리노숙이 시작되었다. 왜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한 듯한 참여자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그로 인한 관계의 악화(F)를 경험하여왔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소위 ‘헬리콥터 맘’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간섭을 하며 모든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까지 아들 몰래 대학교로 찾아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캐물어 알아가는 엄마였다. 참여자는 어머니의 이러한 간섭과 통제로 자신의 청년기가 크게 방해 받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런 간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청년기에는 그런 간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간섭과 그로 인한 관계의 갈등은 사례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간섭에서 떨어져나가 비교적 성공적인 독립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 갑자기 황당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처지에서 어머니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큰 간섭과 잔소리의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보다 차라리 거리에서 살면서 버텨보는 것을 선택했다.

[사례n12]

부모님은 지방에서 2대째 사진관을 하시는 분들이고 참여자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 군복무 후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직업학교에서 1년을 더 공부한 후, 남들이 부러워하는 S전자에 생산라인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9년을 다녔다. 급여도 높고 안정적이었지만 휴일도 없이 돌아가는 3교대 근무의 고됨,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들의 건강악화 소식, 40대 중반이면 구조조정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거의 명백해 진다는 점을 고려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2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결심하였고 30대 중반 9년 만에 과감히 대기업에 사직서를 던졌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일식을 취미로 배웠는데 이를 생업으로 삼아 인생 제 2막을 펼치고자 생각했던 것도 회사를 그만 둔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아쉽게 결혼은 깨져 버렸다. 그래도 2년간 큰 일식집에서 주방보조로 요리를 배워 오래 함께 지내던 고향친구와 그간 모든 돈으로 꿈꾸던 자기의 가게를 차리려고 실

질적인 준비를 해 나갔다.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위해 살던 방을 정리하고 있는 돈을 모두 끌어 모아 친구와 함께 가게로 들어가던 날, 친구가 잠깐 맡아둔 그 돈을 모두 들고 사라져버렸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도 대금지급 계약 등의 과정에서 친구가 중간에서 돈을 빼들려 왔던 것도 일이 터지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2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까.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는 고향 친구에게 당한 사기로 인한 충격과 배신감, 황당함, 깨어진 자신의 꿈으로 인한 절망감이 밀려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서른여덟이나 먹은, 독자(獨子)인 자식이 당한 이런 황당한 일을 노년의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럽고 또한 수치스러운 것 같다. 또한 부모님이 받을 충격과 부모님들끼리의 갈등으로 일이 커지는 사태도 아직 마주하고 싶지 않다. 주방보조 시절 가게 사장님과 함께 인천의 한 노숙인 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 본 경험에 근거하여 무일푼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검색하던 중 서울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들어온 지 한 달째였다.

[사례n10]

사례n10은 흔히들 상위 1%에 들어간다고 볼 정도로 좋은 집안의 장남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신 건축가에 대학교수이시고 어머니,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건축가이신 할아버지는 장손인 참여자가 넓은 세상을 보기를 원하셔서 참여자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세계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셨고 덕분에 참여자는 성인기 이전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유복하게 보냈다. 그러나 그 탓에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일 년에 한 두 번 볼까 말까였고 부모님의 따뜻한 애정을 받았던 기억도, 안정감을 느꼈던 기억도 별로 없다. 중3때 잠시 한국생활에 적응하여 공부를 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들어 왔었지만 재산과 관련된 집안의 불화, 어머니 아버지와와의 불화로 인한 가정폭력과 싸움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시 친척이 있는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되었다. 고3때 다시 들어와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두고 가정에도 한국사회에도 적응이 안 된 자신을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때려가며 공부를 시켰던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꼭 참았다. 참여자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대학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부모의 뜻을 어기고 좋아하는 영화 쪽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불화로 그늘진 가족들 사이에서 점차 말이 없어지고, 눈치를 보았고 하고 싶은 말들도, 기쁘고 슬픈 감정들도 참게 되었다. 큰누나, 쌍둥이 누나, 터울이 많이 나는 여동생들 사이에서 자신은 남자이니까 스스로 생활해야겠다 싶어 대학 2학년 때부터 집에 손을 벌리지 않고 여러 일들을 하며 나름대로 힘들게, 그리고 고군분투 살아왔다. 군대도 스스로 돈을 더 벌고 집에 부담을 드리지 않고자 하사관을 자원하여 연장복무를 했다. 그러나 고3때 어머니가 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제대 후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 사귀던 외국인 여자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아픈 경험을 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잘 알고 지내던 어머니의 후배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잘 대해주던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태도를 바꾸었다. 참여자가 집에 와 있는 게 싫다며 집을 나가라고 종용하였고 결국 자신의 형제들은 모두 집 밖을 떠도는 형국이 되었다. 이후 친구집, 모텔 등에서 지내며 해외생활을 하며 익혔던 레스토랑 일과 좋아하던 영화 일을 기반으로 취직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돈도 못 받고 관두기를 몇 차례 하다 보니 돈도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 강남역 등지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주일가량 거리를 방황하다 경찰의 도움으로 2년 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 오게 되었다.

이들 사례의 노숙 경로의 공통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서두에 밝힌 바대로 개인요인이 노숙의 핵심위험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불행에 버티지 못하고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나라으로의 추락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걱정하고 계획하는 지인의 배신, 가족의 사망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문제는 불행 이후의 충격과 무기력에 대한 대응인데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 나오는 것과 자신의 생활을 누구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세워 나가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34명의 청년노숙인들 중 노숙 전에 소위 ‘정상적인 삶’에 가장 근접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범했던 삶에서 노숙에 이르게 된 상황인 만큼 그만큼 낙차(落差)와 그로 인한 자괴감과 당혹감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들 네 사례는 현 노숙 상황을 ‘인생의 쓴 경험’ 정도로 규정짓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노숙은 경험삼아 살아보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생각은 반대로 자신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노숙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반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시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들의 표현대로 점차 노숙에 ‘젖어’들면서 일반적인 사회와는 괴리되어 간다는 데 있다.

2) 개인요인을 경험한 노숙 진입 경로 패턴

앞서 살펴본 4명의 사례를 제외한 A1그룹의 10명은 개인요인을 노숙의 핵심위험요인 중 하나로 경험하였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경험한 개인요인은 대부분이 비행이 아닌 건강문제라는 점이다. 건강문제는 그 성격들이 상당히 달랐는데 신체적 불건강, 정신적 불건강, 성격장애 혹은 경계성 장애, 게임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사례7의 경

우만이 청년기의 음주, 유흥 등의 비행이 노숙을 초래하는 주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나머지의 경우도 사례19의 결핵을 제외하고는 8명의 사례 모두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³⁵⁾ 본문에서는 주요 개인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경로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³⁶⁾

① 가정폭력과 구조·사회위험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불건강

청년 노숙인들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노숙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상당히 심각했다. 그런데 정신 건강상의 문제 역시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에 근거하여 몇 개로 다시 구분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문제의 피해나 희생에 구조와 사회 요인이 결합하여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노숙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사례n1(S,F->Id->S->Id), 사례n4(F->S->Id), 사례n7(F->S->Id), 사례n13(S,F->Id)의 「청년노숙인 인터뷰자료」에서 얻은 네 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대표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례n1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n1]

사례n1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다.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장난감 칼로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그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력의 주 피해자였지만 우울과 도박 등의 문제도 갖고 있었다. 참여자는 부모의 돌봄이나 양육도 잘 받지 못했다. 필기구나 생활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사 주지 않았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학교 아이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다. 결국 12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 왔다.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가 불쌍하기도 했다. 참여자는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로 새엄마를 쫓아낼 작심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엄마랑 싸우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이 더욱 심해져 거의 매일 맞다 시피하며 살았다. 동생은 감싸며 자신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기초수급으로 공짜로 받는 급식 때문에 학교에서 낙인감도 심하게 느꼈다. 어디를 가도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 참여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칩거하는 것을 택했다.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여주고 싶은 반항심도 있었다. 마침내 새엄마도 쫓아냈다. 아버지와

35) 비행문제를 가진 사례7의 노숙 진입의 경로를 축약하여 표현하면 S,F->Id->S로 정리된다. 사례7의 노숙 진입의 패턴은 청소년기의 가출 경험이 없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뒤에서 살펴볼 A2그룹의 노숙 진입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
 36) 신체적 불건강의 경우 역시 사례19 하나에 해당되었다. 이 사례는 고3때 발병한 결핵으로 인해 서울소재 유명 사립대의 법대에 입학했지만 계속 휴학을 반복하며 학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사법고시 준비를 했지만 잘 집중하지 못하다가 점교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채 낙향 후 모든 돈에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열었지만 실패하였다.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족스럽게 공부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고는 그대로 서울로 상경한 후 노숙에 진입하였다.

의 극심한 불화에 아버지도 집을 나가고 친어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왔다. 그러다 또 친어머니가 나가고 아버지가 들어오기도 했다. 자신이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을 쫓아내고 대신 자신은 집에 기거하며 세상과 담을 쳤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면서 자해, 자살시도를 많이 했다. 그러다 간 군대에서도 잦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반항했다.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행히 따뜻한 마음의 분대장의 배려로 마음을 다잡고 군대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해 합격했다. 그러다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고 군생활 중 얼굴을 알고 지내던 한 병사의 총기 자살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이 현장 확인을 요구하며 시신 수습을 지연시키는 중에 그 곳에서 근무를 서게 되면서 사고 시신에 근무 내내 노출되었다. 이후 그 충격으로 심한 자살충동에 시달렸다. 군 제대 이후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이사가버린 친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 집에서 다시 은둔형 외톨이로 한동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200만원을 주면서 이제 나가 살라는 말을 하셨다. 그 돈으로 고시원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하였다. 간간히 일을 하며 지내던 중 고시원에서 만난 형과 어울리면서 술을 먹고 잠이 안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을 청하던 시기에 조현병(정신분열)이 발병하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은 환청이 오면 땅만 보고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먹고 길을 따라 걸어 다녔다. 이후 병원과 고시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결국 노숙인 재활시설로 입소하였다. 정신병원에서는 군 복무시절의 총기사고 목격이 조현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고 진단했지만 자신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당한 폭력으로 자신의 병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가정문제에서 폭력이나 학대 혹은 방임의 피해는 없었지만 감당하기 힘든 가족의 문제와 홀로서기의 과정에서 경험한 혹독한 사회의 위협으로 결국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다. 사례n7의 경우도 비교적 평범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청년기에 쏟아진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사례n7]

운수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충당이 안 되어 어머니는 언제나 일을 하느라 바빴고 자신은 거의 누나들 손에 자랐다.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재미있게 보냈다. 집안 형편 상 고교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다. 공장에 취직을 해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갖다 드렸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청년이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 200여 만원을 벌 수 있는 단순 노동 공장일을 1년 이상 하는 것은 너무 따분하고 성에 차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았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단순 문서수발 정도가 전부였다. 은근한 고졸 차별도 느꼈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근무를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봤고 서울소재 4년제 공과대학에 합격하였다. 그 때만 해도 좋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편찮으

서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집에 손을 벌릴 형편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로 4학년 1학기까지의 등록금을 충당했다. 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은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해주는 제도가 생겨 오히려 대출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중에 취직해서 갚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 없이 대출을 받은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하기만 하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겨우겨우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생각보다 공대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웠고 일을 하며 공부를 하려니 더더욱 힘에 부쳤다. 대학생들에게 유행하던 모의 주식을 한 번 해봤다가 돈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4학년 경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부재, 생활고, 빚, 취직걱정, 공부에 대한 부담 등 자신의 슬픔도 엄청났지만 셋이나 되는 누나들은 모두 살 길 찾아 집을 나가버리고 자신과 아버지가 단 둘이 남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재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매일 울며 너무 힘들어 하는 아버지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결국 참여자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약을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지만 누나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외면했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타박만 늘어놓으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새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자신은 아버지 집을 나왔고 학교 앞 친구 집,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몇 개월을 살기도 했다. 극심한 생활고, 우울과 자살충동으로 죽고 싶은 마음에 한강 다리 위를 서성거리다가 자살예방기관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긴급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노숙인기관으로 의뢰해 주었다. 국가 세금의 성격을 가진 돈이어서 개인회생, 파산 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학자금 대출 4000여 만원이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② 유년기부터 의심된 성격장애, 혹은 경계성 장애

한편 사례22, 사례38은 어릴 때부터 경계성장애 혹은 성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사례였다. 그 중 사례38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사례38]

아버지는 취중폭력이 심했다. 주로 어머니가 주된 피해 대상이었다. 참여자도 어릴 때부터 지능이 떨어진다고 싶은 정도로 공부를 못했다. 그 때문에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했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놀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도 다니기 싫고 학업에 대한 흥미도 없어 중3여름 방학 때부터 학교 다니기를 등한시 하고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형광등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학교는 고2때 자퇴를 하였다.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5급을 받고 면제처리 되었다. 정확한 면제 사유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후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시도했으나 일처리가 늦고 사람들과의 화합이 어려워 한 공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3~4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공장을 전전했다. 무작정 국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진중하게 꾸준히 일을 못하고 저축하지 않는 아들의 무계획성과 불성실함

을 야단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길로 지하철 역에서 방황하던 중 인신매매단에 걸려들었다. 김 양식장에 팔려갔다가 다시 집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경험도 있다.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갔다.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2005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30대 초반 완전히 집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노숙 진입이었다. 지속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번 돈들을 가지고 고시원, 사우나, 여인숙, 노숙인 쉼터를 돌며 생활했다. 그런 노숙 생활 중에 참여자는 중국 위장결혼, 대출사기, 중국 보따리 상 등 각종 불법, 위법한 일들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③ 게임중독

정신적 요인 중 게임중독이 노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들도 있다. 사례n6과 사례n18이 그에 해당한다.

[사례n6]

사례n6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 집이 경제적 사정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참여자는 초등학교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 큰 수술을 받고 서울 대학병원으로 병원치료를 다니느라 학교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께 뛰어 놀 수도 없는 상황에 점점 소극적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에 심각하게 빠져들었다. 공부를 잘 못했고 전문대를 다녔다. 군은 면제를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20대의 한참을 게임방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러던 중 교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누나는 참여자에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도 권유하고 전공을 바꾸어 전문대를 다시 들어가도록 새 삶을 안내해보기도 하였지만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누나는 결혼을 해 해외로 나갔고,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시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방으로 요양을 가시기 위해 고향에서 살던 집을 정리했다. 자신은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낸 후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게임머니 거래로 최소한의 돈만 벌며 생활을 하고 있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 싫어 이용을 꺼려진다. 최대한 부딪치고 싶지 않아 사람이 없는 낮에 잠시 와서 쪽잠을 잘 뿐이다.

〈표 5-1〉 청년노숙인의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A1그룹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7	■St(빈곤), F(부의 장애)	→Id(학교중퇴)	→St(이른 나이에 저임금 낮은 일자리 진입) ■Id(동료 불화로 일 그만둔 후 음주) ■So(절도 공범으로 몰림) →I(교도소)	출소 후 노숙진입	SF Id ▶ S
12		■F(모의 간섭)	■So(동업자 도주) →So(신용불량)	빚을 지고 노숙진입	F ▶ S
19	■St(빈곤), F(가정불화)		■Id(결핵) →Id(잡은 휴학, 고시공부실패) ■St(식당경영 실패) →So(신용불량)	빚을 지고 노숙진입	SF ▶ Id ▶ S
22		F(부모의 이혼)	■Id(성격장애) ■St(다수의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노숙진입	Id ▶ S
38	■F(부의 가정폭력), ■Id(경제성장애의심)	→So(학교따돌림)→Id(고교자퇴)	→St(불안정한 일자리, Id(일자리 부작용) ■So(대출 사기) →So(신용불량) ■Id(유혹, 여행, 위장결혼 등 비행)	→F(아버지와의 갈등) 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옴	F ▶ Id ▶ Id ▶ S
n1	■St(빈곤), F(부의 가정폭력), F(모의 자살시도)	→F(부모의 이혼, 새어머니와 동거)	→■Id(고교자퇴후 은둔) →Id(자해) ■So(군내 총기사) →■Id(조현병발현) →I(정신병원)고 피해 목격)	정신병원 입퇴소 반복하다 노숙진입	SF Id ▶ S ▶ Id
n4	F(부모의 투병)	■F(부모의 사망)	→So(사채업자의 괴롭힘) →■So(집을 팔고 돈을 벌어 채무이행)	뇌전증 발작 증상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없어 노숙진입	FS ▶ Id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 Id(뇌전증발현) → Id(자살시도)		
n6	■ Id(심장수술)	F(부의 사망)	■ Id(게임중독으로 PC방) ■ F(모의 암투병으로 집 정리 후 요양원 이동)	모의 암치료 차 재산정리하고 상경했으나 돈을 벌지 못해 노숙 진입	Id ▶ Id ▶ F
n7			■ F(모의 사망) → F(부와의 갈등, 새어머니 동거) ■ So(학자금대출채무) → So(신용불량) ■ Id(우울증, 자살충동)	집을 나와 살다가 생활고로 인해 노숙진입	SF ▶ Id
n10	■ F(가정폭력, 불화), F(오랜 해외생활) F(성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강요), F(모의 사망)		■ F(부의 의식불명, 새어머니와 불화) ■ So(임금체불), So(보이스피싱 피해)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해서 쫓겨남	F ▶ F ▶ S
n11	■ St(빈곤) ■ F(부모의 이혼, 부모를 본 적 없음, 조부모와 동거)	So(빛 독촉에 시달림)	■ F(조부모님의 사망) Id(싸움, 집행유예) ■ St(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남)	집이 없어지면서 거리노숙 시작	SF ▶ F ▶ S
n12			Id(과도한 음주) ■ So(친구가 사업자금을 가지고 도주)	사기를 당하고 노숙에 진입	S
n13	■ St(빈곤) ■ F(부의 가출), F(모의 가정폭력)		■ F(아버지와의 불화, 어머니의 기대 부담) → ■ Id(자살시도, 우울증)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와버림	SF ▶ F F ▶ Id
n18	I(6세에 미아보호소에 맡겨져 고아원 생활)		■ Id(결핵으로 일을 그만두고 입원) ■ Id(게임중독)	돈이 다 떨어져 노숙	(F) ▶ Id

2. A2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

앞서 살펴보았던 A1그룹의 구분 기준이었던 개인요인(Id)은 A2그룹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사실상 A2그룹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례가 개인적 요인(Id)을 핵심 위험요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A1그룹과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A2그룹의 개인 요인은 대다수가 비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20대 때의 뇌종양 발병(사례4), 우울(사례n3, 사례n17), 뇌전증(사례n9)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가출, 음주, 폭력 등의 비행과 연결되는 개인요인이었다.³⁷⁾

1) 구조요인과 가족문제로 인한 비행과 이탈, 그리고 금전적 사기 피해 패턴

A2그룹의 전형적 노숙 진입 과정의 하나라고 한다면 유년기의 빈곤 등의 구조적 위험과 가정폭력 등의 가족문제, 그로 인한 청소년기의 개인요인, 그리고 청년기에 맞게 되는 사기피해 등의 다양한 사회적 피해 요인으로 인해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다(SF→Id→S). 이러한 경로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다섯 사례로 사례4, 사례15, 사례20, 사례62, 사례n8이 있었다. 청년기 사회적 피해 요인은 없었지만 이와 유사한 경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례도 다섯 사례였다. 사례16, 사례42, 사례n2, 사례n3, 사례n19가 그에 해당되었다.

이들의 노숙 진입의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유년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가정불화와 갈등을 경험하였다. 사례4는 건달인 아버지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서 집안도 어려워졌다. 사례20도 아버지, 형, 누나, 여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을 경험하였고 가족들의 장애로 동네 형들의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사례62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도박과 경제적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청소년기의 방황을 부추겼다. 사례15 역시 언청이로 태어나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기억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 사례n8은 참여자가 7세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는 불행을 겪었다. 이후 친어머니의 형제들인 작은 형과 바로 위 누나와 함께 셋이서 동네 친척들의 돌봄을 받으며 한동안 생활을 했다. 이후 형제들은 각자 친가 쪽 친척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들이 경

37)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이사례는 두 사례였는데 하나는 개인적 요인(Id)이 없는 사례n14와 사례n20이었다. 사례n14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에 따라 나섰다가 어머니가 양육의 부담으로 참여자를 아는 양로원에 맡기고 가버려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양로원에서 돌봄은 받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이용한 그들과 결별하고 독립하고자 했으나 각종 사기에 피해를 당하고 수 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그간의 성장배경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일상적인 가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지원이 없었던 터라 더욱 범죄에 휩쓸려 다니면서 희생이 된 사례였다. 한편 사례n20은 청년노숙인들 중 유일하게 결혼경험이 있는 사례였는데 결혼과 가족, 사업실패, 이후의 개인적 요인들이 노숙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장년노숙의 특성을 보이는 사례였다.

힘한 가족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소외와 차별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 싸움, 그리고 학교 자퇴를 불러왔다. 가출, 흡연, 음주, 패싸움은 기본적인 수순이었다. 이들 중 10대 시절의 무리한 음주, 흡연, 가정형편으로 인한 노동으로 20대 때 양성뇌종양이 걸린 사례4와 중학교 중퇴를 한 사례62, 사례n8을 뺀 군대에 다녀온 나머지 세 명은 어김없이 군복무 중에도 폭력사건을 일으켜 군 영창에 다녀오거나 부적응으로 군대 내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비행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사례62는 사회생활 중 폭력사건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 이들의 사회생활에는 금전적 사기피해가 잇따랐다. 인감증명 도용으로 사기피해를 입고, 사업도중 사기를 당하고, 대출 보증으로 빚을 져 신용불량 상태였다. 사례n8은 매우 이른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공교롭게도 IMF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기숙사에 압류 딱지가 붙여지며 가지고 있던 동전 몇 푼과 입은 옷과 신발만을 가지고 쫓겨나 거리노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사례20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20]

사례20은 가족들이 모두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가족이었다. 가정형편도 어려워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장사를 도왔다. 가난과 장애에 대한 따돌림은 집요했다. 동네 형들은 학교 집 할 것 없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와 자신을 괴롭혔다. 괴롭힘을 피하려면 집도 학교도 벗어나야 했다. 며칠 씩 도망가다시피 가출을 하다 집에 들어오곤 했다. 그런 와중에도 만두가게, 신문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중학교 때 태권도 등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간 놀림거리와 따돌림을 받기만하고 소심했던 자신이 점점 난폭해져갔다. 싸움이 일어났고 근신과 유기정학도 받았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대학 체육학과에 입학했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했고 친척들의 소개로 물류창고, 환경미화원 등의 일을 했다. 한 3년 꾸준히 일을 해 돈을 모았지만 좀 더 돈 되는 재미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다. 의류사업을 했고, 소위 말하는 약장수(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약을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갑자기 쉽게 많이 번 돈은 마음을 들뜨게 할 뿐이었다. 두 차례나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해 빚을 지면서 그 충격에 거리노숙을 시작했다. 망가진 상태에서 자살도 시도했다.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때부터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되는 대로 생활을 했다. 마음을 추스르려고 봉사활동도 해 보았지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 그것도 관두었다. 주유소에서, 휴대폰조립공장에서 몇 달씩 일도 해보았지만 안정감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다 안착한 곳은 결국 서울역이었다.

한편 청년기의 사기사건은 없었지만 비슷한 패턴의 사례들인 사례42, 사례n2, 사례n3 역시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다. 사례16 역시 ‘거지집이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게다가 똑똑한 형제들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자신에 대해 식구들의 왕따 아닌 왕따를 경험했다. 청소년기 가출, 절도, 자살시도가 있었고 군대에 가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폭행사건으로 교도소에 다녀왔다. 사례42, 사례n2의 경우 이들의 청소년기의 가출은 성인기의 폭력사건과 알콜 문제 등의 비행으로 이어졌다. 사례n3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무관심과 가정폭력, 학교 폭력과 괴롭힘으로 심한 우울로 가족과 학교를 피해 가출을 했다. 빈 집에서 며칠 씩 먹지도 않고 머물러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결국 우울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것이 결국엔 차라리 ‘굶어 죽으려고’ 거리노숙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사례n19의 노숙 진입 과정은 더욱 기구하다.

[사례n19]

사례n19의 아버지는 현재 나이가 90이 넘는 할아버지이다. 아버지의 구타로 인해 어머니는 일찌감치 외가에서 데리고 가셨다. 사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몇 번째 부인 중 하나라고 했다. 참여자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을 아무 말도 없이 고아원에 데려다 놓고 사라졌다. 황당했지만 어차피 아버지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 잘 된 일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아원도 살벌한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형들과 함께 어울려 탈출을 했고 그것이 거리생활의 시작이었다. 이미 외톨이로 건물 옥상, 계단에서 몰래 숨어살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사무실로 내려왔다. 문이 열린 곳이 없는지 살핀 끝에 문 열린 사무실에 들어가 먹을 것을 뒤졌고 과일칼로 사과를 반쪽만 먹으려던 순간 발각되었다. 단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쳐 먹으려 했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는 억압에 못 이겨 형사의 말대로 진술을 했고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과 15세에 특수강도의 죄목을 달고 5년간 소년원에서 살았다. 소년원에서 나왔지만 갈 곳은 없었고, 부산역에서 서성거릴 때 자신을 거두어 주겠다는 목사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5년을 살았다. 머물 곳이 있어 다행이었지만 그들은 점점 자신의 기초수급, 정신장애인 등록을 권유했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많은 혜택을 대신 누리나갔다. 엄마를 한 번 찾아 보리라는 심산으로 서울행을 결정한 이후 상경해 쪽방에서 기거하였지만 역시 서울은 삭막한 곳이었다. 부산에서는 유지되던 수급권도 서울에 오니 잘려 나가는 판국이었다. 결국 다시 거리노숙은 시작되었다. 가족을 끝까지 찾아보자는 심산으로 둘째, 셋째 어머니의 자식들도 만나보고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연락을 끊었고, 이사를 가 버렸다. 다시 외톨이가 된 참여자는 재수급을 바라면서 힘들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 나오면 노숙인 시설들을 들리며 생활했다. 주거비지원을 받아 서울역 앞 고시원에 나와 살고 있지만 다시 신청한 수급이 살아나서 계속 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유일한 바람일 뿐이다.

2) 구조·사회적 피해 요인을 경험하지 않는 패턴

A2그룹의 두 번째 전형적인 노숙 진입 경로는 구조 위험이나 사회적 피해 요인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들로 대부분 가족 문제로 시작된 괴로움이 청소년기 개인적인 문제들로 번졌고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노숙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였다. 사례29, 사례40, 사례5, 사례9, 사례15, 사례16, 사례17, 사례21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사례는 크게 원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시달린 경험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가정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정문제가 청소년기 비행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청년기의 범법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례9, 사례15, 사례16에서도 나타났다.

[사례9]

사례9의 아버지는 참여자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무섭고 나타날까봐 지금도 불안하다. 한동안 불을 켜놓고 잠을 자야하는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술, 여자, 도박,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계속되는 아버지의 구타에 많이 맞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자와 여동생도 많이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을 받았다는 느낌은 기억조차 없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로 하신 것이다. 두 분은 각각 친가로 외가로 가셨고 참여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양가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이혼을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고, 각종 증인 진술과 법원, 법무사의 심부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조차 제대로 못갈 지경에 빠뜨렸다. 그 시간이 약 6년이었다. 고1때부터 집을 나와 친구랑 지내면서 주유소 일을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때 없던 뇌전증(간질)이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다. 군대어나 가자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과 환멸을 느꼈다. 스무 살 때 친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혀 헤어지고 난후 배가 고파 편의점에 가서 강도짓을 했다. 경찰에 잡혀가 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주유소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등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를 다녔지만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결국 돈이 한 푼도 없게 된 지 한 달째에 이르고 있었다.

[사례15]

사례15는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양식 요리사였는데 술과 노름에 빠지게 되면서 사업이 망했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시때때로 누나와 자신을

때려댔다. 심지어 친구네 엄마만 봐도 공포감이 밀려왔다. 보살핌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불량한 청소년으로 자신을 밀어갔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던 전력을 들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기 일쑤였다. 고2때 결국 집을 나와 친구랑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래도 청년기가 되어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기울어진 집안 형편을 생각해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군대 가기 전에는 400만원 청약저축을 들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사랑받지도 못한 가정에 왜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어야 하는지 그 상황이 싫었다. 군대에서도 사고를 쳤다. 제대 이후 역시 주유소에서 일을 하던 중 동료들의 꼬임에 넘어가 사장의 금고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자수했고 아버지가 대신 그 돈을 갚아주며 처벌은 면했지만 아버지가 소개해 준 온양의 전자부품 공장에서 한 달 일하다가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싫어 무작정 싸우고 나왔다. 입던 옷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맨몸으로 나와 무작정 안양에서부터 수원까지 걸었다. 수원에 와서 며칠 역에서 노숙을 한 뒤 서울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통사정을 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와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교도소를 갈 정도의 비행이 모든 참여자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례40의 경우는 가족문제가 여러 가지 겹쳐 있었다.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와 가정폭력, 그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로 자신도 이른 시절부터 가출을 했었다. 어머니가 가출을 한 이후 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돌보아 준 것도 잠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 아버지와는 중3때 연락이 끊겼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고아원에서 나왔지만 일자리를 알아보러 수원역에 갔다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리다가 그 길로 수원역에서 노숙이 시작되었다. 지하철 구걸, 무료급식 이용 등 그는 ‘어떻게 하다 보니’, 혹은 ‘얼떨결에’ 노숙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족이 없는 단절된 상황에서 마치 ‘자연스럽게’ 노숙을 하게 된 듯한 사례는 또 있다. 사례n17, 그리고 n21도 결정적인 문제행동은 없었다. 특별한 사회적 피해 요인에 심각히 노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무기력, 우울, 좌절이 지배하고 있는 듯 했다.

[사례n17]

사례n17의 청소년기 방황과 가출은 엄한 아버지, 친척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되었다. 꽤 똑똑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는 큰 집 사촌들과 언제나 비교 당하며 생활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쉬어 놀면서도 괜찮은 성적을 받았다. 사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성적표가 엉망일 때는 무서운 아버지의 불호령을 피하기 위해 살짝 성적표를 고쳐서 가져다 드렸다. 그런데 중학교에 와서는 더 이상 성적표 조

작도, 공부도 싫었다. 적나라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를 집에 가져다주고는 그 때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취하는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술 먹고, 여자애들과 노는 게 비행의 전부였다. 그렇게 부모의 기대를 깨뜨리며 속을 썩었다. 그래도 청년기에 진입해서는 적성에 맞는 요리를 시작했다. 레스토랑에 취직하여 재미있게 7년 정도 성실히 일했다. 돈도 꽤 벌어서 집에 가져다주었다. 그렇지만 직업상 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알코올에 점점 취약해지고 일도 지겹고 하기 싫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 이제껏 일하며 집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져다가 중절수술비로 쓰고 여자와는 헤어졌지만 그 때부터 밀려오는 죄책감과 우울감, 음주는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우울증이 깊어지고 자살충동이 일어났다. 집에서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갔다. 구박과 잔소리, 불화를 견디다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모으면 또 집을 나왔다. 그런 패턴의 생활이 몇 번씩 계속되었다. 결국 3년 전 완전히 집을 나왔다.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1여년이 넘게 생활도 해 보고 알코올과 우울 문제로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표 5-2〉 청년노숙인의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A2그룹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4	■ St(빈곤), F(부의 건달생활), F(잡은 가정불화)	→ Id(가출과 폭력 등 비행) F(부의 자살)	■ Id(양성녀종양) ■ So(금전사기피해, 인감증명도용) So(사업도중 사기)	H(사기범을 잡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노숙에 진입)	SF ▶ Id ▶ S
15	■ F(장애를 이유로 가족에게서 소외), So(따돌림과 놀림)	→ ■ Id(가출과 비행)	Id(군 선입과 싸움), ■ Id(유웅) ■ So(임금체불)	H(돈이 다 떨어져 역 대합실에서 노숙 시작)	SF ▶ Id ▶ Id ▶ S
16	■ St(빈곤), F(가정불화)	■ Id(가출, 절도, 자살시도)	F(모의 외도) So(군내 괴롭힘 왕따) → Id(군 선입과 싸워 영창) ■ Id(폭행사건) → I(구치소)	H(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살면서 돈이 떨어져 노숙)	SF ▶ Id ▶ Id
20	■ St(빈곤), F(부, 형, 누나, 여동생 장애)	→ So(동네 형의 괴롭힘)	F(부의 사망)	H(좌절감에 노숙 시작)	SF ▶ Id ▶ S
		■ Id(가출, 싸움, 유기정학)	Id(군 부적응, 자살시도) ■ So(사업 도중 2차례 사기 당함)		
29	■ F(부모의 장애)	■ Id(가출, 소매치기 등 비행, 건달생활, 고교 자퇴) → I(소년원)	F(입양 사실 인지) ■ Id(폭행사건) → I(교도소)	H(교도소 출소 후 서울로 상경하여 노숙)	F ▶ Id ▶ Id
40	■ F(부의 알콜), F(부의 가정폭력), F(모의 가출) → Id(가출) I(고아원)		■ Id(몸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둠)	H(구직 실패로 노숙 시작)	F ▶ Id
42	■ St(빈곤, 기초수급), F(부모의 이혼) → St(친척집 전전)			H(돈이 떨어져 노숙)	SF ▶ Id ▶ Id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Id(가출, 고교중퇴, 절도로 소년재판 보호처분)	■Id(카자노 모박, 일몰중독, 부동산 중개업으로 받은 계약금으로 스킨 경마 탕진) ■Id(폭력사건) →I(교도소)		
62	■St(빈곤), F(부의 도박)	…■Id(가출, 절석, 중 중퇴)	F(부모의 사망), Id(하리수술) ■Id(폭력사건) →I(교도소) ■So(형의 대출보증으로 빚을 짐)	H(돈이 떨어져 노숙)	SF ▶ Id ▶ Id ▶ S
n2	■St(빈곤, 기초수급 바늘하우스집), F(부의 사망), F(부의 사망, So(따돌림 놀림)	Id(중 중퇴, 가출) …I(고아원)	Id(상습적 지하철 구걸) ■Id(알콜, 자구대 공무집행향해) → I(교도소)	H(모의 사망 이후 집을 나와 노숙 시작)	SF ▶ Id ▶ Id
n3	■F(부의 무관심, 가정폭력) …■Id(우울)	■So(학교 폭력, 괴롭힘) →■Id(가출, 우울증)	F(모의 외도) →F(부모의 이혼, 부의 재혼) I(우울로 인한 정신병원 입원)	H(우울증과 집이 싫어서 집을 나와 노숙 시작)	F ▶ S ▶ Id
n5	■F(부의 사망), F(모의 가출, 할머니와 생활)	■Id(가출, 절도)		H(고3때 가출 이후 노숙 지속)	F ▶ Id
n8	■F(부모의 사망, 친척집에 맡겨짐)	■Id(가출, 패싸움, 중 중퇴)	■So(다년 회사가 IMF로 부도처리)	H(회사 부도로 기숙사 압류되어 노숙진입)	F ▶ Id ▶ S
n9	■F(부모의 방임), F(부의 외도, 가정폭력), F(모의 정신 질환)	→F(부모의 이혼) →Id(가출, 자퇴 개입) ■Id(뇌전증 발병)	Id(절도로 보호관찰), So(친구가 핸드폰 사기) F(부가 자신을 몰래 정신장애인으로 등록)	H(숙식제공 일자리에서 일하다 일을 잃고 돈이 떨어져 노숙)	F ▶ Id ▶ Id
n14	■F(모의 가출), St(3터부살이 생활) →I(양로원에 맡겨짐)	So(양로원에서 구타) So(친구들의 놀림과 왕따) ■So(양로원 원장의 주도로 허위로 지적장애판정)	■So(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감금, 인감도용 사기)	H(일을 구하려 갔다가 사기단에 끌려 다니다가 파출소를 통해 노숙인 기관에 입소하면서 노숙진입)	SF ▶ S ▶ S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n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아버지의 음주, 도박) F(모의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가출, 결석, 개입, 부의 돈에 손을 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d(군 선임 폭행으로 영장) ■ Id(주유소 금품 절도) 	H(일자리 부적응으로 무작정 숙식 제공 일자리를 나와 노숙시작)	F ▶ Id ▶ Id
n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부의 가정폭력, 알콜) F(모의 가출) I(보육원 생활6-17세) So(보육원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빈곤) F(부의 재혼, 가정불화) ■ Id(절도, 가출, 폭행, 자퇴) 	→I(교도소)	H(아버지, 새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살다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가 서울로 오라고 하여 상경했으나 나타나지 않고, 돈이 떨어져 노숙시작)	F ▶ Id
n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F(성적스트레스, 비교) Id(성적표 조작) F(아버지의 심한 체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가출, 패싸움, 무단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여자친구 임신 후 중절) → Id(무기력과 우울증, 음주, 자살시도) 	H(무기력, 음주, 우울증으로 돈이 조금 생기면 집에서 나와 모텔에서 생활, 돈 떨어지면 집으로 가는 생활 반복하다 3년 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숙진입)	F ▶ Id ▶ Id
n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F(부의 심한 구타) Id(가출) F(어머니의 가출) I(보육원), So(보육원 구타로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먹을 것을 훔쳐 먹다가 특수절도로 복역)→I(소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판정, 자살시도) 	H(소년원 퇴소 이후 노숙 시작)	F ▶ S ▶ Id
n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사업실패) F(처와 가족이 친정으로 감) ■ Id(도박, 유흥, 알콜) I(구치소) 	H(괴로운 마음에 도박, 음주하다가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와 버림. 돈이 떨어지면서 노숙)	Id ▶ S ▶ Id
n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부의 알콜, 부의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F(모의 가출, 부의 사망) St(큰택에서의 생활) ■ Id(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형과의 갈등) Id(자살시도) 	H(형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어 집을 나와버린 후 돈이 떨어져 노숙)	F F Id

3. 소결

본 장의 청년노숙의 노숙 진입 경로 분석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각 위험요인들 간의 시간적 선후와 인과적 관계의 연결고리 찾기였고 두 번째는 각 그룹 내에서의 노숙 진입의 패턴, 혹은 그룹 간 패턴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었다.

우선 청년노숙인의 경험을 통해 위험요인 간의 인과성을 분석해 내는 작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우선 후속 경험은 특정 경험 하나의 결과만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과적 연결고리가 노숙에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위험요인 경험과 경험을 잇는 인과적 연결고리는 분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사건과 사건의 인과성은 두 사건 정도를 연결해 주기는 하지만 세, 네 사건의 연결고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과적 연결고리는 노숙에 직접 닿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말해 노숙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사건들은 노숙 직전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노숙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위험요인들이 ‘인과적 연결고리의 물리적 결합’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 사건들과 인과적 연결고리들의 파편이 만들어 낸 ‘위험요인의 화학적 결합’이 노숙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불화와 개인적인 취업이나 구직 등의 실패 등은 노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노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은 청년으로 하여금 준비되지 못한 채 집을 돌연 떠나버리게 만드는 확실한 원인이 된다. 이 경우 노숙의 촉발은 ‘집을 무작정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노숙과 연계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노숙 위험요인에는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갈등과 취업실패는 노숙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위험요인이지만 확실히 가출로부터 비롯된 노숙을 예표하는 ‘노숙의 서곡(序曲)’과 같은 것이고 이 사례의 노숙 이유를 더 확실히 설명해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노숙을 발생시키는데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몇몇의 경험들은 서로 간에 인과적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궁핍과 부모님의 부재, 독립 과정에서 경험한 대출 사기사건으로 구성된 위험요인을 가진 사례의 경우가 그렇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위험요인은 서로 어떤 인과적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셋 중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노숙인이 되었다고 말하기에도 어폐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노숙을 발생시키는 것은 하나의 특정 시점의 사건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몇몇의 사건으로 연결된 인과적 연결고리의 단선적 패턴으로도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앞의 인과적 연결고리에 의한 노숙의 발생이 일관된 어떤 부정적 힘(혹은 상황)이 청년을 노숙이라는 극한의 코너로 계속 밀어 붙여 결국 쓰러지게 만든 것이라면, 인과성이 없지만 핵심적인(critical) 위험요인들의 반복적 경험은 청년들에게 날아든 몇 방의 강편치가 결국 이들을 너다운(knock down)시켜 버린 것이라

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어떠한 경우든 핵심적인 것은 노숙의 발생은 생애 과정에서 경험되는 다수의 위험요인들 혹은 그것으로 구성된 연결된 혹은 분절되어 있는 인과적 고리들의 중첩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의 노숙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인과성(causality) 검토에 대한 시도와 중첩되어 있는 연결 혹은 분절된 인과적 고리의 발견은 노숙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Fitzpatrick(2005:6)은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과 증가하는 위험을 제시하는 기존의 위험요인 연구의 접근은 묘사적인 수준(descriptive level)에서는 매우 가치가 있고, 미시수준(micro level)의 노숙 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설명적 차원(explanatory level)에서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증거시적 수준(mezo, macro level)에서 노숙의 발생에 대한 복잡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이었던 노숙 진입 경로의 패턴 찾기에서는 각 그룹 내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패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룹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종합적 결과는 <표 5-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두 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요인의 성격과 사회요인의 경험 여부에 따라 각각 두 가지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A1그룹은 개인 요인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경로로 나뉘어졌다. 개인요인이 없이 가족 문제에서 구조·사회적 피해 요인으로 인해 노숙에 진입하게 된 경로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경우 구조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선행하였고,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유하여 사회적 피해 요인을 만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었다. 반면 A2그룹의 경우는 구조·사회 요인을 경험한 사례들과 경험하지 않은 사례로 경로가 양분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구조요인 혹은 가족문제를 출발로 그것이 개인의 비행과 일탈을 가져오고 그 상황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비행이 증폭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된 경우들로 개인의 일탈,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결과로 노숙에 진입하였다. 노숙에 영향을 미쳤던 마지막 사건이 구조·사회 요인이었던 사례는 오히려 소수였고 A1그룹보다도 적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청년노숙인 하위 그룹에서 각각 2개의 서로 다른 경로가 제시되어 총 4가지의 노숙 진입 경로가 도출된 것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설정했던 잠정적 경로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적 요인 없이 노숙에 진입하는 경로를 보인 A1그룹의 패턴 4사례가 이론적 가정에서 제시하였던 ‘독립이행실패’ 경로를 따르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로는 예상보다 소수였다.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사례들은 ‘독립이행의 실패’를 겪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상 청년노숙인 모두가 독립이행의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해야 맞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이 없이 구조,

가족, 사회요인에 의해 독립의 실패를 경험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경로와 구분되는 경로라 할 수 있다. A1그룹의 나머지 하나의 경로는 이론적 논의에서 확실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였다. 주로 개인의 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독립실패와 노숙이 A1그룹에서 다수 사례의 경로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A2그룹에서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다. 한편, A2그룹에서 예상했던 주요 경로는 새로이 구분했던 사회적 요인의 경험이 부각되면서 두 개로 갈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단순히 개인적 비행과 이탈, 혹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위험요인을 증폭시켜 노숙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증폭된 위험요인은 바로 개인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피해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yock 등(2011b:810)은 청년노숙인들의 이야기는 몇몇의 전형적 진입의 경로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점진적인 혹은 갑작스러운 이탈(dislocation)'이 있고, 주요 촉발사건 혹은 특징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대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걸쳐 진행되어 온 다양한 유형의 파탄(disruptions)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노숙 진입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논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연구가 시도했던 노숙 경로 분석의 인식론적 관점 전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존의 노숙 진입 경로에 대한 연구들은 노숙의 진입을 어떤 하나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전형적 유형으로 구성(construct)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유형이 대표하는 특징을 설명해주는 유용하지만 노숙의 이유를 설명하는 복잡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서구 사회의 맥락에 따른 구성인 만큼 한국적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내용 또한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숙 진입 경로를 구성주의가 아닌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에 입각한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노숙의 원인에 대한 현상과 사실 너머에 있는 실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위험요인들의 조합과 패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한 분석의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되었던 전형적인 노숙 경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숙의 경로를 하나의 중대사건, 혹은 가장 큰 요인의 전형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에 생애과정에서 시간의 순차를 가지는 두 세 개의 위험요인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발견해 패턴화를 시도하였다. 패턴화의 기준으로 발견되었던 요인들, 가령 A1그룹에서 개인요인의 존재(present)와 부재(absent), 혹은 A2그룹에서의 사회구조요인의 존재와 부재 기준은 각 그룹에 속한 사례들의 중요한 특성이면서 동시에 세부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패턴

그룹	노숙 진입 경로 패턴	해당사례	패턴 도식화	비고
A1	① 개인요인이 없는 노숙 진입 경로 패턴	사례12 사례n10 사례n11 사례n12	F→S F→F→S SF→F→S S	
	② 개인요인을 경험한 노숙 진입 경로 패턴			
	비행 사례	사례7	SF→Id→S	
	건강문제 사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례19	SF→Id→S	
		사례n1 사례n4 사례n7 사례n13	SF→Id→S→Id FS→Id SF→Id SF→F→F→Id	가정폭력+구조 사회위험요인으 로 인한 정신 적 불안감
		사례22 사례38	Id→S F→Id→Id→S	경제성장애 성격장애
		사례n6 사례n18	Id→Id→F (F)→Id	게임중독
A2	① 구조요인과 가족문제로 인한 비행과 일탈, 그리고 금전적 사기피해	사례4 사례15 사례20 사례62 사례n8	SF→Id→S SF→Id→Id→S SF→Id→S SF→Id→Id→S F→Id→S	
	구조요인과 가족문제로 인한 비행과 일탈	사례16 사례42 사례n2 사례n3 사례n19	SF→Id→Id SF→Id→Id SF→Id→Id F→S→Id F→Id→S→Id	
	② 구조·사회 요인을 경험하지 않은 패턴	사례29 사례40 사례n5 사례n9 사례n15 사례n16 사례n17 사례n21	F→Id→Id F→Id F→Id F→Id→Id F→Id→Id F→Id F→Id→Id F→F→Id	
	특이사례	사례n14 사례n20	SF→S→S Id→S→Id	개인요인 없음 가족요인 없음

제2절 청년노숙인의 독립이행

독립이란 양육자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을 말한다. 현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여전히 기대되는 일반적인 독립 시나리오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독립의 준비를 시작하고 사회에 나가 직장을 구하면서 경제적 독립, 주거의 독립을 이루며 결혼을 통해 새 가정을 탄생시키면서 독립을 완성하는 것이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사회로 나가 독립을 시도하게 되는 때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 역시 현대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임에 분명하지만 이들의 독립은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무색하게 할 만큼 독립의 시기, 독립의 계기, 독립의 과정, 독립의 완성 모두에 기존의 통념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1. 독립시기와 계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독립의 계기와 그 시기이다. 즉, 어떠한 이유로 언제 이들이 원가정 혹은 보호의 체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학력과 군복무로 대표되는 독립준비의 기간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독립 준비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독립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의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졸에 군 면제자를 준비기간이 0인 것으로 잡고, 고 중퇴 군복무자, 고졸 군복무자, 2년제 대학에 군 면제자를 준비기간이 3-4년인 것으로, 4년제 대학에 군 면제자, 2년제 대학에 군 복무자를 준비기간 5-6년으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7-9년의 독립준비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례들을 분류해 보았다. 같은 방식으로 고졸에 군 면제 기준에 미달하는 연도만큼을 빼 그 사례들은 준비기간을 마이너스(-)로 표시하였다. <표 5-4>를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의 독립 시점은 학업 종료시점과의 관련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중 2년제, 4년제의 대학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 그룹 전체인 34명중 10명이었다. 여기에는 4년제 대학을 모두 마친 사람 4명에 2년제 대학을 두 번 다닌 사례가 1명 포함되어 있고 4년제 대학을 다니고 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대졸에 군 복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보통 고졸 이후 7-9년 정도를 들여 독립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 노숙인이 사례에서 이러한 보통의 독립 유예기간을 적절히 활용한 사람은 5

명 중에서도 1명에 불과했다. n12사례가 27세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였을 뿐 나머지 네 사례들은 독립준비기간과는 무관하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였다. 나머지 네 명은 각각 스토리는 다르지만 대학 생활을 학업보다는 돈 벌이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학생활은 부모의 울타리를 떨쳐내고 그들로 인해 억눌렸던 자신의 꿈을 찾고 실질적 독립을 꾀하는 기간이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매우 버거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사실상 경제적 독립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한편 대학생활은 독립을 준비하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독립 생존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었다. 특히 사례n7은 고졸 이후 돈을 벌면서 경험한 고졸의 벽을 실감하고 뒤늦게 공부하여 서울소재 대학 공대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비싼 학비를 집에서 지원받을 수 없어 학자금대출로 충당했고 그 빚이 3천 만원이 훌쩍 넘는 액수로 남겨져 있다. 대학생활 중 실물 경제를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주식투자를 했다가 빚만 더 생기고 말았다.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대는 것도 벽차 언제나 아르바이트에 찌들어 살았고, 그럴수록 학업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대학을 가기로 한 선택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결국 학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대학을 다 마치지 못했다.

물론 의례 대학생이 되면 자신의 용돈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립의 준비 과정이지만 청년 노숙인들의 아르바이트는 용돈 벌이의 수준을 훨씬 넘어 가족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존을 하면서 공부까지 마쳐야 하는 벽찬 상황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최저시급의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의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벽차기만 했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하는 자기계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주거 독립의 경제적 책임도 이른 시기에 맡아야 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된다.³⁸⁾

다음으로 3-6년 정도의 독립 준비시기를 가졌던 사례들은 대학4년 혹은 2년, 혹은 고졸과 군복무 여부를 따라 구분된다. 이들 그룹은 사실상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예상대로의 3-6년의 독립 준비기간을 사용하고 난 이후 시점인 22-25세 경 정상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가 사례16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학력이나 군복무와 관련한 독립 스케줄과는 무관하게 10대 후반에 일찌

38) 사례n4는 애초부터 주거 역시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제대 이후 얼마간 자신의 주거를 유지하다 버티지 못하고 노숙 상태로 진입하였다. 다행히 사례n4를 제외한 다른 사례들에서는 부모님과 동거가 한동안 지속되었고, 또 부모의 지원을 일부 받기도 한 사례(사례12)들이었다. 그럼에도 사례n7의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살던 집을 나오면서 노숙이 시작되었고, 주거의 독립이 시도되긴 했지만 사실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례n10 역시 부모와의 동거가 끝나면서 사실상 노숙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이 두 사례는 주거독립의 시기와 노숙진입 시점이 일치한다.

감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사례나(사례4, 20, n15) 고교졸업 후 군복무 이전인 19세 부터 아르바이트 등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사례들(사례22, 15, n17)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경제적 독립을 꾀했던 사례들(사례19, n6, n11, n13, n21)로 양분되었다. 20대 중반 독립을 했던 사례n1과 n3는 사실상 독립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집을 나오면서 노숙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사례n6, n13, n11의 경우도 사실상 경제적인 독립의 시기는 곧 노숙과 직결되는 시점이었다. 주거독립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최초 거리노숙시점이 거의 같았다. 실제로 독립을 통해 자신의 독립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본 경험이 없는 사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여기에 독립준비 기간이 전혀 없었던 사례들 즉 고졸 이후 군 면제에 해당하는 사례40, n14 역시 고아원, 혹은 생활하던 시설에서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노숙을 경험하였다. 이 역시 같은 부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졸 이후 최대 약 9년 정도까지 독립준비의 기간을 가졌던 사례 23명 중 주거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보지 못한 사례는 총 7사례(〈표 5-4〉의 *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상 독립의 준비기간이 마이너스(-)인 사례들을 보자. 독립 준비기간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18세 이전에 학업을 종료하여 경제활동을 할 시간은 확보되었지만 사실상 안정적으로 독립을 이루기에는 미숙한 나이임을 감안한 것으로 고졸을 준비기간 0으로 계산하여 모자란 연수만큼을 마이너스 기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청년노숙인 34명의 사례 중 총 11명이 독립준비 기간이 마이너스인 사례로 볼 수 있었다.³⁹⁾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독립의 시기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세 사례(사례38, 29, n19)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들이 18세 이전에 경제적인 독립을 하였다. 즉, 부모의 돌봄과 지원이 채 채워지지 않은 시기에 자신이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가출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살게 된 시점이 주거독립의 시기이자 경제적 독립의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n5, n9, n16, n2가 이에 해당했다. 이들은 일찍 경제적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 즉, 이 네 사례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일곱 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독립의 시도는 결국 노숙으로 직결되었고 결국 독립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례들은 노숙진입시기보다 독립시기가 더 늦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다. 사례29, n19(〈표 5-4〉에 ***로 표시)가 그에 해당되는 사례들이었는데 사례29의 경우는 출소 후 노숙으로 진입했다가 노숙 이후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생활을 해 보았던 경험을 26세에 가져 보았고, 사례n19는

39) 고등학교 중퇴 이후 군 면제를 받아 18세가 되기 이전 시기가 1년 정도인 경우에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 않아 그 때부터 약 6년 정도의 시기가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소년원을 나와 노숙을 하다가 알게 된 목사님과 함께 5년 정도 생활하다가 25세에 기초 수급을 통해 고시원으로 독립한 경우였다.

한편 독립의 계기를 통해 이들이 홀로서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았다.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준비된 독립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독립의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숙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주지와 관련한 주거독립에 있어서 이들의 주거 독립은 어디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거독립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주거 독립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학진학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독립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따라 이동하는 독립, 자발적으로 생활 터전을 바꾸면서 진행된 주거 독립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자발적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 A1그룹의 12, n12, 19, 22, 7, n18 등 총 6사례가 이러한 의미의 일반적인 주거 독립을 수행하였다. A2그룹의 16, 4, 15, n8, n19 등 5사례도 자발적이고 의도를 가진 주거독립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11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23사례들의 주거 독립은 ‘고통으로부터 도피나 탈출’ 혹은 ‘쫓겨남’ 그리고 ‘집이 없어져 버려’ 어쩔 수 없이 홀로 살아야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들이었다. 우선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0대 중반에 쫓겨난 사례가 2사례 있었는데, 모두 A1그룹에 속한 사례들(n10, n1)이었다.⁴⁰⁾ 또한 A1그룹에서 나타나는 주거 독립의 특징은 바로 집 혹은 가정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체 사례 중 이러한 이유에 해당되는 사례는 4사례였는데, 이 중 3사례(n4, n6, n11)가 A1그룹의 사례였다. 함께 지내던 부모 혹은 조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살던 집이 없어져버린 경우였다. 사실상 가족의 죽음이라는 충격에 연이어 살던 곳마저 잃어버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집도 없고 가정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 경우 역시 독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것은 집에서 쫓겨난 사례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A2그룹의 가장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거 독립의 계기는 집을 견딜 수 없어 나와 버리게 된 ‘도피, 탈출’의 형태였다. 그 시기는 각기 다양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서 나와 버린 경우는 총 15사례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 중 3사례만이 A1그룹의 사례였고 나머지 12사례는 모두 A2그룹에 해당되는 사례였다. A1그룹의 3사례 중 2사례는 30대 초반, 1사례는 20대 중반에 집을 나온 경우인 반면, A2그룹의 사례들은 10대에 집을 나온 사례가 5사례로 청소년기의

40) 사례n1의 경우는 제대 후 친어머니 집에서 은둔하며 2년 정도를 생활하던 중 어머니가 더 이상 나에게 얹혀살지 말고 나가라고 200만원의 독립자금과 함께 밀어낸 경우였다. 그러나 n10의 경우는 친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새어머니의 태도가 바뀌면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내린 경우였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주거 이탈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대에 집을 나온 사례도 6사례, 30대에 나온 사례도 1사례로 나타나고 있어 10대의 가출 이후 집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한참동안 독립을 꾀하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머물다가 갈등을 견디다 못해 나오게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된 사례들은 적어도 독립적인 주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일까. 집에서의 도피와 탈출로 집을 나온 15사례가 집을 나와 간 곳을 확인해 보면 이들의 준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예상대로 10대 때 집에서 나온 A2그룹의 5사례의 경우는 사실상 어떤 준비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이들이 선택한 도피 이후의 안식처는 대부분 친구집(n15, n16), 사우나(n9), 친구집이나 PC방(n9)이었다. 나머지 20-30대에 집을 나온 사례들은 약간의 준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무색하게 이들의 주거 독립은 사실상 반(半)노숙 상태로의 진입 혹은 노숙진입이나 다름이 없었다. A1그룹에 속해 있는 3명은 친구집, 고시원, 학교 도서관(n7), 고시원(n1)으로 나왔거나 집을 나와 영등포역으로 와서 거리노숙을 시작(38)하였다. A2그룹의 사례들 중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집을 나와 거리노숙을 선택한 경우가 세 사례(n3, 20, 62), 호텔에서 1-2개월 정도를 생활한 경우(n17), 친구집에 머문 경우(n20, n14), 사우나나 PC방에서 생활한 경우(n2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가 100-200여 만원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온 사례들은 있었지만 주거 독립의 준비상태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사실상 10대 가출 이후의 거주지 선택지와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가지고 나온 비상금도 사실상 2-3개월을 밖에서 생활하면 소진되는 액수에 불과했다.

<표 5-4> 청년노숙인의 독립 시기와 계기

독립 준비 기간	사 례 수	사 례 번호 (연령그룹)	주거 독립 시기	주거 독립 계기	경제적 독립 시기	경제적 독립 계기	최초 노숙 진입 시점	
7-9 년	4 년 제 대학 + 군복무	5명	12 (31,A1)	19세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A)	20-21세	어머니의 간섭이 싫고 자신이 돈을 벌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다니.	29세
			n4 (31,A1)	17세	부모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신 후 빚 때문에 집 팔았음(D)	17세	부모님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5세
			n7 (34,A1)	31세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집을 나옴(C)	19세	가정형편상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벌어서 충당하고자 하였음	31세
			n10 (28,A1)	25세	대학재학 중 새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여 쫓겨남(B)	20-21세	여자형제가 많고 자신은 남자니 자기가 벌어서 대학졸업 하겠다고 결심	25세
			n12	26세	졸업 후 자격증	27세	대기업 생산라인에 취직이	37세

독립 준비 기간	사 례 수	사례 번호 (연령그룹)	주거 독립 시기	주거 독립 계기	경제적 독립 시기	경제적 독립 계기	최초 노숙 진입 시점
		(38,A1)		준비를 위해(A)		되면서 독립	
5-6 년	4년제 대학+ 군면제	19 (36,A1)	19세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A)	30세	학업 종료와 사회생활 시작으로 처음 독립하였으나 이후 35-36세 경 공무원시험 준비기간 등은 경제적 독립이루지 못한	36세
		16 (26,A2)	25세	고향에서 일을 하다가 인원으로 이동하여 공장에 다님(A)	23세	제대 후 대학 그만두고 사회생활 시작.	25세
		n3* (28,A2)	24세	20대 중반 회사에 3개월 다녀가 그만둔 집을 나와 버림(O)	25세경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바로 노숙진입	25세
		n6* (34,A2)	33세	어머니 암치료자고 향집을 정리하고 함께 서울로 옴(D)	33세경	어머니는 요양기관으로 가고 홀로서기를 해 보겠다고 혼자 남았으나 노숙진입함	33세
3-4 년	2년제 대학+ 군면제	4** (27,A2)	25세	여자친구에게 사기 당한 후 일을 접고 대학에 감(A)	17세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투병으로 일을 시작함	27세
	고졸+ 군복무	22 (33,A1)	19세	자동차정비공장 기술사생활(A)	19세	정비공장에서 사회생활시작	30세
		n1* (28,A1)	26세	친어머니가 집에만 있는 자신을 나가 살라고 하여 고시원으로 독립(B)	26세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여 나와 살게 되면서 일용노동 등 시작	27세
		n11* (35,A1)	24세	제대직후 조부모님의 사망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쫓겨남(D)	31세	7년 거리노숙이후 방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함.	24세
		n13* (33,A1)	32세	아버지와 살기 싫어 집을 뛰쳐나옴(O)	32세	바로 노숙으로 진입	32세
		15 (37,A2)	22세	군 제대 후 서울로 상경(A)	19세	고졸 이후 아르바이트 시작	36세
		20** (37,A2)	31세	사기 등으로 좌절하여 집을 나와 5년간의 거리노숙 시작(O)	14세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시작	31세
		n15** (32,A2)	17세	가출이후(C)	17세	고교시절 가출 이후부터 아르바이트 시작.	27세
		n17 (37,A2)	27세	여자친구의 낙태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가정 불화로 집을 나왔다가 들어갔다함(O)	19세	고교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함.	27세
		n21 (38,A2)	29세	사이가 좋지 않던 형이 같이 살게 되면서 집을 나옴(O)	29세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감당함. 이전에는 어머니가 주로 생계를 꾸리심.	34세
고 중퇴+ 군복무	42 (34,A2)	17세	집이 싫어 가출. 숙식 제공되는 호프집에서 생활(C)	17세	가출이후 서비스업, 영업직 등으로 경제활동 함.	33세	
	n20	29세	사업실패로 아내	25세	제대 이후 사업 시작.	29세	

독립 준비 기간	사 례 수	사 례 번호 (연령그룹)	주거 독립 시기	주거 독립 계기	경제적 독립 시기	경제적 독립 계기	최초 노숙 진입 시점
		(39,A2)		와 싸우고 집을 나옴(C)			
0년	고졸+군면제	2명	40* (24,A2)	18세 고아원에서 나옴(A)	19세	공장 취직했으나 1년 만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중에 노숙시작	20세
			n14* (26,A2)	23세 양로원 원장이 자신을 이용하는 것 같아 나옴(C)	23세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기 시작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일을 알아보려다가 사기 등으로 노숙시작	23세
-1년	고 중퇴+군면제	5명	38 (38,A1)	31세 아버지와 갈등으로 모든 돈을 가지고 집을 나와 고시원 여인숙 가가시작(C)	20세	고교자퇴, 군 면제 이후 직장생활시작. 그러나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아 27세에 다시 집에 들어가 생활.	28세
			20*** (33,A2)	26세 24세에 출소 후 노숙 진입했다가 숙식 제공되는 일을 구해 생활(A)	26세	숙식제공일자리와 노숙인쉼터를 반복이용	24세
			n5* (33,A2)	18세 고3때 가출이 이어짐(C)	18세	가출 이후 일용노동으로 생활 시작	18세
			n9* (30,A2)	17세 고1때 집을 나와 친구랑 살면서(C)	17세	가출 이후 아르바이트로 시작	17세
			n16* (24,A2)	17세 고1때 집을 나와서 친구집과 찜질방에서 생활 시작(C)	17세	가출 이후 아르바이트 시작	17세
-3년	중졸+군면제	1명	n8 (37,A2)	15세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 시작(A)	15세	중2 자퇴 이후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기 시작	18세
-4~5년	중 중퇴+군면제	3명	7** (38,A1)	18세 서울로 상경하여 일하는 분식집 가게(A)	15세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당 일 시작	28세
			62 (39,A2)	24세 공장기숙사와 집을 오갔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에서 나오게 됨(C)	18세	공장에서 일을 시작함.	32세
			n2* (36,A2)	16세 부모님 사망 이후 집을 나옴(D)	16세	노숙 이후 레스토랑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16세
-6년	초졸+군면제	2명	n18 (36,A1)	18세 공장기숙사에서 생활 시작(A)	18세	보육원퇴소 후 가구공장 취직	27세
			n19*** (30,A2)	25세 서울로 올라와 기초수급으로 고시원 생활, 정신병원, 노숙인쉼터 반복생활(A)	25세	돌보아주던 목사님 집에서 나와 서울로 상경	14세

주1: *는 주거독립과 경제적독립 시점이 노숙 시점과 일치하는 사례, **는 경제적 독립이 가정의 생계를 전부 혹은 일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례를 말함. ***는 노숙을 경험하고 난 후 독립을 이루어본 경험이 있는 사례임.

주2: 주거독립 계기의 (A)는 대학진학, 구직으로 인한 독립, 자발적인 주거 독립을 의미한다. (B)는 집에서 쫓겨난 경우, (C)는 가정불화와 고통으로부터 탈출과 도피, (D)는 집(home or house) 자체가 사라져버린 경우를 나타낸다.

2. 독립 이행의 과정, 일과 주거

청년노숙인들의 독립의 과정은 경제활동 경험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독립 준비기간에 따른 청년노숙인 사례의 구분에 따라 이들의 노숙 전의 일 경험을 살펴보았다.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전 일 경험은 사실상 독립준비 기간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일의 종류나 지속기간, 급여 수준 등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혹은 그들과 고졸 미만자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독립준비기간을 충분히 활용한 후 좋은 조건의 직장에 들어가 수년간 근무 경력을 쌓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S전자, N식품회사 등 대기업 입사 경력이나 농기계센터나 환경미화원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그쳤다. 대체적으로는 청년노숙인들의 일 경험은 몇 가지 부류로 모아졌다. 첫째는 건설일용직, 택배물류창고 업무 등 일당제의 일용직 육체노동, 둘째, PC방, 식당, 세차장, 배달 직종 등 서비스 업종의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셋째, 각종 공장에서의 제조업 계통 일자리 등이었다. 직종은 다양하지만 이 일자리들의 공통점은 숙련도가 떨어지고 비교적 진입이 쉬운 낮은 질의 일자리라는 점이다. 학원강사, 홈페이지 제작, 문서수발 보조, 사무보조 등의 사무직 일자리 경험은 대학 경험자에게서만 나타났다. 물론 사무직은 약간 수준이었지만 대체로 일하고 받는 급여의 수준도 작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50여 만 원 정도였다. 한편 노숙 이전에 특별히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례들도 3사례가 포착되었다. 이들은 가출 직후 노숙으로 진입한 경우나 청소년기 비행으로 교도소에 있다가 퇴소한 이후 노숙으로 바로 유입된 경우로서 노숙 이전의 근로의 경험이 없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가 하는 근무기간과 관련된 것이다. 대체로 이들의 근무경력은 몇 개월 단위로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직종 내에서도 여러 번 일하는 곳을 옮기거나 직종 간 이동 역시 빈번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살펴보아도 일에 진입하는 것에 큰 장애물이 없는 일들은 그 일을 그만 두는 데에도 큰 부담이 따르지 않는 듯했다. 한두 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와의 불화로 문제가 생기거나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공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 여럿과 부대끼게 되는 일터에서 듣는 고참들의 잔소리, 심부름, 간섭과 텃새를 참기가 싫고 짜증이 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괴롭힘을 참고 견디다 못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만 둘 때 다음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일을 자주 옮기게 되는 경우 일자리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공백기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이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또다시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청년들의 잦은 일자리 이동은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진로에 부합하는 최종적 일자리가 아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 선택은 진로의 탐색과는 매우 동떨어져 보인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찾았고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을 몇 개월이라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례는 전체에서 대여섯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즉,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은 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는 일이라면 그만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일은 공통적인 몇 가지 종류로 수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인적자본개발과 관련한 교육에 시간을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고시공부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보았던 사례19, 고3 때와 배를 타러 갔던 시기에 다양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서 여러 자격증을 따 두었다는 사례n4,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 진로를 재설계했던 사례16로 단 세 사례밖에 없었다. 전문 자격을 갖추었던 사례도 네 사례가 있었다. 사례16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었고, 사례n6은 전문대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고 있었다. 사례n12는 일식요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사례22는 자동차정비2급 자격을 가졌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전문 자격도 이들의 노숙을 막지는 못했다.

추후 노숙 이후의 일자리 경험에서 다시 확인되겠지만 급여가 월급제인가 일당제인가 하는 것은 이들의 일자리 특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개월의 고용이라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월 근로의 대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며 일하는 장소가 고정된 경우에 월급제의 급여 지급방식을 따르게 된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일자리라면 보통 월급제를 채택한다.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전 일 경험을 통해 볼 때도 월급제 방식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터에서 일한 경험이 다수 포착되었다. 그러나 일당제 일자리, 즉 일용직에서의 일 경험 역시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당제 일자리는 당장 하루 일을 하면 손에 5-6만원의 현금이 쥐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일거리이다. 일과 일 사이의 이동 기간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세 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할 때도 이러한 일은 생계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일은 오래할 수 없다는 함정이 있다. 일당제의 일은 대부분 고강도 육체노동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건설일용노동, 택배물류창고업무,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작업 등의 일용노동들은 쉴 새 없이 6-7시간을 움직여야만 6만원 남짓한 돈을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일 반드시 일

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용직 노동은 격일, 2-3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어 번, 돈이 떨어지면 한 번으로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지막에는 한 번 일하러 갔다 오고 당장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생활패턴에 젖어들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은 구하려면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주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겠다 혹은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지를 희석시키고, 의지를 다잡으며 힘들게 수 백만원의 모아둔 상황이 와도 일을 놓게 되는 한 두 달 그 돈을 속절없이 써버리는 패턴을 낳는다.

특히 이들의 일 경험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실은 청년 노숙인들이 노숙 전 경험한 일자리 중 많은 일자리가 일과 주거가 결합되어 있는 숙식제공 일자리라는 점이다. 숙식제공의 일자리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일과 주거를 동시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다. 실제로 주거비용에 드는 돈은 서울을 기준으로 협소한 고시원 방값만 해도 최소 30만원 가량이며 그 이외에 전기, 수도, 가스비 등의 관리비 등도 10-15만원에 이르고 식비 등 실제 생활비까지를 포함하면 최소한 50-70만원 정도가 생활비로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수도 있다면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숙식제공 일자리는 특히 한계계층의 청년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노숙 위험을 안겨다 준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주거를 동시에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바 대로 다음 일을 계획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현 듯 일을 중단하게 될 때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얼마간 저축해 두었던 돈을 이내 주거를 셋팅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으로 써버리게 되거나 짬질방, PC방 등에서 기거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더군다나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에 일일이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돈을 아끼고자 했지만 바깥생활로 인해 비싼 생활비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숙식제공의 일자리는 일과 주거가 결합되어 있어 사실상 24시간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일과 부대끼는 구조를 가진다. 일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갈등상황이나 문젯거리들이 발생할 소지가 더욱 다분해 진다. 결과적으로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표 5-5〉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일 경험

독립 준비 기간	사례 번호 (연령그룹)	노숙 전의 일	기간	급여 수준	일을 그만둔 이유
7-9 년	12 (31,A1)	컴퓨터학원 강사(대졸 후) 라디오편성홈페이지제작일 동업자와 커피숍사업	10개월 1년남짓(계약직) 1년8개월	월100미만 월120+ 사업이 잘됨	상경 개인사업추진 동업자 도주
	n4 (31,A1)	일용노동, 편의점, 배달 등	4년	일당 7만원 최저임금	군 입대
	n7 (34,A1)	휴대폰 조립공장 아르바이트 물류사무실, 사무직, 문서수발 술집, 편의점 아르바이트	1년 1년 대학재학중	월200(주7시간) 월 100 최저임금	일이 단순. 답답 군복무
	n10 (28,A1)	레스토랑 촬영보조, 과외, 학원강사 등	3-4년	월150-250	교환학생 감
	n12 (38,A1)	S전자 생산직 일식집 주방보조	9년 2년	월400 월250+	직종전환 개인사업추진
5-6 년	19 (36,A1)	과외, 일용노동, 편의점 대기업 식품회사 한식당 경영	1년 1년6개월	월250-300추정 사업이 잘 안됨	적응이 어려웠음 사업실패
	16 (26,A2)	자동차 정비소* 병원 조무사 핸드폰 공장*	2년 3년 3개월	월150+ 월120-150추정 월100+추정	적성이 맞지 않음 직장내 오해 갈등 집을 나오면서
	n3 (28,A2)	전자회사* 세차장*	3개월 1-2개월	월120-150추정 월120-150추정	우울증
	n6 (34,A2)	용접공장* PC방 아르바이트 일	잠시 2년	월120-150추정 월100	적성에 맞지 않음
3-4 년	4 (27,A2)	일용노동, 염전*, 새우잡이 배* 농기계센터, 마트, 백화점	3년(고1부터) 3년	일당7-8만 월200	뇌종양발병 사기사건
	22 (33,A1)	자동차정비소 보조* 주류운반, 우유배달, 택배, 인 쇄소 등 튀김장사	1년6개월 3년 1년	월150 월130-150 월120	군 복무 갖은 일 교체로 공백발생
	n1 (28,A1)	고시원총무* 일용직	2개월 2-3개월	월40(방값무료) 일당7만	조현병
	n11 (35,A1)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건물 설비 관리 주유소 아르바이트*	3개월 1년 7-8개월	월50 월120 월80-120	군입대 사기, 폭력사건
	n13 (33,A1)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는 일 상품포장공장	1년 몇 달	70만	아간에 싸우는 사람들, 아주머니 뒷새가 싫어서
	15 (37,A2)	중국집*, 름살롱*, 식당*	4,5개월-1년	150-200	좋은 조건이 있 으면 이직
	20 (37,A2)	일용노동(막일) 환경미화원 의류사업, (불법)약 판매 주유소* 일용노동	1년 3년5개월 2년 6개월 2-3년	연봉2천600만원 수천만원수익 일당6-7만	군 입대 동료와의 불화 사기로 날림
	n15 (32,A2)	주유소 아르바이트*	중고생시절-	월150만	
	n17 (37,A2)	호프집 아르바이트 피자가게 주방	3년	월120-150	여자친구임신 등

독립 준비 기간	사례 번호 (연령그룹)	노숙 전의 일	기간	급여 수준	일을 그만둔 이유
		뷔페식당 주방	6-7년	월200-250	충격에 우울증
	n21 (38,A2)	철판공장 편의점, PC방, 주유소, 세차장 게임작업장*	6-7개월 3개월-1년씩 1년	월60만 월50-60만 월40-50만	고참들의 텃새 싫증을 느낌 지겨워서 나옴
	42 (34,A2) n20 (39,A2)	백화점 생선코너, 주유소 등 유흥업소, 정수기 판매영업 식자재유통업 일용직	2년 2년6개월 1년 반	총2억 수입 월300	군 입대 도박에 날림 사업실패
0년	40 (24,A2)	사출공장*	1년		몸이 좋지 않아 그만둠
	n14 (26,A2)	전자제품 조립 공장*	1년	월90-130만	자신이 이용당했 다는 생각에 나옴
-1 년	38 (38,A1)	형광등 공장* 자동차공장, 사출공장*, 전자 회사*, 식품공장* 등	3-4개월 간격	6여 년간 1500만원 모음	아버지와의 갈등 으로 집을 나오 면서 그만둠
	29 (33,A2)	없음			
	n5 (33,A2)	없음			
	n9 (30,A2)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식당*	2년 4-5년	월60만 월150만	
	n16 (24,A2)	편의점 알바 건설일용노동 자활센터		월50-60만 일당7만원 월70만원	새어머니와의 갈 등으로 집을 나옴
-3 년	n8 (37,A2)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4년	월75만	IMF로 회사부도
-4- 5년	7 (38,A1)	분식집 등 식당일*(중 중퇴 후) 구로공단 사출공장* 일용노동 간막이(판넬) 사업	약 5년 2년 5년 2개월	월5-10만 월50만	서울상경 동료와 불화 사업실패
	62 (39,A2)	섬유공장* 조립식판넬 사업 건설일용직 노동	7년 1년 2년	월30-60,70만 일당7만원	모의 사망으로 빙향 사업실패
	n2 (36,A2)	게임 작업장*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2년7개월 2년3개월	월40만(숙식제공) 월80만	불법신고로 알콜문제악화
	n18 (36,A1)	가구공장*	10년	총7000만원 저금	결핵으로 그만둠
-6 년	n19 (30,A2)	없음			

주: *는 일과 주거가 결합된 숙식제공 일자리를 나타냄.

3. 소결: A1그룹과 A2그룹의 독립 이행 비교

이러한 청년노숙인들의 독립이행의 시기와 계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1그룹과 A2그룹의 독립이행을 비교해 보기 위해 앞의 내용을 그룹별로 정리하여 <표 5-6>에 제시하였다.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던 학력과 군복무는 고교졸업 이후 독립준비의 기간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사회에서의 독립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와도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군 복무를 마칠수록 사회생활에서의 원활한 적응력과 소통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만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했던 A1그룹은 청소년기 노숙 경험이 있는 A2그룹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의 독립 가능성을 가진 그룹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1그룹 14명 중 10명이 독립준비 기간 3-4년 이상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가장 상위의 그룹인 4년제 대학과 군복무를 마친 보통의 남자 청년 그룹 전체가 A1그룹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대로 독립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13명 중 10명이 A2그룹의 사례들이었다. A1그룹에 속한 사례들은 A2그룹의 사례들에 비해 독립의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의 계기나 시기와 독립의 내용적 측면을 통해 이들의 독립 과정을 판단해 보면 이들 가운데 두 종류의 독립 이행의 실패 현상을 찾을 수 있다. A1그룹의 독립 이행의 특성은 첫 번째, 독립준비의 기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립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한 이후 학업을 마치거나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기간에 이미 원가정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혹은 돈을 버는 것에 급급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완결 짓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독립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원가족의 불안정성 문제가 매우 컸다. 이는 주거 독립의 계기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혐오로 도피와 탈출을 감행하거나,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원가정과 갈등 혹은 원가정의 기능 상실은 청년들의 독립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혹은 정서적 지원이 부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혼자 힘으로 아무리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이 없으면 독립의 길이 매우 험난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원체계가 사실상 없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에 실패이다. 여러 가지 독립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들 중에도 청년

노숙인들이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을 받는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했다면 그들의 독립은 꽤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숙 전 이들이 경험한 일자리들은 대체로 급여수준이 낮고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일자리 특성에 더하여 청년들의 개인적 특성이 가진 불안정성은 일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겼다.

<표 5-6> 청년노숙인 두 그룹의 독립 이행 특성

		A1그룹		A2그룹	
독립준비 기간					
독립의 준비	독립 준비기간의 확보	A1그룹 14명중 10명이 독립준비 기간 3-4년 이상		독립 준비기간의 미확보	독립기간 0년 미만 13명 중 10명이 A2그룹
독립의 시기와 계기					
독립의 시기	독립준비기를 활용한 경우는 소수(독립시기가 매우 이르거나 늦음)			18세 이하의 경제적 독립이 많음. A2그룹의 20사례 중 10사례에 해당	
독립의 계기	자발적인 독립(A)	7, 12, 19, 22, n12, n18		자발적인 독립(A)	4, 15, 16, 29, 40, n8, n19
	쫓겨남(B)	n1, n10		쫓겨남(B)	-
	도피와 탈출(C)	38, n7, n13		도피와 탈출(C)	20, 42, 62, n3, n5, n9, n14, n15, n16, n17, n20, n21
	집(home or house)의 상실(D)	n4, n6, n11		집(home or house)의 상실(D)	n2
독립의 미경험	n1, n11, n13			40, n2, n3, n5, n6, n14, n9, n16	
가족 부양형 경제적 독립	7			4, n15	

한편 A2그룹의 독립 이행의 특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독립 준비기간 자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A2그룹에서 독립준비 기간이 5-6년이었던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3-4년 가량의 독립 준비 기간이 있었던 사람은 8명이었지만 이미 10대 후반 경제적인 독립을 하여 최저임금의 각종 아르바이트로 그 시간을 다 소진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아무런 독립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둘째로 주거독립의 계기에서 도피와 탈출 사례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어떠한 자발적으로 집을 나온 사람은 8명에 그쳤고 12명이라는 절반 이상이 집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살던

곳에서 거의 무작정 빠져나오면서 주거의 독립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의 특성은 A2그룹에서 독립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8명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는 독립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독립의 과정 없이 집을 나온 것이 바로 노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은 A2그룹의 독립 과정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2그룹은 청소년노숙 경험을 공통 특성으로 하고 있는 그룹으로 이것은 학력의 단절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는 독립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독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낮은 학력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청년노숙인의 독립 이행에 대한 연구결과는 ‘청년의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 혹은 ‘청년은 부모에게 더 의존하고 있다’는 청년의 독립과 관련한 일반적 논의와는 큰 괴리를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나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독립을 시도하였고, 부모에게 거의 의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몇몇의 연구들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정민우·이나영(2011)이 지적하였듯이 청년의 독립 준비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의 계급에 따른 계급화 된 가족전략에 의해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작금의 상황에서 좋은 계급의 가족 출신도 아닌, 더군다나 좋은 계급이던 나쁜 계급이던 간에 원가족과 절연된 상태인 청년노숙인들에게 있어 독립이란 사실상 별판에 홀로 내팽개쳐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듯하다. 그야말로 ‘DIY 일대기’를 써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수남 외(2012)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빈곤 청년들의 독립 이행의 경험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독립의 과정을 고스란히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노숙 청년들은 ‘노숙’이라는 낙인 때문에 무언가 더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노숙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빈곤상황에 내몰린 ‘빈곤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한편 일본 청년들의 일부의 모습이었던 새로운 성인기 이행 현상에 대한 논의, 즉 도식화된 시스템에서의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새로운 이행의 시도를 하거나 규범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집 밖, 혹은 나라 밖을 떠도는 청년의 모습(권숙인, 2011; 김현철, 2003)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았다.

요컨대 앞 절의 노숙 진입 경로 결과와 본 절에서 살펴본 청년노숙인들의 독립 이행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가 당초 설정하였던 청년들의 노숙화 과정 모형은 적지 않은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A1그룹의 노숙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은 바로 독립 이행의 실패일거라는 가정은 맞지 않았다. 물론 A1그룹의 독립 이행의 실패는 예상대로 확인되었다. 또한 A1그룹의 몇몇 사례들에서는 뚜렷한 노숙의 위험요인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서 독립 이행의 실패로 노숙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A1그룹의 사례들에서 노숙은 비단 독립이행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미 독립을 시도하기 이전에 적지 않은, 또한 가볍지 않은 노숙 위험요인들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당초 이론적으로 가정했던 A1그룹의 노숙 경로 모형에서는 실제 A1그룹의 여러 사례에서 포착된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청년노숙인의 취약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환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셋째,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는 A1그룹의 다수가 A2그룹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희생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A2그룹의 경우, 이 그룹의 다수 사례들에서 볼 수 있었던 독립이행의 과정은 A1그룹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A2그룹의 많은 수가 비행과 가출 이후 곧바로 노숙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 시도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에 역시 실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2그룹의 다수는 독립을 경험하지 않았던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A2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 모형의 일정 부분은 충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6장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생활

본 장에서는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생활은 어떠한지, 청년노숙의 두 하위그룹의 노숙 이후 생활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제시한 바대로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생활의 핵심적인 주제로 거론되는 주거, 일, 복지 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고 그 특성을 파악한 후 청년노숙인 그룹 간 차이가 드러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소주제 별로 앞 장의 분석 방법인 연대기적 배열, 설명하기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추가로 각 주제 내에서 청년노숙인들의 경험 중 중심적 의미를 가지는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기술하였다.⁴¹⁾

제1절 청년노숙인의 주거와 일

1. 청년노숙인의 주거

노숙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노숙생활을 시작하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노숙이라는 낭떠러지에 몰린 청년들은 크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노숙 이후 생활할 최초의 장소로 진입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집이나 숙소를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나와서 거리(Homelessness ground, H0)로 진입하는 경우, 둘째,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노숙인 쉼터⁴²⁾, 즉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혹은 자활, 재활, 요양시설(homelessness level 1, H1)에 연계되어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노숙인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아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셋째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 정도의 비상금을 가지고 원래 있던 곳에서 나와 고시원, 모텔, 여인숙, 쪽방(Homelessness level 3, H3) 등에서 두세 달 생활하는

41)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생활은 노숙 이후부터 인터뷰 시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내의 경험에 근거한다. 이 기간은 엄밀히 말해 노숙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최초 노숙과 현 노숙 상태의 사이 기간 중 집으로 귀가한 비노숙의 상태, 혹은 방을 얻어 생활을 한 상태 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들이 잠시 노숙을 벗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노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간들은 잠재노숙 상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May(2000)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노숙 특성을 '간헐적 노숙(episodic homelessness)'라고 명명한 바 있다. 둘째, 노숙기간은 인터뷰 시점까지의 노숙 기간이므로 인터뷰 이후의 노숙 기간의 길이와 노숙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이 기간 전체를 노숙 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 사이의 노숙의 역동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42) 노숙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일컫는 공식적인 용어로 노숙인 쉼터라는 말보다 '노숙인시설' 혹은 하위개념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노숙인 시설에 포함되는 각종 이용시설과 숙박의 기능을 가진 시설을 구분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혹은 '쉼터'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것으로 실질적 노숙을 시작하는 경우였다. 혹은 주거지로서는 이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지만 하루당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다중 이용시설 즉, 찜질방, PC방, 만화방 (Homelessness level 2, H2)⁴³⁾ 등을 집 삼아 몇 달 생활하는 경우도 매우 흔했다. 이 장소들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면서도 비용을 개인이 지불함으로써 거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다른 곳들과 차별화된 거주 장소였다⁴⁴⁾.

한편 거리, 노숙인 쉼터나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노숙 진입 장소를 보면 이들이 매우 다른 선택을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러한 노숙 장소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노숙인의 경험에서 모두 섞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극히 일부의 경우 노숙인 쉼터를 거부하고 거리노숙이나 PC방 생활을 고수하거나(12, 40, 42), 혹은 거리노숙은 어떻게든 피하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노숙 상태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PC방과 노숙인 쉼터 생활을 번갈아가며 하는 사람들(n12, n18, n21)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노숙인들은 이제 가지 종류의 노숙의 거주 장소를 모두 경험하였다. 이 세 부류의 장소들은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생활을 설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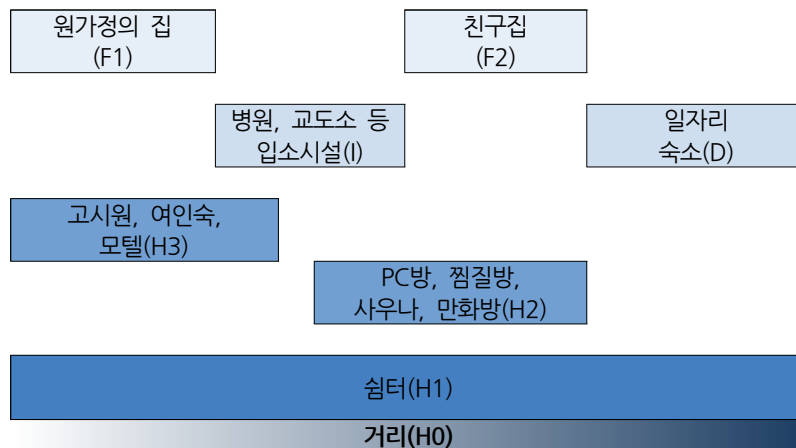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노숙의 기본적인 장소에 더하여 청년노숙인들의 거주 패턴을 바꾸어 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병원, 교도소 등의 시설(Institution, I)이다. 노숙 생활 중 결핵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나 노숙생활 중 범법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로 총9명의 사례에서 이러한 경험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의 숙소(Dormitory, D)이다. 쉼터나 고시원 생활, PC방, 찜질방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청년노숙인들은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숙소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원한다.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족이 있는

43) 방을 가진다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노숙인이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버겁다. 어차피 방을 구할 정도의 목돈 마련이 잘 되지 않는 일당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가격대비 부담 없는 거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찜질방은 6-7천원으로 저렴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면서도 씻거나 자거나 사우나에서 빨래를 하는 등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가능한 곳이다.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좁고 추운 방에 혼자 갇힌 듯 있는 것 보다 낫고 여긴다. 한편 보통 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은 한 시간 이용료가 500원에 불과하여 밤 새 PC방에 있어도 5,000원이면 족하다. 거리의 추위와 위험을 피하면서도 인터넷과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의자에서 잠을 자는 불편함 정도는 충분히 감내 가능한 곳이었다.

44) 공간의 용도로 본다면 고시원이나 쪽방과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달리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청년노숙인들의 이 두 종류의 장소에 대한 활용은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두 종류의 곳은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얼마나 생활이 편리한가 돈을 적게 쓸 수 있는가에 따른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고시원이나 여인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찜질방이나 PC방을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월 단위로 이용료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하루 단위로 이용료를 지불하느냐이다. 보통의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 방값을 지불하지만 여인숙이나 쪽방은 경우에 따라서 하루 숙박비를 내도 이용이 가능한 곳들도 있다. 이렇게 하루 이용료를 받는 여인숙이나 쪽방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손쉽게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집(Family house, F1), 혹은 친구나 지인의 집(Friends' house, F2)이다. 바깥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않고 버티기가 힘들 때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거나, 친구에게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시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이 재점화 되면 집을 다시 나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도 길어야 2-3개월에 불과했다.

물론 I, D, F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사실상 노숙의 상태를 벗어나 탈노숙을 이룬 상태로 인식할 수도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해 이런 장소에서의 생활을 노숙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주거상태로 보았을 때 거리나 쉼터보다 상향 이동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은 노숙상태에서 이 세 종류의 장소로 이동을 한 이후 거의 대부분 다시 노숙 상태로 회귀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I, D, F 상태를 노숙을 벗어난 탈노숙, 혹은 비노숙의 상태로 인식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이러한 상태로의 이동과 회귀는 노숙인들의 거주 이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탈노숙 상태라고 표현하기보다 잠재적 노숙(latent homelessness)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숙의 기간에 포함하였고 노숙 이후의 거주지 패턴을 확인하는데 반영하였다. <그림 6-1>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청년노숙인들의 주거지를 맨 아래 거리에서부터 맨 위의 원가정의 집에 이르기까지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배치해 본 것이다. 거주지의 형태상으로 보았을 때 아래로 갈수록 불안정한 거리가 깊고 위로 갈수록 좀 더 안정적인 거주지로 가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그림 6-1>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주요 거주지

45) 그러나 그림에 제시된 청년노숙인들의 거처는 어디까지나 노숙상황 하에서 청년들이 선택하는 거처이며, 따라서 맨 위의 거처라고 해서 그것이 곧 탈노숙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림의 좌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역시 아님을 밝혀둔다.

이러한 세 가지의 거주 경험 중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되는 경험이 있는 반면 확대되는 경험들도 존재했다. 첫째, 원가족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경우는 노숙이 진행되면서 점차 소멸되었다. 또한 가족의 갈등 상황이 노숙을 초래한 경우들 역시 원가족이 있다고 해도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자존심과 죄스러움, 노숙 상태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가족은 절대 알아서는 안된다는 감정 때문에 연락은 취하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럼에도 몇 몇의 사례는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 혹은 자신이 머물렀던 집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드나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면목이 없거나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왕래는 커녕 연락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⁴⁶⁾.

두 번째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의 숙소의 경우였다.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노숙인 쉼터의 이용과 이용 사이에 숙식 제공 일자리로의 이동과 회귀는 다수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후 각 사례의 거주지 이동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숙소가 제공되는 일자리에서 다른 숙소 제공 일자리로의 이동 즉, 평행이동 혹은 거주지의 상향이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숙소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 이후 쉼터로 가는 하향이동 패턴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이런 일자리에 딸린 숙소생활의 위험은 일의 상실이 곧 주거의 상실로 직결되고, 결국은 쉼터로 복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의 생활은 일터와 쉬는 곳이 분리되지 않고 24시간을 일터에 있는 것과 다를없는 생활이었다. 그에 따른 피곤과 스트레스가 결국 일을 오래하지 못하게 한다. 주로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 일을 많이 했던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사례^{n9, n18}의 경험도 그랬다.

참여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숙식을 하잖아요. 만약에 출퇴근 하는 사람이 그냥 말없이 안 나오면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또...(n9)

참여자: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고 써야 하나까 그게 좀...(불편하고 피곤해요).

연구자: 아.. 쉬지 못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 돈을 좀 방을 구할 만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방은 좀 따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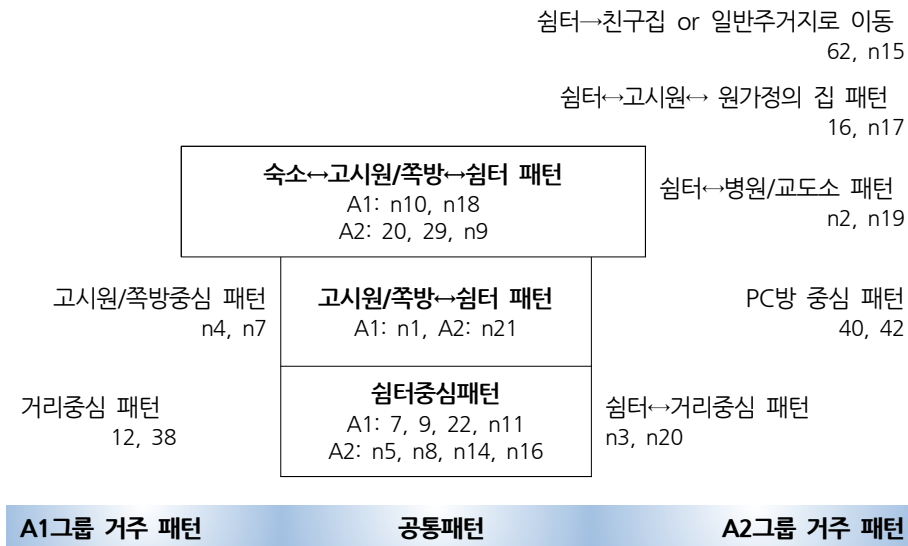
참여자: 그게, 방을 잡으면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방을 잡으면 좀 편한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숙식하면서 있다가 나와 가지고 원룸 단기로 해서 한두 달 해 가지고...(n18)

청년노숙 두 그룹별 사례들의 노숙 이후 거주지 이동을 정리하여 <그림 6-3>, <그림

46) 노숙인의 가족관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관계의 부분에서 다시 언급된다.

6-4)에 제시하였다. 사용한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주거와 관련한 인터뷰 녹취록 전사 자료의 내용을 추출하여 경험의 맥락을 추적하며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하고 이후 이들의 노숙 상태의 거주 패턴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그룹 간 공통점과 차이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청년노숙인의 노숙이후 거주 경험에서는 어느 쪽 그룹이냐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림의 전체적 거주 이동 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 노숙인들의 노숙 이후 거주지의 이동은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청년 노숙인들의 거주 장소 이동은 거리와 쉼터 간, 쉼터와 쉼터 간 등의 수평이동 뿐만 아니라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직이동도 상당히 빈번하다.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거주지도 매우 여러 가지이다. 청년노숙인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거주지의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청년노숙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주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거주이동의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그림 6-2>는 청년노숙인들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 장소들의 반복 이동 경험을 통해 주로 어느 장소를 주된 장소로 활용하는지 각 그룹별 거주지 이동 패턴을 정리한 것이다. A1그룹의 패턴은 5개, A2그룹의 패턴은 7개로 나타났고 이 중 3가지의 패턴이 양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숙인 쉼터를 노숙생활의 전진기지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청년노숙인의 다양한 거주 패턴은 크게 쉼터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양분되었다. 우선 거리를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동절기나 혹한기 한 두 달만 추위를 피해 고시원이나 쪽방을 이용하는 사례들(사례12, 38)이나 주로 PC방에서 생활하면서 세면이나 휴식을 위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사례40, 42), 노숙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사례(사례n4, n7)들은 각각 거리, PC방, 고시원/쪽방 등을 핵심 거주 패턴으로 삼고 있다. 이들 세 가지의 패턴은 차이점이 있지만 쉼터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그 이외의 다른 패턴들, 즉 쉼터만을 주로 이용하는 패턴, 쉼터와 고시원/쪽방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패턴, 일자리 숙소, 고시원/쪽방, 쉼터를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패턴, 거리와 쉼터를 왔다갔다하는 패턴은 노숙인 쉼터가 이동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로 쉼터만을 이용해 수년간 노숙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노숙인 사례도 8사례에 달했다.



<그림 6-2> 청년노숙인 노숙 이후 거주 패턴

이와 같은 청년노숙인들의 전반적인 거주 패턴에 더하여 거주지 이동 패턴에서 A1그룹과 A2그룹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거주이동의 패턴과 내용에 있어서 두 그룹은 쉘터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그룹에서 공통적 패턴으로 나타난 쉘터중심 패턴, 고시원/쪽방과 쉘터를 오가는 패턴, 쉘터에서 일자리 숙소로, 고시원을 거쳐 다시 쉘터로 돌아오는 패턴을 가진 사례들은 모두 1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쉘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로 A1그룹에서 나타난 거리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두 사례와 A2그룹에서만 나타난 PC방을 주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 두 사람은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만 다를 뿐 실제로 이들은 거리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PC방을 거점으로 삼고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거리노숙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여름 등 날씨가 나쁘지 않을 때는 밖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또한 기차역 중심으로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도 여윌돈이 생기면 PC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목욕과 세탁을 위해 찜질방을 빈번히 이용한다. 또한 A2그룹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쉘터에서 다른 거주지로의 반복 이동은 좀 다른 유형의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안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거주지도 쉘터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쉘터 패턴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포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원가족의 집으로 돌아간 경험(F1)에 대한 것으로 A1그룹

의 사례에서는 노숙 이후 원가족에게 돌아가 보았던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반면 A2그룹의 경우에는 4명의 사례에서 노숙 이후 부모님의 집에 돌아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던 경험이 포착되었다. 이는 추후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상황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A1그룹의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의 골이 더욱 깊음과 동시에 A2그룹에 비해 노숙 이전의 삶과 노숙 이후의 삶의 낙차가 더 커서 가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욱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등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경험 역시 A2그룹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거주지 선택의 패턴과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청년노숙인에게 노숙 이후의 생활의 기본 선택지는 거리, 노숙인 쉼터, 고시원·찜질방이나 사우나·PC방이며 이에 더해 잠시 노숙 상황을 벗어나 숙식제공 일자리의 숙소, 원가족의 집, 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시설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노숙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적응력이나 관계망이 단절되어 가면서 선택지는 줄어들어간다. 특수한 상황에 가게 되는 병원과, 교도소도 제외된다면 결국 최종적인 선택지는 노숙인 쉼터를 중심으로 적은 액수의 돈으로 이용 가능한 곳들인 H0, H1, H2, H3으로 좁혀지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주지의 상향이동의 시도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노숙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들을 돌면서 생활한다. 결국 이들 공간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공회전의 삶’이 계속된다.

[1. 거리중심 패턴: 사례12, 38]

	사례12 거리로 진입, 거리노숙 3년				사례38 초반 거리노숙 이후 쉼터 5-6군데를 반복이용, 여름엔 거리, 겨울엔 고시원, 중간 중간에 여인숙, 사우나 이용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D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H2: PC방,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3		H3						H3				H2
H1: 쉼터 H0: 거리	H0		H1		H0	H0	H1	H0		H1		H0		H0

[2. 고시원/쪽방(월세)중심 패턴: 사례n4, n7]

	사례n4 쉼터A로 진입, 주로 고시원을 이용				사례n7 고시원으로 진입, 일비여인숙에서 쪽방으로 이주하여 거주									
		D		I						I				
			H3			H3	H3					H3	H3	
H1					H1				H0		H1			

[3. 쉼터중심 패턴: 사례7, 19, 22, n11]

사례7 쉼터F로 진입, 쉼터I만 8년 이상)				사례19 고시원/모텔로 진입, 쉼터 5군데 돌아다니며 생활				사례22 주로 한 군데의 쉼터G를 반복 이용				사례n11 거리로 진입, 이후 쉼터B를 거쳐 쉼터A를 주로 이용					
		D											D		D	I	
					H2	H2							H3				H3
H1			H0	H1			H0	H1	H1	H1	H1	H1	H1	H1	H1	H1	H1

<그림 6-3>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1그룹

[4. 고시원/쪽방(월세) ↔ 쉼터중심 패턴: 사례n1]

	사례n1 쉼터와 고시원을 반복 이용											
F1: 월가정의 집 F2: 친구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I		I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3		H3		H3				H3		H3	
H1: 쉼터 H0: 거리				H0		H0	H1	H1		H1		H1

[5. 숙소 ↔ 고시원/쪽방(월세) ↔ 쉼터중심 패턴: 사례n10, n18]

사례n10 친구집으로 진입, 숙소와 쉼터A, 고시원을 주로 이용	사례n18 병원으로 진입, 이후 숙소, 고시원, 쉼터D, G이용																				
F2																					
		D					D					I				D			D		
	H3		H2						H3					H3	H2		H2			H2	
				H0	H1			H1		H1			H1					H1			H1

<그림 6-3>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1그룹(계속)

[1. PC방중심 패턴: 사례40, 42]

	사례40 거리로 진입, 주로 PC방 거주					사례42 주로 PC방 거주, 사우나 이용, 여 름엔 거리				
F1: 월가정의 집 F2: 친구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I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2			H2	H2		H2	
H1: 쉼터 H0: 거리	H0	H0			H0			H0		H0

[2. 고시원/쪽방 ↔ 쉼터 패턴: 사례n21]

사례n21 사우나/PC방으로 진입, 쉼터 여러 곳과 고시원 반복이용									
H2					H2			H2	
	H1	H1	H1			H1			H1

[3. 쉼터중심 패턴: 사례n5, n8, n14, n16]

사례n5 거리로 진입, 쉼터 3군데를 주로 이용, 겨 울엔 고시원					사례n8 거리로 진입, 쉼터 6-7군데 이용 경험, 쉼 터D에서 생활					사례n14 거리로 진입, 쉼터에서 주로 생활					사례n16 찜질방으로 진입, 쉼터 여러 곳-찜질방 반 복이용				
																	F1		
	H2			H3					H2					H3		H2			H2
H0		H1	H1		H1	H1			H1	H0		H1		H1	H1		H0	H0	H1

<그림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2그룹

[4. 숙소 ↔ 고시원/쪽방(월세) ↔ 쉼터 패턴: 사례20, 29, n9]

	사례20 거리로 진입, 숙소-여인숙-쉼터 반복)							사례29 쉼터 여러 곳, 숙소, 고시원을 주로 이용							사례n9 친구집으로 진입, 숙소-PC방-거리노숙 반복								
F1: 월가정의 집 F2: 친구 집																F2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D		D					D		D					D			D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2								H3		H2			H2					
H1: 쉼터 H0: 거리	H0	H1		H1			H1		H0	H1		H1		H1		H0			H0		H0	H1	

[5. 거리 ↔ 쉼터 패턴: 사례n3, n20]

사례n3 거리노숙-쉼터를 반복한 이후 쉼터에 거주							사례n20 여인숙으로 진입, 거리와 쉼터 등을 반복 이용											
	F1							F2										
I			D									D	D					
							H3		H3				H2					
		H0		H0	H1	H0	H1				H0	H1	H0	H1			H0	H1

<그림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2그룹(계속)

[6. 원가정의 집 ↔ 고시원 ↔ 쉼터 거주패턴: 사례16, n17]

	사례16 거리로 진입. 쉼터-집-숙소 반복						사례n17 모텔로 진입, 집-쉼터-고시원을 반복이용, 3년 전부터 집에 가지 않음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F1				F1					F1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D			D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3		H3				H3			
H1: 쉼터 H0: 거리	H0	H1			H0		H1		H1				H0	H1		H1	H1

[7. 쉼터 → 친구집 or 일반주거지로의 이동 패턴: 사례62, n15]

사례62 거리로 진입, 오랜 쉼터생활 이후 매입입대로 이동						사례n15 거리로 진입, 쉼터에서 주로 생활->노숙동료의 월세방									
					F3						F2				
	H3	H2						H2							
H0			H1	H1		H0	H1		H1	H1					

<그림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2그룹(계속)

[8. 병원/교도소 ↔ 쉼터 패턴: 사례n2, n19]

	사례n2 거리로 진입, 고시원 교도소, 병원 반복이용 하다가 노숙인 쉼터를 알게 되 쉼터 반복이용									사례n19 거리로 진입, 병원과 쉼터 반복이용, 현재 고시원거주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F2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I		D		I	I							I		I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2		H3							H3						H3
H1: 쉼터 H0: 거리	H0							H1	H1	H0			H0		H1		H1	

- 주1: A1, A2그룹의 사례 중 노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들은 거주지 이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이들 사례의 거주지 이동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2: 그림의 각 표의 맨 왼쪽은 노숙의 시작점을, 맨 오른쪽은 조사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가로방향(왼쪽→오른쪽)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의 각 칸은 동일한 시간의 간격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거주지의 이동 사건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색깔로 표시된 칸은 각 사례가 오래 머무르고 주로 이용했던 노숙 장소들이다.
- 주3: 각 사례의 병원, 교도소 등의 시설 입소(I)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n4, n11, n18 40의 I는 결핵 발병으로 인한 4-6개월간의 병원 입원치료, 사례n7, n1, n3, n19는 정신병원 입원, 사례n2는 교도소 생활을 말한다.

<그림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 패턴: A2그룹(계속)

2. 청년노숙인의 일 경험

청년노숙인들은 과연 일을 할까. 한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이후의 일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이 한 일의 공통적 특성, 독특한 점 등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청년노숙인들은 노숙인 지원체계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끊어져 있고 친구 등 기타 외부 자원과의 연결고리도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의 지원 역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청년노숙인 중 정신질환으로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사람도 단 두 명(n1, n19)에 불과했다. 나머지 32명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돈을 벌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1) 일의 종류

이들이 노숙 이후 한 일의 종류와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표 6-1>, <표 6-2>에서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과 노숙 후의 일을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청년노숙인 전체를 보았을 때 A1그룹과 A2그룹을 막론하고 이들이 한 일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독립 준비기간이 길던 몇몇 사례가 했던 사무직종의 일 경험이 노숙 이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비록 소수였지만 노숙 전 최소 몇 달 정도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해 보았던 경험이 노숙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노숙 이전 일을 해 보지 않았던 사례들(n11, 29, n5, n19)도 예외 없이 노숙 이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노숙 전 많이 했었던 공장 종업원, 일용노동, 식당 종업원,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루에 보통 2-3만원을 벌 수 있는 전단지 돌리기 등의 익숙한 일들은 노숙 이후에도 돈벌이로 여전히 유효했다. 중장년에 비해 젊은 청년들은 다소 고강도이지만 일당이 7만원 선으로 비교적 센 육체노동 일용직들을 가장 선호했다. 아르바이트 중 가장 강도가 세다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포함하여 이삿짐, 건설 일용잡부의 일이 돈이 없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청년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강도 높은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나흘 정도의 횡수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나흘을 쉴 새 없이 일해 봐야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100-12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숙 이후의 일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일들 중에는 노숙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 임상실험에 참가하고 돈을 벌거나 드라마나 영화의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벤트 회사의 행사 지원 아르바이트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인테리어 아르바이트, 병원의 환자 이동 보조, 방송국 촬영 보조 등의 일은 노숙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을 달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 온라인 상품권 매매, 게임머니 거래, 마우스 클릭과 자판조작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며 7-8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소위 “안에서 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을 통해 소액이지만 돈을 벌기도 했다.

<표 6-1>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후의 일 경험: A1그룹

사례 번호	노숙 전의 일	노숙 이후의 일
7	분식집 구로공단 사출공장 칸막이(판넬) 사업	일용노동, 식당 특별자활
12	컴퓨터학원 강사 라디오편성홈페이지제작, 동업자와 커피숍사업	고물수거나 신문수거(지하철), 야간 택배일, PC방 야간아르바이트, 신문배달 야간주차요원
19	고시공부, 대기업 식품회사, 한식당 경영 공무원 시험준비	엑스트라, 전단지 인터넷 상품권 매매 댓글달기, 임상실험
22	자동차정비소 보조 주류운반, 우유배달, 택배, 인쇄소 등	대형마트 보안, 뱃일 희망근로
38	행광등 공장, 자동차공장, 사출공장, 전자회사, 식품공장 등	일용노동, 자동차부품공장 지하철 잡화(겜, 수세미) 판매, 양식장
n1	고시원총무, 일용직	없음
n4	일용노동, 편의점, 배달 등	백화점 보안업무 방송국 촬영보조 뱃일, 택배일, 특별자활
n6	용접공장. PC방 아르바이트 일	게임 아이템 거래
n7	휴대폰 조립공장, 물류사무실 문서수발 술집 편의점	이삿짐, 일용노동 특별자활
n10	레스토랑, 촬영보조, 과외, 학원강사 등	일식집, 프로모션회사, 영어학원강사, 과외, 레스토랑 조 리, 새벽 주점, 차킨집, 특별자활
n11	없음	전단지, 택배 물류창고 상하차, 이삿짐, PC방, 노래 방, 공장, 특별자활
n12	S전자 생산직, 일식집 주방보조	특별자활
n3	PC방 아르바이트 상품포장공장	전단지
n8	가구공장 10년	일용노동 식당, 환자이동보조

〈표 6-2〉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후 일 경험: A2그룹

사례 번호	노숙 전의 일	노숙 이후의 일
4	일용노동, 염전, 새우잡이 배, 농기계센터, 마트	김밥, 떡장사 특별자활
15	중국집, 립살롱, 식당	특별자활
16	용접, 자동차 정비소, 간호조무사, 핸드폰 공장.	뱃일, 일용노동, 주유소, 특별자활, 희망근로
20	물류창고, 환경미화원, 의류사업, 약 판매	주유소, 청소, 미장 휴대폰 부품조립회사, 특별자활, 희망근로
29	없음	일용노동, 이삿짐 양계장, 청소, 희망근로
40	사출공장	지하철 구결
42	백화점 생선코너, 주유소, 유흥업소, 경수기 판매영업, 공인중개업	게임머니 거래 행사보조, 사우나 카운터, 인테리어 일용직
62	섬유공장, 조립식판넬 사업, 건설일용 노동	일용노동, 뱃일, 특별자활, 재생관련 사회적 기업
n2	구두공장, 게임 작업장 패밀리 레스토랑	지하철 구결, 중화요리 특별자활
n3	구미 전자회사 일용노동	염전 세차장, 특별자활
n5	없음	야채매달, 일용노동 특별자활
n8	자동차 부품 제조	일용노동, 특별자활
n9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식당	주유소, 식당
n14	고기집 아르바이트, 전자제품 조립 공장	반도체공장 신희수, 자활(공명수거 등)
n15	주유소	이삿짐, 특별자활
n16	편의점 알바, 건설일용노동, 청소년자활	식당아르바이트 건설일용노동
n17	요식업, 뷔페식당 주방	뷔페식당
n19	없음	염전노예, 세차장 소금공장
n20	식자재유통업 일용직	건설, 용접, 설비 등. 뱃일, 월급제 건설일 특별자활
n21	철판공장, 편의점, PC방, 주유소, 세차장	엑스트라, 건설일용, 이삿짐, 특별자활

이러한 일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직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기에 접근 가능한 아르바이트라는 특징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청년노숙인들은 주머니에 단 몇 천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은 아르바이트라면 무엇이든 찾아내 하고자 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 한편 불법적인 일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간 사례들도 있었다.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24시간 돌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게임 작업장 일, 배편으로 외국을 수시로 오가면서 회 당 8만원을 받고 물건을 날라주는 보따리상을 해 본 사례도 있었다. 가장 눈의 띄는 일 경험은 뺏기이다. 어촌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던 청년들이 배를 타는 일을 수 개월씩 해 보았다는 것은 매우 의외이다. 사례16, 20, 22는 노숙 이후 뺏기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한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상 몇 달 동안 일한 대가로 손에 쥘 돈은 수십 만원에 불과한 사례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례12와 20은 노인들이나 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폐휴지와 고물수거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례38은 지하철에서 껌이나 수세미를 팔기도 했다. 심지어 구걸을 해 본 경험도 세 명의 사례(사례40, n2, n15)에서 보고되었다. 노숙 이후 극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청년들이 뛰어들지 않는 일이란 없는 듯하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이래도 하지 않으면 주머니에 동전 몇 푼도 남길 수 없는 절박함에 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단발적이고 불안정했다. 청년기의 일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거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들과는 동떨어져 사실상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것 이외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 보였다.

2) 일의 패턴

이들이 하는 일의 종류의 특성 이외에도 이들이 일을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를 통해 이들의 노숙 이후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이 하는 일이 단발적인 아르바이트라는 특성상 이들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는 패턴을 갖는다. 일용직의 특성상 대부분이 오늘 한 일은 오늘로 끝이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새 일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일을 구해내야 한다. 당연히 그런 구직과 노동은 연속적일 수 없다. 오늘은 내 의지대로 일을 가더라도 내일은 또 내 의지대로 일을 안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어차피 하루 일해 번 돈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바닥이 날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지 어제 번 돈을 오늘까지 쪼개서 나눠 쓰면 그만이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가서 하루 고생해서 일을 하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두 번째 패턴은 돈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떨어지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헐적인 일을 통해 버는 돈은 한 달에 불과 수 십만원에서 많아야 100만원대 초반 정도이다. 자신의 집이 아닌 바깥 생활을 하면서 쓰게 되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빼면 사실상 남는 돈이 별로 없다. 대부분 갖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돈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돈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게 돈을 버는 것은 미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지 현재 생존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돈이 없어 생존이 어려워지면 돈을 벌러 가야 하지만 돈이 있을 때는 고된 돈벌이를 중단하는 패턴을 갖기 쉽다.

세 번째로 발견되는 패턴은 어렵사리 일을 하며 약착같이 모아 놓았던 수 백 만원의 돈도 어느 날 일을 그만두고 한두 달 쉬게 되면 이내 다 써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몇 달 내 수 백 만원이라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숙식에 이들의 사비가 지출되지 않는 구조였음을 말한다. 즉, 노숙인 쉼터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무료급식으로 식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용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견뎌 각고의 노력으로 돈을 모으면 이내 그 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독립 상황은 곧 하던 일의 중단과 새로운 구직 상황과 맞물리고 이에 더하여 독립 주거 생활을 위한 부대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는 데 있다. 새로운 각오로 잘 해보려고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고,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했지만 불과 몇 달이 되기도 전에 이들은 심리적 좌절감을 안고 다시 무료 숙박시설로 되돌아와 있게 된다. 결국 '원점으로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들의 원점에서의 회귀는 시간적 측면에서도 진행되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의 특성상 겨울에는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노숙이 몇 해 반복되면 여름에는 돈을 조금 모았다가 겨울이 되면 그 돈으로 겨울을 나는 전략을 세운다. 결국 여름 내 모았던 돈은 이내 바닥이 난다. 이 역시 다시 원점 상태로의 회귀일 뿐이다. 다만 그 절망스러운 생활을 청산할 것을 포기하고 적응을 하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참여자: 저도 저축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겨울에 많이 써요, 돈을. 여름에는 (밖에서) 잘 만하니 상관 없는데 진짜 겨울에 밖에서 자면 춥거든요.(웃음) 그리고 여름에는 일거리가 많은 편인데 겨울에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겨울 자체가. 그러니까 여름에 모아두었던 돈을 겨울에 많이 쓰게 되죠. 찜질방 한 달 끊으면 딱 15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좀 싸게 해주면 13만 원? 한 달 동안... 그리고 자고, 일 갈 때는 일 가고, 계속 겨울 내도록 놀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pc방 갈 때도 있고.(12)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매번 새 일을 구해야 한다는 점, 일당으로 번 돈으로는 당장 급한 최소한의 필요 밖에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현실을 타개할 어떤 동기부

여도 주지 못하고 이들을 계속되는 좌절감과 무기력에 빠뜨리기 십상이었다. 해야 하는 일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안정의 요소이다. 일당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거처의 문제와 직결된다면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거처나 일이냐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거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거리 혹은 쉼터 생활의 노숙 상태에서 그가 현재 확보해 둔 거처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일 패턴도 그것에 맞추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⁴⁷⁾

한편 이들 청년노숙인들이 노숙 이후 주로 하게 되는 일자리의 대표적 특징인 일용직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일을 구하기가 어렵다,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 등의 일반적인 이유도 이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진입하기 쉽고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일용직이다. 그러나 청년노숙인의 노숙 상황에서 그 이유는 일용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좀 더 안정적인 월급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청년노숙인들이 일용직을 얻게 되는 것은 당장에 급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당장 생활할 돈이 없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까지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좀 더 안정적인 일을 기약하기 위한 준비로 핸드폰, 옷, 신발, 교통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용직 일은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유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사실상 일용직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이다. 사실 일당제의 일은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하루만 일을 하면 손에 6, 7만원의 돈이 쥐어진다. 그러나 일당제 일만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느껴진다. 일당에 적응하면 할수록 월급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견디기는 더욱 쉽지 않게 된다. 스스로가 일용직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궁핍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여자: 일용직은 돈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돈이 바로 안 나오면 답답해요.
(n7)

47) 시설을 거부하고 공원에서 거리노숙을 하는 사례12는 자신의 일 패턴을 거리노숙에 적합하게 맞추는 사례였다. 즉 낮과 밤을 바꾸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참여자는 주로 밤에 일을 한다. 어차피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힘들니 돈도 벌고 추위도 피할 겸 차라리 밤에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야간택배, 야간 PC방 아르바이트, 야간 주차요원 등을 한다. 그리고 새벽에 지하철 검표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철이 가는데로 몸을 싣고 그 안에서 잠을 잔다. 거리노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숙인 시설에 적응이 되지 않은 사례n6의 경우도 역시 노숙인들이 많은 밤에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PC방에서 게임머니 거래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자금을 확보하거나 심야 버스를 타고 다니며 쪽잠을 청하고 사람들이 없는 낮에 노숙인 시설에 들어와 밀린 잠을 잔다. 노숙인 시설에서 밤을 보내는 사례n10 역시 오전5-6시에는 반드시 시설에서 전부 퇴소한 이후 오전 9시에 재입소해야 하는 규칙을 따르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 아침 3-4시간 갈 데가 없어 아침부터 PC방에 가거나 거리나 역에서 서성거리면서 시간을 죽여야 하는 사정에 맞추어 차라리 밤부터 아침까지 하는 일을 선택한 이후 아침을 밖에서 먹고 9시에 시설로 들어오는 패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계속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 노가다, 이사짐 일..

참여자: 네. 그런데 이사짐이나 노가다를 가면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받으니까. ... 월급제를 일하는 의지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 한번은 한 달 알바를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일식집에서 일한 적 있었는데. 한 달 일하니까 그래도 일하는 느낌도 있고. 일하는 시간 내에서는 노숙인이 아니고 약간 내가 사회인이다.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n10)

두 번째로 일용직 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월급제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청년노숙인들이 가진 채무 때문이었다. 빚으로 인해 통장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은 150만원 이하이다. 사례n11은 단 돈 1원이라도 더 많은 액수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초과된 금액뿐만 아니라 통장에 들어있는 돈 모두가 압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돈을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져도 이들에게는 잡을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힘들게 일만하고 자기 손에 한 푼도 쥐지 못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한 달치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것이 꺼려진다. 뿐만 아니라 흔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을 피해 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감추고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경우, 정부 당국에서 자신의 거소를 파악하게 되어 자신이 잡혀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3) 특별자활의 딜레마

그런데 청년노숙인들의 일 경험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특별자활⁴⁸⁾, 희망근로⁴⁹⁾

48) 노숙인이 참여하는 자활은 보통 노숙인 시설 내의 일을 하는 '특별자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인들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노숙인 복지시설이 관리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2016년 기준으로 연간 75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업무는 노숙인 복지시설 내의 청소, 급식, 야간입소자 접수 등의 시설의 운영관련 업무에 국한된다. 특별자활은 한 사람이 1년에 6개월만 참여할 수 있고 근로일수는 한 달에 15.5~19일, 근로시간은 하루 5시간이며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새벽부터 야간까지 근무시간이 다양하다. 시급은 최저임금이 맞추어져 있고 한 달 급여는 대략 50만원 내외이다. 서울시가 노숙인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특별자활'과 '일자리 갖기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별자활'은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내의 청소나 급식보조 등의 경노무를 맡기는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한 근로조건은 모두 특별자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갖기'는 2015년에도 402명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근로를 통해 자활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이 1일 4~8시간, 월22일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 1년 원칙을 갖고 있는 하위 사업이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 노숙인들은 실제로 이 두 사업을 구분하여 말하지 않았고, 대부분 특별자활과 관련된 내용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노숙인들이 말하는 특별자활이라는 경험 속에는 실제로 '일자리 갖기'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근로조건은 모두 특별자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2016a)

49) 한편 '희망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과 경기부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09년과 2010년 두 해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다. 임금은 월평균 83만원 내외였고 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개월, 2010년 4개월로 단기간으로 수행되었다(이광석·원종학, 2011:65). 청년노숙인

등으로 불리는 공공일자리 참여의 경험이었다. A1그룹의 청년노숙인 7명, A2그룹은 14명이 이러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약 70%에 가까운 숫자가 자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었다. 노숙인 시설을 거부하는 사례(12, 40, 42)와 노숙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활 관련 정보를 접해볼 기회가 없거나 정확히 잘 모르는 사례(n6, n9, n13), 노숙인 시설은 이용하지만 시설 내 업무에 자활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례(19), 24세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자활 이외의 일을 찾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사례(n16)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⁵⁰⁾

특별자활은 한 주에 대략 20시간 정도 미만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한 달에 보름 남짓밖에 참여할 수 없고, 급여도 50만원 수준으로 실제 ‘자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나 자활 참여는 실제로 청년노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 공급원이었고 노숙 이후 생활에서 자활 참여가 차지하는 무게감은 적지 않았다. 우선 특별자활은 급여가 높지는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적어도 6개월간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일의 불안정성으로 고생을 하는 청년노숙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게다가 특별자활 참여는 자활참여기간 동안에는 청년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쉼터인 일시보호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⁵¹⁾ 게다가 쉼터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사건 때문에 짐 관리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특별자활 참여자에게는 짐을 둘 수 있는 개인사물함이 지급된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특별자활은 단지 물질적인 원조에 그치지 않는다. 하루벌이의 불안정한 패턴 속에서 살던 이들에게 월급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는 것, 일정한 시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이 일반적인 생활에 가까이 갔다는 느낌도 주고 무기력했던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현 여부를 떠나서 특별자활의 참여는 청년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크다. 적어도 월 얼마의 고정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연구자: 월급을 받는 게 일상적인 패턴인데 보통은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쓰고 했으니까.. 다 써버리게 되는 패턴이었죠?

참여자: 자활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활하면서 월급을 받는 생활.
(n7)

인터뷰에서는 2009년 말에서 2010년 집중적으로 진행된 노숙인 생애사 자료의 4명의 사례에서 특별자활을 하다가 노숙인 시설 실무자의 안내로 급여가 더 많이 나오는 희망근로를 했던 경험들이 언급되었다.

51) 모든 일시보호시설이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월 20일 이용규정이 있다. 시설을 월 20일 이상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쉼터를 주 거처로 삼고 있는 노숙인들은 적어도 한 달의 1/3 정도인 열흘은 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거해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간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자활 참여는 일도 하면서 쉼터를 계속 이용하면서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참여자: ... 육체적인 노동하면서 운동도 되는 것 같고. ...밖에서는 200만 원씩 이렇게 받아도 솔직히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래 되서 돈 쓰러 다니고 이래 다 보니까 솔직히 그것도 모자라서 가불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55만 원 정도 되는데 55만원 받아도 차비하고 그냥 담배, 담배 값하고 이리저리 한달 용돈 한다고 그래도 한 많이 써야 30만 원이더라고요. 나머지 돈은 남게 되요 그게. 한 달에 20만 원씩은 돈이 모아 지더라고요.(15)

그러나 이렇듯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년노숙인에게 있어서 특별자활은 실제 ‘자활’에 있어서 많은 딜레마 상황을 가져다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우선 쉼터 인근의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특별자활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자활 참여는 심중팔구 쉼터 입소를 수반한다. 특히 이른 새벽(04~08시)에 조식을 담당하는 자활, 심야의 입소자 체크업무(22~02시), 혹은 이른 아침의 쉼터 청소(06~10시) 등의 업무의 경우 이들이 다른 데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적어도 자활이 끝날 때 까지는 쉼터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청년노숙인들은 자활참여로 인해 자신의 스케줄을 자활에 맞추고 있기도 했다. 한 달에 15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 두 작업조가 격주로 일을 하면서 월 2주를 근무하게 되거나 혹은 오후조 오전조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등은 사실상 특별자활의 근무 패턴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맞추어야 한다. 추가적인 돈벌이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활 참여 시간의 확보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다른 일용직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나 다음 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일용직을 자활 참여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다 반사로 일어난다. 자연히 월 15일 일 5시간 남짓의 자활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남은 시간은 다소 무기력하게 보내게 된다. 또 어떤 사례자는 자활 참여가 다른 일을 구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별자활에 참여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일자리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자활에 참여하면서는 추가적인 소득을 더 많이 올리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자연히 보증금을 모으는 대로 쉼터를 나가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도 특별자활에 몸을 오래 담게 되는 경우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사회생활이 노숙 세계만으로 좁혀지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특별자활은 일반 사회 속에서의 일이 아니라 노숙인 사회 속에서 하는 일들이다. 이들이 바깥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와의 이질감과 불안의 감정은 적어도 자활과 쉼터생활 속에서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외부인의 시선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청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한 쉼터 실무자가 참여자에게 건넨 충고가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참여자: (자활 참여하지 말고) 그냥 취업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왜냐면 두 가지 일을 설명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 자활하면 여기서 소액의 급여가 나와요. 39만 천 원인가. 그러면 만약에 (자활해서 받은 돈으로) 여기(쉼터)서 나오면 보통 고시원을 얻더라고요. 못해도 23만원 아니면 30만 원정도 돼요. 9만 천 원으로 달랑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생활할 것이냐. 길거리에서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또 막일을 하게 돼요. 그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런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일에 자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에 젖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사회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의식도 그 사람들(노숙인) 부류에만 생각하고 소통하게 되고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취업하면서 사회 사람들과 부딪치랍니다. ... 그래서 '아 이게 제대로 취업이 되고 발전이 있어야지 자활하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하겠구나.' 그래갖고 자활을 안 하기로 했어요. 취업 쪽으로 가려고 많이 알아보려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죠.(20)

제2절 청년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일반적으로는 젊은 노숙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서비스 권역 바깥에 숨어 있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은 앞서 살펴본 자활 참여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청년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응급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들로 임시주거비지원이나 매입임대 안내 등 주거지원, 민간 취업 정보제공과 특별자활 등의 공공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 무료급식제공,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알코올 교육 등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의료지원은 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외의 특화된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빨래터, 문화시설, 옷방 등의 이용시설이 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여러 곳의 무료급식 시설 역시 대표적인 이용시설이다.

1. 청년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표 6-3〉를 통해 청년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의 여부를 정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4명의 청년노숙인들의 경우 노숙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차는 개인마다 컸지만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무료급식, 노숙인진료소, 민간의 노숙인 휴게공간이나 문화시설, 빨래방, 옷방 등을 상당수의 청년노숙인들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물론 무료급식 등의 경우 쉼터에 입소한 이후로는 이용이 빈번해 지지는 않았다. 쉼터에서 최소 하루 1회 이상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물론 매 끼니마다 쉼터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료급식의 이용은 주로 거리 노숙을 하던 시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3〉 청년노숙인의 주요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사례 번호	노숙 기간	무료급식	쉼터이용	자활참여	의료 서비스	기타 서비스
A1 그룹	7	10년	○	○	○	×	-
	12	2년	○	○	×	×	빨래터, 이미용
	19	5개월	○	○	×	×	무료 옷, 사물함
	22	3년	○	○	○	×	무료 옷
	38	9년	○	○	○	×	-
	n1	1년	×	○	×	○	기초수급
	n4	4년	×	○	○	○	임시주거복지원, 주거급여
	n6	1개월	×	○	×	×	-
	n7	4년	×	○	○	×	-
	n10	2년	×	○	○	×	취직알선
	n11	11년	○	○	○	○	-
	n12	1개월	×	○	○	×	-
	n13	20일	×	○	×	×	-
	n18	9년	○	○	×	×	-
A2 그룹	4	7개월	×	○	○	×	-
	15	6개월	×	○	○	×	-
	16	8개월	○	○	○	×	-
	20	5년	○	○	○	×	알코올교육
	29	11년	○	○	○	×	-
	40	3년	○	×	×	○	-
	42	1년	○	×	×	×	알코올교육
	62	6년	○	○	○	×	매입임대
	n2	10년	○	○	○	○	긴급지원
	n3	3년	×	○	○	○	-
	n5	5년	○	○	○	×	빨래방, 무료 옷 등
	n8	8년	○	○	○	×	노숙인 당사자활동참여
	n9	12년	×	○	×	×	-
	n14	3년	×	○	○	×	-
	n15	5년	○	○	○	×	인문학, 연극반, 축구회활동
	n16	1년	○	○	×	×	-
	n17	10년	○	○	×	×	임시주거복지원
n19	11년	○	○	×	○	기초수급	
n20	10년	○	○	○	×	-	
n21	4년	×	○	○	×	-	

식사에 대한 문제는 잠자리 문제 다음으로 청년노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였다.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생리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료로 해결하지 못하면 잠자리 이상으로 하루에 써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잠을 자는데 쓰는 최소한의 일비가 7천원에서 만원 정도라면 하루를

보내면서 먹는 데 사용해야 하는 돈은 최소한 두 배 이상이 소요된다. 때문에 청년들은 끼니 수를 줄이거나 최소한의 먹을 것을 사먹으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무료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쉼터를 찾아가게 된다.

언제 어디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특히 거리생활을 하는 중이거나 수중에 돈이 없을 때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자연스럽게 주로 무료급식에 기대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리노숙 중이거나 PC방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료급식의 질, 서비스, 급식제공시간, 급식소의 위치에 따라 어디로 이동할지 그날의 이동의 동선을 결정하고 생활 패턴을 정렬하기도 하였다. 노숙인들끼리의 정보교환도 상당부분 무료급식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고 동료 노숙인들과도 잘 지내는 사람의 경우 노숙 생활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할 시기를 넘어서면 빨래방, 무료로 옷을 나누어 주는 곳, 구제금을 주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

2. 청년노숙인의 쉼터 이용 패턴

청년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숙 이후 생활의 핵심 공간인 노숙인 숙박시설인 '쉼터'⁵²⁾이다. <표 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노숙인들 중 단 두 명의 사례(사례40, 42)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이용의 빈도나 기간의 편차는 있지만 쉼터이용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쉼터이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으로 인해 이용경험은 있으나 쉼터를 중심 주거지로 두고 있지 않은 사례들(사례12, 38, n4, n7)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쉼터를 매우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우선 청년노숙인들의 쉼터입소는 다양했다. 서울역에서 거리노숙을 하다가 아웃리치나 상담소를 통해 연계되어 입소하거나 주변 노숙인들이 정보를 주어 알게 되는 경우, 거리를 배회하거나 PC방에 오래 거주하다가 경찰에 인계가 되어 경찰서에서 노숙인 쉼터로 의뢰해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런데 청년노숙인들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52) 본 연구에서 노숙인 숙박시설을 총칭하는 말로 일컫는 쉼터 속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의 시설이 있다. 첫째,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하루 단위로 입소를 하게 되는 일시보호시설, 자활을 지향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며 노숙인에게 저축과 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의무를 부과하는 자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나 그 밖의 질환으로 인해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시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이 필요한 노숙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제시된 노숙인시설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 p22). 다만 정책적으로 노숙인 복지에서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서 실질적으로 숙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 노숙인들이 일시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장기간의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숙박을 하는 시설로 보았고 이를 총칭하여 노숙인들이 쓰는 용어인 '쉼터'로 명명하였다. 본 논문에 제시된 쉼터는 4가지 시설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인터뷰 내용 중 등장하는 쉼터는 총 12개에 이른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 컴퓨터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 돈이 다 떨어지고 거리나 PC 방 등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청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숙자 쉼터’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해 직접 전화를 걸어 찾아오기도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경찰서, 콜센터 등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 이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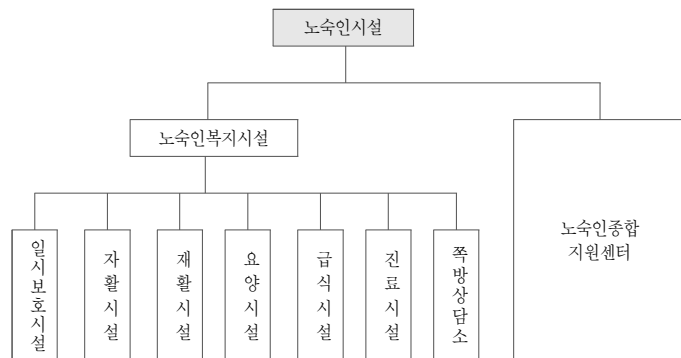
청년노숙인들이 처음 노숙인 쉼터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곳에 자신이 합류되는 순간 어떤 감정을 가질까.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노숙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일 것이다.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느끼는 감정은 거부감, 두려움, 절망감, 자기혐오 등의 복합적인 것들이었다. 반면 극단적인 배고픔과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참여자: 네. 처음 왔을 때 이런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막상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있으면 더 미칠 것 같고.(n7)

참여자: 처음에 노숙인 시설 왔을 때는 제가 뭐..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 느낌이 들었어요. ... 밥 주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계속 노숙인 아니다 계속. 왜 친구들한테 그거 말하면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만나다가 친구도 안 만난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청년이 아니게 된 느낌.. 완전 낙오자가 된 느낌으로 아직까지는 좀 그러고 있어요. (n10)

참여자: 일단 자는 거랑 먹는 게 공짜잖아요. 그런게 되게 고맙구요. 그냥.. 여기 오기 전에는 되게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따뜻한 방에서 공짜로 잘 수 있고, 아침 점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도 좋은 것 같아요. (n13)

청년노숙인들의 쉼터 이용의 반복은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지속적으로 주로 쉼터만을 이용하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부류와 쉼터를 다른 거주지와 병행하여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르게는 쉼터의 반복 이용에 있어 한 군데 쉼터만 집중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부류와 여러 군데



의 쉼터를 돌아다니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쉼터 중심으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들 중 사례7, 사례22는 한 군데의 자활시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례들은 주로 일시보호시설 여러 군데를 번갈아가며 이용하면서 자활시설, 요양시설, 재활시설로 다양하게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쉼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청년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는 일시보호시설⁵³⁾이었다. 일시보호시설은 하루 이용권을 매일 받아야 하는 패턴의 시설로 일반적으로 월 20일의 이용제한이 있다.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에 머무르는 것은 일시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규칙이다. 그러나 한 일시보호시설에서 20일을 다 채우면 다른 일시보호시설로 이동해 머무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일시보호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노숙인의 쉼터 이용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 달 이용 제한 일수를 충분히 쓰면서 주말 등을 PC방/찜질방/일비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다 다시 일시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자: 그러면 20일 말고 나머지 열흘은 밖에 나가서 어디서 생활해요?

참여자: 그건 이제 주머니 사정에 따라 틀려요. 본인이 이제 돈이 있고 없냐의 차인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찜질방도 가고. 여인숙도 가고. 돈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 피씨방에서. 정액제라고 그러죠. 정액제 시간 제일 긴 걸로 해서 그날 이제 그걸로 밤을 새는 거죠. 하다가 이제 졸리면 잠들고 그러고. 그것도 아예 완전히 없을 경우는 다른 데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쉼터B(일시보호, 서울역). 쉼터B는 날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쉼터A(일시보호, 서울역)랑 틀리게 하기 때문에. 쉼터B로 가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이상.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여기서 또 20일 보내고 거기서 열흘 보내면 다시 여기 또 와서 지낼 수 있으니까. 다음 달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요.(n11)

조사자: 한 달에 쉼터A(일시보호, 서울역)를 이용할 수 없는 날 같은 경우?

참여자: 쉼터C(일시보호, 영등포)도 있고요. 쉼터D(일시보호, 영등포)라고 아세요?

조사자: 쉼터D.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여자: 쉼터C근처에 있는데요. ... 저기 어디냐 쉼터E(자활, 영등포)아세요? 그 근처 쉼터F(일시보호, 영등포)라고도 있고요.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여기가면 쉼터G(일시보호, 서울역) 있죠? 다섯 군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 본 데가 다섯 군데네요.

조사자: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주무시고.

참여자: 네. (19)

53) 서울시내에는 노숙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역과 서울역 인근에 2개의 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 구세군브릿지) 내의 일시보호시설 두 곳과 남성용 일시보호시설 4곳(옹달샘, 햇살, 인정복지관, 보현의 집)을 합쳐 총 6곳의 일시보호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3. 청년노숙인의 쉼터생활

청년노숙인들이 쉼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쉼터 생활이 마냥 좋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시설의 종류마다 그리고 시설마다 쉼터의 환경은 천차만별이지만 노숙인 쉼터는 주거마저도 없는 극단적인 고립과 빈곤의 상태를 경험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다. 쉼터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다수이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생활하지만 때로는 젊은 사람이 이런 데 와 있다고 타박하는 아저씨들의 등쌀에 이내 나오고 만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생존경쟁에서 눈치와 텃새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쉼터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불편함은 쉼터 내에서의 도난문제였다. 빨아놓은 옷, 신발은 말할 것도 없고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핸드폰, 지갑, 모든 소지품이 든 가방 등이 사라지기 일쑤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개인마다 주어지는 사물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물건을 관리하는 문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이다.

참여자: 옷을 빨고 걸어 놓으면 다 가져가요. 이제 보관함이 없어요.(n10)

참여자: (쉼터에서 생활하면) 근데 짐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런 데, 시설은. 그러니까 잘 이용을 안 하죠. 아싸리 여기서 자고 내 짐을 할 바에는 OO역이 나아요. 거기는 얼마나 안전한 짐 창고가 있는데. 100원만 있으면 내 짐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죠.(12)

또한 단체생활이다 보니 한 방에 여러 명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소소하게 쉼터 생활자들 간의 시비도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일시보호시설 등은 하루 일과 중 퇴소시간, 입소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루 단위로 이용하는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아침에 6시~6시 반 정도에 일제히 퇴소를 해야 하고 오전 9시 반경 시설 직원들의 출근 후 다시 개방이 된다. 저녁급식 시간인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다시 그날 밤 이용 티켓이 배부되고 저녁급식이 이루어진다. 아침 6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의 시간은 쉼터 내부 청소 등이 이루어진다. 이 시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은 이용자들은 새벽부터 딱히 갈 만한 장소가 없다. 날씨가 쌀쌀한 겨울 같은 경우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야 하니 인근 역이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때워야 한다. 아침을 주는 무료급식소 시작 시간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새벽 빈 시간 하릴 없이 서성거리는 등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 여기서 6시 반에 나가고요.

연구자: (근처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은) 7시부터 줄을 서겠다 그죠?

참여자: 예.

연구자: 그 사이 비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요?

참여자: 서울역 지하철 역에 가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하고, 화장실 들어가 있고. 무료급식소 열릴 때 까지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n13)

그런데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노숙인들이나 쉼터이용을 거부하는 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쉼터생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이러한 생활의 불편함과 무관한 것이었다. 쉼터이용을 통해 생활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갖춰져 있는 쉼터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의존적이 되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바깥 세상이 더욱 혹독할수록,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쉼터는 자신들이 자꾸 숨어들 수 있는 곳이다. 자신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것은 불만을 넘어서 청년노숙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 있었다. 쉼터에 오면 자꾸만 쉬게 된다. 왜 청년노숙인들은 쉼터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명시적 이유는 물론 그들이 자기의 방을 마련하고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심리적 이유로 청년노숙인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반복되는 좌절과 무기력, 또한 그런 모습의 자신을 사회로부터 숨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수고와 경제적 불안함, 외로움 등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회로 나가서 넘을 수 없는 사회에서의 고립과 장애물들을 실감하고 상대적 박탈의 좌절감을 맛보느니 온갖 생활의 불편함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속에서 있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아, 다시는 안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구나..

참여자: 네, 나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잘 안 풀리면 이제, 이번 한 번만 들어오자 하고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 그 생각 하고, 또 일하면서도 하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힘들어도 다른 일을 바로 바로 잡았었는데, 여기(쉼터) 알게 되니까, 여기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쉼터가 있으니까.. 좀 안되면 이제, 여기는 아무나 받으니까.. 좀 안 맞거나 힘들면 조금 쉬러 들어오는..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n18)

참여자: (쉼터를)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이 서울역 생활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춥고 배고픈 게 아니에요.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게...

연구자: 그러니까 올 데가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거죠?

참여자: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쉼터를 통해서 옷도 입고, 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생활에 너무 적응해 버리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n11)

제3절 청년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1. 가족관계

노숙 이후 청년노숙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청년노숙인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표 6-4>에서 볼 수 있듯이 A1그룹과 A2그룹간의 가족관계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룹을 막론하고 청년노숙인들의 가족관계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가족이 있고 가족에게 연락도 취하고 있는 사례들, 둘째, 가족은 있지만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있는 사례들, 셋째, 연락할 가족이 없는 사례들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 중 A1그룹의 4명, A2그룹의 10명은 가족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주로 부모나 형제들과 전화로 한 달에 한 두 차례 안부를 주고 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현재 노숙 상태, 혹은 극빈한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어렵게라도 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자신이 현재 주로 머무르는 고시원이나 쉼터가 있는 지역(가령 영등포 등)에 살고 있다 정도로 자신의 소재지를 가르쳐 줄 뿐이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고 자식으로서 또는 형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속을 썩인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차마 본인의 처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존재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특징은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노숙을 벗어나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가족을 통해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가족은 있지만 짧게는 몇 개월 혹은 길게는 수년간 완전히 연락을 끊은 사례들이었다. 가족에게서 받은 고통은 과거의 일이었고 연락도 단절하였지만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자신의 삶이 망가져버린 이유도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여전히 가족에 대한 원망, 미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혹시나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조차 가족의 도움은 받기 싫다고 했다. 관계의 문제는 지금의 노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주소지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말소처리 해 버린 것 같다는 사례n7의 경우는 여전히 서운함과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거부하면서도 자신이 몇 해 동안 연락도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족들이 나서서 자신을 찾아보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 내심 서운한 마음도 내비쳤다.

연구자: 아버지는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참여자: 네. 없어요. 다시 싸워가지고요 연락도 안하게 됐어요.
 연구자: 지금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뭐 미움 같은 거 남아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네. 남아있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새엄마만 안 데려 왔어도 되는 건데.(n1)

참여자: 돈을 빌려도 (보통은)가족에게 많이 빌리잖아요. 가족이 전혀 의지가 안되요. 빌려도 친구들에게 빌려요.
 연구자: 그쪽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싫어서?
 참여자: 누나한테 힘들었을 때 얘기해서 거절당하고 나서부터.
 연구자: 지금 부탁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참여자: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싫어요. 그 때 이후로부터 누나들한테 받기도 싫어요. (n7)

참여자: 일 알아보려고 했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도 되게 분노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안 산다고 해도 주소 좀 해주지. ... 왜 그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n7)

연구자: 가족들한테 도움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신 거네요?
 참여자: 그렇죠.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다. 왜냐면 이 때 까지 이렇게 살면서 집이랑 거의 연락을 한 번 안 했는데 뭐 실종 신고나 가출신고 아예 안 했으니까 그냥 나는 버려진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 했어요.
 연구자: 아~ 연락을 안 하고 있었지만 좀 찾아줬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쪽에서도 전혀 아무 반응이 없고?
 참여자: 네.
 연구자: 그래서 이게 어떤 서운함... 나를 잊어버렸나보다, 신경 끄기로 했나 보다 짐작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군요.
 참여자: 네. 몇 년 전에 이제 누나랑 처음 연락 됐을 때 집에서 나 안 찾아? 했더니 매번 명절 때는 몇 번은 찾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용해졌대요, 그냥.(n15)

세 번째의 사례는 연락할 가족이 부재한 경우였다. A1그룹의 세 사례, A2그룹의 세 사례가 부모와 형제를 비롯하여 일가친척과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전혀 없는 청년들이었다. 기댈 곳이 있지만 기대고 싶지 않다는 분노와 원한의 상대가 있는 앞의 부류의 청년노숙인들이 견디기 힘들어 집을 뛰쳐나와 노숙이라는 극단적 고통 속에서도 오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없는 청년 노숙인들은 홀홀 단신의 삶에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듯 했다. 적어도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거리는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관계가 불러일으키는 기대 부응의 욕구도, 끊어진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오기도 발동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맞고 있는 이들이 노숙생활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다만 몇 몇의 사례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마지막 가족들을 기념하고 기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참여자: (자살하려는 마음을) 네. 항상. 항상 갖고 있죠. 항상. 근데. 그걸 안하게 된 이유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할아버지께서도 할머니께서도 항상 그러셨어요. 그 성격말씀에 그러더라구요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네. 그래서 절대로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남을 함부로 해치치 마라. 남의 목숨을 뺏지는 말고 너의 목숨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다 주님의 것이다. 막 그런... 그런 얘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딱지가 질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아 이걸 아니구나. 항상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일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해 주신 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 해 주신 걸 되뇌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안 갔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n11)

참여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명절 되면 진짜 힘들어요. 실 틈이 없어요. 허리를 못 펴요. 그 때는 일부러 명절 날 댄 일부러 가기를 가요.

연구자: 돈이 되니까.

참여자: 네. 그럼 그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모소)한테 가요. 인사드리러. 저 이만큼 벌었어요. 하면서 얘기도 하고 혼자서 그렇게 해요 일부로. 그러면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보람도 되고(n11)

〈표 6-4〉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가족관계

사례 번호	노숙 기간	가족관계		사례 번호	노숙 기간	가족관계	
		가족 유무	연락 유무			가족 유무	연락 유무
A1그룹				A2그룹			
7	10년	○	○	4	7개월	○	○
12	2년	○	○	15	6개월	○	○
19	5개월	○	×	16	8개월	○	○
22	3년	○	×	20	5년	○	○
38	9년	○	×	29	11년	○	×
n1	1년	○	×	40	3년	×	×
n4	4년	×	×	42	1년	○	○
n6	1개월	○	○	62	6년	○	○
n7	4년	○	×	n2	10년	×	×
n10	2년	○	○	n3	3년	○	○
n11	11년	×	×	n5	5년	×	×
n12	1개월	○	○	n8	8년	○	○
n13	20일	○	×	n9	12년	○	×
n18	9년	×	×	n14	3년	○	×
				n15	5년	○	×
				n16	1년	○	×
				n17	10년	○	×
				n19	11년	○	×
				n20	10년	○	○
				n21	4년	○	○

사례n11의 경우, 자신이 태어나던 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친부모를 단 한 번

도 본 적이 없었다. 연로하신 조부모님 밑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랐고 제대를 앞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그 이후 7년간 거리노숙을 4년간 쉼터 생활을 한 사례였다. 할머니의 간청으로 자신을 아버지 밑에 올려두어 간신히 아버지의 존재를 서류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노숙 중 아버지를 찾기자 시도하였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이 참여자에게 가족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쓸데없는 보호자일 뿐이다.

참여자: 아마 3년 전일 거예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봤어요. ... (그걸 보고)이제 아버지를 한번 보러가야겠다 해서 마음이 한번 들어서 갔어요. 근데 저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본적도 없고. 그래서 주변 동네. 이웃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탐문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미 다른 분이랑 가정을 꾸리고 계시더라고요.

연구자: 그래서 안 만나고 왔어요?

참여자: 네. 제가 끼어들면 왠지 더 힘들어 질 것 같아서. 더 꼬이고 더 힘들어 질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죠. ... 그때까지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잘 안했고. 별로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싫었으니까 버렸겠지 그냥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막연했죠.

연구자: 약간 좀 원망 같은 게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죠?

참여자: 원망도 있었고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왜냐면 가족이라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한 울타리라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한 울타리 공간에 다 같이 부둥켜안고 살고 서로 돕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가족인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언제나 혼자였고. 그러면 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보호자? 미성년자 때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제는 뭐 성인이라 솔직히 필요 없는 보호자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필요 없는 보호자죠. (n11)

2. 노숙동료 간 관계

가족 이외에도 청년노숙인들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동료 노숙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된다. 고립된 채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숙인들도 있었지만 쉼터 생활을 통해 만난 또래들과 함께 다니거나 둘 혹은 셋이 함께 돈을 보태 방을 얻어 쉼터를 나가 보기도 하는 등 직접적인 관계들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노숙 동료들 간의 관계는 매우 피상적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방값을 나누는 일상적인 생활들을 공유하지만 자신들의 속내를 털어놓고 과거를 들추는 이야기들을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주로 함께 짝을 이루어 노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도 상대가 어떻게 노숙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울리는 사람들은 말 동무이지만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는 아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소액의 금전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종종 돈을 갚지 않아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는 것은 노숙 세계에서 불문율이라고 했다.

조사자: 같이 노숙하시는 분들끼리 어울리면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참여자: 도움될 건 없죠, 기냥. 오로지 말동무죠. 그냥 술 마시고 말동무 하려고 하는 거지 도움 받고 그러려고 만나는 분들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도움 받고.
 조사자: 어려운 처지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는다면?
 참여자: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42)

참여자: 한방에 살지만 서로 뭐라 해야 되나. 감출 거는 감추고 밑바닥 생활을 했지만 감출 거는 자기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줄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속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되도록 안 물어보고 안 가르쳐주고. 생활하다가 생활만 주고받고 밥 먹고, 술 한 잔 먹고 내일 다시 일 가고. 일상생활 하는 거뿐이지 서로 깊은 속마음까지는 서로 간섭을 안 하니깐.(62)

참여자: 그리고 노숙자들은 서로 그걸 안 물어봐요. 불문율이에요. 이 사람 나이, 이 사람 이름, 그럼 왜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됐는가? 이 사람 노숙자 되기 전에 했던 일은 뭔가? 고향이 어딘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12)

3. 그 이외의 사회적 관계: 고립과 외로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가족과 노숙체계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끊어져 있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상당히 피상적이었다. 이 두 체계 바깥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주로 일 자리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 자신을 원조해 주는 몇 몇의 지인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연락처를 없애거나 스스로를 감추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상에서 자신의 프로필에조차 점 하나만 찍어 두는 청년노숙인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가 여의치 않을수록 관계의 단절도 더 깊어진다.

연구자: 지금 자주 전화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참여자: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을 자주 바꿔요. 번호를 자주 바꿔요.
 연구자: 왜 그래요? 연락을 받기가 싫어요?
 참여자: 연락 받아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거의 없어요. 연락 하는 사람.(n4)

조사자: 외롭거나 하실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시거나.
 참여자: 그냥 술 마십니다. ... 친구한테 전화할까 말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꼴을 보고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하죠. 특히 그럴 때는 더 안 하죠(42)

청년노숙인들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은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으로도 전이된다. 노숙을 하고 있는 자신이 일반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외계인’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더욱 크고 사회로 들어가야 하지만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바깥으로의 발걸음을 떼기가 두려워진다.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한 노숙세계의 이야기 말고 일반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의 방법 자체를 잊어먹게 된다. 사회로부터의 고립감과 인생의 실패자라는 자괴감은 커지게 된다. 의욕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외로움이 장시간 이어지고 극에 달하게 되면 이제는 외로움의 감정조차 무감각해진다.

참여자: 4년 이상 해버리면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농담도 잘 안 해요. 농담도 잘 안하고 서로 말도 잘 안 해요. 진짜. 6명이 모여 있어도……. 6명이 모여서 한 5시간 같이 있잖아요? 대화하는 시간 한 30분도 안돼요. 진짜 대화를 안 해요.(12)

참여자: 노숙하는 사람들의 제일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노숙인) 표 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냥 사람이 딱 피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노숙자들도 사람을 피하게 되요 같이. 이 사람도 피하지만 노숙자들도 피해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생의 실패자’. ‘나는 인생의 실패자’. 그러니까 ‘나는 제일 밑바닥이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 노숙자들은 다. 그리고 일단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면 완전 이 사람하고 다르잖아. 쉽게. 무슨 자신이 외계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지구인, 나는 외계인이지. 그러니까 외계인하고 지구인하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4)

연구자: 굉장히 외로우셨겠네요. 외롭다는 느낌은 있어요?

참여자: 없어요. 내가 외로운 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못 느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요. 감각이 없다고. 하도 이게 만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외로운 건지 심심한 건지 쓸쓸한 건지 고독한 건지.(n19)

제4절 소결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생활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일, 복지서비스이용, 사회적 관계는 분절하여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청년기 노숙진입 그룹과 청소년기 노숙 경험 그룹의 노숙 이후의 생활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많은 청년노숙인들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의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컴퓨터에 더 의존하게 되는 청년들의 행동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상당부분 기존의 선행연구와 이론에서의 지적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주요 주제로 선정한 청년노숙인의 주거, 일,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

는 각각이 별도의 주제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은 실제 경험 속에서 서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매우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었다. 우선 마땅히 머물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청년노숙인들이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선호하는 숙식 제공 일자리가 일과 주거의 연동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점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숙식제공 일자리는 일과 주거 둘을 동시에 획득하거나 둘을 동시에 잃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둘을 모두 잃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시점은 곧 복지서비스 체계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인 쉼터에서 찾을 수 있다. 쉼터는 복지서비스 체계이지만 그곳은 거주하는 장소이고, 동시에 자활과 같은 일이 매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쉼터에서 더 잘 적응하며 지내면 자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자활을 하게 되면 쉼터에서의 생활이 더 편해진다. 쉼터이용 일수에 제한이 없어지고 사물함이 주어지는 등이 그 이유이다. 서비스체계에 편입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력이 향상되고 수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듯 복지서비스와 거주, 일은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들에게 쉼터는 설사 그 관계가 피상적이라 할지라도 외톨이로 고립되어 있던 자신이 물리적으로나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관계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지서비스 기관은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쉼터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표출하는 분노는 이해할만 하다.

한편 이들의 일과 거주지의 연동은 쉼터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포착된다. 청년들이 쉼터에 머무르다 비용을 지불하는 다른 거주 장소를 선택할 때 이러한 패턴이 확인된다. 청년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찜질방, 사우나, 일비 여인숙 등 ‘일비(하루치 이용요금)’로 숙박을 이용할 때 이들은 대부분 하루 노동으로 대가를 받는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한 달’ 단위의 월급을 받는 일터에서 일하는 경우가 되어야 이들 역시 ‘월세’ 단위의 고시원이나 쪽방으로 진입하였다. 물론 노숙 진입 전 가지고 나온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혹은 쉼터에서 머물면서 돈을 모아두었을 때 선택하는 장소도 월세를 내는 고시원인 경우가 많았지만 노숙의 진행과정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거주지로 이동할 때 이러한 패턴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용직-일비숙소, 월급제-무보증월세’의 공식은 주거와 관련한 여유자본이 거의 없는 노숙인들에게는 어찌면 당연한 선택이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에 따른 거주지 선택의 패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것은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한 선제조건임을 말해준다. 불확실성이 큰 일용직의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 매달 돌아오는 월세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동시

에 월급을 받는 평범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일비숙소와 같은 곳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일비숙소가 월세 거주지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생활비가 소요될 수 있고, 일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적인 거주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A1그룹과 A2그룹의 노숙 이후의 생활, 즉, 주거, 일,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적관계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청년노숙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들(Chamberlain and Johnson, 2011; Johnson, 2006; Mackenzie and Chamberlain, 2003)은 사회적응이론의 적용이 노숙의 경로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거위기가 가족해체로 인해 노숙에 진입한 사람들보다 청소년노숙 경로의 경우 그들의 노숙은 더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노숙의 기간도 더 길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노숙 생활에서 A2그룹은 A1그룹보다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가 많고, 더 오래 노숙을 하며, 노숙생활과 문화에 더 동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주거 측면에서는 거리노숙의 경험이 더 많거나, 노숙인시설의 이용에 더 활발하고, 무료급식 등 노숙인서비스를 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일을 덜 하고, 알코올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노숙이후의 사회적 관계에서 더 많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A2그룹의 노숙기간은 A1그룹에 비해 더 길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숙 탈출까지를 포함한 노숙의 전 과정을 확인하였을 때의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A2그룹의 노숙기간이 길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양 그룹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노숙 이후의 만성화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주제를 포착하지 않은 데 기인할 것이다. 가령 알코올 의존도가 양 그룹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노숙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부적응의 상태는 어떻게 다른지, 탈노숙의 노력과 시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거리노숙의 경험, 복지서비스의 이용 정도, 무료급식의 이용, 근로의 참여, 상향주거이동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거리노숙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양 쪽 그룹에서 한 명씩 밖에 없었다. 거주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향주거이동은 오히려 A2그룹에서 더 시도되었다. A2그룹이 A1그룹에 비해 더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 그룹간의 유사성은 쉼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청년노숙인들은 노숙의 만성화 과정에서 거리노숙에 더 많이 오래 노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에서 쉼터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리고 쉼터의 규율이 쉼터에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지 않다. 사실상 고생을 하며 거리에서의 생활을 고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쉼터생활이 더 길어질 경우, 쉼터의 최소한의 규율을 준수해

야 하는 이유로 알코올 문제는 자연히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술을 먹지 않아야 쉼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세 번째인 많은 청년노숙인들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의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우선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노숙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한다고 보았다(Garrett et al., 2008; Ryan and Thompson, 2013; Thompson et al., 2006). 그 이유는 서비스기관의 통제와 낙인, 불합리하고 달성하기 힘든 규칙의 준수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한다고 했다. 또한 쉼터 바깥의 또래그룹의 결속력이 마치 가족과 같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청년들은 노숙세계 바깥의 사회적 관계, 혹은 쉼터 바깥의 동료 노숙인과의 연결고리가 강하지 못했다. 몇 몇의 사례에서 거리노숙을 하는 노숙인들의 경우 강한 노숙 동료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례도 포착되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서비스 바깥에서의 유인은 별로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와 우리나라와 다른 쉼터 서비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즉, 서구의 경우 쉼터는 우리의 경우보다 더 강도 높은 사례관리와 상담 등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이나 약물사용, 자유로운 생활, 근로의 의무 등에서 더 강도 높은 통제를 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시보호시설은 사실상 그러한 개입이나 통제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청년들이 근로의 의무, 저축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자활쉼터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결핵 등의 전염병 관리, 금주, 월 이용제한 등의 최소한의 규칙 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위험한 거리를 벗어나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별로 없다. 청년노숙인들이 혹시 장년노숙인들 중심의 쉼터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노숙인들은 서로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물론 방을 같이 공유하는 자활쉼터는 다소 이야기가 다르지만 일시보호시설에서라면 더욱 그랬다. 서로 말을 해서 분란을 만들거나 섞이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같은 노숙인 시설 이용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이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동생도 일하고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서 방을 알아보러 갔어요. 어차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센터 생활을 되도록 빨리 정리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활이 가니까 편해지니까 마음이 안정된 면이 있잖아요, 거리보다는. 계속 물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식권표 밥을 먹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 하고 그걸 받으려고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못하고 다른 일을 못하고 계속 쫓기는 거예요. 피곤해도 일이 없을 땐 나가봐야 되는데 막말로 그러잖아요, 여기 식권 받으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끼 식사도 보통 오, 육천 원이잖아요. 만화방이라든지 휴게방 같은데 하루저녁 4-5천 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밥 먹으면, 식권 받으면 만 원씩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

닌 것 같아도... 거리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생활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 정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씻는 것도 해결이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도 어느 순간에 몸에 배버리게 되기 때문에... (4)

참여자: 저도 이제 11년차 됐는데... 이런 생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두 달, 한 달 됐대요. “아저씨 저는 11년찬데.” 처음에 발을 들여 놔다가 금방 빠져나가야 한다고, 좀 있으면 그냥 눌러앉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저씨들한테...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이 이런 우리 형제(동료 노숙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더러우요. 완전 거미줄인가... 빠져 나갈래야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생활 뭐 번듯한 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다니면서 돈 떨어지면 또 찾게 되는 데가 이런 데이고 그런 거 같아요.

조사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일단은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러면 막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셨나요? 그 초기, 일 년 되기 전에는?

참여자: 예, 그렇죠. 회사 구했잖아요. 회사 구하면 '아이씨 뭐 가서 밥 얻어먹지 말아야지 뭐 여기서 이제 오래 있어야겠다.' 그렇게 되죠. 근데 뭐 다 또 회사 그만두고 돈 떨어지면 오게 되고. 이런 데를 애초에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고, 아예 이런 데가 없어야지 재워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그래야만 신체 건강한 사람들 나와서 일 해 갖고 진짜 세금내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도...(29)

한편 이러한 청년노숙인의 쉼터 잔류는 Mayock 외(2011b)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Mayock과 동료들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2년간 40명의 14-22세 청년들을 추적하여 두 번에 걸쳐 인터뷰를 수행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1년 사이의 탈노숙 경로를 확인하고자 했다. 경로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자신이 주택시장에서 방을 구하거나 하는 등의 독립적 탈출(independent exits), 두 번째는 중간단계의 주거지, 즉 이전주택(transitional housing, supported housing)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state care setting)로 이동하는 의존 탈출(dependent exits), 세 번째는 노숙 잔류(continued Homelessness)였다. 노숙 잔류에 가장 많은 수의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이 해당되었다. 이들은 여러 쉼터(hostel)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노숙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우리 연구 참여자들의 경로와 비교해 보면 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쉼터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는 가족과의 연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어도 깊은 가족갈등이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등의 탈출은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력으로 방을 구하는 문제도 앞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실패로 이어지곤 했다. 즉 독립적 탈출의 경로가 막혀 있는 것이다. 둘째, 보호가 연계된 중간단계의 주거지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의존 독립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의존 탈출 경로도 막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선택지

는 여러 일시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노숙 잔류밖에 없게 된다. 더블린의 연구에서 노숙 잔류자들은 노동시장과 가족과의 연계가 매우 약했다. 또한 이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문제 등을 겪는 사람들이었다. 노숙 잔류의 과정 중에 노숙의 문화나 삶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 우리의 경우, 다른 대안의 부재가 노숙 잔류를 가속화시키며 노숙의 만성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쉼터에 더 의존하게 되는 청년들의 행동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극히 제약된 선택지 중 어디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대한 선택이다. 그런 선택의 결론이 쉼터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최적의 선택인지도 모른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삶의 전형적 스토리를 간략하게 재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쉼터 생활은 합리적이고도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거리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 일을 무작정 걸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 건물의 계단에 앉아 쪼그리고 눈을 붙였다. 극단적인 빈곤상황과 심리적 공황상태를 겪으면서 PC방, 찜질방, 여인숙, 지하철 역으로 찾아 들어가 겨우 살아남았다. 당장 급한 돈이라도 벌어야 하니 일당 주는 일거리를 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참기 힘든 배고픔 때문에 어디든 무료로 음식을 준다고 하면 모든 신경이 그리로 쏠린다. 그 때만 기다린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갈지, 중간에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만 생각할 뿐이다. 좀 더 나은 곳으로의 탈출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과 실패에 대한 좌절감, 무기력 등으로 의욕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된 노숙인 쉼터가 없었더라면 벌써 사단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이다. 다행이었다. 그런데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면 언제든 언제까지나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라도 이곳은 거주공간이 아닌 건 확실했다. 사생활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 남은 개인 물건의 도난도 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언제까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죽이며 있으려는 거지? 쉼터에서 영원히 쉬게 되는 거 아니야?’ 쉼터에서 오히려 비참함과 무기력은 더욱 밀려온다. 그런데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더 답답하다. 똑같은 하루가 수도 없이 지나간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허기짐에 무료급식 시간만 바라보고 오늘을 보낸다. 여길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뭔가 될 거 같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완벽한 탈출을 감행하지 못하는 이상 함부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쉼터를 찾게 되는 비참한 결정을 또 다시 하는 나, 또 실패한 나를 다시 맞닥뜨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이다. 완벽한 탈출이라 함은 빛을 모두 청산하는 것 그리고 주거를 유지할 만큼의 월급을 한 두 달이 아닌 장기적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단절되어 버린 낮은 학력으로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많았던 실

패의 경험이 대답을 대신한다. 그리고 지금의 몸과 정신의 상태로는 설령 일이 주어진다 해도 감당해 낼 자신이 없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심터를 떠나서 완벽히 혼자가 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얼마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써도 되는 돈들을 밖에 나가 살면서 써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 심터에 잔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인다. 심터에 있으면 적어도 얼마간이라도 자활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 내 돈 내고 밥을 안 사먹으니 돈도 아낄 수 있다. 혹시나 모를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화려하고 좋아만 보이는 바깥 세상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를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혼자이긴 하지만 무리 속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7장 청년노숙인과 중장년노숙인의 비교

본 장에서는 청년노숙인은 기존의 노숙인 복지와 연구에서 다루어지던 중장년노숙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그리고 청년기에 노숙을 시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첫째, 청년노숙 경험이 있는 중장년그룹인 B2, B3그룹과 청년노숙의 경험이 없는 중장년그룹인 B1그룹 비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는 우선 청년기 노숙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노숙 전 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 이후의 생활에서 청년기 노숙의 여부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절단되었던 청년노숙인 그룹의 이후 노숙 생활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둘째, 현재 청년노숙인(A1)과 과거의 청년노숙인(B2)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차이가 동일한 청년기 노숙을 경험했지만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점의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기대, 압박, 조건의 악화와 그로 인한 청년들의 독립 이행의 악화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장년노숙인의 그룹의 인구학적 특성, 노숙 진입 경로, 독립이행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청년노숙인 그룹과의 비교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장년노숙인의 특성

1. 중장년노숙인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과 위험요인

「노숙인 생애사자료」에서 분석에 사용한 40세 이상의 중장년노숙인 수는 모두 38명이다. 이 중 생애사자료의 검토를 통해 노숙진입 시기가 20-30대인 경우를 구분하여 중장년노숙인 중 청년기 노숙경험이 없는 그룹을 B1, 20-30대 청년기부터 노숙을 한 경험이 있는 그룹을 B2로 설정하였다. B1그룹은 총 24명, B2그룹은 총 14명이었다. 그런데 중장년노숙인들 가운데 10대 가출 경험이 있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B1그룹에서 2명, B2그룹에서 8명이었다. B2그룹, 즉 청년기부터 노숙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사례군에서는 청소년기노숙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구분하여 이 8명을 B3그룹으로 정하였다. 이에 각 그룹 내 사례수는 B1그룹 24명, B2그룹 6명, B3그룹 8명이다. 사례수가 많은 관계로 B1그룹의 경우 24명의 사례 중 일련번

호 짝수 번의 사례만을 추출하였고, 10대 가출 경험자 2명도 제외하여 총 10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B2, B3그룹의 경우는 사례수가 소수였기 때문에 해당 사례 모두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사례수는 B1그룹 10명, B2그룹 6명, B3그룹 8명이었다.

1) 중장년노숙인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

〈표 7-1〉에 정리한 각 중장년노숙 그룹의 인구학적 특성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을 보았을 때, B1그룹의 평균연령은 51세로, B2, B3그룹의 44.2, 44.8세에 비해 높았다. 노숙 진입연령 역시 B1그룹의 경우는 평균 47.6세로 B2의 노숙 진입시점인 33.8세, B3의 진입시점인 32세보다 높았다. B1그룹이 B2, B3그룹보다 연령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B1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늦은 시기인 47세를 전후해 노숙에 진입하였고 B2, B3그룹은 30대 초중반에 노숙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조사 시점의 연령 차이와 노숙 진입시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각 그룹의 노숙 기간이다. B1그룹의 평균 노숙기간은 3.5년 정도인 반면, B2그룹의 평균 노숙기간은 10.6년, B3그룹은 13.2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숙기간의 차이는 B1그룹에 비해 B2그룹은 3배, B3그룹은 4배 이상이나 길었다. 이른 시기, 즉 청소년기,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할수록 노숙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력, 군복무에서도 B1그룹과 B2, B3그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B1그룹은 대학 경험자가 10명 중 5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고졸자는 3명이며 고졸 미만은 2명이다. 반면 B2그룹은 대학 경험자가 6명 중 2명에 그쳤고, 고졸자가 3명이며 고졸 미만이 1명이었다. B3그룹은 특히 학력이 매우 낮았는데 대학을 다녀본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졸자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명은 중학교 중퇴와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군복무에서도 B1그룹은 면제자가 10명중 2명에 불과했는데, B2, B3그룹에서는 반대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14명 중 3명에 그쳤다. 학력과 군복무 여부를 두고 보면 확연히 B1그룹보다는 B2그룹이, B2보다는 B3그룹이 더 나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B1그룹과 B2, B3그룹 간의 격차 역시 비교적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장년 남성들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B3그룹에서 결혼 경험이 없는 사례가 다소 많았지만, B1그룹과 B2그룹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그룹에서는 이혼과 별거 경험이 많다는 특징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B1과 B2의 기혼자들(동거포함) 10명 중 8명이 이혼을 경험하였고 나머지의 사례들은 별거 중이었다.

<표 7-1> 중장년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 B1, B2, B3그룹

일련 번호	사례 번호	연령	학력	군복무	결혼 여부	노숙진입연령	
B1 그룹 (40대 이후에 노숙에 진입한 중장년노숙인)							
1	2	51	전문대 중퇴	O(하사관 4년6개월)	이혼, 동거	50	
2	8	50	고졸	O(공익)	미혼	48	
3	13	49	고졸	O(공익)	이혼	40	
4	21	48	대졸	O(부사관 8년)	별거	48	
5	28	46	중 중퇴	O(방위)	미혼	44	
6	33	49	대 중퇴	O(방위)	이혼	47	
7	47	59	전문대 졸	확인불가	별거	54	
8	54	47	고졸	O(보충역, 3개월)	미혼	44	
9	58	57	대 중퇴	O(현역)	이혼	49	
10	61	54	중졸	O(현역)	미혼	52	
평균연령: 51세, 노숙진입 평균연령: 47.6세, 평균노숙기간: 3.5년							
B2그룹 (20-30대 청년노숙을 경험한 중장년노숙인)							
1	10	48	대졸	X(신검탈락)	미혼	37	
2	25	42	고졸	X(신검탈락)	동거	39	
3	35	46	중졸	X(부모부재)	이혼	25	
4	43	47	전문대 졸	O(현역)	이혼	37	
5	49	44	고졸	O(현역)	이혼	29	
6	50	40	고졸	X(부모부재)	미혼	36	
평균연령: 44.5세, 평균노숙진입연령: 33.8세, 평균노숙기간: 10.6년							
B3그룹 (10대 청소년노숙, 20-30대 청년노숙을 경험한 중장년노숙인)							
1	5	46	초졸	X(학력미달)	별거	12	37
2	14	41	중 중퇴	X(소년원)	미혼	15(추정)	35
3	26	44	중 중퇴	X(학력미달)	미혼	14	37
4	30	44	고졸	X(이유불명확)	이혼	15	39
5	48	52	초 중퇴	X(학력미달)	미혼	14(추정)	32
6	51	54	고졸	X(이유불명확)	동거	17	36
7	55	40	고졸	O(현역)	미혼	16	26
8	60	41	중 중퇴	X(소년원)	미혼	14	14
평균연령: 45.2세, 평균(청년기)노숙진입연령: 32세, 평균노숙기간: 13.2년							

주: B3그룹의 노숙진입연령은 좌측 열은 10대 때 노숙진입 연령을 말하며, 우측 열은 청년기에 노숙에 재진입한 시기의 연령을 말함. 사례60은 10대 이후 지속적으로 노숙을 하였음.

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분석

중장년노숙인의 위험요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장년노숙인의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표 7-2>과 <표 7-3>에 정리하였다.

우선 중장년 노숙인의 구조 요인은 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본인의 사업실패 등이 주요 내용으로 추출되었다. 우선 원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은 B1그룹의 경우 10명 중 4명이었고, B2, B3그룹에서도 합쳐서 5명이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개인의 사업 실패와 관한 경험이었는데 이 위험요인은 특히 B1그룹의 경우에서 두드러졌다. B1그룹의 10명 중 총 4명이 개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부도가 나 사업장 문을 닫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이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에 실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IMF로 사업이 망한 경우, 주로 몸담고 있던 양복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들이었다. 사업을 시작한 참여자들은 주로 한 직종에서 수 년간 종사하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 보고자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본을 투입하고 빚을 내기도 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부도를 맞았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장년 남성들이 퇴직의 문제가 닥치거나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척이나 동업자 등 믿었던 사람들이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면서 실패를 피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모든 것을 투입해 시작한 개인 사업이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후폭풍은 단숨에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남았다. 대표적으로 사례21의 경우, 13년 근무했던 특히 관련 계약직 공무원 자리를 나와 명동에 호프집을 열었지만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후술하겠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그대로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B2그룹, B3그룹에서 개인 사업부도의 경험을 가진 사례는 각각 한 사례씩이었다.

교도소 재소 경험, 정신병원, 보육원 생활 경험 등 시설 생활의 경험을 말하는 제도 요인의 경우, B1그룹에서는 분석대상 참여자들 중 시설 경험을 가진 사람은 사례33의 폭력으로 인한 10개월 전과 이외에는 없었다. 반면 B2그룹에서는 부모의 이혼 이후 보육원에서 자란 사례가 1명(사례50)이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 교도소에 갔던 사례가 1명(사례49) 있었다. 한편 B3그룹에서는 모두 3명이 청소년기에 소년원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두 사례는 성인기에 다시 교도소에 갔었다. 이들 중 사례5와 사례14는 이미 10대 초반에 생활고로 식구들이 친척집으로 흩어져 살았거나, 당숙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던 경험 등 이미 주거의 불안정을 경험한 사례들이었고 이후 청소년기에 비행 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사례였다.

청년노숙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대로 시설 생활은 그 이후의 주거불안정성을 높이고, 자립을 방해한다는 면에서 노숙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는데 중장년노숙인들의 사례에

서도 이러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누명을 쓰고 7년 복역을 했던 사례49의 경우는 출소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청소년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 폭력 등을 일삼다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사례5는 소년원에서 1년을 지낸 후 출소한 다음에도 건달생활을 지속했고 26세까지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생활하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시점이 노숙 시작 시점이 되었다. 사례14 역시 소년원 수감 경험 이후 약 20여 년 동안 무려 전과 17범의 기록을 남겼다.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난 이후, 어김없이 그가 찾게 된 곳은 노숙인 자활시설이었다. 이 두 사례는 장기간 소년원과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노숙인 시설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한편 보육원 생활을 했던 사례50의 경우는 보육원 퇴소 시 원장의 주선으로 철수세미 공장에서 15년간을 일하면서 주거나 일의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의 사장 가족은 마치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주어 오랜 시간 생활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장이 금전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자신이 15년간 맡겨둔 월급도 한 푼 돌려받지 못했고, 서류상의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던 것이 빌미가 되어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을 뿐이었다. 이 사례는 보육원 생활 이후, 공장 생활이 주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었지만, 일하던 공장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노숙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요인을 살펴보겠다. 가족 요인 역시 원가족의 가족요인과 당사자가 새로 구성된 가족요인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다. 중장년그룹의 노숙 위험요인에 있어 가족의 문제는 중장년노숙인 세 그룹의 사례들에서 모두 빈번하게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에 있어서는 각 그룹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원가족의 문제에서 B1그룹과 나머지 두 그룹간의 차이가 보였다. B1그룹의 원가족의 문제는 재산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 부의 도박과 자살, 부의 학교 혐오, 아버지의 사망, 부모의 가출 등이 포착되었는데 사례2, 사례28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심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 B1의 그룹의 경우, 이들의 원가족 문제는 대개는 그다지 이들의 삶에 엄청난 부담과 불행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례28의 경우처럼 가정불화로 부모님이 별거하고 막내누나가 그를 돌보았던 상황에서 청소년기에 일탈이 결국 퇴학을 불러와 참여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가족해체와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숙과 연결되거나 혹은 참여자의 삶이 노숙으로 기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원가족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이 있었지만 극복할 만한 수준이었고 실제로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있어 정서적인 부분에서나 지원에서 실질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의 자살과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했던

사례2의 경우는 성장기가 아닌 성인기 이후 원가족의 문제들을 경험하였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사례8 역시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봄과 지원으로 그들을 느끼지 못하였다. 사례58 역시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으로 가정불화를 경험하였지만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는 누구보다 열의가 있는 분이셨다. 사례54의 경우에도 공부를 잘했던 삼촌이 일본에 헌병으로 끌려가 죽은 기억 때문에 자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을 극구 꺼려하였지만 결국 자신은 형과 살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표 7-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B1그룹

일련번호	사례번호	구조요인	제도요인	가족요인		개인요인		
		경제적 빈곤 주거불안정	시설생활 경험	가족해체 갈등 등	피해경험	청소년기 비행	성인기 비행	건강 문제
1	2	-	-	재산문제로 형제들간 불화, 부의 노름, 외도, 자살/치의 잦은 유산, 이부증, 이혼	-	-	-	손가락 장애
2	8	-	-	부의 사망(중학교 때)	-	-	-	-
3	13	-	-	이혼	-	-	자살시도 음주문제	어린 시절화상
4	21	퇴직 사업부도	-	별거	-	-	-	-
5	28	IMF 이후 구직 어려움	-	가정불화 부모의 가출	-	폭력 자퇴	경마, 싸움 음주문제	-
6	33	사업부도	교도소	치의 우울증, 이혼	의붓어머니의 차별	-	자살시도 폭력	허리통증, 우울증, 간경화 시각장애6급
7	47	-	-	치의 우울증	-	-	-	-
8	54	경제적 어려움	-	부의 학교혐오	-	-	알코올중독	-
9	58	경제적 어려움 IMF로 사업부도	-	가정불화 치의 외도, 가출, 이혼	-	-	음주문제	-
10	61	경제적 어려움, 양복업 사양화	-	-	-	-	-	-

〈표 7-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위험요인: B2그룹, B3그룹

일련번호	사례번호	구조요인	제도요인	가족요인		개인요인		
		경제적 빈곤 주거불안정	시설생활 경험	가족해체 갈등 등	피해 경험	청소년 기비행	성인기 비행	건강문제
B2그룹								
1	10	-	-	-	-	-	-	체격기형 관음증 알코올중독
2	25	임금체불	-	동거녀의 카드와 사채빚 모의 자살	-	-	음주문제 방탕생활 자살시도	고혈압, 간이 나쁨, 환청과 환시, 알콜중독
3	35	기초수급	-	부모의 부재, 조 부모양육, 이혼	-	-	-	-
4	43	IMF이후 사업부도	-	이혼	-	-	경마, 경륜	-
5	49	-	교도소	부모의 이혼	-	-	-	-
6	50	-	보육원	부모의 이혼	-	-	-	-
B3그룹								
1	5	식구들이 친척집으로 흩어짐 생활고	소년원 교도소	부의 음주 가정폭력 치와 아이들 집을 나감	-	본드 폭력	건달생활 방탕생활 음주문제	-
2	14	당숙의 집에서 더부살이	소년원 교도소	부모의 장애, 부의 사망	당숙의 구 타, 구박	음주 절도	자해	고혈압
3	26	-	-	모의 자살, 혼욕 부재	-	무단결석 가출	도박 음주문제	-
4	30	사업부도	-	이혼	-	비행 가출	경마	-
5	48	경제적 어려움	-	-	-	넝마주이 가출, 떠돌이	-	몸이 약함
6	51	-	-	부의 외도, 부모 양육의 부재/이혼, 재혼	-	가출 음주	자살시도 유혹, 카드빚	-
7	55	경제적 어려움	-	친모가 출산 시 사망, 계모와 갈등	차별	자살시도 가출, 비행	음주문제	-
8	60	경제적 어려움	소년원	부모의 가출 부모의 무관심	-	잘도 가출	-	-

그러나 B2, B3그룹의 경우는 가족 요인의 내용이 좀 더 심각했다. 이들의 원가족 문제는 부모의 자살과 알코올중독, 가정폭력과 불화, 아버지의 도박, 가출, 형제들 간의 불화, 부모의 가출, 장애, 부모의 부재 등 자녀였던 참여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가족문제에 의해 청소년기의 비행과 일탈이 시작될 수 있었으리라 연결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여러 사례에서 포착되었다. 사례35의 경우는 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 모른 채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는 다시 출가를 했고 자신

은 조부모 슬하에서 기초수급을 받으며 어렵게 자랐다. 제대로 된 양육과 훈육의 부재 속에 “간섭을 받지 않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규율 없는 생활을 하며 결국 중졸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친구들과 어울리며 낮은 질의 일자리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 맡겨져 자란 사례 50의 경우에서도 가족 문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3그룹의 경우, 8명의 사례 중 절반정도가 가족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훈육의 부재, 적절한 돌봄과 양육의 부재, 부모의 가출과 무관심 등이 청소년기의 가출과 학업단절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의 음주와 가정폭력이 청소년기의 비행과 방황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것이 소년원 행으로 이어졌던 사례5, 유사하게 부모의 장애와 부의 사망으로 인해 당숙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구타와 모멸감, 구박이 청소년기의 비행을 불러왔던 사례14의 예가 그러했다. 또한 사례26의 경우 어린 시절 남의 물건을 훔쳐 와도 부모님은 다른 집들처럼 자신을 혼내는 게 아니라 변상해주는 것으로 끝을 내기가 일쑤였는데, 사례자는 부모님의 이러한 훈육의 부재가 자신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특히 B1그룹의 중장년노숙인들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했던 가족요인은 원가족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가족 문제였다. 특히 처와의 갈등, 해외근무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데 따른 처의 우울증,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긴 갈등의 결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가족관계 파탄의 후폭풍은 중년 남성들에게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다. 특히 이혼과 별거는 중장년노숙인에게 삶의 이유를 뺏어갈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중장년 남성노숙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주거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요인이 되었다. 특히 이혼의 경우, 심지어 외도 등 원인제공자가 처인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살던 집과 남은 돈을 내 주고 자신이 집을 나오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한 이혼, 도박이나 음주, 실직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과 양육권 모두를 넘겨준 후 ‘빈털털이’로 여인숙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사례33의 경우 사업실패 및 이혼을 지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간경화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가족 요인 중 피해 경험에서는 B2, B3그룹에서도 직접적인 폭력과 학대 등의 피해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요인인 개인요인을 확인해 보면 중장년노숙인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 요인의 경우는 B1그룹보다 B2그룹에서, B2그룹보다는 B3그룹에서 다소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B1그룹에서는 사례 28의 경우 학창시절의 폭력, 자퇴의 비행이 있었고 이외의 사례에서는 청소년기 비행이 나타나지 않았다. B2그룹의 경우에도 청소년기 비행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B3그룹의 경우는 확연하게 청소년

기 비행이 눈에 띈다. 모든 사례에서 청소년기에 무단결석, 가출, 음주, 절도, 자살시도 등을 경험하였다. 한편 성인기 비행을 보면 B1그룹은 청소년기 비행에 비해 확실히 성인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폭력과 자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례28은 성인기에도 폭력, 음주, 경마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음주 문제가 가장 빈번했고, 자살시도를 한 사례도 두 사례가 있었다. 경륜이나 경마 등의 경우는 청년노숙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중장년노숙인들에게서는 간간히 눈에 띄었다. B2, B3그룹의 경우 성인기 비행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각한 음주 문제를 가진 사례가 5사례 정도 되었고, 이외에 건달생활, 폭력 등을 경험하였거나 경마, 경륜 등의 도박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행을 집어 내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적 삶의 태도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가령 B2그룹의 사례35와 같은 경우 개인적 요인의 비행 들은 없었지만 자신의 삶을 ‘어영부영’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례30, 사례60의 경우도 노숙 이전 제대로 된 일을 잡지 못하고 수차례 직종과 직장을 바꾸어 가면서 ‘이일저일’을 전전하며 살았다. 사례51도 돈을 ‘홍청망청’ 쓰기가 바빴고 카드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서울역으로 도망 왔다. 이들이 노숙 전 비교적 젊은 시절을 조금만 더 자기 인생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정성을 들여 보냈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을 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한편 개인의 건강문제는 대부분 성인기 이후 발생한 신체적 건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례는 우울증(사례33), 어릴 적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생긴 관음증(사례10)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한편 중장년노숙인들도 청년노숙인들처럼 사회적 피해 경험을 많이 했을까. <표 7-4와 <표 7-5>에 자료를 통해 분석한 중장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을 정리하였다. B1그룹의 경우, 사회 요인은 10명 중 4명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이들의 사회적 피해 경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노숙 전의 경제적 피해였다. 빚보증으로 집을 날리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잘 진행되던 사업이 화재로 하루 아침에 갯더미로 변하거나,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속아서 사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사기 도박단에게 걸려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실상 B1그룹의 경우 노숙 전 경제적 피해 경험이 이들의 노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흥미로운 점은 B1그룹의 노숙 이후의 사회적 피해 경험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B1그룹은 최소한 10-15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한 이후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 노숙 진입을 한 이들로 그간의 사회생활의 경험과 노숙 전 경험했던 사회적 피해의 경험들로 인해 오히려 노숙 이후에 사기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의 흔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7-4〉 중장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 B1그룹

사례 번호	노숙 전			노숙 이후			신용문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2	-	빛 보증으로 집을 날림	-	-	-	-	임금만 갖고 회생함.
33	대학 때 선박의 구타로 허리를 다침	보증으로 경제적 피해	-	-	-	-	병원비 80만원 통신회선비 말린 것 이외에는 없음.
47	-	화재사건으로 사업이 망함. 그린벨트 토지 구입 사기 당함.	-	-	-	-	-
61	-	사기도박단에게 피해를 당해 돈을 날림.	-	-	-	-	-

한편 B2, B3의 그룹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사회적 피해의 경험이 나타났다. 우선 B2 그룹의 노숙 전 경제적 피해 경험은 B1그룹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지만 B1그룹보다 시기적으로 더 일찍 이러한 경제적 피해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경험이 B2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노숙 전의 구타와 성추행, 따돌림, 인신매매 등이 확인되었다. 노숙 이후에도 양식장이나 배를 타러 가서 착취 수준의 일을 하다 풀려난 사람도 2명이 있었다. 경제적 피해는 임금체불이나 사기, 회사 부도, 부당해고 등으로 앞서 설명하였던 보육원에서 자란 사례50은 15년간 일했던 공장에서 자신이 회사의 빚 수 억여 원을 떠맡는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노숙 이후에도 대포통장사기, 금전사기 등을 당하였다. 이는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쉽게 타인의 말을 믿는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취약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중장년노숙인의 신용문제였는데 B1그룹의 경우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인 경우가 드물었다. B2, B3그룹의 경우도 신용불량의 문제가 있었지만 청년노숙인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에 연루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 이렇게 B1그룹과 B2, B3그룹의 사회적 피해 경험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일까. B1그룹의 경우 앞서 해석하였듯이 비교적 오랜 기간의 사회생활이 이러한 피해의 경험을 줄일 수 있는 방패가 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30대 초반 노숙에 진입한 B2, B3그룹의 경우,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경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B2, B3그룹의 경우 노숙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노숙 자체가 가지는 피해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전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노숙생활이 계속될수록 각종 사기 사건과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표 7-5> 중장년노숙인의 사회적 피해 경험(B2, B3그룹)

사례 번호	노숙 전			노숙 이후			신용문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	경제적 피해 경험	법적 피해 경험	
B2그룹							
10	동네누나들에게 집단성추행				핸드폰 명의도용 대출사기		신용불량 상태
25		갓은 임금체불					친구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
35	중학교 때 집단괴타						
43		IMF로 회사부도		노예아부생활			카드,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
49		차의 사기도주	누명쓰고 복역7년, 카드사기				카드 사기 신용불량
50		사장에게 월급 맡기고 못받음.서류상 책임자로 빚 떠안음			대포통장사기, 노숙인에게 금전 사기당함		빚 보증으로 신용불량
B3그룹							
5				동료노숙인에게 상해 입음	동료노숙인에게 사기당해 금전적 피해		
14	장애부모 때문에 놀림 당함						카드깡으로 신용불량 상태
30		사업부도					
48				미역양식장 3개월 갱생원 강제 수용	핸드폰 명의도용	잘도가짓 차백으로 수감(1년6개월)	현재 신용불량 벌금
51							카드빚으로 신용불량
55	공장 감금, 인신매매						
60		부당해고(절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전 일 경험

다음으로 중장년의 남성 노숙인들의 각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노숙 이전 어떠한 일을 해 왔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각 그룹의 노숙 진입 시점을 비교해 보면 B1그룹의 노숙 진입이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비해 노숙 이전의 일 경험을 상대적으로 길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의 내용은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7-6>, <표 7-7>에 각 그룹의 노숙 이전 일 경험을 정리하였다.

B1그룹과 B2, B3그룹의 노숙 이전의 일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B1그룹의 경우, 평균 48세의 노숙 진입 연령 이전의 직업력의 특징은 처음 사회생활에 진입할 때는 안정적인 일, 혹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곧 자신이 생업으로 삼을 일을 찾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최소 수년간 같은 직종에 종사하여 경력을 쌓아갔다는 점이다. 물론 사례8과 같이 한 직종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1년씩 한 경우, 혹은 사례28처럼 건설 일용노동자로만 지내왔던 사례처럼 예외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었다.

이들에게서는 특히 건설과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고교졸업 후 토목건설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거나(사례2), 건설업체에 입사하여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이직은 있었지만 13년 이상 건설회사 사원을 하고 외국 현장도 다녀왔다가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게 된 경우(사례33), 역시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외국에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사례47), 건설업 열관리, 대기업 건설회사 하청업체를 다니면서 역시 중동에 나가 수년을 일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사례58)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동대문 종합시장의 의류상 직원으로 10여 년간 일했던 사례54, 양복가게에서 평생을 일했던 사례61도 한 가지 직종의 일을 꾸준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군복무를 좀 더 길게 하거나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8년 한 사례들도 있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직이 한 두 차례 있었지만 경험을 활용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동일 직종에서의 장기 근속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에게 이런 안정적인 일 경험만 있었더라면 노숙이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직 등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직종의 전환 경험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13의 경우 보험회사인 금융업에서 신발과 가방 제조업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기능직 공무원을 거치는 경험을 하였다.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례47도 회사를 그만두면서 빚을 내서 제약 도매업이라는 생소한 업종에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부사관 8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례21도 특허관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입사해 13년을 보냈지만 자기 개인사

업의 꿈을 펼치려 사표를 내고 생소한 업종의 호프집을 열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택배회사나 건설 현장직에서 주로 종사했던 경험자인 사례2, 28은 나이가 들고 현장직을 오래 하면서 점차 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며 한 달 벌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사례2의 경우, 일을 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겪으면서 이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일의 전환 과정, 혹은 하던 일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경제적 타격을 입은 참여자들의 삶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1그룹에 비해 B2, B3그룹의 노숙 이전 일 경험은 훨씬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 경력이 짧았다. 이는 이들의 경우 노숙 진입 연령이 3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생활에 쏟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점은 기간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일 경험의 질과 안정성의 부분이었다. B2그룹 역시 대기업 입사 경력자, 건축회사 근무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회사에 부적응 하여 회사를 이내 그만두거나(사례10), 젊은 나이에 경험이 일천한 시기에 개인이 회사를 차리거나 동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는 경우(사례43)였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들에서는 소년원 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면서 실제적으로 노숙 이전의 일 경험이 전무 했던 사례들도 포착된다. 그 외에는 주로 건설 일용직, 고물상, 각종 공장, 음식점 주방장, 자동차 수리, 각종 배달, 소매상 등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B3그룹에서도 많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B3그룹에서 자동차 수리 등의 기술을 가지고 이 일에 14년간 종사하던 사례30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동생과 전혀 다른 직종인 가락시장 과일 도소매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던 중 도박을 시작하게 되어 이 일이 결국 노숙에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중장년노숙의 사례들 전체를 보았을 때 비교적 낮은 학력을 가진 참여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못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미혼자는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전 일의 경험이 제시된 표에서 사례번호에 별표(*)를 표시하여 구분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더 잦은 일자리 이동, 낮은 질의 일 경험자들이 미혼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례들 중 결혼을 했던 사례는 한 사례에 불과했다. B1그룹에서도 결혼을 하지 못한 5명의 사례는 중졸, 중 중퇴,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낮은 학력과 독신은 불안정한 남성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6〉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전의 일 경험: B1그룹

노숙 전의 일 경험	
2	고교재학 당시 기사자격증 2개 토목건설 현장(1년 근무). 영어 등 도면 읽는 것 때문에 실력이 달려 그만둠. 전문대 들어갔으나 집안형편과 장남의 책임, 군대제대 이후 공백 때문에 포기. 하사관(4년 6개월) 제대 이후 경로 택배회사(택배 지게차 조종면허) 용접 절단술(손가락 절단사고 나서 일을 그만둠) 춘천 현장에서 현장일(1년 6개월)
8*	군복무 후 큰형이 하던 서점을 받아 직접 운영(1년) 일용노동, 가구점직원, 출판사 영업 등 여러 일을 일 년 정도씩 함(6년) 식당보조 및 배달, 빵집, 식자재 공장, 세탁소 공장, 이삿집센터, 일용노동(10년) 김 양식 배(1년)
13	보험회사(6년) 신발공장, 타이어 공장(7년), 신발제조업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일을 잃음 기능직공무원으로 초등학교 근무(3년) 이혼 후 친구 공장노동일을 하며 공장 야전침대에서 생활
21	대학 휴학 후 부사관으로 군생활(8년) 특허관련 공무원에 계약직으로 입사(13년) 호프집을 열기 위해 사표, 2년을 못 넘기고 부도 후 이혼
28*	중 중퇴후 빵공장(5년) 근무 금형 프레스 공장(1.5년) 이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공사현장 반장을 따라 서울로 올라 와 20년간 건설일용노동자로 생활. 이후 매형 소개로 버섯재배사(2년) 근무.
33	아버지 주선으로 84년 건설업체에 입사(6년),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다른 건설회사로 이직(4년), 이란출장(3년). 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 직접 건설업체 운영하다 부도 맞음
47	건설회사(8년, 외국근무), 처와의 관계 소원, 처의 우울증으로 회사 그만둠. 계약도매업 사업(빚을 내서 시작), 화재사건으로 사업 접게 됨. 가든 사업을 위해 땅 매입, 공사하였으나 그린벨트로 묶인 땅(사기)
54*	고교 검정고시 준비(20대초), 술을 먹으며 시간을 보냄. 형에게 의존하며 생활 친구의 간판가게 일(20대 후반 2년) 동대문 종합시장 의류부자재 상점 점원(10년), 알코올 중독으로 중단
58	제대 후 건설업 열관리(아버지 지인 소개 직장 취업) 대기업 건설회사 하청업체 취업(리비아 지원, 5년) 중소기업 현장관리, 이후 공업용 에어컨 자영업, IMF로 부도.
61*	중졸 이후 팔촌 형의 양복점에서 견습. 양복가게 점원 고향, 서울에서 자신의 양복가게 운영. 사양 산업으로 잘 되지 않아 그만둠.

주: 사례번호의 별(*)표는 미혼자임을 나타냄.

<표 7-7>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전의 일 경험: B2, B3그룹

노숙 전의 일 경험	
B2그룹	
10*	지인소개로 대학 졸업 후 대기업 근무(3년, 부적응 등으로 퇴사) 자격증 공부 1년. 계속된 낙방으로 좌절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 무기력한 생활. 집을 나와 고물상 등 전전하며 노숙 진입
25	고졸 후 전자회사(3년) 동대문 봉제공장을 돌면서 10년 이상 일함(기숙사). 건강문제와 동거녀의 사치, 사기로 일을 그만두고 친척 사우나 일(5개월)
35	중졸 후 구두방 점원(1개월) 인쇄소(잠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그만둠. 커피숍 주방장, 접시닦이, 바텐더 등(30대 중반까지) 건설 일용직
43	전문대 졸업 후 건축회사(설치현장 기사, 1년) 철골회사(하청업체) 동업으로 세움, IMF로 부도.
49	교도소 복역(7년) 가게 운영했으나 처가 카드사기를 치고 도망가 사업 그만두게 됨
50*	농고 졸업 후 고아원 원장의 추천으로 철 수세미 공장 입사(15년), 월급을 사장에게 맡겨둠 (양부모와 같이 여김), 회사 부도 시 서류상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자신에게 빛이 떨어짐
B3그룹	
5	일용직, 형님 공장 배달 차 조수(박스배달) 건물 아시바 일, 음주문제로 다음 날 일을 못나가는 날이 많아짐 실직, 생활고로 가정불화, 부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 9년째 별거 중 참여자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탕한 생활
14*	중학교 중퇴 후 매형의 도움으로 전자회사(1년) 절도로 소년원 수감. 이후 절도로 수년간 교도소 입소 출소 반복. 경제활동 하지 않음.
26*	주물공장, 구두공장, 플라스틱 공장 술집(5년), 가방공장(5년) 동거하면서 마음을 잡으려 했지만 여자와 헤어지고 전세금을 전부 도박에 씬.
30	고교졸업 후 구로공단 제책업(2-3개월), 가방봉제공장 잠시.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둠. 자동차수리, 자동차 판금 일(14년) 가락시장 장사(남동생과 동업), 실패함. 도박을 시작하게 됨.
48*	신발공장, 건설현장 아시바 설치(7-8년), 목공, 미장, 등 다양한 건설일용직 배 선원(3개월)
51	상고졸업 후 전기직(5년) 보온덮개 만드는 일(1년) 화학계열 공장 담배필터 작업(1년) 가구회사, 과일장사
55*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 식으로 피복공장(1~2개월), 설령탕집 주방보조(1년)
60*	청소년기 절도로 소년원 수감 양돈, 양계장, 김양식, 중국집 배달, 신문배달원 전전 봉제공장 시다(4년), 공장에서 횡령사건이 있을 때 절도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

주: 사례번호의 별(*)표는 미혼자임을 나타냄.

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앞서 정리한 노숙 위험요인을 청년노숙 경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중장년노숙인의 노숙의 진입 경로에 대한 패턴을 찾고자 하였다. 각 사례의 노숙 진입 경로는 종합하여 <표 7-8>에 제시하였고 각 그룹별로는 <표 7-9>, <표 7-10>, <표 7-11>에 정리하였다.

우선 B1그룹은 크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노숙에 진입하며 전형적인 노숙 진입의 경로 패턴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패턴은 특히 결혼 경험이 있는 사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사업실패, 실직, 해고 등의 구조·사회적 요인(S)이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이혼과 별거 등의 가족 위험요인(F)을 촉발시키면서 노숙을 만들어내는 경우였다. 이를 <표 7-8>의 B1그룹의 ①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례2, 13, 21, 33, 47, 58이 그에 해당하였다. 이 패턴은 구조·사회적 요인과 가족요인이 노숙에 중요한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장년의 참여자들이 위기의 상황을 마무리하는 패턴은 유사했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을 맡게 될 처에게 남은 돈과 집을 넘겨주고 본인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고시원이나 친구집, 찜질방으로 훌훌 단신 나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용노동 등으로 단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에 대한 비참함과 가정의 해체에 대한 절망감으로 재기의 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술로 절망감과 괴로움을 달래 보려 하기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만났던 친구나 동료들에게 일자리 부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신 생활을 유지하던 거주지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된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빚 보증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노숙에 이르게 시간은 더욱 짧아진다. 물론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 경험과 관련한 사건은 앞서 말한 위험요인과의 인과성을 가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노숙 직전에 결정적인 노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사례58의 생애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사례58]

사례58(57세)은 부산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열관리사를 했지만 경제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그 탓에 어머니가 행상으로 고생을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이셨고 공부를 별로 잘 하지 못하는 참여자를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대학을 가도록 밀어주셨다. 20대 초반에는

그런 상황이 싫어 학교도 자퇴를 해 버리고 음악다방 등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해군 제대 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배웠다. 아버지가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덕분에 직장을 얻을 수도 있었다. 28세에 대학시절 알게 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신혼 초에는 돈이 없어 아버지 도움을 받으면서 결혼을 시작했지만 공장에서 번 돈을 열심히 모아 자기 힘으로 서울에 조그만한 월세방도 마련하여 신혼을 보냈다. 작은 아버지의 소개로 대기업 건설회사 하청업체에 다시 취업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해외 파견을 지원했고 태어난 딸이 백일이 막 지났을 무렵 리비아로 떠나 5년을 열심히 일했다. 리비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내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 여러 중소기업을 돌아다니며 현장관리직으로 뛰고 이후 공업용 에어컨 관련 자영업을 시작해서 사장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IMF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가게 문을 닫았다. 한 동안 방에 틀어 박혀 나오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다.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아내도 식당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빌미가 되어 가정불화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다.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다. 충격적이고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런 아내는 적반하장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고 집을 나가 버렸다. 남겨진 딸을 혼자 돌보며 얼마간을 지냈지만 수학여행 문제로 생긴 딸과의 갈등으로 애엄마가 자기 몰래 밖에서 딸을 만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고민 끝에 그가 한 선택은 딸을 위해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었다. 딸아이의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고 그 대신 집을 아내 명의로 돌려주고 이혼을 했다. 자신은 300만원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 그것이 노숙으로 이어지는 시작 시점이었지만 사실상 당시에는 내가 노숙인이 될 것이란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가지고 나온 돈으로 처음에는 영등포 시장 근처 여인숙을 잡고 3개월 장기투숙을 했다. 무언가 해야만 했지만 아내에 대한 화로 인해 술을 먹기 시작하였다. 울분이 쌓였고 그 때마다 술로 여러 날을 지새웠고 돈은 점점 떨어져갔다. 몸은 힘들어지고 일용직 일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결국 수 개월이 지나지 않아 여인숙에서 쪽방으로, 그리고 어느 날 결국은 영등포역 대합실로 나왔게 되었다.

사례58의 경우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진입의 과정, 그리고 IMF 경제위기로 인해 촉발된 노숙인의 전형적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 패턴에 속한 다른 사례들의 이야기들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사했다. 이러한 패턴의 노숙 진입과정은 소위 경제 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이 촉발한 노숙과 관련한 익숙한 이야기 전개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노숙 이후의 노숙인의 모습만으로 ‘노숙인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가장’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익숙한 의구심에 대한 반증이다. 오히려 이러한 패턴은 우리 사회가 남성 가장에게 다소 지나치게 짐 지우고 있는 부양에 대한 역할 부여가 노숙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여지를 준다. 이렇듯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자책과 질타가 낳은 최악의 결과가 중장년 노숙의 일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표 7-8〉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패턴

그룹	노숙 진입 경로 패턴	해당사례	패턴 도식화	비고
B1	① 구조·사회 요인에 가족요인을 경험한 패턴	사례2 사례13 사례21 사례33 사례41 사례47 사례58	F&S F S→F F&S&S S→F S→S→F S→F	결혼경험이 있는 사례자들의 일반적 패턴
	② 개인요인이 작용한 패턴	사례8 사례28 사례54 사례61	Id→S F→Id→Id Id Id→S→S	미혼자들의 일반적 패턴
B2	① 구조·사회 요인과 가족요인을 경험한 패턴	사례43 사례49 사례50	S→F S→S→F F&S&S	사회적 요인의 경험이 많음. 개인요인이 없음. B1의 패턴 ①과 유사
	② 개인요인이 작용한 패턴	사례10 사례25 사례35	S→Id→Id→S S&Id&S F→F&Id	
B3	① 가족요인과 개인요인을 경험한 패턴	사례26 사례55	F→Id&F→Id F→Id→Id→F	모든 사례에서 개인요인 경험
	가족과 개인요인에 사회적 요인이 추가된 패턴	사례51 사례60	F→Id→Id→S F→Id→I→S	
	② 구조요인과 개인요인을 경험한 노숙 진입 경로 패턴	사례5 사례14 사례48 사례30	SF→Id→Id→F S→Id→I S&Id→Id S→F→Id	

한편 같은 중장년노숙인 그룹에 속해 있지만 위와 같이 남성 가장의 역할을 경험하고 그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가족의 해체의 결과 끝에 나타나는 노숙과는 다소 거리가 먼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확인이 가능했다. 이들과 또 다른 노숙 진입 경로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표 7-8〉의 중장년노숙 경로의 두 번째 패턴 ②으로 사례8, 28, 54, 61의 경우였다. B1그룹의 두 번째 패턴은 주로 미혼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이들은 성인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일 경험 역시 단발적이었던 경우가 많았고 잦은 이직도 수반되었다. 그러나 점차 중년으로 넘어오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노숙에 진입한 나이는 각각 44, 48, 44,

54세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나 형제 등 원가족에게 기대기도 어려워지면서 결국 노숙에 이르게 되는 패턴이었다. 사례28은 주로 건설 일용직 등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박, 경마, 알콜 문제 등에서 헤어날 수 없으면서 노숙으로 떨어졌다. 역시 미혼이었던 사례54의 경우도 의류부자재 상점에서 10여 년간 일하였으나 그 과정 중에 서서히 알코올에 빠지면서 결국 몇 차례 병원에 실려 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노숙인 쉼터로 연계되어 입소하게 되었다. 사례61은 중학교 졸업 이후 친척의 양복점에서 기술을 배워 한 때 돈을 많이 벌며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술과 방탕함을 즐기던 차에 양복사업은 사양화 되어 가고 친구 따라 간 고스톱 판에서 사기도박에 걸리면서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다가 결국 노숙을 하게 된 사례였다. 이들은 앞의 패턴의 사례들에 비해 생활이 불안정하고 다소 개인적인 성실성이나 꾸준함이 부족한 사례들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지만 확실히 안정적인 직업과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불안정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지속되다가 개인적인 위기상황을 만나면서 증폭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노숙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의 노숙 진입 경로를 가진 대표 사례로 사례8의 생애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8]

사례8(50세)은 부산 동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3형제를 홀로 키우셨다. 그래도 평범한 가정이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참여자는 공고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다. 제대 후 처음에는 큰 형이 하던 서점을 1년 정도 운영했다. 그러다가 일이 재미없어 그만 둔 후 일용노동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판사 영업일을 2년 했다. 그런데 그것도 별로 적성에 맞지 않았다. 가구점 직원을 해 보면 어떨지 해서 그것도 해 보았지만 그것도 1년 정도. 스스로 자기는 역마살이 있는지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왠지 지겨웠다고 했다. 부산에서 그렇게 서른이 될 때까지 보냈고 이 일 저 일 하나를 꿰차지 못하는 자신을 가족들도 버거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매일 어영부영 사는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들과도 불화가 생기니 불편한 마음들이 일었다. 서울에 가면 좀 더 새로운 일거리가 많이 있겠지 하는 비교적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생활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새로운 일을 찾아 서울에 왔지만 객지에서 했던 일은 음식점 주방, 세탁공장, 음식 배달, 김 양식 배타기 등이었다. 고작 백 만원 남짓 받는 월급이었는데 근무 환경은 하나같이 좋지 않았고 고된 장시간의 육체 노동이었다. 그나마 음식점 일이 가장 수월했다. 체력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도 닥치는 대로 해 내며 버텼지만 그 때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번 돈을 잘 쓰지 못하고 대부분 술을 마시거나 옷을 사 입거나 했

다. 가불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타도 별로 남는 게 없는 달도 있었다. 노숙이 가까워 진 것은 결국 먼지가 많은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몸이 문제가 생겼고 결핵을 앓게 되면서였다. 몸으로 일을 하던 훌훌 단신의 남성이 몸이 망가지고 나니 별 도리가 없었다. 그 때가 48세였다. 가족들은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 연락을 안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연락 할 수가 없다. 서울에 올라올 때도 홀어머니에게도 언지를 주지 않고 그냥 사라진 셈이었으니 이제와 찾아가는 것은 더욱 면목이 없다. 몸이 아프고 술을 마시게 되면서 돈이 떨어져 일주일도 굶어 본 적이 있었다. 거리 노숙을 한 적은 없지만 교회 구제금을 받으러 다니고, 노숙인 시설에서 연계해 주는 노숙인 의료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월세 지원을 받아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B2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그룹 역시 두 가지의 대표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구조·사회적 요인(S)와 가족 문제의 발생(F)으로 구성된 패턴이다. 이 두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패턴은 B1그룹의 첫 번째 패턴과 유사한 경로였다. B2그룹 사례 중 세 명(사례43, 49, 50)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중 사례43은 B1그룹의 ①패턴과 거의 일치하는 노숙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개인의 생애 시기를 보았을 때 노숙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신의 회사 부도를 맞게 되는 시점이 B1그룹보다 더 이른 시기인 30대였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대졸자로 군 제대 이후 건설회사에 들어가 철골구조물 설치 일을 맡게 되었고 6개월 본사에 있다가 현장기사로 내려가 3년을 보냈다. 그러면서 현장 일당 근무자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돈을 더 받는 것을 보고 회사생활에 불만이 쌓이면서 일을 하다 알게 된 동료들, 친구들과 팀을 짜서 직접 사업체를 꾸렸다. 30대 초반 정도에 동업으로 회사 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장 근무만 하던 자신은 월급이 꺾충 뛰어 좋아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경험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어쨌거나 3년은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IMF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굴지의 흥철강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자 자신의 사업체에도 타격이 미쳤고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가족 친지의 돈을 빌리다 못 갚으면서 신용도 떨어지고, 결국 사채를 가져다 쓰다가 어음은 휴지조각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면서 아파트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등 여러 재정적 위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한편 이 패턴에 속한 나머지 두 사례는 앞서 소개했던 사례43과는 좀 다른 노숙 진입 이야기를 가진 사례였지만, 노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사례들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패턴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들의 노숙 진입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피해 경험들이었다. 사례49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의 이혼 후 광주로 내려와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고등학교까지 마

쳤다. 그 이후 군대를 졸업하자마자 알게 된 동생이 저지른 살인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고 7년을 교도소에서 복무했다. 출소 후 교도소에서 모아 나온 천 만원으로 악세사리 장사를 시작했는데, IMF 경제위기가 일어났던 시점에 공교롭게도 장사를 하면서 힘들었고, 있던 돈 마저도 일찍 결혼해 같이 살던 처가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사례50의 경우도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원에 맡겨져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고아원 원장의 주선으로 철수세미 공장에 들어가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15년을 근무하였다. 월급을 성실히 모았지만 공장 부도로 돈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책임자로 서류상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 운영 관련 빚을 수 억원 떠안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 결국 이 일로 공장을 나오면서 노숙에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얻었다.

B2그룹에서 나타난 두 번째 패턴은 주로 유년시절에 경험한 원가족에서 시작된 구조요인과 사회 요인(S), 혹은 가족요인(F)에 청소년기 이후 개인요인(Id)의 결합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노숙 진입 패턴이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B2그룹의 6명 사례 중 3사례로 사례10, 25, 35가 이에 속했다. 원가족의 빈곤과 가족문제, 혹은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 등이 청소년기의 개인의 비행을 촉발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성인기 이후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실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결국 노숙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장 전형적 사례로 사례10의 노숙 진입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0]

1962년 서울에서 1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군인인 아버지는 잦은 출타로 집에 거의 안 계셔서 어머니와 누나들 사이에서 귀하게 자랐고 참여자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누나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충격적 경험을 하면서 관음증으로 발전하였고 관음증이 좀 나아진 후에는 알코올중독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몸이 약해서 학교-교회-집을 오가는 평범하고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4년제 지방캠퍼스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다. 1983년 체격 기형의 사유로 군을 면제받았고 1987년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뒤 지인을 통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인이 체격 기형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음주문제로 직장을 퇴사하였다. 1988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으나 계속 떨어지고 지속적인 음주를 하며 부모님의 용돈에 의지한 생활을 하다가 2000년 음주문제 때문에 알콜 중독 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주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노숙인 알콜올 치료 병원과 센터 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생활을 하였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결국 2009년 5월 금주에 성공하여 현재는 노숙인 자활센터

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단주에 성공했지만 심터를 나가게 되면 또 자신이 무너질 것이 걱정되어 여전히 심터 생활을 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B3그룹의 경우는 B1, B2그룹과는 다소 다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청소년기 이전의 원가족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노숙 진입 경로가 시작되는 패턴으로 가족 요인이 개인 위험요인을 촉발시켜 이것이 결국 노숙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두 번째 패턴은 구조 요인과 개인요인의 결합 패턴으로 B2그룹에서도 유사하게 포착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B3그룹이 보이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10대에 노숙경험이 있으며 청년기부터 노숙을 하기 시작한 이 중장년노숙인 그룹의 노숙 경로에는 개인요인(Id)이 없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A2그룹의 경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개인요인 앞에는 반드시 가족요인 혹은 구조·사회적 요인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숙 상황에는 공통적으로 청소년기의 비행, 가출, 자살시도 등이 나타났고, 이것이 청년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기 이후의 개인 위험요인 역시 알코올 의존, 도박, 유흥, 방탕, 자살시도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A2그룹의 전형적인 패턴인 구조적 요인이 없이 가족요인(F)의 영향으로 청소년기 이후 가출과 비행(Id)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B3그룹의 패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숙 전 사회적 요인의 피해 경험을 가진 사례들도 두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 패턴에는 사례26, 51, 55, 60가 해당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사례로 사례26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사례26]

사례26(44세)은 전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땅도 있었고 어렵지 않은 생활을 했다. 부모님은 부지런한 분들이었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별로 없었다. 사실 부모님은 참여자가 어렸을 때 남의 집 물건을 훔쳐도 크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변상을 해 주고 말 뿐이었다. 그런 훈육의 부재 때문이었을까 참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가 하기 싫어 가출을 감행하였고 다른 아이들을 꺾어 형이 일한다는 서울로 올라왔으나 형을 찾는 것은 실패하고 근처의 가방공장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알려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학교는 중학교 중퇴로 마감했다. 얼마간 집에 있었지만 다시 성수동으로 올라와 주물공장, 가방공장, 플라스틱 공장 등에서 일을 했다. 하루 벌어 하루 쓰자 주의로 생활을 하는 편이었다. 그러던 중 참여자가 21세가 되던 해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 충격이 가시지 않았고, 그 일로 참지 못하는 성격이 되기도 했고 알코올 중독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마음을 잡으려 애도 써 보았지만 여자와 헤어지고 난 후 좌절감에 전세금을 모두 도박에 써 버렸다. 돈이 없어진 참여자는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친구의 멸시에 화가 나 집을 뛰쳐나온 후 노숙에 진입했다.

마지막으로 B3그룹의 나머지 패턴은 사례5, 14, 48, 30에서 보이는 패턴이다. 이 경우는 앞의 패턴과 차이가 구조·사회 요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인데, 이 경로에서는 구조적 요인이나 사회 요인도 중요한 노숙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참여자의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노숙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례5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사례5]

사례5(46세)는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온 식구가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미리 와 있던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온 후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불량청 소년이었는데, 본드 흡입, 폭력을 일삼으며 방황했다. 결국에는 소년원에 1년 6개월 수감되었다. 소년원에서는 소위 사람취급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쁜 것들만 많이 배워 온 듯 했다. 그 공부는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 건달생활에 요긴하게 쓰였다. 결국에는 폭력 사건 등으로 26세까지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았다. 그러던 중 26세에 아내를 만나 결혼 하였다. 새롭게 살아볼 작정으로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결혼을 했다. 아이를 둘 낳고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일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둘째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하던 일도 줄어들고 영 돈벌이가 신통치 않아졌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내 음주문제와 생활고, 이어지는 실직 등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잘 해보고 싶었지만 지쳐가는 아내에게 큰 소리만 칠 뿐이었다. 결국 결혼 10년 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 그 이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9년 정도 별거생활 중이다. 그렇게 시작된 별거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합쳐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참여자는 가족들이 집을 나간 후 아내에게 복수라도 하는 셈으로 전세금 2500만원을 빼서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결국 돈이 떨어지자 서울역, 청량리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다른 노숙인에게 큰 상해를 입게 되어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3년간 생활하며 간병 자원봉사를 했다. 현재는 노숙인 재활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사례5는 결혼을 한 사례였지만 결혼 경험이 있는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결혼생활과 가족이 안정감 있는 생활의 원천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흔들렸을 때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돈과 시간을 버린 셈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 왜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젊은 혈기에 어린 두 아이와 아내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후회만 마음에 가득한 상태였다.

이상의 중장년노숙인 세 하위 그룹에 대한 노숙 진입 경로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B1그룹과 B2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B1그룹에서 도출된 두 가지 경로와 B2그룹에서 도출된 두 가지 경로는 사실상 각각 같은 패턴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각 그룹에서 도출된 두 패턴에 속한 사례수의 비중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었다. 즉, B1그룹의 경우 첫 번째 패턴에 속한 사례가 더 많았고, B2그룹의 경우 두 번째 패턴에 속한 사례가 더 많았다. 이것은 두 그룹의 노숙 위험요인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2그룹이 B1그룹보다 다소 취약했던 인구학적 특성과 노숙의 위험요인들이 일 경험이나 결혼 등으로 상당부분 상쇄되면서 유사한 수준의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20대를 보냈을 1990년대 초중반의 시기는 다소 학력이 부족하고 인적자본이 낮았다 할지라도 독립을 위한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불안정한 직업력과 결혼경험의 부재는 그 사례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유사한 노숙화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B2그룹과 B3그룹의 노숙 경로의 차이는 B3그룹의 청소년기 비행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촉발하였던 원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B3그룹이 경험한 원가족의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노숙인들의 비행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그 비행은 성인기 비행으로 연결되면서 노숙을 초래하였다.

〈표 7-9〉 중장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1그룹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후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2			<p>■So(빛 보중) F(처의 잦은 유산과 의부중) → ■F(이혼) F(부의 자살)</p>	<p>숙식제공 건설노동 공사 종료 후 일자리 구하지 못해 노숙시작</p>	S ▶ F & S
8		F(부의 사망)	<p>■So(엄자손가락 잘단사고) ■Id(무기력,) … ■St(단기간 여러 일자리 전 전, 일 못구함)</p>	<p>단기간 여러 비정규일들만 전전하다가 일이 끊어지며 노숙 진입</p>	Id ▶ S
13	Id(어린 시절 화상)		<p>■F(성격차이로 이혼)</p>	<p>이혼 후 친구 공장에서 숙식하며 6년을 살다가 몸이 힘들어 나와 살면서 노숙에 진입</p>	F
21			<p>■St(사업실패) → ■F(처와 아이들 처가로 감)</p>	<p>크게 차린 호프집이 망하면서 식구들이 외 가로 가버리고 혼자 짬짬방을 전전하게 됨</p>	St ▶ F
28	<p>■F(방임, 부모의 가출) … ■Id(폭력으로 중학교 퇴학)</p>		<p>St(건설일이 줄어들음) ■Id(경마, 음주, 싸움)</p>	<p>노름에 빠져 일을 많이 못가며 고시원생활 하다가 돈이 떨어져 거리로 나옴</p>	F ▶ Id ▶ Id
33			<p>■F(처의 우울증, 이혼) ■So(보증이 잘못됨) ■St(사업 부도)</p>	<p>이혼 후 보증문제와 사업부도가 겹치며 노 숙하게 됨</p>	F & S & S

〈표 7-9〉 중장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1그룹(계속)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후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41	F(부의 사망) … St(빈곤)		■So(자금유용 연루로 해고당함) ■F(처의 암투병, 사망)	처의 암투병으로 재산을 거의 다 쓰고 끝내 사망한 후 서울로 상경한 후 노숙진입	S F
47			■So(사업장 화재) ■So(부동산 사기) → ■F(처와 아이들 별거)	사기당한 후 처와 아이들은 해외로 가 버리고 껌질방 여관 등에서 노숙시작	S S ▶ F
54	F(부의 학교협오)		■Id(알콜중독)	의류계통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알콜중독 상태에서 노숙	Id
58	F(가정불화) St(빈곤)		■St(IMF로 가게 문 닫음) ■F(처의 외도, 가출, 이혼) …■Id(알콜)	처의 이혼요구에 자녀양육을 맡기면서 집 명의를 이전해주고 나오면서 노숙시작	S F
61	St(빈곤)		■Id(음주, 방탕) …> ■So(사기도박단 피해) ■St(양복산업 사양화)	평생 해 온 양복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실직 상태로 노숙	Id ▶ S S

<표 7-10> 중장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2그룹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후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동네 누나들에게 성추행) ■ Id(체격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Id(관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Id(알콜중독) → ■ St(실직) 	어린 시절 충격적 성추행 경험이 알콜중독 문제로 연결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실직 후 노숙	S ▶ Id ▶ Id ▶ S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동거녀의 카드와 사채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헤어짐) → ■ Id(음주, 방탕) F(모의 자살) ... Id(자살 시도) ■ So(빌려준 카드빚으로 신용불량) 	동거녀와 헤어진 후 어머니도 돌아가시자 술을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노숙에 진입	S ▶ Id ▶ S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사생아로 출생, 부모부재, 조부모 양육) St(빈곤, 기초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친구들에게 집단구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방탕) ■ F(조부모님 사망) 	부모님의 부재와 조부모님의 사망으로 갈 곳이 없어서 노숙에 이르게 됨	F ▶ Id & F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사업부도) → ■ F(이혼)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여러 일을 전전하다 노숙에 진입하게 됨	S ▶ F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F(부모의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강도사건 연루로 복역) ■ So(첫번째 처의 사기로 사업종료) ■ F(두번째 처와 이혼) 	이혼 후 사기를 치고 간 첫째 부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서울역에 나와 지내면서 노숙하게 됨	S ▶ S ▶ F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부모이혼) → I(고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사장에게 맡겨둔 월급을 하나도 받지 못함) ■ So(서류상 책임자로 올라가 거액의 빚 보증으로 신용불량) 	15년 간 일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월급도 없고 빚만 얻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 시작	F S & S

〈표 7-11〉 중년노숙인 생애주기별 노숙위험과 노숙 진입 경로: B3그룹

사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후	노숙 촉발 과정	노숙 진입 경로 패턴
5	■ F(부의 음주, 가정폭력) →	■ St(빈곤,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더부살이) ■ Id(분드, 폭력) → I(소년원 수감) → I(오랜 교도소 생활) ■ Id(음주) → St(실직) → F(가정불화) → ■ F(처와 아이들 가출)		견디다 못한 아내가 아이들과 집을 나가버려 집 전세금을 빼서 떠돌아다니는 생활 시작 후 노숙	SF ▶ Id ▶ Id ▶ F
14	■ St(당숙집에서 더부살이) → So(매질, 구박) ■ Id(절도) → ■ I(소년원 수감, 교도소 전과17범)			절도 이후 교도소 입출소를 반복하며 전과자로 살아오다가 교도소를 마지막 나온 후 노숙인 쉼터로 진입	S ▶ Id ▶ I
26	■ F(훈육의 부재)	■ Id(무단결석, 가출)	■ F(모의 자살) → ■ Id(알코올의존, 도박)	어머니의 자살로 자제력을 잃고 술에 의존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이후 도박으로 돈 일 다 잃고 노숙하게 됨	F ▶ Id & F ▶ Id
30		Id(비행, 가출)	■ St(사업부도) → ■ F(이혼) ■ Id(도박)	남동생과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이혼하고 이후 도박 등으로 돈을 모두 잃고 노숙진입	S ▶ F ▶ Id
48	■ St(경제적 어려움) ■ Id(건강약해 학교 그만둠)	■ Id(가출)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 한 이후 떠도는 생활이 시작됨.	S & Id ▶ Id
51	■ F(부의 외도, 부모 이혼)	■ Id(가출)	■ Id(유혹) → ■ So(카드빚으로 신용불량) Id(자살시도)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이 되면서 일한 돈이 계속 차압당하자 자포자기하고 노숙하게 됨	F ▶ Id ▶ Id ▶ S
55	■ F(계모의 차별) →	■ Id(자살시도, 가출) So(일하러 갔다가 감금당함)	■ Id(방탕, 음주) → ■ F(가정불화)	제대 후 특별한 일을 안하고 집에서 놀면서 갈등이 생겨 싸우고 집을 나옴	F ▶ Id ▶ Id ▶ F
60	Id(절도) F(부모의 무관심)	■ Id(가출) → ■ I(소년원) F(모의 가출)	■ So(애인에게 돈을 도둑맞음) ■ So(전과기록 때문에 해고당함)	여자친구가 맡긴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회사에서 생긴 횡령사건에서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당함.	F ▶ Id ▶ I ▶ S

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의 생활

앞서 살펴본 노숙 이전의 삶의 차이는 노숙 이후 생활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B1과 B2, B3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청년기 노숙 경험의 여부이므로 노숙 이후 현재 노숙 생활의 차이는 청년기 노숙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생활은 어떠한지, 각 그룹간의 차이는 확인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사례의 주요 거주지 이동, 노숙 후 일, 복지서비스의 이용,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7-12>, <표 7-13>, <표 7-14>, <표 7-15>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노숙 이후 거주지

먼저 중장년 노숙인들이 노숙 이후 이용하는 거주지를 확인해 보았다. <표 7-12>, <표 7-13>에 제시된 대로 중장년노숙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지는 청년노숙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거리노숙, 쉼터, 사우나(찜질방), PC방, 만화방, 고시원과 쪽방, 여인숙, 병원(입원) 등이 주로 경험한 거주지였다. 거주지의 이동은 청년노숙인들보다는 빈번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리에서 쉼터로, 쉼터에서 고시원으로, 거리에서 쪽방으로의 이동 등 여러 방면에서의 이동이 나타났다.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던 안정적인지 않은 그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청년이나 중장년을 막론하고 노숙 생활에서 가장 큰 고충이 아닐 수 없었다.

청년노숙인들과 다른 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지 특이점이라면 장년노숙인에게서 노숙 중 직장에 딸린 숙소로의 이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 공장의 숙소, 식당, 주유소 등 주로 숙소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중장년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중장년 노숙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입장벽이 낮아 비교적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숙소제공 일자리들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피대상이 될 만큼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생활 여건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추해 볼 수 있다. 청년의 경우는 젊으니까 불편한 숙소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숙소가 있는 일자리라 함은 일의 특성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 아주 이르거나 아주 늦은 경우, 전국 여러 곳을 이동하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일들이다. 이런 일자리에 중장년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은 쉽게 이해된다. 또 한 가지 중장년노숙인의 거주지 특성이란 ‘쪽방’의 활용이 높다는 것이다. 쪽방에서의 생활은 청년노숙인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다

데, 중장년노숙인의 여러 사례에서 쪽방에서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쪽방은 노숙인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각종 지원체계가 미치는 지역이지만 낙후되어 있어 청년층은 다소 이용을 꺼리는 지역이다. 대개는 중년 이후 단신 빈곤층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편 거리노숙과 관련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숙 이전 나름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인 B1그룹의 첫 번째 패턴의 사례들조차도 거리노숙이라는 비참한 상황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거리노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B1그룹에서 3명, B2그룹에서 2명뿐이었고 B3그룹은 모두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거리노숙의 경험 유무뿐만 아니라 거리노숙의 그 기간이 긴 경우도 포착된다.

<표 7-12>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지와 일: B1그룹

	현재 거주지	주요 거주지이동	노숙 후 일
2	쪽방	현장숙소->거리(역)->쉼터J->병원입원(뇌병변)->거리노숙(박스집)->쪽방	완도 배 타러 감. 일용 노동
8	쪽방	쉼터->병원 입원(결핵)->쪽방(임시주거비지원)	없음(교회 구제금 등으로 생활)
13	쉼터E	짬짬방->찬구네 공장 야전침대 생활(6년)->거리노숙(서울역)->쉼터A->쉼터D->쉼터E	쉼터E의 관리직
21	쉼터A	짬짬방->쉼터A	건설일용노동, 야간아르바이트, 희망근로 참여
28	쉼터A	고시원->거리노숙/만화방, 사우나->쉼터A	가끔 일용노동
33	고시원	거리노숙(주차장,마트등)->쉼터D, 쉼터F, 쉼터G 등 생활->고시원(주거비지원)	폐지줍기, 경마장 자리잡아주기, 자활근로
47	고시원	월세방->형제들 집->만화방/사우나/짬짬방여관->고시원	엑스트라, 철거용역, 식당아르바이트, 자활
54	쉼터I	월세->병원(알콜)->쉼터I	자활, 희망근로, 쉼터사무실근무
58	매입 임대 주택	여인숙->쪽방->거리(역 대합실)->공원->여인숙->매입 임대주택	일용노동, 자활근로
61	매입 임대 주택	친구집->거리노숙(마트 주차장)->병원(결핵)->쪽방(주거비지원)->매입임대주택	희망근로(장애인복지센터 근무)

거리노숙의 경험은 앞서 말한 대로 B1그룹에서도 많이 포착되는데 노숙에 진입한 이후 노숙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전 공황상태에서 며칠 동안 역사나 공원에서 배회하는 등의 일반적인 거리노숙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역 인근 지하도에서 1년 3개월간 거리생활을 한 사례28, 쉼터에 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공동생활을 3-4년 간 한 사례58가 있었다. 사례2 역시 잠시 동안 쉼터에서 머물렀지만 근처에 박스로 집을 짓고 몇 개월 이상 거리생활을 했다.

〈표 7-13〉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거주지와 일: B2, B3그룹

	현재 거주지	주요 거주지이동	노숙 후 일
B2그룹			
5	쉼터I	거리노숙→쉼터L(요양)→거리노숙→쉼터I	일용노동
10	쉼터E	거리→고물상 등 숙식→쉼터K(음주문제, 재활)→고시원→쪽방→병원→쉼터E	공장 고물줍기, 식당 살가지, 희망근로
14	쉼터E	교도소 입출소 반복→쉼터I→쉼터E	희망근로, 자활
25	쉼터I	쉼터I→고시원→쉼터I→병원→거리노숙→고시원→쉼터I	일용노동
35	쉼터F	거리노숙/찜질방→쉼터 여러곳→교도소→쉼터F	일용노동, 커피숍바텐더, 접시담이
43	쉼터A	거리노숙→쉼터→뱃일→쉼터(복지관)→월세→고시원→쉼터→거리→쉼터A	뱃일, 자활, 택시회사, 일용노동
49	찜질방/쪽방	거리<->찜질방/쪽방 등	고물수집
50	쪽방	사장의 친척집→고시원→거리노숙→쉼터B→쉼터A→쪽방	일용노동
B3그룹			
26	쉼터A/거리	친구집→거리노숙→쉼터A	없음
30	쉼터A	거리노숙→찜질방→쉼터F→쉼터A	없음
48	임대아파트	거리/만화방/찜질방→쉼터D→교도소→임대아파트	자활, 일용노동, 고물수집,
51	임대주택	거리노숙→여관→쉼터G→고시원→임대주택	경비, 일용직, 과일장사, 특별자활 등
55	쉼터I	거리노숙→쉼터B→쉼터K→쪽방→거리→쉼터B→쉼터I	일용직
60	매입 임대주택	거리노숙→쉼터 여러 곳→거리노숙→매입임대주택	고물수집, 자활근로, 식당주방보조, 장애인복지관 계약직

또한 B1그룹과 다른 두 그룹의 거주지 경험은 현재 거주지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 B1그룹의 경우, 현 거주지가 쉼터가 아닌 쪽방이나 고시원 등 다소 열악하더라도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확인되었다. 사례2, 8, 33, 47, 58, 61의 6명의 사례가 자신의 독립된 거처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나머지 4명은 쉼터 생활자들이었는데, 이 중 2명은 쉼터(자활시설)에서의 생활이 거주 목적이 되기보다 쉼터 내에서의 역할 수행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쉼터에서 동료 노숙인들을 위해 부여받은 관리 역할 때문에 쉼터에서의 생활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 한 명의 경우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자 하는 전략으로 쉼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주지 활용은 중장년노숙인의 속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그룹의 경우, 노숙 이전의 일반적인 가족 단위의 거주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쉼터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쉼터에서의 공동생활을 더 불편해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연령이 높은 그룹인 만큼 쉼터의 규칙에 따르는 생활, 즉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일과 중에도 입퇴소의 반복, 일부 자활시설에서 부과하는 근로의무(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조건) 등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그룹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쉼터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다.

특히 B1그룹에서 독립적인 방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숙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다른 두 그룹과는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1그룹의 노숙기간은 평균 3.5년으로 B2그룹의 9.8년, B3그룹의 15.2년에 비해 짧은 편이다. 다른 두 그룹 특히 조사에 참여한 B2그룹의 8사례 중 대부분이 여전히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노숙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B1그룹의 다수가 방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거 환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방을 유지하고 있고 독립공간에서의 삶을 더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계속 이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들이 방에서 거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거비지원 등의 일시적 보조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다. 사례2, 8, 33이 임시주거비지원을 받아 방에서 생활하는 중이었다. 방에서 생활하는 나머지 사례들은 일용노동이나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허락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주거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사례54와 61만이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후 매입 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아 비교적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사례61은 매입임대

주택에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온전한 자기의 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보증금을 모으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100여 만원 남짓 되는 일시적 일인 희망근로였는데 물론 한 동안 매입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거주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보증금을 모으고 월세를 내면서 더 나은 방을 가질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편 B2, B3그룹의 노숙 이후 거주지는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두 그룹은 노숙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긴 기간 동안의 거주지 이동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다만 참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선에서 주요 거주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패턴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B2그룹의 경우, B1그룹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참여자들이었으나 이들에게서 음주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의 패턴이 자주 망가지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연적으로 거주지 역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B1그룹에 비해 쉼터생활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고, 거리와 쉼터를 오가며 이용하거나 일을 하면서 방을 얻었다가도 여의치 않게 되면 다시 쉼터로 돌아오는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는 특징을 가진다. 6명 중 4명은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명(사례49)은 거리와 찢질방/쪽방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사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사례50)은 현재 쪽방에 살고 있었다. 쉼터 생활자 4명에게서 발견되는 특이점은 도중에 병원이나 교도소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시 노숙인 시설로 들어오는 패턴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거리노숙과 찢질방 생활을 하다 쉼터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다시 쉼터로 돌아온 사례35가 그러한 경우였다. 또한 음주 문제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나온 후 알코올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다 다시 다른 자활시설로 돌아온 사례10의 경우도 있었다.

한편 사례43의 경우는 30대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이혼을 한 후 노숙인이 된 사례로 B1그룹의 첫 번째 패턴과 유사한 진입 경로를 가진 사례였다. 노숙 이후 완전히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쉼터로의 회귀를 반복하며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거리노숙을 단 하루 하면서 노숙에 진입하였다. 운 좋게 바로 당시 노숙인 중간쉼터로 존재했던 '자유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뱃일 하러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에 일을 할 욕심으로 선뜻 나섰다가 감금되어 온갖 고생을 하다가 수개월 만에 탈출해서 다시 서울에 왔다. 이후 다시 자유의 집을 통해 복지관 쉼터를 두 군데 돌아다녔고, 이후 돈을 벌면서 택시와 일용노동 등을 하면서 월세와 고시원 생활을 했다. 그러나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여러 군데의 쉼터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 기간 생긴 피부 문제로 노숙인 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립병원에 입원

하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B3그룹에서는 B2그룹처럼 쉼터에 반복적으로 머무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활 중에 임대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한 사례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거리노숙과 찻집방을 오가면서 주로 생활을 했고 교도소를 오가기도 했던 사례48은 노숙 중 우연히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노숙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지원에 응하게 되어 운이 좋게 보증금 300에 월 18만원을 내는 낡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례51, 60 역시 노숙인 옹호단체나 당사자모임 활동의 도움을 받아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볼 때, 노숙 이후의 거주 안정성은 노숙 이전의 생활이나 노숙 이후의 일 경험의 정도, 노숙 기간 등이 아니라 노숙 기간 중 어떤 지원 단체를 만나느냐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2) 노숙 이후 일 경험

한편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일 경험은 각 그룹 간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는 일의 종류, 희망근로 참여 등은 청년노숙인들의 일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만큼 접근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노숙 이후 주로 했던 일들은 건설일용노동, 철거용역, 고물수집, 식당보조 등이 주된 것이었다. '자활'로 불리는 공공일자리 참여 역시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중장년 노숙인의 노숙 이후 일 경험의 차이는 그룹의 특성에서 비롯된다라기 보다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 위에 열거된 일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로서 보통의 건강을 가진 사람이 성실히 일 할 때 한 달 80-1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복지서비스나 공공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그룹 별로 이들의 건강상태와 일 경험을 연결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B1그룹에서는 높은 근로의 의욕을 보이고 또 일을 하지 않는 노숙인들, 게으른 노숙인들은 자신과 다르다며 구분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포착되었다. 뇌병변 장애로 수시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례2, 결핵 발병 후 아직 제대로 완치가 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8, 이혼 이후 6년간 친구의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문이 잠긴 공장 안에서 야전 침대 생활을 하며 몸이 모두 망가졌다고 말하는 사례13, 간경화와 우울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자살시도를 수차례 한 사례33 등 여러 명

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물을 주워 팔거나 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나머지 참여자들 중 비교적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3명에 불과했다. 신체적 불건강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요인은 알코올 문제, 도박 등이었다. 사례54는 알코올중독 때문에 세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는 심각한 중독 상태를 경험하였고, 사례58 역시 음주 문제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다. 사례61 역시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다. 또 사례 28은 건강한 상태였고 건설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도박 문제로 사실상 버는 돈은 전혀 쌓이지 않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B1그룹에서는 사례21, 47 단 두 사례만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이었다. 사례21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모으느라 밤낮으로 일을 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사례47은 거리노숙이나 쉼터경험, 무료급식을 이용한 경험 없이 스스로 일용직이나 엑스트라, 철거용역, 식당 아르바이트, 자활에 참여하며 돈을 벌어 방값을 내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B2, B3그룹의 경우 노숙 이후 더욱 심해지는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 등은 이들의 일 경험을 일천하게 하는 데 매우 큰 작용을 하고 있었다. B2그룹의 경우 사례 10, 25는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사례25의 경우는 음주 문제로 환청이 들리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 병원에 실려 가기를 반복했던 사례였다. B3그룹에서도 사례 5, 51, 60은 알코올 중독 수준을 경험한 바 있고 사례26, 30은 음주에 더하여 경마 등의 도박 문제로 일을 하더라도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돈을 벌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쉼터에 의존해 있는 것 역시 음주나 도박 등의 문제로 인해 단독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며, 그들이 쉼터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개인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절하거나 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다만 간간히 일용노동을 하거나,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활에 참여하는 수준의 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이들 중장년 노숙인들의 근로 활동 혹은 삶에 대한 의지를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만한 심리적 기제가 있는가에 따라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B1의 첫 번째 패턴의 사례들은 노숙으로 떨어지는 낙차가 컸던 사람들이고, 급격하게 전락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시도 등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다. 이들은 때문에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 다른 여느 노숙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위해, 혹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열망하며 일을 할 동기를 찾고 있었다. 그런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직접 겪어본 노숙인 복지에 헌신해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쉼터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현재 새로 만난 여성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 여자를 지키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혹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신에게 돌아올 남겨진 재산 등을 언젠가 찾아서 재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몸이 아프고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새로 맞이한 식구를 위해서, 혹은 별거하고 있는 식구들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애를 쓰는 사례들의 예는 다수였다. 대표적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례2의 경우,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집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할 수 있는 한 일을 해 나가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사례51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거리노숙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방향을 하며 몇 년 동안 술에 젖어 살던 사례58 역시 어머니의 간곡한 눈물로 마음을 다잡고 하루아침에 노숙인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독립생활을 한 뒤 일용노동을 성실히 하여 매입임대주택을 얻어 어머니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나 가족 등의 기제가 없는 사람들 중 일부는 노숙 현장에서 자신이 또 다른 역할을 찾으면서 일을 할 동기를 찾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례13, 51, 60 등이 노숙인 시설에서의 봉사과 자활 근무의 경험을 토대로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관리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원동력을 얻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긴 거리노숙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생활의 회복은 심신의 안정 이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사례60의 경우, 자활근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복지사의 꿈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무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떠한 목표 의식이나 일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내 일의 밀도가 떨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태도가 나타났다. 사례43이 대표적이었다. 이 참여자는 B2그룹에서 가장 B1의 첫 번째 노숙 진입 경로에 가까운 노숙화를 경험한 사례이다. 즉,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30대에 이른 사업 진출로 실패를 겪고 부도를 낸 뒤 이혼하고 이후 노숙인이 되었다. 채무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숙 이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큰 제약이 없었다. 때문에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기사로 일을 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돈을 벌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지자 동료들과 어울려서 유흥을 즐기는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대처를 하면서 결국 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잡아줄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3) 복지서비스 이용

중장년노숙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표 7-14>, <표 7-15>에 정리하였다. 이들의 서비스 이용의 핵심 역시 일시보호시설, 자활, 요양, 재활시설을 통칭하여 부른 쉼터의 이용이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B1그룹의 1명의 사례를 뺀 전 사례에서 쉼터 이용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노숙인 하위 그룹들 사이에 쉼터 이용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맨 먼저 지적할 것은 B1그룹의 경우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쉼터의 이용 보다는 방으로의 이행을 선호하고 그것을 확보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신이 쉼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봉사, 혹은 사명감으로 혹은 자활참여의 일종으로 관리직과 유사한 형태의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B1그룹에서 나타나는 쉼터이용, 혹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중 특이한 점은 자신과 다른 노숙인들을 다소 다른 부류로 인식하는 태도였다. 쉼터생활에 의존하는 것을 좋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빨리 이 곳을 떠나야 할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쉼터를 떠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쉼터에 무작정 머무르는 사람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B2그룹은 우선 참여자들 중 다수가 현재 쉼터에 머무르고 있었다. B1그룹과 노숙 진입 경로가 비교적 유사하고, 더 나이가 젊은 사람들임에도 이들이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들이 있는 혹은 경험한 쉼터의 종류를 살펴보면 알코올 문제를 치료하는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의 경우가 발견된다. 또한 장기간 생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돌봄과 케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활쉼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1그룹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일시보호시설, 즉 하루하루 이용권을 끊고 들어와 잠을 자고, 별다른 돌봄이나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이는 이들이 잠자리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들은 독립 생활을 할 만한 건강상태가 아닌 경우, 전과기록 등으로 인해 사회에 나갈 수 없는 경

우, 알코올 문제 등으로 혼자서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돌봄을 제공해 주는 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례들이 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알코올 문제나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과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요양 혹은 재활쉼터, 혹은 병원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재활쉼터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미 그런 곳들을 여러 차례 모두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일정 정도의 치료 혹은 요양의 기간을 마치고 난 후 돌봄이 필요하고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갈 곳이 없는 경우 이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곳들은 특정 재활시설들이었다.

<표 7-14>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관계: B1그룹

	현재 거주지	복지서비스이용	사회적 관계	
			가족연락 여부	내용
2	쪽방	쉼터, 동부시립병원, 국립의료원 쪽방지원사업 여성노숙인과 함께 생활하여 쉼터에서 생활하기 불가능.	O	어머니와 연락을 취함. 여성노숙인이었던 '집사람'과 동거중.
8	쪽방	쉼터생활, 쉼터의 방값 지원, 서북병원 입원 8개월	X	노숙 이후 가족과 연락하지 않음.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
13	쉼터E	쉼터 3곳 이용	O	가족들과 연락은 드물게 함. 친한 친구 1명과 연락. 노숙인이라기보다 복지사의 자세를 가짐.
21	쉼터A	쉼터이용, 희망근로참여	O	처가에 있는 아내와 두 딸과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 악착같이 벌어서 돈을 보내고 있음. 자기가 노숙인 쉼터 생활을 하는지 아무도 모름. 알게 되면 자리산으로 들어가 버릴 것.
28	쉼터A	무료급식, 쉼터이용	O	가족들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을 전혀 모름.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동네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갈 엄두가 안남. 작은누나와 통화. 노숙 동료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음.
33	고시원	쉼터 여러 군데 다님. 주거비 지원, 교회구제금, 무료급식, 수급	O	가족과의 재결합 기대. 연락하고 지냄.
47	고시원	자활	X	집을 나온 이후 가족만난 적 없음. 아는 사람을 만나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질까봐 쉼터이용안함.
54	쉼터I	인문학프로그램, 쉼터생활	X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연락하지 않음. 쉼터생활 중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58	매입 임대 주택	자활, 수급, 매입임대, 홀리스 행동참여(노숙인자조모임)	O	공원에서 3-4년간 노숙 동료들과 어울렸고 어머니의 눈물이 계기가 되어 무리에서 빠져나와 방을 얻어 생활. 어머니와 함께 매입임대주택에서 생활중.
61	매입 임대 주택	인문학프로그램, 매입임대주택, 무료치과치료, 결핵치료, 쉼터(일시보호)	X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없음. 인문학프로그램에서 만난 노숙인 소그룹(풍물) 참석. 사회생활 할 때의 친구들도 연락하고 만나지만 거리노숙기간 10일은 절대 말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자활시설은 근로를 통해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곳이지만 다수의 요보호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간 자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삶을 유지하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것마저도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금주를 결심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금주 결심이 스스로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중 다수는 쉼터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장년노숙인들이 어떠한 시설에서 생활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발견되는 공통적 태도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사례14의 경우는 자신이 노숙인이기도 하거니와 전과 기록을 가진 전과자임에도,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떳떳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일을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참여자: 힘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전과자라고 놀려도 그걸 너무 뭐, 뭐 나는 전과라도... 그러가지고 신경을 안 써요. 다들 전과자 그러든 말든 왜냐면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은 별 그거 신경을 안 써요. 왜 내가 떳떳하니까요. 내가 일을 다니잖아요. 내가 일을 안다니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쁜 놈으로 보지마는, 아 내가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하잖아요.(14)

특이한 점은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기관인데 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곳에 와서 자원을 쓰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항의에 대해서도 일 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듯 했다.

참여자: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인 그렇게 얘기는 안하는데 농으로, 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냐면 나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돈 없는 사람들도 많고 담뱃값도 없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돈 있는 사람이 줄 서서 밥을 먹느냐, 잠을 자느냐” 이런 식으로 농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너희들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일을 한번 해봐라. 일을 해 보고 돈이 귀중한 걸 한 번 알아봐라. 그런 다음에 나한테 얘길 해라. 왜 나한테 와 가지고 담배 없다고 한 개비, 두 개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한 번 해결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지금은 아무도 얘길 못해요. 여기는 거의... 거의 80%가 이 생활에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먹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정말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번씩 나가고...(28)

〈표 7-15〉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관계: B2, B3그룹

	현재 거주지	복지서비스이용	사회적 관계	
			가족연락 유무	내용
B2그룹				
10	쉼터E	쉼터(재활, 자활) 두 곳 이용 시립병원, 알콜 전문병원 이용	O	부모님 댁에 전화연락, 왕래를 함. 친한 노숙인동료 1~2명 있음.
25	쉼터I	쉼터이용(동일 자활쉼터 3회), 시립, 국립병원입원 (다른 병원 3곳)	X	여동생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남동생에게 연락했으나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35	쉼터F	여러 종류의 쉼터 약 5-6 곳 이용, 공공근로	X	사생이이고 키워주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심.
43	쉼터A	여러 종류의 쉼터 5군데, 병원입원	X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7남매 모두 의를 완전히 끊고 살고 있음. 전화 안하고 지낸지 5년 정도 됨.
49	짬짬방/쪽방	쉼터(중간, 재활)	X	사기를 치고 간 첫 번째 처를 잡으러 다닌다고 함. 동료 노숙인들과 잘 알고 지냄.
50	쪽방	쉼터(일시보호 2곳)	X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이 없음. 남을 잘 믿지만 이용당하고 사기를 많이 당함.
B3그룹		B3그룹		
5	쉼터I	쉼터(요양, 자활) 두 곳 이용 시립병원(상해치료)	X	가족과의 관계 단절.
14	쉼터E	쉼터(자활 2곳) 이용, 자활참여	X	자신의 범법행위와 전과 등으로 가족들과 연락 끊김.
26	쉼터A/거리	쉼터(일시보호), 무료급식, 생필품지원	X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며, 쉼터에 새로운 노숙인이 들어오면 말을 걸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줌.
30	쉼터A	쉼터(일시보호 2곳)	O	귀향을 계획 중이며 이들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음.
48	임대아파트	쉼터이용, 자활	X	가족과는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낸 전화로도 주로 일과 관련된 연락만 주고 받음.
51	매입임대주택	쉼터이용, 자활, 노숙인당사자모임	X	가족과는 연락하지 않고, 노숙 이후 알게 된 여성과 임대주택에서 동거 중
55	쉼터I	무료급식, 쉼터 여러 곳	X	오랜 노숙기간에도 특별한 경험이나 관계설정 등이 보이지 않음.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됨.
60	매입임대주택	무료급식, 구제금, 일자리 갖기사업, 임대주택지원 등	X	동료노숙인들과 어울려 거리노숙, 공동생활. 노숙인옹호단체 활동가 이외에 연락하는 사람 없음.

이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논의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하며 나름의 생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컴퓨터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낭비이며 불필요한 일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숙식제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난 자활의 의지를 회복하고 심리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컴퓨터를 위시한 지원서비스는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다. 진작 알았더라면 거리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신적으로 자신을 잡아주고 있는 컴퓨터에서의 생활과 돌봄이 없어질 경우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동시에 내비치고 있었다.

4) 사회적 관계

한편 중장년노숙인 각 그룹에서 두드러진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유지의 정도였다. 특히 B1그룹의 결혼 경험이 있는 사례들의 경우에 가족 갈등과 해체가 실업, 사업실패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였고 이혼, 별거 등의 문제를 겪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례들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재결합과 관계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적으로 매달 번 돈을 가족의 생활비로 송금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B2, B3그룹의 다수, 그리고 소수의 결혼 경험이 없는 B1그룹의 일부 사례들은 원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부재, 사망 등의 상황에서 철저히 가족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부모는 이미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후 남겨진 형제들과의 관계는 거의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연락을 취하면서 함께 생활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노숙 상황 중에서도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가족이 동기부여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의욕이 없고 일 역시 지속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B1그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 노숙 상황에 처해 있는 일반인들 혹은 자기가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의 삶과 노숙 이후의 삶과의 괴리가 큰 사람들인데 반해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고, 일부 노숙 이전 사회생활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자신의 노숙 상황이 가족과 지인

들에게 알려지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 싶긴 하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사례47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서울 출신이어서 더욱 아는 사람을 혹여나 노숙인 쉼터에서 만나게 될까봐 쉼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례21 역시 현재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만약 자신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리산으로 숨어들어가 버릴 것’이라며 노숙인이 된 것이 들통 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사례28의 경우도 자신의 가족들은 자신을 찾고 있을 테지만 숨어 지내는 형편이라고 했다.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한데 고향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가족과의 재결합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참여자들 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소수의 참여자들은 노숙 중 만난 여성 노숙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심신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거녀와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쉼터생활 대신 쉼터 옆에 박스로 집을 지어 놓고 함께 노숙을 하고 있는 사례2, 어렵게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의 남는 방 한 칸을 다른 여성노숙인에게 내 주면서 동거를 시작한 사례51이 그에 해당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생활과 수입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 보였다. 혹은 노숙상황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는 경우 노숙인들은 노숙 생활에서의 삶에 나름의 의미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13, 사례54는 노숙인 옹호단체에서 노숙인 당사자 활동을 하거나 쉼터에서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비록 자신이 노숙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 혹은 그들의 거주 공간에서 역할을 찾고 개인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이 정돈된 모습이였다.

요컨대,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경험은 노숙 이전의 극명한 차이와는 대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우선 노숙 상황의 돌입은 노숙 이전의 사회적 자본과의 철저한 단절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노숙 이전에 어떤 경험, 어떤 관계를 가졌었는지 노숙 이후에는 모든 자원은 끊어졌다. 그러므로 노숙 이전의 경험은 노숙 이후에는 사실상 큰 실제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B1그룹이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관계가 재정적 지원 혹은 가족 간 재결합 등의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노숙 이후의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노숙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의 노숙 이후 생활의 유사성은 노숙 이후 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이 노숙을 벗어나거나 다른 방식의 삶을 살려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거나 편차가 있든지, 혹은 사회적 지원체계가 다양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력으로 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일당이 거의 비슷한 일용직 일 아니면 자활뿐이었다. 중장년의 노숙인들이 주말만 되면 경마장에 몰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복지서비스 역시 천편일률적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쉼터, 무료급식, 절기가 되면 제공되는 몇 가지의 선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한된 주거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을 구하거나 계속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소화해 내면서 저축을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지와 돌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똑같이 절실한 많은 경쟁자들을 제쳐내고 그것을 획득하기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제2절 청년노숙과 장년노숙의 비교

본 절에서는 청년노숙인은 기존의 노숙인 복지와 연구에서 다루어지던 중장년노숙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그리고 청년기에 노숙을 시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청년과 중장년노숙인의 대표 그룹인 20-30대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인(A1)과 40대 이후 노숙에 진입한 중장년노숙인(B1)을 비교함으로써 청년노숙인과 중장년노숙인이 얼마나 이질적 집단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는 청년기 노숙 진입을 경험한 청년노숙인(A1)과 중장년노숙인(B2)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 차이가 동일한 청년기 노숙을 경험했지만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점의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부터 노숙에 진입한 두 그룹인 A2그룹과 B3그룹의 차이 역시 검토해 보겠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사회 경제적 기대, 압박, 조건의 악화와 그로 인한 청년들의 독립이행의 악화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인구학적 특성, 독립이행, 그리고 노숙 위험요인의 비교

먼저 청년노숙인(A1)과 중장년노숙인(B1)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다. 이 두 그룹의 특성은 서로 매우 달랐다. 청년과 중장년이라는 연령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연한 차이뿐만 아니라 결혼, 노숙 전 사회생활과 일 경험, 주거독립이라는 독립

이행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학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쪽 그룹에서 약 50%정도가 대학을 다녀 본 경험이 있었다. 장년노숙인이 청년노숙인들에 비해 학력이 낮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년노숙인 그룹이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독립 준비기간을 더 길게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년노숙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에 더 일찍 진출하였음에도 이들의 노숙 이전의 일 경험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청년노숙인들이 한 분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반면 앞서 살펴본 바대로 중장년노숙인 그룹은 적어도 수년 동안 한 직장, 혹은 한 가지 직종에서 근무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중장년노숙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안정적인 결혼으로 이어졌다. 청년노숙인들의 평균연령이 30대 중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명 중 동거를 포함한 결혼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중장년그룹에서는 5명만 결혼을 하지 못했다. 다수가 결혼을 통해 원가족을 떠나서 새 가정을 꾸렸고 주거의 독립 역시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남성들에게 있어 결혼을 통해 안정감과 책임감을 얻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핵심적인 독립 이행의 과업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남성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지탱해 주는 새로운 지지망의 역할을 해준다. 특히 원가족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특히 남성들에게 가족이라는 관계망은 매우 협소해지고 위축되기 때문에 자신이 꾸린 새 가족의 존재여부는 사회적 고립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20-30대에 공통적으로 노숙에 진입했던 A1그룹과 B2그룹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자. B2그룹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결혼 경험의 차이이다. 결혼은 축적된 인적자본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담보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A1그룹과 학력이나 노숙 전 일 등에 있어서 잘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B2그룹의 결혼 경험은 확실히 A1그룹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노숙 전 일 경험일 것이다. A1그룹과 B2그룹의 평균 노숙진입시점이 공교롭게도 34.3세로 같지만 노숙 이전의 일 경험은 B2그룹에서 약간 더 안정적인 사람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몇 몇의 사례에서 한 직종의 일을 10년, 15년씩 했던 경험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직종에 일을 했었지만 A1그룹이 경험한 일에 비해 경험한 일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근무력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안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는 시기였음을 짐작케 한다. 순환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 역시 더 가능성이 높았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A1그룹과 B1, B2그룹의 노숙 위험요인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차이가 추가

로 발견된다. 특히 가족요인은 중장년노숙과 청년노숙에게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내용은 다소 달랐다. 중장년노숙인들의 가족요인은 많은 부분이 새로 꾸린 가정의 문제였다. 원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례는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노숙인들의 가족 요인은 모두 원가정의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원가정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반면 청년노숙인들은 중장년노숙인들보다 성인기 비행이 적었다. 그러나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노숙인이 중장년노숙인에 비해 독립이행의 어려움을 훨씬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원가족의 문제들로 인해 집에서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B1그룹이 A1, B2그룹에 비해 여러 위험요인이 낮았던 것은 확실하다. 특징적인 것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A1그룹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위험요인 중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리고 극명하게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중장년노숙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의 차이였다. 청년노숙인들이 경험한 사회적 위험은 노숙 전후를 막론하고 중장년노숙인들의 경험에 비해 훨씬 심각했다. 중장년노숙인들이 사기, 보증 피해 등을 입었던데 반해, 청년노숙인들이 경험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법적 피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특히 신용문제에 있어서 A2그룹 청년노숙인들의 상황은 다른 모든 그룹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심각했고 이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큰 제약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2. 노숙 진입 경로의 비교

우선 청년노숙인과 중장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청년노숙인의 하위 두 그룹, A1, A2그룹은 각각 두 개의 노숙 진입 경로의 패턴을 갖고 있다. 이 중 A1의 첫 번째 경로는 이론적 논의에서 독립이행 실패의 경로로 예상했던 패턴으로서 생애 과정 중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청년기에 사회 구조적 위험을 만나면서 일시에 노숙으로 전락한 사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체계가 확보되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쉼터나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면이 특징이었다. 두 번째 경로는 구조적 위험이나 사회적 피해, 그리고 가족위험의 영향이 개인요인 중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였다. A2그룹의 첫 번째 경로는 개인적 요인이 청소년기의 비행이라는 측면에서 앞의 경로와 차이를 보였다. 선행하는 위험들은 유사했지만 이들은 청소년기에 가출, 무단결석, 퇴학 등의 비교적 공통적인 비행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른 시기에 노숙을 경험하였다. A2그룹의 두 번째 경로는 구조적 위험이나 사회적 피해 요인이 유년시절에 크게 없었

으나 핵심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기 비행을 경험하게 된 사례들이었다.

중장년노숙 하위 그룹 중 B1, B2의 진입 경로는 앞서 살펴본 바 대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실패, 부도 등의 위험에 개인의 가족 해체를 경험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되는 전형적 중장년노숙의 경로와 두 번째는 주로 미혼의 상태에서 불안정한 직업력을 갖고 있다가 이후 개인적인 비행이나 생활 관리의 실패 등을 경험하다가 사회적 피해를 경험하면서 노숙에 진입하게 되는 경로였다. B3그룹의 경우는 A2의 두 번째 경로와 유사하게 구조적, 사회적 피해의 원인 없이 가족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청소년기의 가출이 노숙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등장하였다.

한편 청년기 노숙 경험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A1그룹과 B2그룹을 비교해 보면 진입 경로상의 차이가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2그룹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회 생활에 이은 사업실패가 가족관계의 불화를 불러 일으키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A1그룹에서는 사업 실패나 사기 등의 사회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완충할 기제가 없기 때문에 곧장 노숙을 경험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B2그룹의 경우 미혼자의 경우에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양호한 건강을 유지한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청년기의 비행 혹은 사회적 피해 경험의 결합이 노숙을 초래하였다. 반면 A1그룹의 경우는 일 경험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더 단발적이고 분절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하는 취직 이외의 경로에 시간을 들이거나 가족에게 기대어 독립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가능한 선택지들을 활용하면서 독립을 미룰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혹은 이른 경제적 독립으로 생계를 위한 일용직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B2그룹의 두 번째 경로인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노숙 진입 경로는 A1그룹이 아닌 A2그룹의 주요 경로에 더 가까웠는데 이것은 그만큼 A1그룹이 가졌던 개인요인, 즉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개인문제가 최근 청년노숙인의 생애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경험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취약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청년노숙인의 특징적인 진입 경로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2그룹과 청소년기 가출 및 노숙의 공통적 경험을 한 B3그룹의 경우, 노숙 진입 경로는 B3그룹의 적은 사례수로 인해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특징이었던 모든 경로에 개인 위험요인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가족 문제로 인한 가출과 비행이 노숙의 경로로 작용하는 것임을 양 쪽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노숙 이후의 생활

청년 A1그룹과 중장년노숙 B1그룹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노숙 위험요인, 노숙 경로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주거, 일,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년노숙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조금 더 잘 접근하고 있었을 뿐, 대체적으로 일용노동과 공공근로성 일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일에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장년노숙인이 청년노숙인에 비해서는 일을 하는 종류가 한정되고 좀 더 꾸준히 일을 하는 양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노숙인들은 당장 쓸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데 반해, 중장년노숙인들은 비록 쉼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십만원의 비상금은 가지고 있었다. 거주지에서도 두 그룹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청년들이 고시원이나 PC방, 사우나 등을 더 자주 이용하는가 하면 중장년층은 쪽방을 이용했다는 보고가 더 많았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생활이 중장년에 비해 쉼터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꽤 많은 중장년노숙인들이 방을 얻어서 생활 하거나 쉼터 내에서도 갈 데가 없어 쉼터에 머무르기보다 쉼터 내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역할을 찾아가고 있던 것과는 대조된다.

한편 청년노숙인들과 B2그룹을 비교해 보면 양쪽 그룹 모두 쉼터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유사하지만 쉼터에서의 생활 양상은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던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잠을 자고, 무료 석식을 먹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것,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등 기능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이는 사실상 일시보호의 기능에 부합하는 욕구 충족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노숙인들은 그러한 수준 이상의 심층면담이나 돌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 실상은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이 시설에서의 개입을 환영하지는 않는 듯 했다. 그런 면에서 일시보호시설이라는 유형의 쉼터는 그들이 원하는, 즉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숙식과 일자리라는 절대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청년들 중 일부에서는 자활시설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한 방에서 중장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한 불편들을 감수하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중장년노숙인들과 섞여 있지만 서로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공간을 함께 쓰기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듯 했다. 반면 B2그룹의 몇 사례가 기거하고 있던 자활시설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특히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에 따른 더 적극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시설에서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원

하고 자신이 시설을 나갔을 때 또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을 우려하여 시설 생활을 더 연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편 청년노숙인들은 중장년노숙인들에 비해 쉼터 이외의 다양한 거주지로의 이동, 다른 쉼터로의 잦은 이동을 통해 변화를 피하려는 시도를 해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쉽게 좌절되고 지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청년노숙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문제 상황으로 자리 잡아 있는 신용불량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기의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차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정도에 있다고 판단된다. A1그룹과 B1그룹을 비교해 보면 두 그룹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가족과의 관계 정도였기 때문이다. 관계가 모두 단절된 청년들의 상황은 가족과의 재결합, 누군가를 책임지고자 하는, 혹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자 노력하는 중장년노숙인들과 비교해 볼 때 청년노숙인의 고립과 외로움의 깊이가 매우 깊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중장년노숙인들의 경우, 어느 그룹이던 꽤 긴 사회생활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반면 청년노숙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해 본 일들도 훨씬 제한적이고 경험 역시 일천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년노숙인들은 쉼터생활로부터 탈출을 모색해 보지만 사회는 더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독립생활의 경험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장년노숙인들의 경우 가정을 꾸려보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청년노숙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독립적 삶의 경험 부재는 그것을 추구하는 열망 역시 부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당연히 쉼터가 아닌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며 당연한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더 무뎠어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8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과 논의

본 연구가 주목한 청년노숙인은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그 안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했던 하위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는가? 또한 이들은 기존의 노숙인의 전형으로 보아 왔던 중장년노숙인과는 이질적인 그룹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구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 이다.

1. 청년노숙의 특성과 하위 경로의 차이

1)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전 경험

연구에 참여한 청년노숙인들은 기존 청년노숙 연구가 다루던 2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과는 달리 주로 30대가 많았고 일반적인 청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저학력과 낮은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했던 A1그룹에 비해 청소년기부터 노숙을 경험했던 A2그룹의 인적자본이 더 낮았다. 후자의 경우 특히 낮은 학력과 학력 단절의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 결혼 경험은 청년노숙인 전체 사례에서 단 두 사례에서만 발견되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위험요인을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우선 공통점이라면 기본적으로 각 청년들이 경험한 위험요인은 매우 다차원적이면서도 중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통의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노숙인이라는 묘사는 이들에게서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적합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그간 많이 거론되었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 문제였다라기 보다는 문제적 가족 요인이 더 심각했고 광범위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맞기도 했다. 물질적 빈곤이 아닌 정서적 빈곤과 피해가 이들을 더욱 불행하게 하고 있었다. 청년노숙인들이 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기반이 되어야 할 가족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한 곳이었다.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청년노숙인들은 가족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로부터 온 고통과 혐오, 상처를 성장과정에서 지난하게 겪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것을 이겨내느라 힘겨운 상황이었다. 가족으로부터 청년노숙인들이 받은 피해(victimization)의 경험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가

족 내의 피해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분한 사회적 피해 경험과 같은 위험들은 청년들을 직접적인 노숙의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그간의 노숙에 있어서의 피해의 경험은 가족 내의 신체적, 성적 학대, 혹은 노숙 이후의 범죄피해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청년들이 당한 피해는 가정밖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사기 피해, 법적 피해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공통적으로 가족요인과 사회적 피해 요인을 경험한 가운데 청년노숙 두 그룹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개인요인과 사회요인이었다. A1그룹의 개인요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A2그룹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으로부터 비롯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개인의 비행 요인이 더 두드러졌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부터 노숙을 했던 노숙인들은 더 많은 개인적 문제, 약물,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 오래 노숙을 했었다고 하였다(Chamberlain and Johnson, 2011; Collins, 2013). 또한 노숙 이전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더 많이 경험한 경우 더 빨리 노숙을 하고(Koegel et al., 1995), 더 이른 시기에 노숙을 시작할수록 노숙의 기간도 길어진다고 하였다(Yoder et al., 2001). A2그룹은 A1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특히 개인요인의 경험 정도가 더 많았다. 이는 성인기에 경험한 개인 위험요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알코올 문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거나,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등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청년기에 더 일찍 노숙에 진입했고, 당연히 노숙 기간 역시 더 길었다. 한편 사회 요인의 경우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A1그룹은 노숙 전 경제적 피해 경험이 많았던 반면, A2그룹은 노숙 이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이 많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었다. 최근의 연구는 노숙인들의 어린 시절의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다시 피해자가 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Edalat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A2그룹에서 노숙 이전의 피해 경험과 노숙 이후 피해경험이 더 많이 확인된 것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핵심위험요인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성을 고려하여 청년노숙 진입 경로를 추적해 보았다. 노숙 진입 경로는 Nooe와 Paterson(2010)의 지적처럼 인과적 틀을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즉, 복잡성의 속성을 가진 노숙의 원인요소들은 선형적 인과관계(linear causation)로 나타나기 보다는 통합(integrated)되고, 상호작용(interaction)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Williams(2001)의 지적처럼 복잡한 결과를 일으키게 된 시스템, 혹은 구조의 유산들을 포함한 선행하는 조건들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노숙 원인 연구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과정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Fitzpatrick(2005)의 지적처럼 본 연구의 노숙 진입 경로 분석에서도 노숙의 원인은 단일차원이 아닌 복잡한 인과기제들로 연결된 복합

적 환류적 고리(feedback loops)이며, 그것은 각각의 개별적 구성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복합성의 요소로 발현(emerging)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과정도 단선적이지 않고(non-linear)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고, 작은 변화가 갑작스럽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노숙 하위 두 그룹의 노숙 진입 경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그룹에서 노숙 진입 경로는 개인요인의 성격과 사회요인의 경험 여부에 따라 각각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우선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A1그룹은 개인 요인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경로로 구분되었다. 개인요인이 없이 가족 문제에서 구조·사회 요인으로 인해 노숙에 진입하게 된 경로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경우 구조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선행하였고,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유하여 사회적 피해 요인을 만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었다. 반면 청소년기 노숙 경험 그룹은 구조·사회 요인을 경험한 사례들과 경험하지 않은 사례로 경로가 양분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구조요인 혹은 가족문제를 출발로 그것이 개인의 비행과 일탈을 가져오고 그 상황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비행이 증폭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된 경우들로 개인의 일탈,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결과로 노숙에 진입하였다. 노숙에 영향을 미쳤던 마지막 사건이 구조·사회 요인이었던 사례는 오히려 소수였고 A1그룹보다도 적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청년노숙인 하위 그룹에서 각각 2개의 서로 다른 경로가 제시되어 총 4가지의 노숙 진입 경로가 도출된 것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설정했던 가설적 경로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적 요인 없이 노숙에 진입하는 경로를 보인 A1그룹의 4사례의 패턴이 이론적 가정에서 제시하였던 ‘독립이행실패’ 경로를 따르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로는 예상보다 소수였다.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사례들은 ‘독립이행의 실패’를 겪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상 청년노숙인 모두가 독립이행의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해야 맞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이 없이 구조, 가족, 사회요인에 의해 독립의 실패를 경험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경로와 구분되는 경로라 할 수 있다. A1그룹의 나머지 하나의 경로는 이론적 논의에서 확실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였다. 주로 개인의 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독립실패와 노숙이 A1 그룹에서 다수 사례의 경로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A2그룹에서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다. 한편, A2그룹에서 예상했던 주요 경로는 새로이 구분했던 사회적 요인의 경험이 부각되면서 두 개로 갈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단순히 개인적 비행과 일탈, 혹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위험요인을 증폭시켜 노숙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증폭된 위험요인은 바로 개인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피해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청년노숙인 두 그룹은 독립 이행의 분석결과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A1그룹은 청소년기부터 노숙을 경험한 A2그룹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의 독립 가능성을 가진 그룹이었으나 독립의 계기나 시기와 독립의 내용적 측면을 통해 판단해 보면 이들은 독립 준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원가족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서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가지 독립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들 중에도 청년노숙인들이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을 받는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했다면 그들의 독립은 꽤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숙 전 이들이 경험한 일자리들은 대체로 급여수준이 낮고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일자리 특성에 더하여 청년 개인이 가진 불안정성은 일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겼다. 반면 A2그룹은 독립 준비기간 자체가 부족했고, 주거독립의 계기에서 원가정에서의 도피와 탈출 사례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A2그룹은 청소년노숙 경험을 공통 특성으로 하고 있는 그룹으로 이것은 학력의 단절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는 독립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독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낮은 학력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청년노숙인의 독립 이행에 관한 분석결과는 ‘청년의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 혹은 ‘청년은 부모에게 더 의존하고 있다’는 청년의 독립과 관련한 일반적 논의와 차이가 있다. 이들 위기의 청년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른 시기에 불가피한 독립을 감행했고, 그들의 의존과는 거리가 먼 내몰리거나 이탈 혹은 거부의 독립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청년의 독립 준비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의 계급에 따른 계급화 된 가족 상황에 휘둘리며 이루어지고 있었고(정민우이나영, 2011), 원가족과 절연된 상태인 청년노숙인들에게 있어 독립이란 사실상 별판에 홀로 내팽개쳐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청년노숙인의 상황은 정수남 외(2012)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빈곤 청년들의 독립 이행의 경험과 매우 유사했다.

2)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생활

앞서 살펴본 바대로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전의 상황은 두 그룹에서 특징적인 다른 면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노숙 이후의 주거, 일,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에서는 두 그룹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지의 경우, 양쪽 그룹의 거의 모든 사례에서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었고, 쉼터 여러 곳,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고시원과 여인숙, 병원과 교도소, 친구의 집이나 원가족의 집 등을 빈번하게 오고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의 경우 다수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특히 쉼터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 참여의 경험이 공통적이었다. 복지서비스 이용의 경우, 소수의 참여자들은 쉼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은 쉼터를 중심으로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가족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끊은 상태였고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노숙 동료들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가장 핵심적인 노숙 이후 생활에서의 특징은 쉼터에 의존하고 있는 청년노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노숙인은 숨어있는 노숙(hidden homelessness)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다소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수행한 청년노숙인 연구(飯島裕子, 빅 이슈-基金, 2011)에서 일본의 청년노숙인의 특성을 가급적 노숙인 지원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보이는 거리노숙을 하기 보다 불안정한 주거를 감내하며 옮겨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 것과도 다르다. 물론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진짜 숨어있는 청년노숙인에게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쉼터에서 접촉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숨어있는 노숙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PC방이나 찜질방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시도를 이미 해 보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노숙인의 거주상태에서 확인하였다. 이들은 숨어있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 상태였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숨어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럴 경우 쉼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시설중심의 노숙인 지원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쉼터가 많지 않고, 쉼터로 입소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거리 혹은 다른 숨을 장소 두 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는 특히 일시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진입장벽이 낮은 시설 지원체계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숨을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중장년노숙인과 청년노숙인의 차이

청년노숙인의 특성을 다수의 전형적 노숙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장년노숙인과 비교해 봄으로써 청년노숙인들이 구분되어 연구될 독특한 성격을 가진 그룹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중장년노숙인들의 특성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이들 역시 노숙 진입 연령에 따라 하위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 차이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노숙인의 구분은 욕구에 따른 구분,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구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들의 노숙력, 다시 말해 이들의 노숙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을 시도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개인의 생애 과정상에서 노숙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이들이 언제 노숙에 진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중장년 노숙인의 특성

중장년노숙인들은 40대 이후 중장년기 노숙 진입, 청년기 노숙진입, 청소년기 노숙 경험자들을 구분하여 각각 B1, B2, B3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노숙인생애사자료」의 전체 중장년노숙인 중 40대 이후 노숙에 진입한 B1그룹의 분포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여 24명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중장년노숙인 모집단의 분포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장년노숙인들 중 다수는 40대 이후 노숙 진입자들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B1그룹의 사례는 10명이었고, 청년기 노숙에 진입한 B2그룹은 6명, 청소년기부터 노숙을 경험한 B3그룹은 8명이었다. 우선 B1그룹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50세 가량의 남성들로 약 47세경 노숙을 시작하고 약 3.5년 가량의 노숙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무리 없이 진행하여 독립에 성공하였으나 성인기 이후 특히 사업실패나 실업과 관련한 일 문제와 가정생활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의 비행 요인들도 높아졌고 이런 과정에서 노숙에 진입하였다. B2그룹의 경우는 B1그룹과 노숙 진입 시점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B2그룹의 경우 B1그룹보다는 6년 정도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약 34.3세 경 노숙에 진입하여 평균 노숙 기간도 약 10년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B1그룹에 비해 학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소년원에서 생활했거나 학력미달 등으로 인해 군복무 경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성인기 진입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험요인 중 가족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B1그룹에 비해 원가족에서의 역기능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3그룹의 경우, 역시 B2그룹과 마찬가지로 원가족에서의 문제가 많이 보였고 가출을 포함한 청소년기 비행의 정도가 더 빈번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요인과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후 노숙 진입 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B1그룹과 청년기부터 노숙을 했던 B2그룹 각

각에서 도출된 두 가지의 노숙 진입 경로 패턴은 대체로 유사했다. 한 그룹에서 어떤 패턴의 사례 비중이 더 크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B1그룹의 경우, 사업실패와 실업, 그로 인한 가족해체가 노숙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B2그룹의 경우에는 이에 개인적 요인이 추가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노숙으로의 진입이 가속화 된 경로가 더 많았다. 이러한 두 그룹간의 패턴의 유사성은 특히 B2그룹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특성을 가지고 다소 불안정한 측면을 가진 참여자들임에도 이들이 적어도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독립 과업의 달성을 B1그룹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90년대 초중반의 사회경제적 상황만 해도 명목상으로는 이들의 일상적 생애 과정상의 과업 달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B2그룹의 경우, 그들이 가진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안정기가 짧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른 노숙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성들의 경우 노숙 진입 시기가 다르더라도 독립이행의 중요한 결혼경험의 여부가 적어도 노숙 진입 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숙 이후 역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중장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B1그룹의 경우, 노숙 생활에 있어 쉼터보다는 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가족관계 개선이든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색이든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동기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례가 좀 더 많았으며, 여전히 과거의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노숙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자 하였다. 반면 청년기부터 노숙을 했던 B2그룹의 경우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 알콜 의존의 경향이 많았다. 쉼터에서의 적극적인 관여와 돌봄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고 붙잡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쉼터 생활에서의 우월감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B3그룹의 경우, 오히려 매입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가 많았는데, 노숙의 현재 상태는 노숙력의 영향도 받지만 어떤 노숙인 지원기관을 만나 도움을 받고 어떠한 복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2) 청년노숙인과 중장년노숙인 비교

우선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청년노숙인 A1그룹과 40대 이후 노숙에 진입한 중장년 노숙인 B1그룹을 각 연령층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그룹으로 보고 이 두 그룹을 비교하였다. 앞서 실시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 두 그룹의 뚜렷한 차이로 확인되는 것은 첫째, 이들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차이, 둘째, 독립 완성의 차이, 셋째, 노숙 이후의 사회적 피해 경험의 차이, 넷째, 노숙 이후 사회적 관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노숙인 A1그룹은 원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상당히 노출된 채 청소년기를 보냈고, 개인의 건강문제를 많이 경험하였다. 청소년기에 일탈이나 가출 등의 비행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의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이들을 괴롭혔다. 적극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학교를 마치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들은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거나 부득이하게 홀로 서야만 했다. 당장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하려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일용직에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지치기만 하고 몸만 축날 뿐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로 느껴질 뿐이었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문제들은 많은 경우가 성장과정으로부터 온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취약한 상태로 대학을 졸업했다 한들 이들을 받아줄 만한 곳은 없었다. 서른이 훌쩍 넘었음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자신의 생활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연애나 결혼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자연적으로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끝이 노숙으로 닿아 있었다.

이러한 청년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과 B1그룹의 청년기는 너무도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B1그룹의 청년기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했다고 할 수 있다. B1그룹의 인터뷰 시점의 평균연령이 51세이기 때문에 이들이 20대에 진입하던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평범한 가족 안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친 후 이들에게 사회생활의 시작은 활기찼고, 많은 기회가 열려 있었을 것이다. 설령 20대 청춘을 좀 가볍게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월급을 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 기를 수 있었다. 이들이 노숙에 진입한 평균연령이 47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15년 정도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일 저 일을 하며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 역시 40대 중반 정도 까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활동은 가능했었다. 위험요인의 경험을 보더라도 사업의 위기, 이혼, 별거 등의 위기가 있기 전까지 심각한 위험요인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노숙의 진입과 이후 노숙 상황과 관련하여 이 두 그룹이 가지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청년노숙인 그룹의 경우, 첫 번째 패턴의 참여자들은 미혼의 상태에서 사기, 이른 시기에 시작한 사업 실패 등의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곧바로 노숙에 진입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는 B1그룹의 사업 실패 유형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새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부재하였다는 점이 오히려 청년노숙인에게 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더 빨리 노숙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결혼은 남성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지탱해 주는 새로운 지지망의 역할을 해준다. 특히 원가족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특히 남성들에게 가족이라는 관계망은 매우 협소해지고 위축되기 때문에 자신이 꾸린 새 가족의 존재여부는 사회적 고립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청년노숙인의 대부분은 가족 요인과 사회적 피해 경험으로 점철된 청소년기 이전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에 피해의 상처를 안고 노숙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B1그룹에게 있어 사회적 피해의 경험은 청년노숙인의 그것과는 약간 달랐는데, 청년노숙인들이 놀림, 왕따, 가정 안에서의 폭력, 부모의 부재, 사회생활에서의 군대 폭력, 각종 사기 피해 경험 등을 당했던 데 반해, 중장년노숙인들은 사업 실패나 부도, 사기사건 등 중장년기 이후 경험하게 된 경제적 피해 경험들이 많았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파탄이 난 상황이 결국 노숙으로 귀결 지어졌고,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극한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두 그룹의 또 하나의 차이는 노숙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다. 중장년노숙인들이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여러 모양의 노숙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시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 노력하거나, 가족의 재결합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짝을 만나거나, 노숙인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노숙 생활 이후에도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년노숙인들의 경우, 이후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가족의 부재, 사회적 연결고리의 단절 등이 중요한 이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경우, 아직 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지고 있는 채무, 신용불량 등의 경제적 족쇄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무기력과 절망감,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정서였다.

한편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두 그룹인 A1그룹과 B2그룹, 청소년기 노숙을 경험한 A2그룹과 B3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얻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B2그룹의 경우는 A1그룹을 비교해 보면 A1그룹은 약 29세에 노숙에 진입했고, B2그룹은 33세경 노숙에 진입하여 진입 시기가 A1그룹이 좀 더 빨랐다. 또한 B2그룹은 A1그룹에 비해 인적자본이나 성인기 이후 개인의 비행 문제, 일부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장기간의 교도소 복역 등의 측면에서 더 좋지 않았다. 그러나 A1그룹에 비해 노숙 이전의 일 경험이 좀 더 나은 면모도 발견된다. 한 가지 직종에서 10여년 가까이 일을 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포착되는 등 일 경험의 기간이 자체가 길었던 사례들이 많았다. A1그룹

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혼의 경험도 없이 일찍 노숙을 경험하게 된 것에 반해 B2그룹의 경우 개인적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 독립을 이루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보았던 사례들도 있었다.

주로 건강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들과 젊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에 취약했던 A1그룹보다 성인기 비행과 관련한 개인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지만 독립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했던 B2그룹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차이를 청년기를 경험한 시기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B2그룹의 청년기는 90년대였고, A1그룹의 청년기는 2000년대로 경제 위기 이전과 이후로 개략적으로 나뉘어진다. A1그룹이 경험한 시기는 더 나은 인적자본을 가지고도 각종 일용노동을 전전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피폐해져 갔던 경험을 하게 만드는 시기였다. 잘 나가다가도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만으로도 여지없이 거리나 노숙인 시설을 선택하게 될 만큼 청년들에게 바깥 사회는 더욱 혹독했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가족 역시 힘든 삶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가족관계 역시 거부하고 싶을 만큼 망가져 있기도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언가 잘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거나 남들 보기에 충격적인 실패를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든 내보일 수 없는 분위기 역시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그럴수록 사회는 더욱 무섭고 청년들은 더욱 위축될 따름이었다. 반면 B2그룹이 청년기를 보낸 90년대는 적당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적당히 사회생활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구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던 개인적인 불안정성에 음주나 다소 무질서한 삶이 시기적으로 허용된 측면이 더 컸다. 노숙 이후의 생활을 보더라도 거의 가족의 관계를 끊은 청년들의 경우, 정신적 공황과 고립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일용노동으로 겨우 겨우 생활을 이어가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B2그룹의 경우는 노숙이 장기화 되어 간 탓도 있겠지만 노숙 이후의 음주, 경마 문제, 그로 인해 발생한 건강상의 이상 등으로 인해 시설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다. 청년그룹이 쉼터를 떠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B2그룹의 중장년의 경우, 오히려 쉼터에서 자신의 생활이 통제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쉼터에서 나가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 보였다.

한편 청소년기에 가출을 비롯한 불안정한 거주상태로 노숙을 경험한 A2그룹과 B3그룹의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A1, B2그룹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A2그룹이 B3그룹에 비해 노숙 진입의 시기가 더욱 빨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2그룹의 청

년기 노숙 진입이 평균 25세 가량이었던데 반해 B3그룹은 32세였다. 이들 두 그룹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의 문제들과 청소년기의 비행, 그리고 이어지는 성인기 비행이 나타났고, 그것이 고스란히 유사한 노숙 진입 경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이 경험한 가족 내에서의 피해, 사회적 피해 경험을 보면 A2그룹에서 더욱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피해의 경험은 A2그룹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했고, 특히 노숙 이후 각종 경제적 피해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노숙 이후의 절망감을 더욱 배가시켰다. 사회 경험이 없고 극단의 빈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을 타겟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한다. 특히 A2그룹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 등으로 10대 중반부터 이미 불안정한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를 그만 둔 후 했던 일 경험들이 수년간이지만 단순히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일용노동의 아르바이트 정도였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올라가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못했다.

한편 B3그룹의 경우 노숙 이후 평균 13년 가량의 긴 노숙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 A2그룹의 노숙 이후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 B3그룹의 노숙 이후는 사실 다른 중장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노숙 이후의 상황으로 보자면 B3그룹이 B2그룹보다 더 나아 보였다. 하는 일 역시 일용노동, 자활 등에 한정되어 있었고, 여러 쉼터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거나 다른 노숙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주지를 전전하여 왔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 어떤 지원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주거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A2그룹의 노숙 이후의 생활을 B3그룹과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2그룹의 청년들의 노숙 이후 일 경험은 중장년노숙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건설일용노동과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주유소, 식당, 전단지 돌리기, 식당 아르바이트, 택배배달 등 더 서비스업종에 치우쳐 있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 중장년노숙인에게는 익숙한 건설일용 노동과 같은 일은 낯설기 때문이라는 예상이다. 문제는 청년노숙인들이 중장년이 되어 40-50대가 되면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서 일용노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30대 청년들의 경우, 그들이 더 나이가 어렸을 때 하던 아르바이트에서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을 꺼려한다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런 경우, 이들이 B3그룹처럼 중장년이 되어서도 일용노동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매입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3. 논의

아무리 시대가 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젊은 청년이 노숙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희박해진 노동윤리와 그들의 자유분방한 가치관이 만들어낸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지당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었으니 의례 최소한의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길거리에서 눈에 보이는(visible) 남루하고도 망가진 모습의 거리노숙인이 청년이라면 이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쯤으로 오인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라면 청년의 실업이나 빈곤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청년의 노숙상황은 더더욱 이해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노숙인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중요한 몇 가지의 주제를 환기시키며 재론의 여지를 던지고 있다.

우선 청년노숙의 원인과 관련하여 논의해보자. 일반적으로 노숙의 원인을 노숙 직전의 주요 사건(가령, 집에서 쫓겨남), 혹은 현재 노숙 상황에 있는 이유(가령, 일을 구하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면 노숙 상황에 대한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가령,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혹은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으로 규정지으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아마도 노숙인에게 ‘당신의 노숙 원인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매우 난감해 할 것이 분명하다. 노숙의 원인은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숙의 원인을 한 사건, 한 시점에서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노숙에 대한 매우 제한적 이해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청년노숙인의 노숙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적인 전략은 시점의 확장과 과정의 추적이다. 청년노숙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노숙에 이르게 되었는지 개인의 역사를 추적하다보면 청년노숙 현상을 좀 더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년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분석은 노숙의 원인을 검토할 때 검토의 시점을 유년시절에까지 확장시켜 현재의 청년노숙인들이 유년시절부터 경험했던 많은 위험요인들을 소환해 냈다. 많은 수의 청년노숙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가족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경험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요인들은 하나하나가 개인을 휘청거리게 할 만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들이었고, 중복적이면서도 개인, 가정, 사회, 제도, 구조 등 다차원적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다차원적 위험의 희생자들(victims)로 불려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70% 이상인 우리 사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청년들의 자괴감과 반항심, 부정적 의식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며 더 큰 위험요인으로 증폭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을 사

회구성원으로 받아주는 제대로 된 일터는 없었다. 노숙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노숙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노숙경험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현재 노숙 상황만을 체크하거나 노숙을 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등 노숙 이후 노숙력 기간만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 그 노숙인의 노숙 현장, 혹은 그 노숙인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노숙이 얼마나 오래되고 만성화되었는가 이외의 정보를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따른 구분(거리 혹은 쉼터) 아니면 노숙초기나 만성화된 상태나 정도로 구분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노숙의 시작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노숙의 기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노숙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실제 분석 결과 이들의 노숙 진입 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이루어졌던 각 노숙인 그룹들의 인구학적 특성, 위험요인, 노숙 진입 경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노숙 이해의 방법적 전환을 통해 청년노숙의 노숙 이전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청년노숙인은 주류 노숙인인 중장년노숙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이들의 노숙 진입과정에서의 위험이 더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청년노숙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현재의 20-30대 청년노숙인은 더 많은 어려움을 노숙 이전에 경험하였고, 그것은 심각한 독립 이행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었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은 확실히 일, 결혼, 주거독립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후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상황이 거의 유사하였고, 이는 중장년노숙인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노숙에 진입하면서 이들이 노숙 이전 갖고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동시에 노숙 이후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역시 극히 제한적이면서도 동질적인 것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젊다고 해서 더 빨리 노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나이에 맞는 일반적인 생활, 즉 가족을 꾸리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꾸준히 일을 나가는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 추구의 의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청년노숙인들은 더 이른 시기에서부터 노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노숙의 기간이 더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노숙의 만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중장년에 비해 청년들은 더욱 탈노숙이 어려운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청년들의 탈노숙 시도는 이들의 노숙 이후의 거주지 이동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대부분 쉼터로의 복귀로 귀결될 뿐이었다. 오히려 중장년노숙인에 비해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해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한 또 다른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청년노숙 연구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노숙 원인론, 노숙 위험요인, 노숙 경로연구의 각각의 연구 경향을 통합하여 청년노숙 진입 경로로 설명해 보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노숙 원인 연구에서는 특정 원인을 위주로 노숙을 설명하거나, 노숙에 영향을 미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거나, 전형적 유형의 노숙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절적 원인적 요소들의 시간적 인과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경로로 연결되는 상황을 분석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된 패턴이 있는지를 발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그간 연구 분야의 분절로 인해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던 청소년노숙과 성인노숙의 연결고리를 밝혔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가출과 노숙은 청소년파트에서, 성인 노숙의 분야는 복지파트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둘 사이의 분절로 인해 중간에 걸쳐져 있는 청년노숙인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주거위기의 청소년이 성인기 노숙으로 진입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노숙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32세에 노숙에 진입했다. 청소년노숙이 직접적으로 청년노숙으로 이어진 경우도 5사례 정도로 포착되었다. B3그룹을 통해 보았을 때, 이들의 중장년기 역시 노숙을 벗어나리라 낙관하기 더욱 어렵다. 여전히 노숙에 남아있는 B3그룹은 노숙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숙의 위험요인에 있어 한국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요인을 발굴하였다는 점이다. 4가지 차원의 노숙 위험요인을 밝혔던 Anderson(2001)의 논의는 노숙 원인론의 4가지 차원을 가져와 이에 따른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차원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별도의 차원들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적 요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피해, 법적 피해 등이 노숙 전과 후를 막론하고 청년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른 중대한 위험요인이 부재해도 사회 요인 한 가지로 하루아침에 노숙으로 곤두박질치는 사례들도 소수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신용불량과 관련한 피해는 2009, 2010년경의 「노숙인생애조사」에서 보다 2016년의 「청년노숙인터뷰조사」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피해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청년노숙의 노숙화 과정에서 사회 요인의 확인과 그것이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

한 요소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청년계층, 특히 하위 청년계층의 독립과정의 굴절을 재확인하였다. 기존의 청년 하위계층의 독립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청년빈곤층의 연구가 존재할 뿐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청년들의 독립과 그 패턴이 다르다. 일반적인 청년들이 더 늦게 독립을 하고 더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더 많은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반면 하위계층의 청년은 오히려 더 이른 독립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자기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기회는 더 사라질 뿐이었다. 가족이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청년노숙인들에게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오히려 가족은 이들에게 끝나지 않는 원망과 한의 대상일 뿐이었다. 더 나아가 청년노숙인의 독립 실패의 과정은 청년기 독립 이행에서 계층적 성격이 약화되고, 개인화되며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계층적 성격이 공고해 지고 오히려 단순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김혜경·이순미, 2012; Furlong, 2009). 하위 청년계층은 독립 이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는 낮은 인적자본을 갖춘 하위 청년그룹에게 더욱 혹독하고 청년 내부의 계층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에 본 연구가 설명한 청년노숙인들의 삶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학력과 실업, 주거빈곤 등의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위기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청년 논의와 새롭게 수립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은 30세 전후의 청년들까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대책, 대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직장이 있는 혹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의 주거정책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30대 중반이 넘어버린 청년들의 채무 문제, 저학력으로 인한 실업문제, 이들의 주거비 가중의 문제, 고립과 소외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기가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일자리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속전속결의 단선적 접근은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들은 설령 일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와 불안정, 부재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인해 쉽게 이탈되어 떠돌 확률이 높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면서 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 속으로 부드럽게 진입하도록 할지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쉼터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제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은 노숙 이후의 청년 노숙인들의 생활 환경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립 전망을 박탈하고 의존을 재생산함으로써 청년노숙인들에게 더 큰 해악을 가져다준다. 일선의 노숙인 복지서비스 기관들은 노숙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위해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기관 내외부의 생태계는 젊은 노숙인들이 쉼터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관 밖의 환경이 청년노숙인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고립과 빈곤과 싸워야 하는 정글 같은 곳인 반면 노숙인 쉼터는 그런 정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불편을 감수하기만 하면 공짜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 밖의 사회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어느 것이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를 선택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곳이라면 좋겠지만 극심한 청년실업의 한파 속에서 집이 없고, 보호자가 없고, 인적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환영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자연히 청년들은 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노숙인 기관들은 청년을 포함한 노숙인들을 자립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보호를 기관의 목적으로 표방하는 복지서비스 기관이 대안이 없는 위기의 클라이언트를 비보호 상황으로 몰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보호중심의 체계 이외에 다른 서비스가 극히 부족한 상황의 지속은 노숙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노숙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시보호쉼터 중심의 정책 체계가 주거중심 체계로 전환되면서 많은 일시보호쉼터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관은 주거에 더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할 전환을 꾀하여 왔다. 이러한 서비스지원과 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노숙인지원 체계는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자, 혹은 만성 거리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지만, 청년노숙인에게도 지원주거 형태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의 노숙인 정책에 있어서도 시설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노숙의 위험요인의 도출 결과와 청년노숙 진입의 경로 확인을 근거로 노숙에 직접 포착되지는 않지만 노숙의 가능성이 높은, 특히 이른 시기에 노숙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노숙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족문제로 인해 주거 상황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청소년들, 정신건강 상 위기에 놓여 있는 청년들 등 이들이 20대 이후 경제활동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거리나 노숙인 기관 이외에는 그리 많지가 않다. 각종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노숙에 도달하기

전 극도의 빈곤과 심리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 청소년 기관 등에서 선제적으로 좀 더 강화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숙 상황은 또 다른 많은 위험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바 노숙 전에 노숙의 유입을 막는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노숙인이 경험하는 노숙 이후의 피해 사건에 대한 문제에 더 구체적인 피해방지과 구제 접근을 하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 밀집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각종 사기 피해의 경우, 워낙 개인적 접촉으로 이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노숙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미끼로 일과 먹을 것, 숙식 등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유인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노숙인 개개인들은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잘 하지 않는 속성들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피해에 대한 정보나 예방적 경고 역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에 대한 정보를 노숙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경찰과 노숙인 지원기관의 역할이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입음으로 노숙인들이 실질적으로 빚을 떠안아 경제활동 자체를 막거나 공포감으로 인해 사회로 나가는 것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탈노숙이 더욱 요원해 지기까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3. 실천적 함의

청년노숙인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실천에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년노숙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논문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청년기에 노숙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은 그룹은 학교와 가정을 이탈한 가출청소년, 가족과 사회의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룹, 정신적인 문제와 피해 경험에 많이 노출된 그룹, 소년원이나 보육원 등 시설 이후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다. 학교, 교육 당국과 청소년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들이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 그리고 이후 더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와 가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보호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1차적으로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야말로 이들의 피해를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 될 수 있다. 학교 사회복지의 역할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저학력 청년들에 대한 재기의 시스템 역시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와 일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버거워질수록 노숙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노숙으로 진입하기 전 각종 어려움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위기 청소년, 청년 상담 창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복지사회를 표방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 대응 체계는 성인이고 집이 없이 위기에 처해 있는 남성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노숙인 지원 체계, 혹은 정신병원 등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심지어 공포스럽기까지 한 곳으로 연계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설령 이들이 집이 없는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서울역, 영등포역 등 기존의 노숙 밀집 지역과 직접 연계되는 노숙 지원 체계로의 유입 자체가 이들에게는 충격이자 가중되는 불안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재의 연계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번 노숙인 지원체계 속에 들어 오면 이들의 의존이 심화된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무료 응급쉼터와 일시보호센터는 이들의 무기력감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둘째, 노숙인 복지 실천의 측면에서 노숙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그에 따른 욕구 등에 대한 이해가 더 세분화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숙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이들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노숙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선호하는 지원과 그렇지 않은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요구된다. 규모가 큰 기관이라면 상담사별로 특정 연령대의 클라이언트를 전문으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 별로 욕구가 상이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종류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시켜 연령에 따른 욕구에 적합한 노숙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청년과 중장년노숙인은 매우 다른 이질적인 대상이다. 그들이 처한 상황 역시 다르다. 청년들의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 단절된 학력을 복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추가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기술 혹은 자격증을 확보하는 방법을 몰라 생각만 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았다. 젊은 청년들이 현 상태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자본이 더 계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노숙인 하위 그룹의 노숙 경로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근거하여 이들의 탈노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청년기 노숙 진입 그룹의 경우, 현재 노숙으로 유입되게 만들었던 주요 위험요인의 해소와 심리적 치료와 지

원을 통해 얼마든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룹이다. 그러한 지원이 지체될 경우, 점점 노숙의 상황이 길어지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용회복 지원, 채무 해결, 일자리 연계 등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지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독립적인 주거 마련을 진행하도록 지원해준다면 독립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할 것이다. 주류 사회와 주류 복지체계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시켜 줄수록 더욱 일반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빨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부터 노숙을 경험한 그룹의 경우, 이들의 위험한 비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들 청년들을 위해 특화된 노숙인 시설에서의 한시적 생활(6개월~1년)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문적 상담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피해 경험으로 인해 상실된 정신적,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면서 흐트러져 있는 정상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성장배경을 볼 때, 건강하고 다양한 환경과 자극에 노출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도 실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접촉점을 늘려 주어 새로운 관심과 삶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가출 등으로 중단되었던 배움에 대한 갈증이 큰 만큼 학업을 중고교 졸업, 각종 기술교육 등 인적자본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설 퇴소 후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주거와 같은 현물제공 중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청년노숙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각 사례가 경험했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괴롭히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실천 현장에서는 인문학강좌, 축구동호회, 연극동아리, 자원봉사 활동 등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청년노숙인들에게는 개별 심층 상담과 심리치료가 매우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의 청년들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러한 상담과 개입의 여지가 부족한 일시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입의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일시보호시설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노숙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 자활을 유도하는 자활시설도 청년들에게는 적합한 대안이 아니다. 보다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대안적 서비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청년노숙인을 중장년노숙인과 비교하여 청년노숙인의 특성을 도출해 냈지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양 집단을 비교하기에는 중장년노숙인의 사례수가 충분치 못했다. 특히 20-30대 청년노숙을 경험했던 중장년노숙인 사례는 6사례였고, 10대 때 청소년노숙을 경험한 사례는 8사례에 그쳤다. 또한 확보된 중장년노숙인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청년노숙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본 논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대등한 수준에서의 밀도 있는 비교를 위한 더 세밀한 자료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 그룹에서도 다양한 노숙의 양상이 파악되는 것이 노숙인들의 특성인 만큼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때 풍부하고도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리라 본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대상자 확보에 있어, 노숙인기관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사례수 집이 이루어졌던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 노숙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서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 컴퓨터이용 등의 패턴이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복지체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청년노숙인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노숙의 경로에서 노숙 전, 노숙 이후의 생활까지만을 검토하였다. 완전한 청년노숙의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청년노숙의 탈노숙 역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탈노숙까지를 포괄하는 것이 본 논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노숙 전과 노숙 이후의 상황에 집중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추가적인 향후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청년노숙인의 노숙 이전의 위험요인의 경험과 노숙 진입 경로, 노숙 이후의 거주, 일, 복지서비스,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하여 특히 노숙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이들의 만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 가령 알코올 중독의 정도, 거리노숙의 경험들, 노숙 생활에서의 생존 전략 등을 더 분석한다면 노숙 이전의 경로에 따른 노숙 이후의 생활에 대한 미세한 차이들이 더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청년들의 탈노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노숙인들 스스로가 탈노숙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외부자적 시각에서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보다 당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일과 주거의 형태, 그에 결합되어야 할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구인회, 김소영 (2012). 노숙 진입의 원인과 과정. *한국사회학*, 46(4), 264-293.
- 구인회, 정근식, 신명호 (2012).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숙인 (2011). 소토코모리, 일본 밖을 떠도는 젊은이들. *일본비평*, (5), 22-49.
- 권혁진, 유효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선에 (2014). *청년발달과 이해*. 서울: 창지사.
-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2004). *청소년복지학*. 파주: 집문당.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行的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수정, 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수현, 정원오 (1999).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연구*, 7(1), 69-90.
- 김영 (2013). 관계의 빈곤과 청년의 홀리스화: 동경지역 청년 홀리스 8인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23, 219-251.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경, 이옥자 (2011).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 *한국 사회복지학*, 63(2), 31-56.
- 김현철 (2003). 일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 *청소년학연구*, 10(2), 127-154.
- 김혜경, 이순미 (2012). '개인화'와 '위험'. *페미니즘 연구*, 12(1), 35-72.
- 남기철 (2014). 숨겨진 노숙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숙박자의 성격. *비판사회정책*, (42), 140-176.
-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 (NEET) 의 현황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72, 29-40.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2). 2012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_____ (2013). 2013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_____ (2014). 2014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변금선 (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373.
- 보건복지부 (2015). *노숙인 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울시 (2016a). '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3035. (2016. 3.8)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_____ (2016b). '16년 노숙인 신용회복 · 저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3905. (2016.3.25.)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서정화 (2005). 여성노숙인의 존재와 삶. *아세아연구*, 48(2), 59-85.
- 송호근, 강원택, 김은경, 문상현, 배영, 이연호, 장덕진, 조화순, 최셋별 (2010). *위기의 청년세대 : 출구를 찾다* 파주: 나남.
- 신명호 (2011). 노숙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노숙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90, 13-44.
- 은수미 (2011). 일본의 고용전략 변화. *일본비평*(4), 48-79.
- 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5). *청소년복지론*. 파주: 나남출판, 2005.
- 이의규, 강일규, 류지영, 조준모, 김삼수, 오학수 (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식 (2013). *청년학개론*. 서울: 청림.
- 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정수남, 권영인, 박진, 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_____ (2004).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수현, 정원오 (1999).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연구*, 7(1), 69-90.
- 최영섭 (2003).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서울: 산업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1998). *홈리스의 발생 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_____ (2012).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국외문헌>

- Aldworth, J. (2009). *Results from the 2007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ational findings*: DIANE Publishing.
- Anderson, I. (2001). *Pathways through homelessness: towards a dynamic analysis*. Urban Frontiers Program,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Retrieved from

- http://www.urbancenter.utoronto.ca/pdfs/elibrary/Anderson_Pathways-Homeless_.pdf
- Anderson, I., & Christian, J. (2003). Causes of homelessness in the UK: A dynamic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105–118.
- Arnett, J. (2004). Emerging Adulthood.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1*(2), 1–8.
- _____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Aassve, A., Billari, F. C., Mazzuco, S. & Ongaro, F. (2002). Leaving h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CHP dat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4), 259–275.
- Avramov, D. (1998). *Youth homelessness in the European Union*. FEANTSA.
- Ayerst, S. L. (1999). Depression and stress in street youth. *Adolescence, 34*(135), 567.
- Barker, J. D. (2012). Social capital, homeless young people and the family.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730–743.
- Belcher, J. R. (1988). Are jails replacing the mental health system for the homeless mentally ill?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4*(3), 185–195.
- Bell, L., Burtless, G., Gornick, J., & Smeeding, T. M. (2006). A cross-national survey of trends in the transition to economic independence. *Network on Transitions to Adulthood Research Network*.
- Benjaminsen, L., & Busch-Geertsema, V. (2009). Labour market reforms and homelessness in Denmark and Germany: Dilemmas and consequences. *European Journal of Homelessness, 3*, 127–153.
- Biggart, A. & Walther, A. (2006). Coping with Yo-yo transitions: Young adult's struggle for support, between family and st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Leccardi, C. & Ruspini(Ed.), *A New youth? Young people, generation and family life* (pp. 41–62). Hampshire: Ashgate.
- Bois-Reymond, M. & López Blasco, A. (2003). Yo-yo transitions and misleading trajectories: towards integrated transition policies for young adults in Europe. *Young people and contradictions of inclusion, 19–41*.
- Busch-Geertsema, V. (2010). Defining and measuring homelessness. *Homelessness Research in Europe*. Brussels:FEANTSA, 19–39.
- Busch-Geertsema, V., Edgar, W., O'Sullivan, E. & Pleace, N. (2010). *Homelessness and homeless policies in Europe: Lessons from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Homelessness.
- Butler, S. S. & Weatherley, R. A. (1995). Pathways to homelessness among middle-aged women. *Women & Politics, 15*(3), 1–22.

- Carcillo, S. & Königs, S.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Retrieved from <http://ssrn.com/abstract=2573655> or <http://dx.doi.org/10.2139/ssrn.2573655>.
- Caton, C., Shrout, P. E., Eagle, P. F., Opler, L. A., Felix, A. & Dominguez, B. (1994).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schizophrenic men: a case-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2), 265-270.
- Cauce, A. M., Paradise, M., Embry, L., Morgan, C., Lohr, Y., Theofelis, J., Wagner, V. (1998). Homeless youth in Seattle: Youth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needs, and intensive case management. *Community-based programming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s: Research and evaluation, 611-632*.
- Chamberlain, C. & Johnson, G. (2011). Pathways into adult homelessness. *Journal of Sociology, 49*(1), 60-77. doi: 10.1177/1440783311422458
- Clapham, D. (2003). Pathways approaches to homelessness research.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119-127.
- Coates, J. & McKenzie-Mohr, S. (2010).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Trauma in the lives of homeless youth prior to and during homelessnes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7, 65*.
- Coles, B. (2005). *Youth and Social Policy: Youth citizenship and young careers*
- Collins, S. D. B. (2013). From Homeless Teen to Chronically Homeless Adult: A Qualitative Study of the Impact of Childhood Events on Adult Homelessness. *Critical Social Work, 14*(2), 61-81.
- Council, N. H. C. f. t. H. (2004). Homeless Young Adults Ages 18-24: Examining Service Delivery Adaptations: National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Council.
- Courtney, M. E. & Heuring, D. H. (2005).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youth "aging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On your own without a net: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populations, 27-67*.
- Crane, M. (1999). *Understanding older homeless people: their circumstances, problems and needs*: Open University Press.
- Crane, M., Byrne, K., Fu, R., Lipmann, B., Mirabelli, F., Rota-Bartelink, A., Warnes, A. M. (2005). The causes of homelessness in later life: findings from a 3-nation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3), S152-S159.
- Crane, M. & Warnes, A. M. (2001). Older people and homelessness: Prevalence and causes. *Topic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16*(4), 1-14.
- Creswell, J. W.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8).

- Creswell, J. W., Hanson, W. E., Plano, V. L. C. & Morales, A. (2007).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2), 236–264.
- Culhane, D. P., Metraux, S., Byrne, T., Stino, M. & Bainbridge, J. (2013). The age structure of contemporary homelessn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3(1), 228–244.
- de Decker, P. & Hardouin–Steyaert, G. (1999). *Support in Housing: Between Control and Emancipation: the 1998 Belgium National Report for the Europe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FEANTSA.
- Dworsky, A., Napolitano, L. & Courtney, M. (2013). Homelessness during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to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S2), S318–S323.
- Dyb, E. (2009). Imprisonment: A major gateway to homelessness. *Housing Studies*, 24(6), 809–824.
- Edalati, H., Krausz, M. & Schütz, C. G. (2015). Childhood maltreatment and revictimization in a homeless pop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 10.1177/0886260515576972.
- Elliott, M., & Krivo, L. J. (1991). Structural determinants of home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problems*, 38(1), 113–131.
- Ermisch, J. (1999). Prices, parents, and young people's household form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5(1), 47–71.
- European Commission (2001). *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Brussels.
- Fahmy, E. (2006).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The Millennium Survey*, The Policy Press, Bristol.
- Ferguson, K. M., Bender, K., Thompson, S. J., Maccio, E. M. & Pollio, D. (2011a).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generation among homeless young adults: results from a five-city, mixed-methods study. *Youth & Society*, 44(3), 385–407.
- Ferguson, K. M., Bender, K., Thompson, S., Xie, B. & Pollio, D. (2011b). Correlates of street-survival behaviors in homeless young adults in four US c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3), 401–409.
- Ferguson, K. M., Bender, K., Thompson, S. J., Xie, B. & Pollio, D. (2012). Exploration of arrest activity among homeless young adults in four US cities. *Social Work Research*, 36(3), 233–238.
- Fischer, P. J. (1992). Victimization and homelessness: Cause and effect. *New England Journal of Public Policy*, 8(1), 20.

- Fitzpatrick, K. M., La Gory, M. E. & Ritchey, F. J. (1993). Criminal victimization among the homeless. *Justice Quarterly*, 10(3), 353–368.
- Fitzpatrick, S. (1999). *Pathways to independence: the experience of young homeless people*: Scottish Homes Edinburgh.
- _____ (2005). Explaining homelessness: a critical realist perspectiv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2(1), 1–17.
- Fitzpatrick, S., Kemp, P. & Klinker, S. (2000). *Single homelessness: An overview of research in Britain*: Policy.
- Fitzpatrick, S., Pawson, H., Bramley, G. & Wilcox, S. (2012). The homelessness monitor: Scotland 2012. *Institute for Housing, Urban and Real Estate Research, Heriot-Watt University and Centre for Housing Policy*, University of York, London.
- Fitzpatrick, S. & Stephens, M. (2014). Welfare regimes, social values and homelessness: Comparing responses to marginalised groups in six European countries. *Housing Studies*, 29(2), 215–234.
- Flick, U. (2006).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V. Jupp (Ed.), *The SAGE Dictionary of Social Research Methods* (pp. 37–38). London: Sage.
- _____ (2013).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Sage.
- Flyvbjerg, B. (2006).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ase-study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2(2), 219–245.
- Furlong, A. (2009). Revisiting transitional metaphors: Reproducing social inequalities under the conditions of late modernity.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2(5), 343–353.
- Gaetz, S. (2014). *Coming of age: Reimagining the response to youth homelessness in Canada*: Canadian Homelessness Research Network.
- Gaetz, S. & O'Grady, B. (2002). Making money exploring the economy of young homeless workers. *Work, Employment & Society*, 16(3), 433–456.
- Garrett, S. B., Higa, D. H., Phares, M. M., Peterson, P. L., Wells, E. A. & Baer, J. S. (2008). Homeless youths' perceptions of services and transitions to stable hous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1(4), 436–444.
- Gerring, J. (2004).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41–354.
- Glaser, B. G. (1965).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Social problems*, 12(4), 436–445.
- Gomez, R., Thompson, S. J. & Barczyk, A. N.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among homeless young adults. *Substance Abuse*, 31(1), 24–34.

- Goodman, L. A., Saxe, L. & Harvey, M. (1991). Homelessness as psychological trauma: Broadening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46(11), 1219.
- Gowan, T. (2002). The Nexus Homelessness and Incarceration in Two American Cities. *Ethnography*, 3(4), 500–534.
- Guadagno, R. E., Muscanell, N. L. & Pollio, D. E. (2013). The homeless use Facebook?! Similarities of social network use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homeless young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86–89.
- Heffron, W. A., Skipper, B. J. & Lambert, L. (1997). Health and lifestyle issues as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10(1), 6–12.
- Herman, D. B., Susser, E. S. & Struening, E. L. (1994). Childhood out-of-home care and current depressive symptoms among homeless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11), 1849–1851.
- Herman, D. B., Susser, E. S., Struening, E. L. & Link, B. L. (199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re they risk factors for adult homelessnes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2), 249–255.
- Hyde, J. (2005). From home to street: Understanding young people's transitions into homelessness. *Journal of Adolescence*, 28(2), 171–183.
- Iacovou, M. & Richard, B. (2001). *Young people's lives: A map of Europe*. ISER Essex Colchester Institute for Social Economic Research.
- Israel, N., Toro, P. A. & Ouellette, N. (2010).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homeless population: 1992–2002.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6(1–2), 49–59.
- Ji, E.G. (2006). A study of the structural risk factors of homelessness in 52 metropolit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Work*, 49(1), 107–117.
- Johnson, G. (2006). *On the Move: A longitudinal study of pathways in and out of homelessness*. RMIT University.
- Johnson, T. P., Freels, S. A., Parsons, J. A. & Vangeest, J. B. (1997). Substance abuse and homelessness: social selection or social adaptation? *Addiction*, 92(4), 437–445.
- Jones, A. & Pleace, N. (2010). *A Review of Single Homelessness in the UK 2000–2010*. London: Crisis.
- Kahn, L. B. (2010).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17(2), 303–316.
- Kemp, P. A., Lynch, E. & Mackay, D. (2001). *Structural trends and homelessness: a quantitative analysis*: Stationery Office.

- Kemp, P. a. Rugg, J. (2001). Young people, housing benefit and the risk society.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5(6), 688–700.
- Kim, M. M. & Ford, J. D. (2006).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among homeless men: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3(2), 1–22.
- Kim, M. M., Ford, J. D., Howard, D. L. & Bradford, D. W. (2010). Assessing traum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homeless men. *Health & Social Work*, 35(1), 39.
- Koegel, P., Melamid, E. & Burnam, m. A. (1995). Childhood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homeless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12), 1642–1649.
- Krivo, L. J. (1991). Structural determinants of home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problems*, 38(1), 113.
- Kushel, M. B., Hahn, J. A., Evans, J. L., Bangsberg, D.R. & Moss, A. R. (2005). Revolving doors: imprisonment among the homeless and marginally housed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10), 1747–1752.
- Lee, B. A., Tyler, K. A. & Wright, J. D. (2010). The new homelessness revisited.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501.
- MacKenzie, D. & Chamberlain, C. (2003). *Homeless Careers: Pathways in and out of Homelessness: Counting the Homeless 2001 Project*.
- Mallett, S., Rosenthal, D. & Keys, D. (2005). Young people, drug use and family conflict: Pathways into homelessness. *Journal of Adolescence*, 28(2), 185–199.
- Mallett, S., Rosenthal, D., Keys, D. & Averill, R. (2009). *Moving out, moving on: Young people's pathways in and through homelessness*: Routledge.
- Martijn, C. & Sharpe, L. (2006). Pathways to youth homelessness. *Social science & medicine*, 62(1), 1–12.
- May, J. (2000). Housing histories and homeless careers: A biographical approach. *Housing Studies*, 15(4), 613–638.
- Mayock, P., Corr, M. L. & O'Sullivan, E. (2011a). Homeless young people, families and change: family support as a facilitator to exiting homelessness. *Child & Family Social Work*, 16(4), 391–401.
- Mayock, P., O'Sullivan, E. & Corr, M. L. (2011b). Young people exiting homelessness: An exploration of process, meaning and definition. *Housing Studies*, 26(6), 803–826.
- McCarthy, B. & Hagan, J. (1992). Surviving on the Street The Experiences of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4), 412–430.
- McCaskill, P. A., Toro, P. A. & Wolfe, S. M. (1998). Homeless and matched

- housed adolescents: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3), 306–319.
- Meinema, T. (2010). CSEYHP: Combating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Homeless Populations. *Homeless in Europe Autumn 2010*.
- Milburn, N. G., Rotheram-Borus, M. J., Rice, E., Mallet, S. & Rosenthal, D. (2006). Cross-national variations in behavioral profiles among homeless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1–2), 63–76.
- Morrell-Bellai, T., Goering, P. N. & Boydell, K. M. (2000). Becoming and remaining homeles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1(6), 581–604.
- Morris, A., Judd, B. & Kavanagh, K. (2005). Marginality amidst plenty: Pathways into homelessness for older Australians.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0(2), 241.
- Mulroy, E. A. & Lane, T. S. (1992).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and single mothers: Pathway to homelessnes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9, 51.
-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05). Addiction disorders and homelessness Fact Sheet #6. Washington, DC.: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1978). *The Belmont Report: 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eale, J. (1997). Homelessness and theory reconsidered. *Housing Studies*, 12(1), 47–61.
- Nicholls, C. M. (2009). Agency, transgression and the causation of homelessness: A contextualised rational action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9(1), 69–84.
- Nooe, R. M. & Patterson, D. A. (2010). The ecology of homelessnes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0(2), 105–152.
- O'Dwyer, B. (1997). Pathways to Homelessness: a Comparison of Gender and Schizophrenia in Inner-Sydney.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5(3), 294–307.
- Oakley, D. & Dennis, D. L. (1996). Responding to the needs of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rug, and/or mental disorders. *Homelessness in America*, 179–186.
- OECD (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OECD.
- _____ (2014a).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 _____ (2014b).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June 2014). OECD.
- O'flaherty, B. (1996). *Making room: The economics of homeless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 Okamoto, Y. (2007). A comparative study of hom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Journal of Social Issues*, 63(3), 525–542.

- Oldman, J. (1997). Beyond bricks and mortar. *Youth in Society: Contemporary Theory, Policy and Practice*, 116.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타균 역)*. 서울: 나남출판 (원서출판 1998).
- Paradise, M., Cauce, A. M., Ginzler, J., Wert, S., Wruck, K. & Brooker, M. (2001). The role of relationships in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homeless and runaway youth *Personal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pp. 159-179): John Wiley & Sons Ltd.
- Park, J. M., Metraux, S., Broadbar, G. & Culhane, D. P. (2004). *Child welfare involvement among children in homeless families*. Retrieved from http://repository.upenn.edu/spp_papers/22
- Park, J. Y. (2000). Increased homelessness and low rent housing vacancy rate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9(1), 76-103.
- Philippot, P., Lecocq, C., Sempoux, F., Nachtergaeel, H. & Galand, B. (2007). Psychological research on homelessness in Western Europe: A review from 1970 to 2001. *Journal of Social Issues*, 63(3), 483-503.
- Pleace, N. (2000). The new consensus, the old consensu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people sleeping rough. *Housing Studies*, 15(4), 581-594.
- Pleace, N., Andersen, I. & Sim, D. (2011). Homelessness and inequality. *Housing and Inequality*. Coventry: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187-204.
- Quilgars, D., Johnsen, S. & Pleace, N. (2008). Youth homelessness in the UK. *York, U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Rattelade, S., Farrell, S., Aubry, T. & Klodawsky, F.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in homeless youth and adul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0886260513511529.
- Robertson, M. J. (1991). Homeless youth: An overview of recent literature. *Homeless children and youth: A new American dilemma*, 33-68.
- Rosenthal, G. (2004). Biographical research. In C. Seale, G., Gubrium, J. and Silverman, D. (Eds.). (Ed.),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Sage.
- Rota-Bartelink, A. & Lipmann, B. (2007). Causes of homelessness among older people in Melbourne, Australia.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1(3), 252-258.
- Rubin, A. & Babbie, E. (2009).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김기덕 외 역)*. 서울: 세계이저리닝코리아.
- Ryan, P., Goldstein, I. & Bartelt, D. (1989). *Homelessness in Pennsylvania: How Can this Be?* : Coalition on Homelessness in Pennsylvania.
- Ryan, T. N. & Thompson, S. J. (2013). Perspectives on housing among homeless emerging adult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6(1), 107-114.

- Shelton, K. H., Taylor, P. J., Bonner, A. & van den Bree, M. (2009).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Psychiatric Services, 60*(4), 465–472.
- Shinn, M. (1992). Homelessness: What is a psychologist to do?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 1–24.
- _____ (2007). International Homelessness: Policy,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63*(3), 657–677.
- Simons, R. L. & Whitbeck, L. B. (1991). Running away during adolescence as a precursor to adult homelessness. *The Social Service Review, 224*–247.
- Smith, H. (2008). Searching for Kinship The Creation of Street Families Among Homeless Yout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1*(6), 756–771.
- Smith, J., Gilford, S. & O'Sullivan, A. (1998). *The family background of homeless young people*: Family Policy Studies Centre London.
- Snow, D. A. & Anderson, L. (1993). *Down on their luck: A study of homeless street people*: Univ of California Press.
- Stake, R. E. (2000). Qualitative Case Studies. In D. a. Lincoln (E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443–466): Sage.
- Susser, E., Struening, E. L. & Conover, S. (1987). Childhood experiences of homeless 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12), 1599–1601.
- Susser, E. S., Liii, S. P., Conover, S. A. & Struening, E. L. (1991). Childhood Antecedents of Homelessness. *Am J Psychiatry, 1*, 48.
- Teesson, M., Hodder, T. & Buhrich, N. (2000). Substance use disorders among homeless people in inner Sydne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10), 451–456.
- Thompson, R. G. & Hasin, D. (2012). Psychiatric disorders and treatment among newly homeless young adults with histories of foster care. *Psychiatric Services, 63*(9), 906–912.
- Thompson, S. J., McManus, H., Lantry, J., Windsor, L. & Flynn, P. (2006). Insights from the street: Perceptions of services and providers by homeless young adult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9*(1), 34–43.
- Tomas, A. & Dittmar, H. (1995). The experience of homeless women: An exploration of housing histories and the meaning of home. *Housing Studies, 10*(4), 493–515.
- Toro, P., & Goldstein, M. (2000). *Outcomes among homeless and matched housed adolescents: A longitudinal comparison*. Paper presented at the 10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Toro, P. A. (2007). Toward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63*(3), 461–481.
- Toro, P. A., Dworsky, A., & Fowler, P. J. (2007). *Homeless youth in the United States: Recent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approache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homelessness research.
- Trochim, W. M. (1989). Outcome pattern matching and program theor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4), 355–366.
- Tyler, K. A. (2006). A qualitative study of early family histories and transitions of homeless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10), 1385–1393.
- _____ (2008).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nd risky sexual and drug related behaviors among homeless young adults. *Social Science Research, 37*(2), 673–685.
- _____ (2009). Risk factors for trading sex among homeless young adul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2), 290–297.
- Tyler, K. A. & Johnson, K. A. (2006). Pathways in and out of substance use among homeless-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2), 133–157.
- Tyler, K. A., & Schmitz, R. M. (2013). Family histories and multiple transitions among homeless young adults: Pathways to homelessn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0), 1719–1726.
- Vázquez, C. M., Manuel, & Valverde. (1999). Homelessness in Spain: psychosocial aspects. *Psychology in Spain*(3), 104–116.
- Webb, S. (1994). *My address is not my home: Hidden homelessness and single women in Scotland*: Scottish Council for Single Homeless Edinburgh.
- Weber, M. (1949).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s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4), 375–392.
- Whitbeck, L. B., Hoyt, D. R. & Yoder, K. A. (1999). A risk-amplification model of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73–296.
- Williams, M. & Cheal, B. (2001). Is there any such thing as homelessness? Measurement, explanation and process in homelessness research.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4*(3), 239–253.
- Yin, R. K. (2008). *사례연구방법 (서아영, 신경식 역)* 서울: 한경사 (원서출판 2003).
- Yoder, K. A., Whitbeck, L. B. & Hoyt, D. R. (2001). Event history analysis of antecedents to running away from home and being on the stree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1), 51–65.

釜ヶ崎支援機構、大阪市立大學校. (2008). 若者不安定就労 不安定住居者 聞き取り調査報告書: 特定非営利活動法人・大阪市立大學校.

厚生労働省. (2010). 「非正規労働者の雇止め等の状況について」.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upe1.html>.

厚生労働省. (2007). ホームレスの実態に関する全国調査報告書.: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2008). 住居喪失不安定就労者等の実態に関する調査報告書: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2012). ホームレスの実態に関する全国調査.

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0). 若者ホームレス白書: ビッグイシュー基金.
 _____ (2012). 若者ホームレス白書2: ビッグイシュー基金.

飯島裕子, ビッグイシュー基金. (2011). 若者ホームレス. ちくま新書.

ホームレス支援全国ネットワーク. (2011). 広義ホームレスの可視化と支援策に関する調査報告書 厚生労働省 平成22年度社会福祉推進事業: 厚生労働省.

<영상자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공감 (2013).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
 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acttogether/11I/237?q=2016%B3%E2%20%B3%EB%BC%F7%00%CE%00%CF%00%DA%B8%AE%C1%BE%C7%D5%B4%EB%C3%A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7월 30일 방송 '길 위에 버려진 젊은 희망, 청년 노숙자가 늘고 있다'

<신문기사>

내일신문. 2003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2012년 1월 6일자. '불황의 늪, 청년들까지 노숙인 전락'

조선일보. 2012년 12월 21일자. '대학 나온 청년홈리스 수만명, 미 밤 거리 헤맨다'

문화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불황, 취업난, 희망 잃은 청년노숙인 급증'

중앙일보. 2014년 7월 2일자. '청춘카툰 리포트. 서울 절망의 섬 이야기'

동아일보. 2014년 9월 19일자. '청년노숙인 톡톡 가정폭력, 학교 따돌림 못견뎌 거리로'

부록 1. 노숙인 시설 정보

시설명	시설 종류	지역
쉼터A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인근
쉼터B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인근
쉼터C	자활시설	서울역 인근
쉼터D	응급/일시보호/자활시설	영등포
쉼터E	자활시설	영등포
쉼터F	일시보호시설	영등포
쉼터G	일시보호시설	영등포
쉼터H	자활시설	영등포
쉼터I	자활시설	청량리
쉼터J	재활시설	성동구
쉼터K	재활시설	파주
쉼터L	요양시설	은평구

부록 2. 청년노숙인 거주패턴

<노숙기간이 짧은 청년노숙인의 거주패턴: A1그룹>

사례n6 PC방으로 진입, 쉼터A와 PC방 생활					
F: 원가정의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2		H2		
H1: 쉼터 H0: 거리		H1		H1	

사례n12 쉼터A로 진입		사례n13 찜질방으로 진입, 이후 쉼터A 이용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2	H3	H3
H1: 쉼터 H0: 거리	H1	H1: 쉼터 H0: 거리			H0 H1

<노숙기간이 짧은 청년노숙인의 거주패턴: A2그룹>

사례15 여관으로 진입, 쉼터I에서 6개월째 생활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3		
H1: 쉼터 H0: 거리		H0	H1

사례4 사우나로 진입, 쉼터A주로 이용			
F1: 원가정의 집 F2: 친구 집			
I: 병원, 교도소 등 입소시설 D: 일자리 숙소			
H3: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H2: PC방, 찜질방, 사우나, 만화방	H2		
H1: 쉼터 H0: 거리		H0	H1

부록 3. 「청년노숙인터뷰조사」 질문지

번호	상위 질문	하위 질문	참고
1. 노숙인의 성장배경			
	선생님의 어렸을 적(유년기-청소년기까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기 이전)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정 분위기, 주 양육자 등
	형제들은 몇이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부모님은 귀하를 어떻게 돌봐 주셨습니까? 자신의 주 양육자는 누구였습니까?		
	가정형편은 어떠했나요?		아버지의 직업, 경제적 형편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었고,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거안정성 등
	주거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사회성, 초기 인성
	어릴 때 성격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경험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신적 충격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험
	계속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주요 사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출의 경험, 보호자가 없는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출 경험
2. 노숙 전 생활			
	학교 다닐 때를 포함하여 선생님의 10대 시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기 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청소년기, 사회생활 이전)
	본인의 최종학력은?		학력
	학교생활은 재미있었나요?		학교생활의 성실성, 학업성취 정도, 부모님의 보살핌(지지) 정도
	학교 공부는 잘 하는 편이셨나요?		
	부모님은 공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나요?		
	청소년기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혹은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갈등, 적응, 사회성
	학교에서(혹은 동네에서) 친구들은 많았나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성인이 되기 이전의 비행이나 일탈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가출, 폭력, 약물, 수감 등).		
	가출의 기간과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억 모두)		
	(학업중단 경험 있는 경우)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학업중단
	(청소년기에 일을 시작한 경우) 어떤 계기로 일을 하게 되었나요?		일 경험, 동기(일탈 or 생계 or 강압 등), 과정
	청년기로 진입하며 독립할 때에 가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일의 성격과 내용
2. 노숙 전 생활			
	노숙하기 전에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해 보셨나요? (종류가 많을 경우, 주요 직업들에 관해)		주요 직업, 직업이동, 일한 기간, 임금수준, 취업 경로 등.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기, 과정
	보통 어떻게 일을 구하셨나요?		구직의 과정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았나요?		경제적 능력
	주로 돈을 어디에 썼나요?		생활비 외 소비
	일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나요?		부도, 사기, 도박, 범죄 등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사건이 있었나요?		

	청소년기 이후 주로 누구와 같이 생활했나요?		
		결혼, 동거 등의 경험이 있습니까?	비혼, 이혼, 동거 등의 사건
		잘 어울리는 사람(혹은 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원가족과의 관계, 친구, 직장동료 등 사회적관계망 등
		돈이 없거나 어려울 때, 주로 누구를 찾아갔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적 어려움
		친구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나요?	
		빚이 있었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주거생활은 어떻게 유지하였습니까?		
		어떤 형태로 주거생활을 하였습니까?	전월세, 고시원, 입주식 일자리 등.
		사는 곳을 옮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주거 어려움
		지낼 곳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숙 이전에 건강 상태는 어떠셨나요?			
	노숙 생활 이전에 가지고 계신 질병이 있으셨나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없으셨나요?	건강	
	노숙을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원인으로, 영양, 음주, 거리생활, 위생상태, 동료 노숙인들의 영향 등을 질문.	
3. 노숙에 이르게 된 경로			
	어떻게 노숙을 하게 되셨나요?		
		생활할 집이 없어지게 된 과정과 노숙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숙화의 과정
		집을 잃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리에서 연속 이틀 이상 잠을 자 본 경험이 있습니까?	노숙 기간, 특정 사건 이후 등으로 회고
		노숙 이후 거주 장소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의 기분이나 감정은 어땠나요?	
		노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노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본인이 인지하는 노숙의 원인
노숙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언제인가요?	노숙의 자기수용 정도, 거부 노력		
4. 노숙생활			
	선생님께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노숙지역, 노숙유형화인(거리 or 쉼터 등)
		식사, 잠자리 등 기본적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노숙 이후 거주 상태
		이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하셨습니까?	
		생활하는 곳을 옮기신 적이 있다면 왜 옮기게 되셨나요?	
		노숙 이후 거주 장소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잠자리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십니까?	
		노숙 이후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생활한 주거지의 주거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곳에서 생활하시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숙 이후 근로 경험이 있습니까?		노숙 이후의 일 경험
		일을 하시나요?	근로여부, 종류
		노숙 이후에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급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재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어려움 무엇인가요? 어떤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구직의 어려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부의 노숙인 자활 지원
	정부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장점과 단점(혹은 한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혹은 노숙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탈노숙 전망
	쉼터나 상담보호센터, 무료급식,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등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노숙인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이용의 이유, 혹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서비스 이용경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이유(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와 기대
	보완되거나 확충되어야 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나 방법이 있으니까?	사회적 관계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 친구, 친지들이 노숙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로 부터 노숙 이후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전 관계망의 유지 정도, 횟수, 받는 지원
	동료 노숙인과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시나요?	
	주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는 사람이 있나요?	
	노숙 생활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갈 가정 혹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노숙인의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노숙인들 사이에서 젊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이나 불평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청년노숙 특성
	주위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노숙인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들 간의 친구맺기 혹은 유대감 형성이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인 청년노숙인들의 노숙 생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하루 동안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하루 일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까?	노숙 일과 설명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무엇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루에 규칙적으로 순회하거나, 특별히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까?	
	노숙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노숙생활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나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
	노숙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5. 탈노숙		
	탈노숙과 자활은?	
	노숙을 벗어나겠다고 결심해보신 적은 없나요? 왜 계속 노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숙생활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노숙을 벗어나기 위해 하셨던 노력은 무엇이었나요? (구체적으로) / 아니면, 노숙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그다지 간절하지 않으셨나요?	탈노숙의 노력, 주민등록여부, 신용불량문제 등
	그 노력들이 잘 안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노숙을 벗어나려할 때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노숙을 했던 경우)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bstract

Experiences of Homeless Young Adults: Entry into and lives after homelessness

Soyoung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omeless young adults, identify the sub-path of entry into homelessness and life patterns after becoming homel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about young people who are at the extreme of instability and isolation, especially the life of male young people. With macroscopic circumstances aggravating difficulties for young people such as unemployment, poverty and unstable jobs of young people and socially intensifying competition, the their journey toward independence for young people is getting fiercer as well. Against this backdrop, the homeless young adult group aged 19–39 whom the study is focusing on accounts for about 20% of the entire homeless population,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late 1990s when homeless issues started. It is essential to deal with homeless issues of young adults in earnest so a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dolescence in the lifetime process as well as find reasons why even the young people could not escape the harsh and drastic difficulties like homelessness.

For this, the study analyzed life experience from childhood to the present of 34 homeless people based on their in-depth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2009 to 2011 and 2016 in general. In specific, homeless risk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their causes of homelessness, based on which the entry paths into homelessness were drawn. Moreover,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ir independence was tracked down. After the point of becoming homeless, their housing, job, use of welfare service and social relationship were analyzed. The homeless young adul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those who became homeless in their

adolescence and those who experienced homelessness in their adolescence and their differences were analyzed; this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the two people along with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homeless young adults. Additionally, data of 24 homeless middle-aged people were analyzed for the same items, which were compared to the data of homeless young adults. This qualitative research used qualitative data, the case study method by Robert Yin and chronological analysis, pattern matching, etc. by Yin for the key analysis strategy of research.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homeless young adults and compared sub-groups of them. On average, the homeless young adults were in their early 30s, had lower education background levels than general young people, and had more experience of academic severance such as dropping out of school and less military service and marriage experience. The average period of being homeless was about 4–5 years. The extraction and analysis of their homeless risk factor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homelessness clearly. On top of the 4 risk factors suggested in pre-existing research, a new risk factor group of new social victimization factors was identified. In particular, the family factor with structural and functional problems was found the most in the both two sub-groups; lots of the cases had intense levels. This has served as an important cause of individual and independence problems for the homeless young adults. The most promine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ub-groups included individual and social victimization factors; most of those in the group that entered homelessness in their adolescence had physical or psychological problems, while the other group showed delinquency factor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s for social victimization factor, the former group experienced more financial damage in the process of achieving independence before being homeless, while the latter group had relatively more experien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 such as bullying, harassment and violence before being homeless and financial frauds including name lending and illegal use of identity after becoming homeles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relationship of key homeless risk factors by adding a variable of time, and based on which, a constant pattern of entry paths toward homelessness was drawn among each sub-group of homeless young adults. As a result, the group of those who became homeless in their adolescence showed two different kinds of patterns depending on experience of individual factors, while the other group had two entry patterns according to experience of structural and social factors; this identified differences of entry paths

of each group as well as differences of paths according to different experience factors in the groups. Also, it was revealed that the occurrence mechanism of homelessness by risk factors was chemical incorporation of cause and effect links rather than physical association.

Furthermore, residential independence, periods and triggers of financial independence transition and the process of independence transition of the subject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most of their independence process was conducted too rapidly without fully prepared financial independence. Also, their residential independence was mostly in the forms of escaping from original home or being thrown out of house. Especi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iod of preparing for independence including academic achievement or military service. However, when it comes to work experience that can be seen as a key factor of independence proce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s they changed from low-quality temporary jobs to part-time jobs. It was revealed that they had no time or mental luxury to prepare for independence, could not focus on their own future, and had to burden their own financial hardships for individual life from very early adolescence or adolescence period.

The homeless young adults' circumstances after being homeless were analyzed by being divided into housing, work, use of welfare service and social relationship. They lived on the street or in different multi-use facilities including shelters for the homeless, Goshiwons (cheap and small room), Korean dry saunas and internet cafes; besides, they were imprisoned or hospitalized, stayed at houses of relatives or friends, returned to the original home, or used accommodations at workplace. In many cases, however, enduring lots of inconveniences, they tended to prefer shelters where they have higher chances of getting job for self-support, minimum living expenses, less sense of isolation and better living environment. When it comes to work, the prerequisite for complete exit of homelessness, it was not too much to say that most of jobs the two sub-groups had were day labor, simple part-time job and public job program called special self-support for the homeless. Most importantly, the reason why they could not get a job with more stable monthly payment included health problems, debt issues including bad debt, absence of jobs that require low human capitals, etc. Most of the homeless young adults had broken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 they were practically isolated – and those facilities were the only places where they could rely on. Such situations have made the young people to more and more stick to the shelters or other facilities.

Second, by comparing with homeless middle-aged peop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less young adults were identified more clearly;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the group of homeless young adults experienced more risk factors and was put in more unstable situations compared to homeless middle-aged people. Homeless young adults, compared to homeless middle-aged people who became homeless in the similar period of lifetime process as they did, have remarkably lower quality of economic activities and much lesser job and marriage experiences. Especially, family facto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homeless middle-aged people and homeless young adults, but with different stories. As for family factor for homeless middle-aged people, most problems resulted from newly married families; only about a half of them were related to original home issues. On the other hand, family factor for homeless adolescents were mostly from issues of their original home started from their childhood; this had and has had profound influence on the young people. Another definite difference was the social risk factor experienced by homeless middle-aged people. Social risks that homeless young adults experienced were much more serious than the homeless middle-aged people's, regardless before and after homelessness.

In terms of life after becoming homeless, homeless young adults entered homelessness earlier and had more unstable homelessness life compared to homeless middle-aged people. As a result of comparing homeless young adults and homeless middle-aged people who entered homelessness in similar stage of lifetime, young people became homeless earlier and moved frequently due to relative lack of social experience. Moreover, although they have relatively better labor force, the young people ended up with lowly jobs. Rather, they changed various part-time jobs and repeated quitting jobs. As for social relationships, homeless young adults were more isolated than homeless middle-aged people; While those who entered homelessness in middle and late-ages try to find their own meaning of homeless life, set new relationships and pursue independent space, the group of those who became homeless in their adolescence still continue unstable life at temporary shelter facilities, not being able to find to return to the society.

The study presented the way of expanding times of homelessness issues and tracking down the process of homelessness as a strategy to understand homelessness, rather than simpl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homelessness and homeless careers or defining causes of homelessness with a single case.

Lifetime incidents affecting homelessness went up through childhood, and the

risk factors were very multidimensional.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times of homelessness experience were critical for understanding homelessness. This could be applied not only to homeless young adults but also to homeless middle-aged people. Theoretically, the study tri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existing research on homelessness causes. That is, the study identified temporal causality of segmental cause factors, analyzed how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paths, and discovered common patterns through various cases. In addition, situations of homeless adolescents and adulthood homelessness that had been understood segmentally with policy and research practice were connected through experience of adolescence homelessness. The study also showed that homeless risk factors needed to be added on top of those suggested in existing research from the Korean context. In particular, experience of social damage was serious enough to discourage homeless young adults in our society. At last, the study re-identified the refraction of independence process for lower levels of young people in our society through homelessness situations of them at the end of the frustrating process of independence transition.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implication, the study results have draw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olitical consideration for young people who are facing complicated difficulties such as low education levels, unemployment and housing deprivation. This should be reviewed for not only homelessness service but also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our society. For policy on homelessness, it is required to develop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meless young adults. Especially, a specific approach is necessary for the different homeless pathways by sub-group. Furthermore, the study indicated that management and preemptive responses for various homeless risk factors that homeless young adults experienced throughout their lifetime could be important prevention policy against homelessness. Practically, simply just providing accommodations and public job opportunities would not help them return to the socie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raw up a long-term roadmap for nurturing healthy social members doing their share by providing psychological therapy, consultation and career guidance, helping them to restart school and preparing financial revival plans.

Keywords: homeless young adults, Qualitative Case study, homelessness pathway, homeless risk factor, entry into homelessness, cause of homelessness

Student Number: 2009-30828